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2013.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보고서는 중국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국 해관총서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 목 차

I. 개 관	13
1. 일반개황	13
2. 경제개황	14
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14
나. 중국의 수출입 동향	17
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	19
3.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 관계	21
4.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4
5. 한·중 FTA	29
II. 외국의 통관환경 보고서	31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	31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3
III. 중국의 관세제도	37
1. 관세제도 일반	37
가. 법률체계	37
나. 관세율	39
다. 2013년도 관세실시방안	43
2. 관세평가제도	44
가. 과세가격 평가방법	44
나. 관세 비용 계산	48

3. 품목분류제도 .....	49
4. 사전가격심사제도 .....	52
5. 관세 환급 및 감면 .....	52
가. 관세 환급제도 .....	52
나. 관세 감면제도 .....	53
다. 관세 감면 절차 .....	55
6. 수출입 담보제도 .....	57
7. 수출품 증치세 환급제도 .....	61
가. 증치세와 수출품 증치세 환급 .....	61
나. 환급률 조정을 통한 수출관리 .....	64
8. 행정처벌과 납세 분쟁 .....	66
가. 해관 행정처벌 종류 및 절차 .....	66
나. 해관감독관리규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	68
다. 해관 납세분쟁-행정재심의와 행정소송 .....	74
IV. 중국의 통관제도 .....	79
1. 관세 행정조직 및 관리업무 .....	79
가. 해관 행정조직 .....	79
나. 해관 관리업무 .....	85
2. 통관 절차 및 단계별 특징 .....	86
가. 전기단계 준비사항 .....	87
나. 수출입 통관단계 .....	88
다. 후속단계 조치사항 .....	89
3. 통관 서류 및 기타 요건 .....	91
가. 통관 서류 .....	91
나. 통관 관련 기타 요건 .....	93
4. 보세화물과 보세 심사제도 .....	96
가. 보세화물의 특징 .....	96

나.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	97
다. 보세 심사제도	98
5. 가공무역제도	99
가. 가공무역제도 개관	99
나. 가공무역기업의 심사 및 비준	102
다. 가공무역 상품 분류관리	104
라. 가공무역기업 분류관리 및 은행보증금 제도	107
마. 수출가공구와 보세구	111
6. AEO제도와 기업분류 관리제도	116
가. 우리나라의 AEO제도와 중국의 기업분류관리제도	116
나. 기업분류 기준 및 기준별 통관 조치사항	118
다. AEO 상호인정협정(MRA)	124
라. 한·중 AEO MRA	125
7. 원산지제도	126
8. 통관검역제도	128
가. 검역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128
나. 검역 방법 및 절차	130
9. 라벨링제도	135
10. 전자통관시스템	137
V. 중국의 비관세장벽	141
1. 수출입규제	143
가. 수출입 금지 및 제한	143
나. 쿼터관리제도	147
다. 허가증 관리제도	156
라.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	164
마. 수출입업체 관리제도	166
2.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72

가.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172
나. 자발적 인증제도 .....	175
다.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 .....	177
라. China REACH(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	181
3.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182
가. 중국의 SPS 정책 .....	182
나. 식품관련 규제 .....	184
다. 의약품 관련 규제 .....	185
4. 통관 관련 규제 .....	186
가. 의약품 수입통관지 제한 .....	186
나.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	187
다. 환급규정 수시 변경 .....	187
라. 이중 세관검사 .....	188
마.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 .....	189
바. 보세운송 불허 .....	191
5.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192
가.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	192
나. 지식재산권 해관보호조치 .....	194
VI.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	199
1. 수입신고 .....	201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201
나. 애로 사례 .....	204
다. 업무상 유의점 .....	205
2. 화물검사 .....	206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206
나. 업무상 유의점 .....	210
3. 관세징수 .....	211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11
나. 애로 사례.....	223
다. 업무상 유의점.....	225
4. 통관 및 반출입.....	229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29
나. 업무상 유의점.....	231
참고문헌.....	233
부 록.....	235
부록 I. 중국의 2011년 WTO 관세율표.....	235
부록 II. 비즈니스 팁.....	237
부록 III. 주요 유관기관 정보.....	245
부록 IV.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249
부록 V.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263
부록 VI.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286
부록 VII.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관리조례.....	302
부록 VIII.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316
부록 IX. 2013년도 관세실시 방안.....	323

## 표목차

〈표 I -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15
〈표 I -2〉 중국의 품목별 수출입실적(2012)	18
〈표 I -3〉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실적(2011)	19
〈표 I -4〉 對중국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순위(2012)	20
〈표 I -5〉 최근 對중국 10대 수출품목	23
〈표 I -6〉 최근 對중국 10대 수입품목	23
〈표 I -7〉 중국의 FTA 현황	25
〈표 I -8〉 중국의 주요 FTA 추진 현황	27
〈표 II -1〉 중국 무역분야 순위 비교	32
〈표 II -2〉 중국 수출입 소요기간	32
〈표 III -1〉 중국의 관세 관련 법률체계	38
〈표 III -2〉 중국의 수입관세율 범위와 적용범위	41
〈표 III -3〉 중국의 관세율 조정추이	43
〈표 III -4〉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45
〈표 III -5〉 과세가격의 가산/공제요소	45
〈표 III -6〉 특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46
〈표 III -7〉 과세가격에서의 운송비와 보험료	47
〈표 III -8〉 수입관세 계산방법	48
〈표 III -9〉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내용	65
〈표 III -10〉 해관의 행정처벌 종류	67

〈표 IV-1〉 해관업무 관련 부서 업무분장	80
〈표 IV-2〉 무역화물종류별 전기단계 준비사항	87
〈표 IV-3〉 무역화물 종류별 후속단계 조치사항	90
〈표 IV-4〉 내료가공과 진료가공 비교	100
〈표 IV-5〉 가공무역기업 차등관리 주요내용	108
〈표 IV-6〉 일반구역과 수출가공구 비교	112
〈표 IV-7〉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 정책 비교	114
〈표 IV-8〉 보세구와 수출가공구 비교	115
〈표 IV-9〉 우리나라 AEO제도와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 비교	117
〈표 IV-10〉 기준별 기업분류 및 통관적용 조치	118
〈표 IV-11〉 중국의 검험검역제도	129
〈표 IV-12〉 식품라벨 표기사항과 금지사항	136
〈표 V-1〉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142
〈표 V-2〉 수출입 금지화물	146
〈표 V-3〉 수출입 제한화물	147
〈표 V-4〉 2013년도 수입관세할당 품목	151
〈표 V-5〉 2012년 수입관세 할당량과 신청조건	153
〈표 V-6〉 2013년 수출쿼터 품목 및 쿼터량	156
〈표 V-7〉 2013년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163
〈표 V-8〉 2013년 자동수입허가 관리품목	165
〈표 V-9〉 국영무역 상품목록	167
〈표 V-10〉 수입상품 분류관리	171
〈표 V-11〉 수출상품 분류관리	171
〈표 V-12〉 강제인증품목	174
〈표 V-13〉 China RoHS와 EU RoHS 비교	179
〈표 V-14〉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179
〈표 V-15〉 대상자별 관리방법의 의무준수사항	180

〈표 V-16〉 EU REACH와 중국의 REACH 비교.....	181
〈표 V-17〉 중국의 위생검역규범과 WTO규범의 합치성 평가.....	183
〈표 V-18〉 중국 위생검역제도와 WTO 제도의 합치성.....	184
〈표 V-19〉 가격책정 공식 대상품목.....	191
〈표 V-20〉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193
〈표 V-21〉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법령.....	194
〈표 V-22〉 신청에 따른 해관보호절차.....	197
〈표 V-23〉 직책에 따른 해관보호절차.....	198
〈표 VI-1〉 중국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199
〈표 VI-2〉 부실신고에 대한 5종의 행정처벌(벌금부과).....	203
〈표 VI-3〉 품목분류 애로사항 사례 1.....	224
〈표 VI-4〉 품목분류 애로사항 사례 2.....	225
〈표 VI-5〉 수출입신고서증명서(증명연) 발급.....	231

## 그림목차

[그림 I -1] 중국의 산업구조(GDP 비중).....	16
[그림 I -2] 중국의 산업별 성장률.....	16
[그림 I -3]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물량 및 무역수지.....	22
[그림 IV-1] 해관기구 설치 모델.....	81
[그림 IV-2] 중국 해관총서 본청 조직도.....	82
[그림 IV-3] 은행보증금 대장제도 기본절차.....	109
[그림 IV-4] 수입화물 검험검역 절차.....	133
[그림 IV-5] 수출화물 검험검역 절차.....	134
[그림 V -1]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158
[그림 VI-1] 화물검사업무 흐름도.....	207



# I. 개 관

## 1. 일반개황<sup>1)</sup>

-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은 아시아 대륙 동부, 태평양 서안에 위치하며, 국토 면적은 약 960만km<sup>2</sup>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14개 국가와 육지 접경하며, 6개국과 해상 인접함
  - 행정구역은 4개 직할시, 22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로 구분되며, 북경(Beijing)에 수도를 두고 있음
  -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함
  
- 중국은 노동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로(1993년 헌법 제1조 규정) 정부 형태는 실질적 공산당 일당통치이고 단원제의 의회 형태를 지님
  - 주요 국가기구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민족자치구의 자치기관, 인민법원 및 인민 검찰원이 있음
  - 주요 정책으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대륙-대만 간 국가통일을 실현(1국 2체제 방식)하며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건설 등을 모토로 양적 경제성장을 지양, 질적 경제발전을 추구함
  - 1971년 10월 UN 가입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함
  
-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륙 인구 수는 약 13.4억명임(2010년 11월 기준, 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sup>2)</sup>

---

1)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개황'에서 요약, 발췌 (www.gov.cn)

- 중국은 한족(漢族, 전 인구의 약 93%)과 55개 소수민족 등 총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어는 중국어(普通話 통용, 방언 및 소수민족 언어 존재)임

## 2. 경제개황

### 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sup>3)</sup>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효과로 2009년 중국경제는 1분기에 저점을 찍고 2분기 이후 수직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경기가 호전되자 중국정부는 자동차 구매보조정책 등 내수부양책의 취소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 긴축정책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9.2%를 기록하였음<sup>4)</sup>
- 중국의 2012년 GDP는 8조 2,269억달러로, 전년 대비 7.8%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함
  - 제조업이 GDP의 약 47%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전체 GDP의 10%, 43%를 차지함<sup>5)</sup>
  - 각 산업별 성장추세를 보면, 농업은 전년 대비 9.1%, 제조업은 10.3%, 서비스업은 4.3%의 성장률을 기록함
- 전체 노동인구의 약 36%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약 28%, 서비스업은 약 34%를 차지함
- 중국은 1993년 외자 최다유치 개도국으로 등장한 이후 2002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

2) 중국 통계국, 「The Sixth National Population Census」(www.stats.gov.cn)

3) 중국통계국, 「중화인민공화국 2010년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 (2011.2.28)

4) KOTRA(2013)

5) World Bank Database(2013)

위 FDI 유치국으로 부상했고, 2006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였  
음<sup>6)</sup>

○ 2012년 기준 실행기준 FDI 유입액은 1,117억달러, 외환보유액은 3조 3,116억달러  
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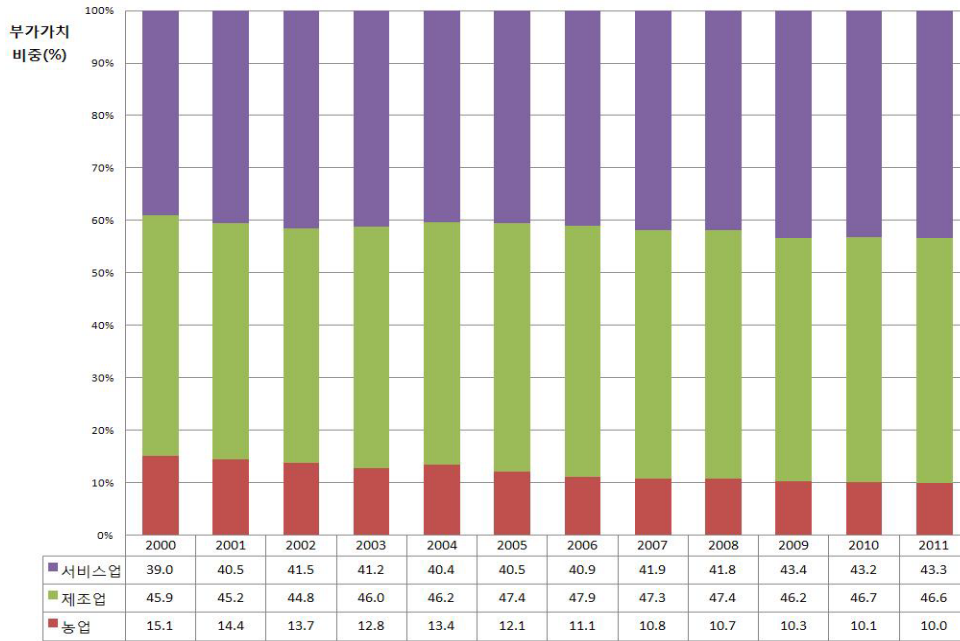
〈표 I-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상 GDP(억달러)	45,218	49,905	59,312	73,250	82,269
1인당 GDP(달러)	3,312	3,678	4,283	5,449	6,100
경제성장률(%)	9.6	9.1	10.3	9.2	7.8
소비자물가 상승률(%)	5.9	-0.7	3.3	5.4	2.6
실업률(%)	4.2	4.3	4.1	4.1	4.1
연말기준환율 (RMB/US달러)	6.8346	6.8282	6.6227	6.2980	6.2165
수출(억달러)	14,285	12,017	15,779	18,986	20,489
증가율(%)	17.2	-16	31.3	20.3	7.9
수입(억달러)	11,331	10,056	13,948	17,435	18,178
증가율(%)	18.5	-11.2	38.7	24.9	4.3
FDI(억달러)	924	900.3	1,057.4	1,160.11	1,117.16
증가율(%)	23.6	-2.6	17.4	9.72	-3.7
외환보유(억달러)	19,500	23,992	30,447	31,811	33,116
증가율(%)	27.3	23	24.4	17.7	4.1

자료: World Bank Database, IMF, 중국통계국, KOTRA

6) KOTRA(2013)

[그림 I-1] 중국의 산업구조(GDP 비중)



[그림 I-2] 중국의 산업별 성장률



## 나. 중국의 수출입 동향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평균 관세율을 15.3%에서 9.8%로 낮추고, 100여 개 서비스 분야를 글로벌 시장에 개방, 3천여 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으며, 10개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 중국의 수출입은 2009년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해 일시 감소하였으나 안정을 되찾고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여 수출입 규모에서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수출입의 균형화, 시장 다원화 추세를 볼 수 있음
- 2012년도 중국의 대외무역수출입 총액은 3조 8,668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고, 2,311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수출(2조 489억달러)과 수입(1조 8,178억달러) 증가율은 각각 7.9%와 4.3%로 2009년을 제외하고는 1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중국정부가 제시한 2012년 교역액 10% 증가 목표 또한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 외부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sup>7)</sup>
- 중국의 10대 수출품은 자동차료 처리기계, 통신전자부품, 전자집적회로, LCD 및 광학기기, 선박, 부품류, TV 수신기, 다이오드반도체, 가구 및 관련부품, 여행용품·가방·안경 케이스 등임
  -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따라 수출상품이 고도화되면서, 과거 의류 봉제업종에서 전기전자 및 기계류 수출로의 변화가 두드러져 이들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
- 중국의 10대 수입품은 원유, 전자집적회로, 철광석, LCD 및 광학기기, 자동차, 유선전신기기, 대두, 자동차료 처리기계, 구리 등으로 수출상품 구조와의 유사성이 강한 편임
  -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가 외국산 원부자재를 도입하여 가공한 후에 재수출하는

7) KOTRA(2013)

가공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함

〈표 I-2〉 중국의 품목별 수출입실적(2012)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전년 대비 성장률	품목	금액	전년 대비 성장률
1	자동차료처리기계	163,428	7.5	석유와 역청유 (원유 포함)	220,395	13
2	통신전자부품	153,231	14.9	전자집적회로	192,939	12.8
3	전자집적회로	53,754	63.4	철광석	95,458	-15
4	LCD, 광학기기	38,715	22.2	LCD광학기기	55,967	5.4
5	선박	32,211	-13.4	자동차	45,512	11.3
6	전자기계 부품류	30,425	-0.7	유선전신기기	39,146	27
7	TV 수신기	27,742	-8.4	대두	34,927	17.1
8	다이오드반도체	27,360	-22.8	자동차료처리기계	34,891	18.8
9	가구 및 관련 부품	27,023	29	석유와 역청유 (원유제외)	32,742	1.8
10	여행용품, 가방, 안경케이스	25,321	5.7	구리제품	27,644	9.8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RA

-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등이며 2011년 실적 기준으로 이 5개 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 실적의 47.4%를 차지함
- 중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독일 등이며 2011년 이들 5개 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 실적의 40%를 차지함

〈표 I-3〉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실적(2011)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전년 대비 성장률	국가	금액	전년 대비 성장률
총계		1,898,381	20.32		1,743,484	24.87
1	미국	32,4453	14.53	일본	194,564	10.09
2	홍콩	26,7983	22.76	한국	162,706	17.61
3	일본	148,270	22.49	대만	124,909	7.92
4	한국	82,920	20.58	미국	122,129	19.62
5	독일	76,400	12.28	독일	92,744	24.89
6	네덜란드	59,499	19.71	러시아	40,370	55.74
7	인도	50,537	23.52	싱가포르	28,140	13.79
8	영국	44,122	13.81	인도	23,371	12.11
9	러시아	38,904	31.38	홍콩	15,492	26.36
10	싱가포르	35,570	9.96	영국	14,557	28.76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 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sup>8) 9)</sup>

- 중국은 세계 최대 FDI 유치국으로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중국의 FDI 유치액은 3,952억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투자유입 금액과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지속적인 내수시장 성장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FDI 유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를 맞아 다소 주춤한 후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음
  - 2011년 중국 신규 투자 외국기업은 27,712개사로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투자 실행액은 1,160.11억달러로 9.72%의 증가율을 보임

8) Invest in China, 'FDI Statistics,' (<http://www.fdi.gov.cn>)

9) KOTRA(2013)

- 2001년 WTO 가입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형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 투자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노하우 습득 등으로 인해 독자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70%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1~10월 아시아 10개 국가 및 지역(홍콩, 마카오, 타이완,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기업 수는 15,852개사(전년 동기 대비 12.22% 감소), 실제 투자금액은 780억 2,800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4.72% 감소)를 기록했음
  
- 미국의 對중국 신규 투자기업 수는 1,128개사(전년 동기 대비 6.39% 감소), 투자금액은 27억 400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를 기록했고, 유럽 27개국은 1,418개사가 투자해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으나, 투자금액은 52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5% 감소했음

〈표 1-4〉 對중국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순위(2012)

(단위: 억달러)

순위	국가명	실행액
1	홍콩	712.89
2	일본	73.8
3	싱가포르	65.39
4	대만	61.83
5	미국	31.3
6	한국	30.66
7	독일	14.71
8	네덜란드	11.44
9	영국	10.31
10	스위스	8.78

자료: 중국 상무부

- 업종별로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성답게 중국의 FDI는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서비스시장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2010년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거의 같아졌으며 향후 제조업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됨

### 3.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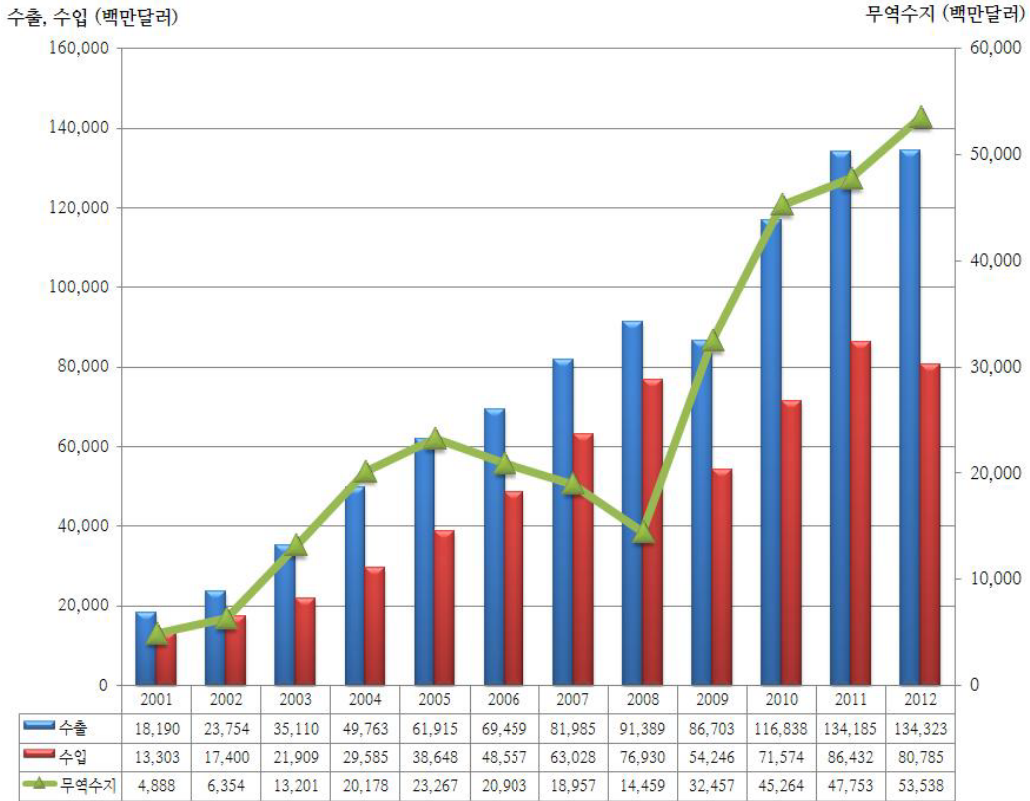
- 2012년 말 기준으로 한·중 교역규모는 약 2,150억달러이며 이는 1992년 수교 당시에 비해 약 30배 이상 증가된 수치임<sup>10)</sup>
  - 교역의 급격한 신장 추세에 따라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1993년 이래 對중국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2012년 현재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임
  - 2012년 對중국 수출은 1,343억 3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음. 같은 기간 수입액은 807억 8천만달러로 6.5% 감소했고, 전체 교역액은 2,151억 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음
- 우리의 對중국 수출은 수교 이후 두 자릿수의 빠른 증가율이 지속되며 2005년 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중국의 2대 수입국으로 올라섰으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시장 개방 확대에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sup>11)</sup>
- 우리의 對중국 수출 상위 5대 품목(MTI 4단위 기준)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선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우리의 대중 수출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석유화학 합성원료 순으로 나타났음

---

10) 관세청 통계(2013)

11) KOTRA(2013)

[그림 I-3]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물량 및 무역수지



자료: 무역협회, 관세청

- 2012년 우리의 주요 대중국 수입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기타정밀화학 원료, 컴퓨터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중 간 교역구조는 산업 간 교역에서 산업 내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가 과거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점차 경쟁적 관계로,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수평적 분업관계로 이행되면서 양국 간 수출과 수입품목이 유사성을 띠고 있음<sup>12)</sup>

12) KOTRA(2013)

〈표 I-5〉 최근 對중국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134,185	14.9	총계	134,323	0.1
1	평판디스플레이	19,759	9.4	평판디스플레이	19,972	1.1
2	집적회로반도체	12,746	-13.8	집적회로반도체	14,496	13.7
3	합성수지	7,382	6.3	합성수지	7,113	-3.6
4	석유화학합성원료	4,540	28.4	석유화학중간원료	4,560	19.8
5	자동차부품	4,401	16.4	자동차부품	4,458	1.3
6	무선통신기기부품	4,119	-5.8	기초유분	3,956	22.1
7	제트유및등유	4,025	88.8	무선통신기기부품	3,792	-7.9
8	석유화학중간원료	3,806	51.1	제트유및등유	3,792	-5.8
9	기초유분	3,240	62	석유화학합성원료	3,669	-19.2
10	축전지	2,573	15.6	경보신호기	3,625	215.5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I-6〉 최근 對중국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86,432	20.8	총계	80,785	-6.5
1	집적회로반도체	4,758	-1.1	집적회로반도체	4,066	-14.6
2	평판디스플레이	3,565	6.3	평판디스플레이	3,059	-14.2
3	기타정밀화학원료	3,034	38.1	기타정밀화학원료	2,829	-6.7
4	컴퓨터	2,727	6.5	컴퓨터	2,555	-6.3
5	중후판	2,276	46	배전 및 제어기	2,256	42.1
6	직물제의류	2,198	24.2	전선	1,956	1.6
7	열연강판	2,086	15.5	직물제의류	1,909	-13.1
8	무선전화기	1,962	51.9	개별소자반도체	1,852	12.6
9	전선	1,926	29.4	열연강판	1,800	-13.7
10	개별소자반도체	1,645	12.4	철구조물	1,727	9.9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4.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 중국은 FTA 체결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블록화에 순응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함으로써 개혁, 발전, 창조, 상생을 촉진하는 전략적 조치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sup>13)</sup>
  -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대외무역의 안정 및 신속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 이래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였고 이는 긍정적 성과를 거둠
  -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추진한 'FTA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FTA협상과 연구를 적극 추진하였고, 기업의 수출입에 있어 안정되고, 투명하며, 자유롭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중국은 단순히 경제 발전, 관세장벽 철폐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FTA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등과 체결한 CEPA<sup>14)</sup>, 대만과 체결한 ECFA<sup>15)</sup>등을 통해 중화권 경제권을 하나로 통일하고 물리적인 거리 역시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sup>16)</sup>
  
- 중국-ASEAN FTA는 중국이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FTA이며 2010년 1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중-아세안 FTA 발효로 중국과 아세안 6개 원회원국 간 교역품목의 90%인 7천여 개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 아세안 6개 원회원국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이며 중국과 아세안 4개 신회원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5년간의 유예기간 후 2015년부터 FTA가 전면 발효됨

13) 중국 상무부(2010), 「2010년 중국 FTA 추진과 발전」 보도자료 발췌, 요약

14)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15)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기본협정

16) KOTRA(2013)

〈표 I-7〉 중국의 FTA 현황

기체결된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중국-아세안 중국-홍콩 (CEPA) 중국-마카오 (CEPA) 중국-칠레 중국-파키스탄 중국-뉴질랜드 중국-싱가포르 중국-페루 중국-코스타리카 중국-대만 (ECFA) 중국-아이슬란드 중국-스위스	중국-걸프만협력회의(GCC) 중국-호주 중국-노르웨이 중국-남아프리카 관세동맹 (SACU)	중국-인도 중국-한국 중국-한국-일본

자료: China FTA Network (<http://fta.mofcom.gov.cn/>)

- 2011년 중국과 아세안 교역액은 전년 대비 22.9% 증가한 3,623억 3천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ASEAN 10개 국가 중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중국의 4대 수입국가로, 이들 4개 국가에서의 중국의 수입액은 각각 620억 2천만달러, 390억 4천만달러, 313억 2천만달러, 277억 6천만달러에 이르고, 이는 중국의 아세아 지역 전체 수입액의 83.2%에 달함<sup>17)</sup>
- 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29일 충칭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 ECFA는 양안(兩岸) 간 FTA로 경제, 무역, 투자, 협력의 강화, 무역 자유화 및 투자 보장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 영역 확대 및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함
  - 기본적으로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투자 보장, 분쟁 해결, 지재권 보호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며 ECFA의 핵심은 양측 간 협상의 큰 틀(조기자유화 EHP)에 합의한 후 그 외 세부적인 분야는 추후 논의하는 것임
- 중국은 현재 홍콩, 마카오와 CEPA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CEPA는 중화권 경제발전에

17) KOTRA(2013)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으며, 일국양제 체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면서 거부반응 없이 홍콩과 마카오를 성공적으로 중국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협정으로 기존의 방콕협정(ESCAP)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및 확대·개정되었으며 2006년 9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 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함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중국은 출입경검사 검역국 또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서에 제출해야함
  
- 중국은 2013년 4월 15일 아이슬란드와 FTA에 공식 서명 합의했으며, 중국은 아이슬란드와의 FTA를 발판 삼아 앞으로 북극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은 유럽국가 중 두 번째로 스위스와 2013년 7월 6일 FTA를 공식 체결하였으며, 2014년 중반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됨
  - 2012년 중국은 스위스의 3번째로 큰 무역국이고, 스위스는 중국의 19번째 무역국이며, 중국과 스위스의 교역규모는 약 263억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I-8〉 중국의 주요 FTA 추진 현황

대상국	협상개시 및 타결일자	추진 현황
아세안	개시 - 2001.11.6 타결 - 2002.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부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행. 2010년까지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li> <li>- 2005년 7월 아세안과 '상품무역협정'을 체결, 7,000여 개 품목에 대해 영세율 적용</li> <li>- 2007년 1월 14일 아세안과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07년 7월까지 아세안국가에 대해 건축, 환경, 운수, 상업 서비스, 체육 등 5개 서비스 업종 개방</li> <li>- 2009년 8월 15일 아세안과 '투자협정' 체결</li> <li>- 2010년 1월 1일부로 전면 발효</li> </ul>
칠레	개시 - 2004.11.18 타결 - 2005.10.16 체결 - 2005.11.18 * 2010.8.1 서비스 무역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10월 1일부로 중국은 칠레의 7550개(HS 코드 8단위) 품목에 대해 칠레는 중국의 7902개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li> </ul>
파키스탄	개시 - 2005.4.5 타결 - 2006.11.10 체결 - 2006.11.24 * 2009.2.21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5년 내 관세대상 품목의 85%에 대한 관세 인하, 이 중 36% 제품에 대해 3년 내 무관세화</li> <li>- 중국의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은 축산물, 수산물, 야채, 광산물, 방직품 등이고 파키스탄은 소, 양고기, 화학제품, 기계전력 설비 등임</li> </ul>
아이슬란드	개시 - 2007.4.12 체결 - 2013.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세율 인하 모델, 원산지 규정, SPS/TBT, 서비스 무역 등에 대한 협상</li> </ul>
뉴질랜드	개시 - 2004.12.6 체결 - 2008.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협상 내용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식 재산권, 원산지 규칙, 동식물 검역 등임</li> </ul>
호주	개시 - 2005.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6월까지 제9차 FTA협상을 완료했으며 주요 쟁점은 농업과 서비스 분야 개방으로 중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자국 농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함</li> </ul>
싱가포르	개시 - 2006.10.26 체결 - 2008.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10월 23일, 중국-싱가포르 FTA 1차 협상 완료</li> </ul>
페루	개시 - 2007.9.7 체결 - 2009.4.28 발효 - 20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11월 12~13일간 중-페루 FTA 자유무역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향후 협상 주요 내용, 일정, 상품무역 관세 인하 모델 등이 협의됨</li> <li>- 2008년 1월 21~24일간 제1차 협상 개최</li> <li>- 2009년 4월 28일 '중국-페루 FTA 의정서'에 서명</li> </ul>
GCC (걸프만 협력회의)	개시 - 2007.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11월 12~13일간 중-페루 FTA 자유무역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향후 협상 주요 내용, 일정, 상품 무역 관세 인하 모델 등이 협의됨</li> <li>- 2008년 1월 21~24일간 제1차 협상 개최</li> </ul>

〈표 I-8〉의 계속

대상국	협상개시 및 타결일자	추진 현황
SACU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개시 - 2004.6.28	- 2005년 제1차 협상 완료. 중국은 남아공과 방직업, 농업, 광업, 의약업 등 분야에서의 기술 교류와 투자 협력 희망
노르웨이	협상 추진 중	- 2007년 6월 19~20일 중국-노르웨이 FTA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제1차 회의 개최. 같은 해 9월 13~19일 개최된 타당성 연구 제2차 회의에서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에 대한 영향과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교환 - 2010년 9월 14~16일 오슬로에서 8차 협상
한국	협상개시 - 2012.5.2	- 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친 협상 진행 - 7차 협상에서 FTA 1단계 협상 타결 (2013. 9. 5)
한국-일본	협상개시 - 2013.3.26	- 2013년 3월 26~28일 서울에서 1차 협상 개최 - 2012년 11월 21일 협상개시 선언 - 2012년 5월 13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체결 - 2010년 5월 6일 제 1차 합동연구가 진행된 이래, 2010년 9월과 12월에 각각 제 2, 3차 연구를 진행
스위스	협상개시 - 2011.4 체결 - 2013.7.6	- 2011.1.협상 개시 선언 - 2011.4.제1차 협상 - 2011.7.제2차 협상 - 2011.11.제3차 협상 - 2012.2.제4차 협상 - 2009년 1월 양국 정상이 FTA 타당성 연구를 결정한 이래 2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친 후, 2009년 11월 30일 합동 연구단이 결성되어 연구를 진행(2010년 8월 13일 연구완료)
콜롬비아	추진 검토	- 정상회담 통해, 중국측 콜롬비아측에 조속한 협상개시 촉구
인도	추진 검토	- 2005년 4월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 방문 시, 타당성 연구 선포를 시작한 이래로 총 6차에 걸쳐 관방과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2007년 연구 완료)

자료: KOTRA(2013)

5. 한·중 FTA<sup>18)</sup>

-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래, 7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9월 5일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함
  - 중국에서 개최된 7차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하여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함
-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지만,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1단계 협상이 타결된 7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① 상품분야, ② 서비스·투자분야, ③ 규범분야, ④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에 대해 합의함
-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문제,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 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음
  -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함
  -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합의함
  -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 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함
-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함

18)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2013. 9. 6. 보도자료 및 KOTRA(2013) 요약

- 규범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함
  
- 경제협력분야에서 양측은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함

## II. 외국의 통관환경 보고서

###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13년 발간된 「Doing Business 2014」은 2013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이 수록됨
  - 「Doing Business 2014」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 수신(Getting electricity), 부동산 취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Resolving insolvency) 등 10개의 지표임
  -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7위에 올랐음
- 당해 보고서상 무역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무역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과 같이 3위에 오름
-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중국은 전반적인 사업의 용이성에 있어 전체 조사국

인 189국 중 96위에 랭크되었음

-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역분야(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전년도인 2013년보고서 상 74위를 유지함

〈표 II-1〉 중국 무역분야 순위 비교

구분	중국	East Asia & Pacific	OECD	브라질	인도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8	6	4	6	9	3
수출소요시간(일)	21	21	11	13	16	8
수출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620	856	1,070	2,215	1,170	670
수입필요서류(개수)	5	7	4	8	11	3
수입소요시간(일)	24	22	10	17	20	7
수입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615	884	1,090	2,275	1,250	695
무역분야 순위	74	-	-	124	132	3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표 II-2〉 중국 수출입 소요기간

(단위: 일, 달러)

구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서류준비	14	305	15	260
세관통관	2	80	4	80
항만(터미널)	3	140	3	140
내륙운송	2	95	2	135
합계	21	620	24	615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 중국에서 해상 수출 비용은 컨테이너당 약 62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8가지이고, 서류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 수출에 총 2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해상 수입에 있어서 컨테이너당 약 61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5 가지이고, 서류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하여 총 24일이 소요됨

##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3년 보고서는 미국의 57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sup>19)</sup>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관세율 인하, 수입 쿼터의 규제대상 품목 축소, 수입품목 및 수입허가 절차의 투명성 확대, 외자기업의 무역권리 확립 등 무역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7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대외무역사업자의 범위를 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외 법인 사업체 또는 개인에게 무역권을 허가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등록절차에 대해 불편사항을 보고함
  - 중국은 석유, 설탕 등 특정 상품은 국영무역을 유지하고, 곡물, 면화, 식물성기름, 비료 등은 여전히 TRQ<sup>20)</sup>에 영향을 받으며, 국내 산업과 경쟁에 민감한 상품에 대해

19) 20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20) Tariff Rate Quotas: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며,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린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경제용어사전)

여 높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함

- 음악·영화·서적 등 저작권 보호 대상 물품에 대해 중국 내의 해외업체들에게 무역허가 시스템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는 등 자유무역규범을 위반하고 있음
- 중국의 대표적인 수입대체정책인 NEV plan<sup>21)</sup>에는 기술보호주의정책 추진, 철강산업 발전정책을 통한 외국기업 차별, 국내 반도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VAT 차별정책<sup>22)</sup>, DA P<sup>23)</sup>를 제외한 국내 비료상품에 대해 VAT 특혜 적용 등이 있음
- 중국은 자국의 민감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25%, 비디오,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레코더 및 플레이어 약 30%, 견과류 25% 등의 높은 관세를 부과함
- 수입상품 등급관리제도에 있어서 세관원의 자의적 상품분류, 수입품목 관세평가 시 일관성 결여,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 대신 참고가격제도(reference pricing)를 적용함
  - 소프트웨어 로열티나 인증 수수료와 관련하여 관세 평가 결정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CD-ROM이나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콘텐츠에 귀속된 가치(imputed value)에 의해 관세를 부과함
  - 통관 절차가 항구에 따라 다르고,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정하지 못하며, 수수료도 과잉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 국경무역에 있어서 1994년 GATT협정에 규정되기 이전에도 러시아의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에 특혜를 주었으며, 2003년 붕산을 포함한 19가지 상품에 대해 특혜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상품 수입에 대해서 여전히 특혜를 제공함

21)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계획(2011~2020) (The Energy Saving and New Energy Vehicle Development Plan)

22) 중국은 2004년 3월 본 정책을 폐지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재정지원 실시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음

23) 인산이암모늄, 'Diammonium phosphate'

- 중국이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애매한 언어를 사용하며 절차상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함
  - 예를 들어, 2009년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 가금류, 자동차 등 미국 생산 수입품들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함
  
- 은행, 보험, 통신서비스업의 진출 요건이 까다로우며, 부적절한 수입농산물 검역, 수입 물량을 제한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SPS<sup>24)</sup>조치 등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함
  
- 2006년 식물성 기름에 대한 TRQ의 단계적인 폐지에도 불구하고, 밀, 목화, 옥수수, 벼와 쌀, 양모, 설탕 및 DAP를 포함한 3개의 화학비료에 대해 TRQ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비료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쿼터 할당 및 투명성문제, 비료의 주원료인 인광의 수출금지정책 등으로 미국의 대중국 비료 수출이 2002년 6조 7,600만달러에서 2009년 4,800만달러로 크게 감소함
  
- 중국의 수출 규제가 미국이나 기타 해외 하류제품(Downstream Product)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 중국의 수출규제가 인위적으로 중국의 원자재 투입 수출단가를 상승시킬 경우, 국제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원자재 국내가격을 낮춰 국내 하류제품의 생산업체들에게 저가 상품을 생산하게 할 경우, 외국 동업 생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함
  
-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국내법, 제도, 관행상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영화 및 TV쿼터, 음성녹음, 투자문제 등을 제기함

---

24)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하며,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외교통상용어사전)

-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12 스페셜 301 보고서」에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법, 정책, 관행을 가진 국가 중 미국 제품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으로 중국이 지정되어 있음
- 오프라인 SW, 출판분야 및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작권보호 시스템의 미약함을 지적함

### Ⅲ. 중국의 관세제도

#### 1. 관세제도 일반

##### 가. 법률체계

- 중국의 관세제도를 제정, 심의, 시행하는 정부기구는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칙위원회로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세무총국 등 8개 기관 차관급 인사로 구성됨<sup>25)</sup>
  - 관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은 국무원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세율 조정은 관세세칙위원회가 담당함
  - 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세율표」의 세목, 세칙, 세율을 조정하여 국무원에 보고 및 비준 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 관세세칙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잠정세율의 대상품목 및 기한, 세율, 반덤핑세, 보복관세 및 기타 세금관련 관세조치 등이 있음
  
- 관세세칙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며 관세세칙을 수정해야 할 경우 국내의 생산부문과 사용부문 또는 대외무역부문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국무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됨
  - 생산부문에서는 국산품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세세칙위원회는 검증, 심의하여 타당성이 입증되면 국무원에 이를 제출하여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의 관세 관련 주요 법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기본원칙을 정하고 관

25)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2), 「중국관세무역신보」, 2012년 1월호

## 세제도를 운영함

〈표 Ⅲ-1〉 중국의 관세 관련 법률체계

분류	주요법규
<p style="text-align: center;">법 률</p> <p>(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무역법</li> <li>- 해관법</li> <li>- 수출입 상품검역법</li> <li>- 동식물검역법</li> <li>- 고체 폐기물오염환경예방처리법</li> <li>- 국경위생검역법</li> <li>- 야생동물보호법</li> <li>- 약품관리법</li> <li>- 문물보호법</li> <li>- 식품안전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법규</p> <p>(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수출입관리조례</li> <li>- 수출입관세조례</li> <li>- 지적재산권해관보호조례</li> <li>- 야생식물보호조례</li> <li>- 수출관리조례</li> <li>- 외환관리조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규정</p> <p>(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li> <li>- 수출외환회수관리방법</li> <li>- 수입약품관리방법</li> <li>- 정신약품관리방법</li> <li>- 방사성약품관리방법</li> <li>- 수입가축약품관리방법</li> <li>- 외상투자기업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국제조약</p> <p>(국가와 기타 국제법 주체 사이에 체결하는 국제법을 준칙으로 하며 그 상호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국제 서면 협의서를 지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li> <li>- 무역정책검토제도</li> <li>- 교토공약</li> <li>-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협약</li> <li>- 몬트리올의정서</li> <li>- 정신약품국제공약</li> <li>- 런던지침</li> <li>- 로테르담공약</li> <li>- 바젤공약</li> <li>- 국제방직품무역협정</li> <li>- 세계지적재산권조약설립공약</li> </ul>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 「대외무역법」은 중국의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 1994년 5월 12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 「대외무역법」이 2004년 4월 공포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sup>26)</sup>
  - 개정 「대외무역법」은 제3장(화물, 기술 수출입)에서 화물 수출입의 자유(제14조), 수출입 자동허가제(제15조), 화물 수출입의 제한(제16조), 화물 수출입의 금지(제17조), 수출입 제한 및 금지 품목 공포(제18조), 쿼터 및 허가증관리제도(제19조), 쿼터 분배원칙 및 방식(제20조), 상품합격 평가제도(제21조), 수출입상품 원산지 관리규정(제22조), 문물 및 야생동식물의 수출입 제한(제23조) 등 화물 수출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 「해관법」은 중국 해관이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물품을 감독관리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법률로서 해관 감독관리의 법률적 근거임
  - 출입국 운송수단(제2장), 출입국 화물(제3장), 출입국 물품(제4장), 관세(제5장), 해관사무 담보(제6장), 법률집행 감독(제7장), 법률책임(제8장) 등 총 9장 102조로 구성됨
  
- 「수출입관세조례」는 「해관법」에 근거하여 수출입 허가 화물, 입국 물품의 수출입 관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임
  - 「수출입관세조례」는 수출입화물 관세율의 설정과 적용(제2장), 수출입화물의 과세 가격 확정(제3장), 수출입화물 관세의 징수(제4장), 입국 물품의 수입세 징수(제5장)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나. 관세율

- 중국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책정됨<sup>27)</sup>

26) 전형진,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7) 관세무역연구회, 「중국의 관세 및 통관환경」, 『중국관세무역신보』, 2012년 1월호, 2012

-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꼭 필요하나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적용함
  -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계설비 및 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의 관세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함
  -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하고 자국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관세율을 보다 높게 책정함
  -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순으로 계단식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출 관세를 면제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과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출관세 부과함<sup>28)</sup>
- 중국의 관세는 WTO 가입 이전에는 우대관세율과 일반관세율 두 가지뿐이었으나, 가입 이후 최혜국대우 원칙을 토대로 우대세율을 세분화하여 최혜국세율(MFN세율), 협정세율(FTA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기본세율), 잠정세율, 관세할당세율(TRQ세율), IT상품세율 등 7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sup>29)</sup>
- 최혜국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함
  - 협정세율은 세칙 제10조에 규정한 중국과 특정 국가, 국제기구와의 조약 또는 협정을 맺은 경우에 적용함
  - 특혜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중국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함
  - 보통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상기 우대세율과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하고 상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

---

28) 전형진(2012)

29) 전형진(2012)

〈표 Ⅲ-2〉 중국의 수입관세율 범위와 적용범위

세율종류	적용범위
최혜국세율 (양허세율)	- 최혜국대우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WTO 회원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과 최혜국대우조항을 포함한 양자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 국경내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협정세율 (FTA세율)	-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FTA체결 국가 원산지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 아세안협정세율(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태협정세율(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칠레협정세율, 파키스탄협정세율, 싱가포르협정세율, 뉴질랜드협정세율, 페루협정세율, 코스타리카협정세율, 홍콩·마카오협정세율
특혜세율	- 중국과 특혜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 아·태 2개국(방글라데시, 라오스), 아세안 3개국(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최빈국 37개국
보통세율 (기본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잠정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세율
관세할당세율 (TRQ세율)	- 수입관세할당 관리를 받는 수입화물의 관세할당 내 물량에 적용하는 세율
IT상품세율	- 정보산업부가 정보산업제품에 사용된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IT상품(완제품이 아닌 것)에 적용하는 세율

자료: 중국해관수출입세칙(2012), 전형진(2012)에서 재인용

- 수입관세의 부과 순위는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하며, 협정세율·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낮은 세율을 우선 적용함
  - 보통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은 잠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수출관세는 수출세율과 잠정세율 등 2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수출관세의 부과순위는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함

-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회원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왔으며, 평균 관세율은 2001년 15.3%에서 2005년 9.9%로 인하되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평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sup>30)</sup>
  - 1992년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WTO가 요구하는 수준의 관세 인하,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의 해소,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진행하였음
  - 이후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시작하여 몇 차례에 걸친 수입관세 조정을 통해 2001년 WTO 가입 당시 평균관세율을 15.3%로 인하하였음
  - 2011년 기준 평균관세율은 9.8%이며, 그 가운데 농산품 평균관세율이 15.2%, 공업품 평균관세율이 8.9%임<sup>31)</sup>
  - 2012년 기준 평균관세율은 9.8%이며, 그 가운데 농산품 평균세율이 15.1%로 2011년 대비 다소 낮아졌고, 공업품 평균관세율은 8.9%로 2011년 관세율 수준을 유지함<sup>32)</sup>
  
- WTO에 공식 보고된 2011년 중국의 단순평균 양허관세율은 10%,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은 9.6%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 분포와 품목별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은 부록 I 33)에 첨부하였음
  
- 중국의 관세율은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계 HS 정보시스템<sup>34)</sup>’ 사이트를 통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음
  - ‘세계 HS 정보시스템’ 사이트 메인 메뉴에서 ‘관세율표 - 중국’을 선택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품목의 HS코드를 입력하며 관세율이 검색됨

30)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pp. 243~246

31)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1; 관세청,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설명자료」, 2011

32) 중국 상해해관, 「2012년 관세실시방안 해설」, 2012

33) WTO, Tariff Profile: China, 2013  
(<http://stat.wto.org/TariffProfile/WSDBTariffPFView.aspx?Language=E&Country=CN>)

34)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표 Ⅲ-3〉 중국의 관세율 조정추이

(단위: %, 개)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	43.2	-	2,898
1993	35.9	16.8	3,371
1996	23	35.9	4,900
1997	17.1	26	4,874
1999	16.7	2.4	-
2000	16.4	1.7	-
2001	15.3	6.6	3,462
2002	12	21.5	5,332
2003	11	8.3	3,000
2004	10.4	5.4	2,414
2005	9.9	4.8	900
2006	9.8	0	143
2007	9.8	0	47
2008	9.8	0	45
2009	9.8	0	16
2010	9.8	0	6
2011	9.8	0	8
2012	9.8	0	

자료: 외교통상부(2012), 관세청(2012), 중국해관(2012)

#### 다. 2013년도 관세실시방안

- 중국 관세세척위원회가 2012년 12월 20일 발표한 「2013년 관세실시방안」(2013년 1월 1일 발효)에 따르면,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총 784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였음
  - 관세인하 품목은 화장품, 분유, 조미료 등의 생활용품과 의류용품, 신흥산업 관련 원부자재, 친환경 제품 및 일부 방직산업 관련 제품이며, 대상품목의 수입관세율을 2013년 1월 1일부로 최혜국 세율보다 낮게 조정함
  
- 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일부 소형 가전제품과 관련 부품의 수입관세율이 기존

에는 최고 35%에 달했으나 2013년부터는 최저 8%까지 낮아지게 되었음

- 자동차용 리튬전지(12 → 6%), 자동차용 공기조절기(20 → 10%), 베어링(6 → 3%), 콘택 트렌즈(10 → 6%) 등 중국 수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수입관세율도 낮아져 앞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국가의 1875개 세목 상품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세율(APTA)을 실시하고, 에티오피아, 베냉 등 유엔에서 인정한 총 40개 후진국의 일부 세목 상품에 특혜세율을 실시함
- 중국의 수출입 품목은 일부 세칙 세목을 조정하여 2013년판의 세칙 세목 총수는 8,238개임
  - 2008년 7,758개, 2009년 7,868개, 2010년 7,923개, 2011년 8,19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2. 관세평가제도

### 가. 과세가격 평가방법

-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해관이 동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 및 확정하며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해관에서 법에 의해 결정함<sup>35)</sup>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1방법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이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했거나 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의 가산/공제 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거래가격 불인정 시 2~6방법에 의거하여 과세함
  - 무상물품 또는 유상물품 중 1방법의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2~6방법을 순차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35) 중국 해관법 제55조 및 수출입관세조례 제3장

〈표 Ⅲ-4〉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구분	내용	비고
1방법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	
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원가관련 비용 및 관세 등 제세를 공제 한 금액을 국판가격에서 제외)	5방법 우선적용 가능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조원가 + 수출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6방법	상기 방법으로 관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공평, 통일, 객관의 평가 원칙에 따라 객관적 수량화한 데이터를 기초로 수입화물 관세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자료: WTO 관세평가협정

〈표 Ⅲ-5〉 과세가격의 가산/공제요소

구분	세부내역
추가비용	(1) 화물 구매 커미션 외의 커미션과 중개 수수료 (2) 그 화물과 일체로 보는 용기비용 (3) 포장 재료비용과 포장 노무비용 (4) 수입화물 유지비용 (5) 납세할 특허권 사용료(경외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 (6) 경외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수입화물이 국내에서 운반, 처분, 사용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익 (7) 수입화물로 인해 공급업체에 직접 또는 간접 제공하는 협조와 관련된 비용 (8) 수입화물 중에 설치한 재료, 부속품, 부품 및 기타 유사한 항목과 관련된 비용 (9)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및 유사한 품목(분담) (10) 수입화물의 생산에 소모되는 재료비 (11) 수입화물의 생산에 필요하여 수입국가 외에서 종사하는 공정기술, 개발, 설계, 계획과 관련 비용
면제비용	(1) 수입화물과 연관되는 할당액, 허가증 및 유사한 비용 (2) 수입관세와 기타 국내 세금 (3) 수입화물과 연관되는 이자 (4) 수입 후의 창고저장과 운송비용 (5) 경외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는 화물 수입 후의 설치, 시운전, 건축, 기술지원과 연관되는 비용 (6) 경외에서 수입화물을 복제함으로써 지급하는 비용 (7) 국내외 기술교육 및 경외 고찰비용

자료: 중국 해관법

〈표 Ⅲ-6〉 특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무역방식	화물유형	평가방법	
원료수입가공 (비보세부분)	원료	원료 수입을 신고할 때의 거래가격으로 확정	
원료수입가공 (보세부분)	원료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 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 을 기초로 확정
	완제품 (불량품, 부산품)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위탁가공	원료 또는 완제품 (불량품)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수출가공구	완제품, 불량품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조각, 부산품	해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내수가격	
보세구 가공기업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불량품)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수입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완제품에 포함된 경외 구입한 원료의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 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위탁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내수신고 접수 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 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조각, 부산품	해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내수가격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구, 보세물류센터 입국	조각, 부산품	원료 및 그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경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확정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 수출하여 수리한 후 다시 수입한 화물은 규정한 기한에 다시 수입할 경우 경외 수리비와 원료비로 평가하여 확정하고, 규정한 기한에 다시 수입하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으로 확정함
- 수출하여 가공한 후 재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재수입할 경우 경외 가공비, 원료비, 재

수입 운송비, 보험비로 평가하여 확정하고, 정상적으로 재수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 화물 과세가격으로 확정함

- 임시 수입한 화물은 납세해야 할 경우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으로 확정하고, 남겨서 판매할 경우 해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남겨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확정함
- 임대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임대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확정하고, 남겨서 판매할 경우 해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남겨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확정하며, 일회로 납세할 경우 규정한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거나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확정함
- 감세, 면세 화물은 비준을 받아 매각, 양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은 세금을 보충할 때에 징세하고, 화물의 기존 수입가격에서 감가상각 부분의 가치를 공제한 후에 과세가격<sup>36)</sup>으로 확정됨
- 수입화물 과세가격에서 운송비와 보험료 계산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함

〈표 Ⅲ-7〉 과세가격에서의 운송비와 보험료

구분	계산방법
운송비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자체 동력으로 수입할 경우, 운송비를 계산하지 않음 - 불확정일 경우, 수입 동기에 발표된 운송비로 계산
보험비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불확정 또는 실제 미발생일 경우, 보험비=(화물가격+운송비)×3%
우송화물 운송비	- 그 우편료를 운송비, 보험비로 확정
변경항구 운송비	- 경외 변경 항구가격의 1%로 운송비, 보험비로 계산

자료: 중국 해관총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재인용

36) 과세가격 = 해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그 화물의 기존 수입가격×(1-세금 징수(또는 보충)시 실제 수입한 월/감독연한×12)

## 나. 관세 비용 계산

- 수입화물은 CIF가격, 수출품은 FOB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부과 형태는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등 3가지 종류임
  - 관세는 종가세가 대부분이며, 종량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2013년도의 경우 HS코드 8단위 기준 42개이고, 복합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10개 품목임<sup>37)</sup>
    - 종량세 부과 품목: 원유, 냉동 닭고기, 맥주, 사진 필름 등
    - 복합세 부과 품목: 비디오 레코더, 디지털 카메라, 방송 카메라 등
- 해관에서 징수하는 관세, 수입증치세, 수입소비세, 선박톤세, 체납금, 신고 지체금 등의 세금과 비용은 모두 인민폐로 계산 및 징수하고, 인민폐 50위안부터 징수하며 과세가격 및 관세는 인민폐 위안 이하 사사오입하여 산정함<sup>38)</sup>

〈표 Ⅲ-8〉 수입관세 계산방법

구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종가관세	수입관세=과세가격×종가관세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종량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	- 화물 실제 수입수량을 확정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 +과세가격×관세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할준세 (슬라이딩 관세)	수입관세(종가)=과세가격×잠정세율 수입관세(종량)=화물수량×잠정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관세 세율 계산공식에 따라 세율을 계산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자료: 중국 해관총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재인용

37)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3년 관세실시방안」, 2012. 12. 10.

3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 수출입화물의 거래가격과 관련비용을 외화로 계산할 경우, 세금을 계산하기 전 해관에서 화물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날의 적용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함
- 중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별도의 수입부과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수입 시 관세 이외에 17% 또는 13%(일부 농산물 등)의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 「해관법」과 「수출입 관세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어 납부하는 수출입화물의 관세, 수입 증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에 대해 해관은 매일 0.5‰의 체납금을 징수
  - 체납금 = 납세액×0.5‰×체납일
- 법정 신고기간 동안 해관에 수입화물을 신고하지 않은 수하인에 대해 해관에서 징수하는 경제 제재 성격의 비용으로 신고지체금을 부과함
  - 신고지체금 = 수입화물 과세가격×0.5‰×연기일

### 3. 품목분류제도

- 품목분류는 모든 수출입 통관 시 적용되는 오래된 원칙이자 요구사항이며, 수출입기업은 HS 코드를 포함하여 수출입신고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 거래의 모든 방면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관세율 및 무역통계, 원산지 결정, 수출입 금지 및 수량 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 관세평가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
- 중국에서의 품목분류는 가공무역에 있어서 가공무역 금지나 제한류 목록 해당 여부, 감면세 설비 규정 부합 여부, 증치세 및 수출 관세율 결정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중국은 HS 협약 가입국으로서 HS코드 분류 체계에 의거 10단위 상품분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은 수입신고 시 화물상태 기준임
  - 해관에 자료요구 권한이 있어 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품목분류 전, 담보를 제공하면 화물의 사전 반출이 가능함
  - 해관총서는 품목분류의 최종결정과 대외공포 등의 권한을 가짐
  
- HS코드 분류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省급해관 상품분류중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분류 가능
  - 성(省)급해관 상품분류중심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의문이 있거나 쟁의가 있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해관총서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
  - 사전분류신청이 수리되면 신청인에서 '수출입상품 사전분류 결정서'를 교부
  - 분류 결정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 해관에 이의신청 가능
    - 결정서는 신청인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1년)내에 수출입할 지역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성(省)급해관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제도 개정에 따라 중국은 WCO에서 발표한 수정목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국해관총서 2012년 <新 HS체계>를 시행함
  - 신 품목분류제도(HS)의 시행으로 품목분류 전체 소호(HS 6단위) 수가 5,052개에서 5,216개로 증가하였음
  
- 신 품목분류제도 중 농산물은 분류가 더욱 세분화되어 2012년 수정된 농산물 품목의 비중은 총수정품목의 43.6%로 최대 비중을 차지함
  - 1-16류 상품의 HS코드를 대부분 변경하여 특히 민물고기, 식용 조류, 야채, 견과류 등의 HS코드가 더욱 상세하게 분류됨
  - 환경관련 품목으로는 주로 오존층 파괴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품목 삭제, 추가 및 변경되어 환경관련 품목은 총수정품목에서 2.7%의 비중을 차지함
  - 마약류 제조 원료 등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관련 물질 품목분류를 세분화함

- 중국 특산물 백합화, 보이차와 공항용 탑승 브릿지 등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됨
- 수출입 기업은 자기 책임하에 HS 코드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하며, 입출항지 소재 해관이 화물 검사가 끝나는 시점에 HS 코드가 확정됨<sup>39)</sup>
  - 만약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입출항지 해관은 직속해관에 품목분류 부문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속해관이 한 단계 위의 <품목분류 분중심>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음
  - 주요 품목별 <품목분류 분중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 광주해관: 1-77류 (25,26,44-49류는 제외)
    - 상해해관: 84-90류
    - 대련해관: 25,26,44-46,94,97류
    - 천진해관: 47-49류, 72-83류
  - <품목분류 분중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안건은 해관총서에 제출해야 함
- 수출입 기업은 통관 전에 해관에 수출입 화물의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수출입 기업은 화물에 관한 정보 및 HS 코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해관에 제공해야 함
  - 해관에서 품목분류 사전결정서를 발급받게 되면 수출입 기업은 해관이 인정한 HS 코드를 적용해야 함
- 품목분류 결정은 시기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음<sup>40)</sup>
  - 통관 전: 수출입 기업은 화물 수출입신고 45일 전에 입항지 해관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 결정서」를 받을 수 있음
  - 통관 중: 화물을 이미 신고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경우 수출입 기업은 해관이 제시한 분류 의견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 통관 후: 해관 주관 부서는 보통 품목분류에 대해 사후심사를 실시하며 이때 제척

39) 관세청(2012)

40) 관세청(2012)

기간은 3년임

#### 4. 사전가격심사제도<sup>41)</sup>

- 사전가격심사란 수입신고 전에 기업의 신청에 의해 수입지 해관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심사를 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함
  - 기업분류기준 A급 이상 기업으로서 수입물품 시장가격 변동이 큰 물품, 수입물품 가격자료가 부족한 물품 등 수입 당시 가격 확정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적용됨
  - 수입신고 10일 전에 서면으로 수입물품 통관 해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해관이 신청 후 10일 이내에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사전가격심사 결정서」를 발급함
  
- 수입신고 시 비고란에 「사전가격심사 결정서」번호를 기재하고, 「사전가격심사 결정서」사본과 기타 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제출하면 해관은 실제 수입물품과 「사전가격심사 결정서」관련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사전가격심사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
  - 실제수입물품과 「사전가격심사 결정서」상의 물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 방법과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

#### 5. 관세 환급 및 감면<sup>42)</sup>

##### 가. 관세 환급제도

- 관세 환급제도는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를 납부한 후, 해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세를 환급함<sup>43)</sup>

41) 관세청(2012)

42) 중국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2009

- 수입관세를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반품하여 재수출된 경우
  - 수출관세를 납부한 수출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원래 상태로 반품되어 재수입되어 수출로 인해 환급된 관련 세금을 다시 납부한 경우
  -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떤 원인으로 수출되지 않아 수출이 철회된 경우
  - 관세를 징수하여 통관된 산적 수출입화물이 부족하여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부족한 부분의 화물대금을 반환 또는 배상했을 경우
  - 수출입화물이 파손,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등으로 인해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관련 화물대금을 배상했을 경우
  - 해관에서 잘못 징수하여 납세인이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
- 해관은 반드시 관세 환급 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확인하여 납세인에게 관세 환급수속을 밟도록 통보해야 함
- 납세인은 반드시 상기 통보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세 환급수속을 밟아야 하고, 관세 환급은 반드시 관세를 징수한 해관에서 처리해야 함

## 나. 관세 감면제도

- 감면제도는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및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중국의 관세 감면제도는 해관법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법정감면, 특정감면, 임시감면, 일시 수출입화물 및 보세화물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납부 면제로 나누어짐<sup>44)</sup>
- 법정감면이란 다음의 물품에 대해 감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별도의 감면세 신청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무조건 감면을 말함

4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중국」, 2012

44) 김원석, 『중국의 관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2009

- 법정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관에서 법정관세감면의 화물에 대해 후속관리를 하지 않으며, 법정관세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sup>45)</sup>
  - 관세가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화물
  -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과 화물 샘플
  -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 증정한 물자
  - 해관에서 통관을 허용하기 전에 파괴 또는 파손된 화물
  - 출입국 운송공구가 적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료, 자재와 음식물
  -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화물, 물품
  - 법률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기타 화물, 물품
  
- 특정감면이란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의 물품에 대해 감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별도의 감면세 신청에 대해 해관의 심사 및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조건부 감면<sup>46)</sup>을 말함
  
- 특정관세감면을 신청하는 업체는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해관에 신청해야 하며, 해관은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함<sup>47)</sup>
  - 해관은 관세감면 관련 정책에 부합될 경우, 관세감면 증명을 발급하고 업체는 관세 감면 증명 및 관련 통관서류를 해관에 제출하여 관세감면 수입화물의 통관수속을 밟음
  
- 특정관세감면의 화물은 지역, 업체와 용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관은 후속 관리를 해야 하며, 특정관세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투자한도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외에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국내투자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4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2)

46) 관세감면의 성격상, 정책성 관세감면이라고도 함

4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2)

- 대출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물자
  - 특정지역 물자
  - 과학교육용품
  - 과학기술 개발용품
  - 무상원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물자
  - 장애인용품
  - 원양어업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어획 수산물
  - 원양선박 및 설비부품 프로젝트
  - 집적회로 프로젝트
  - 해상 석유, 육상 석유 프로젝트
  - 대출 낙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부품
  - 구제, 기증 물자
  - 자산, 기증 물자
- 임시감면이란 국무원이 특수 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임시적,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감면을 말함
- 임시 관세면제 화물은 단위, 품목, 기한, 금액, 수량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 시효가 비교적 짧고 혜택정책이 집행되면 종료됨
  - 신청업체가 소재지 해관에 신청하고 해관은 사실을 심사한 후 해관총서에 보고하며, 해관총서 또는 해관총서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하고, 해관총서는 관련 해관에 관세감면 수속을 밟도록 통보함<sup>48)</sup>

#### 다. 관세 감면 절차<sup>49)</sup>

- 신청인은 반드시 품목수출입 신고 전에 주관 해관에 해당 품목의 감면세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해야 함

4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2)

49) 중국해관총서(2009)

- 감면세 등록이 필요한 건에 있어서 업체 신청 후 반드시 서류심사와 동시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함
  - 해관은 감면세 심사비준 신청을 접수한 일자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 반드시 감면세 심사비준 결정을 해야 함
- 신청인은 수출입통관 신청 전 주관해관에 감면세 대상품목의 세금액을 담보로 우선 통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한정함
- 주관해관이 감면세 등록 또는 심사비준건을 이미 접수했으나 미완료 상태인 경우
  - 관련 수출입 세수혜택정책이 이미 국무원 비준을 받았으나 구체 실시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신청인은 해관총서로부터 혜택정책 향유 가능범위에 포함됐음을 확인 받은 경우
  - 기타 해관총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주관해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내 담보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출입지역 해관은 주관해관에서 발급한 「감면세화물 세금액담보 허가증명서」를 근거로 품목의 세금액 담보 및 통관수속을 처리하도록 요구함
- 주관 해관은 서류심사 후 「중국해관의 감면세화물 세금액담보 허가증명서」를 발급하며, 통관지 해관은 담보수속 및 통관수속을 진행함
- 감면세 수입대상 품목의 해관감독 관리기한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선박과 항공기는 8년, 자동차는 6년, 기타 품목은 5년 등임
- 해관감독 관리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은 반드시 수입통관일부로 매년 1분기에 주관해관에 「감면세품목 사용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감면세 해관의 허가 없이 해관감독 기한 내 감면세 수입대상 품목의 양도, 담보, 저당, 이전사용 등 기타 처리가 불가함

## 6. 수출입 담보제도<sup>50)</sup>

- 수출입 담보란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해관 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해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행위의 합법성 혹은 일정기간 내 약정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sup>51)</sup>
  - 신고인은 규정기간 내에 해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함
  - 신고인이 담보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해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관 수속을 완료하기 전에 해관에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 수속 완료 전에 물품통관을 요구할 수 있음<sup>52)</sup>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유효한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납세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해관 수속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해관은 입출경화물, 요건구비물품에 대해 허가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가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나 법률, 행정법규로 인해 담보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아 통관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특정한 해관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해관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려는 담보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sup>53)</sup>

50)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담보조례」, 국무원령 제581호, 2011년 1월 1일 시행

51) KOTRA, 중국 국가정보: 무역, 2013

5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담보조례」 제4조

5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담보조례」 제5조

- 운송회사가 내륙과 홍콩·마카오 도로 간 화물 운송 왕래, 해관감관화물의 국경내 도로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
  - 화물, 물품의 일시 입출경시
  - 화물이 수리를 목적으로 입경하거나, 가공을 위하여 출경하는 경우
  - 임대차 화물을 입경하는 경우
  - 화물과 운송수단이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 해관 감관화물을 잠시 해관 감관구역 밖에 장치하는 경우
  - 해관의 감관화물을 금융기구에서 저당을 잡은 경우
  - 해관 업무와 관련한 보세화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대상 물품 및 기타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조짐이 있는 경우, 해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세수 보전조치를 취함<sup>54)</sup>
- 위법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수단 또는 해관이 법에 따라 물품을 이미 압류하거나 봉인한 경우, 당사자는 해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처분을 면제하거나 압류와 봉인을 해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sup>55)</sup>
- 위법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수단의 압류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해관에 상응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당사자에게 상응한 가치의 기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벌금이나 법에 따른 추징대상 화물, 물품, 밀수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상당한 금액 처분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법정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는 출국 시 해관에 담보를 제공해야함<sup>56)</sup>
-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그 법정대표자, 주요 책임자

5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담보조례」 제6조

5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담보조례」 제7조

56)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담보조례」 제8조

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다음과 경우에도 해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여, 당사자는 해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함<sup>57)</sup>
  -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의 수출입화물의 압류 혹은 통과
  -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관정으로 외경무부가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해관의 행정처벌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당사자는 연속해서 2년간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였을 때 직속해관에 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sup>58)</sup>
  - 해관 관세조사 이력이 있을 것
  - 연도별 수출입신고 오류율 3% 이하일 것
  - 체납세액이 없을 것
  - 해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행정관리 부문에 부적정한 기록이 없을 것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 적이 없을 것
  
- 당사자는 일정기한 이내에 동일한 해관업무를 여러 차례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해관에 포괄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포괄담보의 적용범위, 담보금액, 담보기한, 종료시 상황 등은 해관 총서에서 규정함<sup>59)</sup>
  
-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해관수속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57) KOTRA(2013)

5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담보조례」 제10조

59)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담보조례」 제11조

- 담보기한은 통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별 해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하고, 규정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제되며 해관은 안건 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함
- 수출입 담보방식에는 인민폐 및 자유태환화폐, 어음, 수표, 채권 및 예금증서, 은행 혹은 비은행금융기구가 제시한 보증서, 기타 해관의 인가를 취득한 재산 혹은 권리가 있음<sup>60)</sup>
- 보증금은 현금방식의 담보이며 담보액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보증금 방식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 감면세 수속 과정의 수입화물의 통과
    - 담보방식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도가 낮은 통관업체 혹은 민감성 제품
    - 담보인이 보증금 담보를 자원 신청한 경우
  - 보증금방식 외의 모든 경우는 보증서방식이 적용되나, 그 보증인 자격이 규정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해관의 담보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은 상황에 따라 담보방식을 확정함
- 보증금방식의 경우 담보인은 관세액 및 기타 비용의 해당액을 납부한 후 「해관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함
  - 보증서방식의 경우 해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2부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해관과 담보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함
- 일반 수출입 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시 수출입 화물은 통상 화물의 수입일부부터 6개월임
- 특수상황 발생 시 담보기한 내 해관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

60) KOTRA(2013)

- 담보인은 담보기한의 만료 후 「해관보증금 영수증」 혹은 보증서에 의해 해관에 담보 철폐를 신고하며, 담보인의 약정의무 이행을 확인한 후 해관은 보증금 반환 혹은 보증서 철폐 수속을 처리함
  
- 담보기한 내에 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해당 법률적 책임을 추궁함
  - 관세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통관신고업체가 수출입수속을 보완하도록 재촉하며 해당 벌금을 요구
  - 담보인의 납세의무를 추궁하며 은행통보 및 벌금을 징수
  - 통관업체의 통관자격을 잠정 중지 혹은 철폐
  
- 담보인, 피담보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기만, 은폐 등의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해관의 명령에 따라 법률상 의무는 계속 이행하되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61)</sup>
  - 그 과실이 중한 경우, 피담보인이 종사하는 관련 해관업무의 잠정 정지 또는 종사하고 있는 해관업무의 등록등기를 취소할 수 있음

## 7. 수출품 증치세 환급제도

### 가. 증치세와 수출품 증치세 환급

- 증치세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으로 생산,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는 화물·물품이 수입될 시에 해관에서 징수하는 일종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세금임
  - 수입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조성가격은 관세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가격으로 하며, 소비세 납부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소비세액을 더한 가격으로 함

6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담보조례」 제23조

- 수출품 증치세 환급제도란,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 수출판매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통해 증치세를 면세하고, 그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입한 원재료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의 환급률에 의해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임<sup>62)</sup>
  
- 증치세 기본세율은 17%이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판매 또는 수입하는 저세율 적용 품목 이외의 화물 및 가공, 수리조립노무 등이 포함됨
  - 저세율(13%) 적용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식량, 식용식물유
    - 상수도, 증기, 냉기, 열기, 석탄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주민용 메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화물
  - 수출 재화의 증치세율은 0%임
  
- 수출의 경우 증치세율이 0%이므로 수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 매입증치세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고 되고, 이러한 증치세의 환급률은 국무원에서 결정하므로 수출장려 또는 수출억제 등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자주 변경됨<sup>63)</sup>
  - 수출기업은 실제로 해당제품의 증치세율(주로 17%)과 환급률(주로 13%)의 차이(4%) 만큼의 부담을 안게 됨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기업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증치세를 면세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함<sup>64)</sup>
  - 수출입경영권을 가진 내자제조기업의 직접수출 또는 외국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

62) 박경매, 「중국의 수출입관세정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63) KOTRA, 「중국 국가정보: 투자」, 2013

64) 박경매(2010)

리 수출하는 재화

- 수출입경영권을 가진 외국무역기업이 직접 매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기타의 외국 무역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재화
  - 제조기업이 외국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자산(自産) 재화
  - 기타 특정기업(수출입경영권을 가진 기업에 한정되지 않은)이 수출하는 재화
- 환급대상 기업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이 원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당해 기업이 직접 가공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한 제품이어야 하고, 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속하는 재화이어야 함
- 이러한 수출제품은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 중국 경내를 떠나야 하며 회계장부에 수출로 계산하여야 함
  - 위의 조건과 관계없이 제조기업에 속하는 소규모 납세자<sup>65)</sup>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직접 수출하거나 외국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재화, 외국무역기업이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또는 일반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하여 수출하는 재화, 외국무역기업이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는 국가규정 면세품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해 면세하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음
- 원유, 대외원조를 위한 재화의 반출, 천연 우황, 사향, 동 및 동합금, 백은, 설탕 등을 수출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 진료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치세를 부과하고 매입세액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음

65) 한국의 간이사업자와 유사한 제도. 연간 매출액이 180만위안에 미달하는 도소매 사업자, 연간 매출이 3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이고 기장을 하는 제조업자, 과세용역사업자 및 제조 또는 과세용역을 주업(연간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도소매사업을 겸업으로 하는 자(박경매, 2010)

## 나. 환급률 조정을 통한 수출관리

- 중국은 수출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관세 이외에도 수출에 대한 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수출환급제도는 수출품에 대해 매입단계의 각종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1985년에 도입되었으며, 1994년 증치세 도입 이후 수출에 대한 매입 단계의 증치세 환급 제도로 변경되었음
- 중국의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은 수출 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으로써 중국의 수출을 확대시켜 왔음
  -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환급률을 낮추고, 수출이 부진할 경우에는 환급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출과 수입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수출 재화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 조정한 시기임
  - 1994년 이후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환급 재정의 압박을 받게 됨
  - 따라서 1995년과 199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수출 재화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였음
  - 이러한 증치세 환급률의 인하로 인해 1996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1.53%에 그쳤으며, 1998년의 수출증가율은 0.5%에 그쳤음<sup>66)</sup>
-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수출 재화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의 인상 조정시기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중국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 시작하였음
-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무역흑자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수출 지향 경제성장에서 질

66) KOTRA, 「중국증치세의 환급률 인하의 영향과 전망」, 2007, 박경매(2010)에서 재인용

적 성장 방식으로 중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률을 인하하거나 취소 조치를 취함<sup>67)</sup>

- 노동집약형 산업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인하여 가공무역 제한류에 포함 되면 원자재 수입 시 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수출 확인 후 반환신청을 하게 되므로 관련기업들에는 자금압박으로 작용함

- 이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산업 부양을 위해 2008년 8월 이래 7번이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였음

〈표 Ⅲ-9〉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내용

시행일	환급률 인상내용
2008. 08. 01	방직품, 의류 품목 등 11%→13%로 인상
2008. 11. 01	방직품, 완구, 가구 등 3,486개 품목 9~13%→11~14%로 인상
2008. 12. 01	노동집약형 제품 3,770개 품목 5~13%→9~14%로 인상
2009. 01. 01	기계전자제품 553개 품목 11~14%→13~17%로 인상
2009. 02. 01	방직품 및 의류 품목 14%→15%로 인상
2009. 04. 01	경공업, 강철 및 IT제품 등 3,802개 품목 5%~17%로 인상
2009. 06. 01	노동집약형, 기계전자 등 2,600개 품목 5%~17%로 인상

자료: 외교통상부 (2011)

- 2009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과세당국은 2010년 7월 15일자로 일부 고에너지 사용 및 고오염물질 배출 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 환급을 취소하였음<sup>68)</sup>

- 이는 2008년 하반기부터 7차례 수출환급률을 상향조정한 이래 역으로 수출 환급을 취소하는 첫 조치임
- 향후 중국의 세수정책개혁이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함

67) 외교통상부(2010),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68) 외교통상부(2011)

- 이와 같이 중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의 증치세 환급률을 국내외의 환경 변화와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수출을 관리함
  - 이러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정책은 거시경제를 조정하고, 환경오염, 자원문제, 고부가가치형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의 중국의 경제·산업동향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임

## 8. 행정처벌<sup>69)</sup>과 납세 분쟁

### 가. 해관 행정처벌 종류 및 절차

- 「해관법」,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관 행정처벌은 경고, 벌금, 몰수, 당사자의 일부 권리를 임시 중단, 당사자의 일부 권리를 중지, 행정구류, 압수가 있음
- 해관에서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건 이송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관련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함<sup>70)</sup>
  - 사건조사는 입건, 조사 및 증거 수집, 조사 중지와 종결, 사건 심사, 통보, 재심사와 청문 순으로 진행됨
- 수하물과 우편물, 특급화물, 화물관리, 보세감독관리 등의 업무 현장 및 기타 해관감관, 통계 업무 중 발견된 해관감관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서, 위법 사실이 명확하고 위법 사항이 경미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바로 「행정처벌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건은 단순사건 처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sup>71)</sup>

69)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20호, 2004

7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0)

71)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단순사건 행정처벌 처리절차규정」, 해관총서령 제188호, 2010

- 단순사건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해관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해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sup>72)</sup>
- 단순사건 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해관은 바로 입건하고 지체없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실시하여야 함<sup>73)</sup>
- 해관은 현장조사 후 행정처벌고지서를 발행하고 동 「행정처벌고지서」를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아야 함<sup>74)</sup>
- 단순사건 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관은 입건 후 5근무일 내에 행정처벌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함<sup>75)</sup>

〈표 Ⅲ-10〉 해관의 행정처벌 종류

종류	정의 및 해석
경고	해관에서 불법 당사자에 질책과 경고를 주어 당사자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처벌
벌금	해관에서 불법 당사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강박하여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아 향후 불법행위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처벌
몰수	해관에서 불법 당사자에게 불법 출입국 화물,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여 공유로 소유시키는 처벌로서 몰수화물 등 불법재산과 불법소득을 몰수
당사자 일부 권리 일시중지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관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종사한 후, 불법행위를 하여 해관에서 일정한 기간에 업무권리를 박탈하는 처벌 (「해관법」과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에 의해 해관은 통관업체의 통관업무를 임시중지, 통관인원의 보고업무를 임시중지, 해관에서 허용한 해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임시중지)
당사자 일부 권리 중지	해관에서 당사자가 일부 경영활동의 권리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처벌로서 해관에서 일반적으로 해관 등록을 철회하며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
행정구류	국가기관(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연인에게 인신자유를 단기로 박탈하는 처벌
압수	해관은 특수상황에서 압수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압수는 몰수와 유사하지만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음

자료: 중국 해관총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재인용

7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단순사건 행정처벌 처리절차규정」 제4조

7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단순사건 행정처벌 처리절차규정」 제5조

7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단순사건 행정처벌 처리절차규정」 제6조

7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단순사건 행정처벌 처리절차규정」 제8조

## 나. 해관감독관리규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밀수행위와 해관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해관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를 적용하여 처벌함
- 수출입 금지 화물을 수출입한 경우, 반송을 명령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출입 제한 화물의 수출입 시 송수하인이 해관에 허가증을 제공할 수 없으면 수출입 화물을 통과시키지 않고 화물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76)</sup>
  - 자동수출입허가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수출입하면서 송수하인이 해관에 자동허가증 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통관이 불가함<sup>77)</sup>
- 수출입 화물의 품명·품목번호(HS코드)·수량·규격·가격·무역방식·원산지·출하지·도착지·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각각 처벌하고, 위법소득이 있으면 해당 위법소득을 몰수함<sup>78)</sup>
  - 해관 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경고하거나 또는 1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해관 감독관리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경우, 경고하거나 또는 1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가의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화물가격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가의 세금징수에 영향을 미친 경우, 탈루세액의 3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가의 외환·수출환급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신고가격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에 처함

76)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13, 14조

77)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14조

7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15조

-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가격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수출입 제한 화물의 경우, 해당 허가증을 제시할 수 없으면 화물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세액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탈루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sup>79)</sup>
- 해관 감독관리 화물을 해체, 인출, 교부, 발송, 교환, 개조, 담보, 저장, 유치, 양도, 표기 변경, 타인에게 넘겨 사용 또는 기타 처분을 하였을 경우
  - 해관 감독관리 화물을 해관 감독관리 구역 외에 저장할 경우
  - 해관 감독관리 화물에 대한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할 경우, 화물의 분실, 수량 부족 또는 기록 허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 보세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의 업무 시 수탁, 교부, 이월, 확인 삭제 등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관련계약을 해제, 연장, 변경, 양도 시 해관에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해관에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을 허위 신고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통과, 중계운송, 통행화물을 경외로 운송하지 않고 경내에 보관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임시로 수출입화물을 경외로 재운송하거나 경내로 재운송하지 않고 경내외에 보관할 경우
  - 해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해관에서 감독관리를 할 수 없거나 중단하였을 경우
-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고, 물품가격의 2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함<sup>80)</sup>
- 해관 허가 없이 통관하지 못한 수출입물품을 해체, 교부, 우편송부, 이전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 수량을 초과한 개인용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해관에 신

79)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18조

80)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19조

고하지 않을 경우

- 개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개인용 출입국 제한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은닉, 위장 등 방식으로 해관 감독관리를 회피 또는 해관에 미신고할 경우
  - 개인이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허위 신고할 경우
  - 해관 등록을 거쳐 임시면세의 출입국 물품으로 허가받은 경우, 경내외로 다시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 해관 허가가 없이 통과인원이 물품을 경내에 남겨두었을 경우
- 출입국 금지 물품을 운송·휴대·우편송부 방식으로 출입경시 은닉·위장 등의 방식으로 해관의 감독관리를 회피 또는 해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몰수 또는 반송명령을 하거나 해관 감시하에 소각 또는 기술적인 처리함<sup>81)</sup>
-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함<sup>82)</sup>
- 운송수단이 해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출입경하지 않은 경우
  - 해관 감독관리 구역 내에 정박한 출입경 운송수단이 해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운행하여 이탈한 경우
  - 출입경 운송수단이 해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또 다른 해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해관 수속과 해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서 경내외의 해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로 이동한 경우
  - 출입경 운송수단이 해관 설치 장소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규정에 따라 해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검사 받지 않거나, 제공한 증빙서류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8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0조

8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1조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함<sup>83)</sup>

- 해관의 동의 없이, 출입경 운송수단이 임의로 출입경화물·물품을 하역하거나 출입경관광객을 승하선시킨 경우
- 해관의 동의 없이, 출입경 운송수단이 임의로 경내 여객운송을 겸업하거나 출입경 운송 이외의 기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출입경 운송수단이 임의로 경내 운송 업무를 경영한 경우
- 규정한 기한 내에 해관에 선적목록 등 전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았거나 전송한 전자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규정한 기한 내에 전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 해관의 감독관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입경 운송수단은 입경 후 해관에 신고하기 전에, 출경 운송수단은 해관 수속을 한 후 출경 전에 교통 주관부서 또는 해관이 지정한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은 경우
- 해관 감독관리화물을 실은 선박·자동차가 해관이 지정한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은 경우
- 출입경 선박 및 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해관을 설치하지 않은 장소에 정박·착륙하거나 화물·물품을 경내에 하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근의 해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특수 사정이 없이 수출입 선박·기차·항공기의 도착시간·정박 장소 또는 변경된 시간·장소를 사전에 해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규정에 따라 해관이 진행하는 출입경 운송수단·화물·물품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84)</sup>

- 해관의 봉인을 임의로 개봉하거나 훼손한 경우
- 해관에서 작성 및 발표한 감독관리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해관 감독관리에 영향을

8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2조

8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3조

## 끼친 경우

- 해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해관에서 출입경 운송수단,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수 없게 하였거나 중단시킨 경우
- 해관 증명서류를 위조·변조·매매한 경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sup>85)</sup>
- 중국 법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권리침해화물을 몰수하는 외에 화물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sup>86)</sup>
  - 해관에 지식재산권 관련 상황을 신고해야 하나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및 대리인이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식재산권의 합법적인 사용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통관기업·관세사와 해관이 해관감독관리화물의 운송·저장·가공·조립·위탁판매·전시 등의 업무를 허가 받은 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는 외에 경고하고, 6개월 이내에 유관업무 또는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할 수 있음<sup>87)</sup>
  - 세금을 체납하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출입 통관업무 대행업체가 타인에게 수출입 화물통관 납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의를 양도한 경우
  - 해관의 감독관리하의 화물을 손실 또는 분실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업무집행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기타 위법행위

8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4조

86)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5조

87)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6조

가 있는 경우

- 통관기업·관세사와 해관이 해관감독관리화물의 운송·저장·가공·조립·위탁판매·전시 등의 업무를 허가 받은 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관은 그 등록과 해관신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sup>88)</sup>
  - 1년 내에 3회 이상 해관에 의해 업무수행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해관에 의해 관련업무 또는 업무수행을 정지당하고, 관련 업무의 종사를 회복한 후 1년 내에 재차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등록의 취소와 통관업 종사자격의 취소가 필요한 기타 위법행위를 한 경우
  
- 통관기업·관세사가 위법으로 해관신고를 대행하거나 해관에서 허가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해관신고 업무를 대행한 경우, 시정명령 외에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에 해관신고 업무 또는 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정황이 엄중하면 해관신고 등록과 해관신고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sup>89)</sup>
  
-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통관기업·관세사가 해관 직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해관신고 등록과 해관신고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외에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또한, 범죄를 구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게 되며, 통관기업으로 재차 등록하지 못하고 해관신고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sup>90)</sup>
  
- 해관에 등록과 해관신고 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해관신고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sup>91)</sup>
  
-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해관에 등록하였거나 해관신고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등록

8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7조

89)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8조

90)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9조

9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30조

과 해관신고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외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sup>92)</sup>

-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면 해당 법인이나 조직을 처벌하는 외에 담당자 및 직접 책임자를 경고 처분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함<sup>93)</sup>

#### 다. 해관 납세분쟁 - 행정재심의와 행정소송<sup>94)</sup>

- 해관의 납세분쟁은 해관의 세수 관리업무 행사 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발생하는 행정 분쟁으로 납세분쟁의 범위는 비교적 넓고 「수출입관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됨
  - 해관의 납세 의무자 확정
  - 과세가격 확정
  - 상품 분류
  - 원산지 확정
  - 세율과 환율 적용
  - 세금 감면 또는 면제
  -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 체납금 징수
  - 징세방식 확정
  - 납세장소 확정
  - 위의 사항과 관련된 질의를 제출할 경우
  
- 해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감독관리 결정을 내린 해관의 상급 해관에 행정재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

9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31조

9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32조

9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요약, 발췌

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해관의 행정재심의는 해관과 그 인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법에 따라 해관 재심의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해관 재심의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며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림

□ 해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행정재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sup>95)</sup>

- 해관의 경고, 벌금, 화물·물품·운송공구와 특별제조설비 몰수, 몰수할 수 없는 화물·물품·운송수단의 등가대금 추징, 특정 감면세 우대의 임시증지 또는 취소, 관련 업무 또는 자격 정지, 등록 철회, 통관신고 자격 취소 및 기타 행정처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관련 화물, 물품, 불법소득, 운송공구, 특별제조 설비에 대한 압수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관련 화물, 물품, 운송공구, 장부, 증서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 관련 수출입화물, 장부, 증서에 대한 밀봉 보존 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납세 의무자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장소 확정 등 기타 세금 징수와 관련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법정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여 해관에 행정허가사항 또는 행정비준사항을 신청했지만 해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 해관에서 운송공구와 장소를 검사하고 화물, 물품을 검사하거나 기타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 것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반품명령, 통관불가, 시정명령, 해체명령과 매각 등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9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재구성

- 해관 검사 결정 또는 기타 검사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기업분류 결정과 그 분류결정에 따른 관리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해관에서 채택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통관신고, 통관 등 해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에서 불법으로 신고 지체금 또는 기타 비용을 수취하고 불법으로 기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에서 정부정보 공개업무에서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신청인이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의 신청하며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신청기한을 지체할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를 해소한 날로부터 계산함
- 해관 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리를 결정할 경우에 재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일을 수리일로 정함
- 해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별 상황에서는 재심의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최대로 30일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재심의기관의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심의기관이 기한을 넘어 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심의 기한 만기 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은 인민법원에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청구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해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며 판결하는 국가 소송활동으로 행정소송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sup>96)</sup>
  - 해관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압수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강제성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 납세분쟁에 불복할 경우
  - 행정허가 관련사항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검사와 검사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 검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기업분류 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통관신고, 통관 등 해관수속 등 처리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불법으로 체납금, 보증금과 기타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체적 행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해관 행정소송 수리절차는 제1심 절차, 제2심 절차, 심판감독 절차를 포함하며 제1심 절

9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재구성

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체 심판절차의 기초 단계임

○ 제1심 절차는 인민법원에서 해관 행정소송 사건을 수리한 후 그 사건 수리에 적용하는 절차로서 개정 준비, 법정 조사, 법정 변론, 합의법정 평의, 판결 선고 등을 포함함

□ 만약 제1심에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제2심 절차에 들어가며 제2심에서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를 할 수 있으며 제2심 법원의 판결은 종심 판결로서 다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함

□ 행정소송판결 감독관리 절차는 인민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검찰기관의 항소를 통해 또는 인민법원에서 스스로 발견한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재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다시 수리하는 절차임

## IV. 중국의 통관제도

### 1. 관세 행정조직 및 관리업무

#### 가. 해관 행정조직

- 중국 해관은 전국 267개 공항만 및 내륙철로 개항지를 관리하며, 15개의 보세구, 8개의 보세물류원구, 12개의 보세항구, 59개의 수출가공구, 4개의 종합보세구 등 총 98개의 감시구역을 운영함
- 해관기구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해관총서 및 직속해관과 예속해관 등 3단계로 하며, 예속해관은 직속해관의 지휘를 받으며,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지휘를 받음
- 중국의 통관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이며, 1980년 2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분리 독립하여 국무원 직속의 장관급(部級)기관이 됨
  - 해관총서는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국무원의 지휘 아래 전국의 해관기구, 인원편제, 경비물자와 각종 해관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해관시스템의 최고 영도기구임
  - 광주에 광동분서를 설립하여 광동성 내의 해관 관리를 보좌하게 하며, 상해와 천진에 특파원 사무소를 두어 사무기구의 역할을 담당
    - 분서와 특파원 사무소는 직속 해관의 지도 및 감독검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해관 업무는 처리하지 않음
- 법령 입안, 징수, 통관, 밀수 단속, 심사 등과 같은 전반적인 관세 업무는 국무원 직속의 독립기관인 중국 해관에서 담당하나,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sup>97)</sup>에서 결정함<sup>98)</sup>

〈표 IV-1〉 해관업무 관련 부서 업무분장

행정조직	주요업무
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원 직속의 독립기관(장관급)</li> <li>· 법령입안, 세금징수, 통관, 밀수단속, 심사 등의 전반적인 관세업무</li> </ul>
관세세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원 의사협조기구(재정부 부장(장관) 외 8개 기관 차관급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li> <li>· 수출입세칙 및 수입세율표의 세목, 세칙, 세율의 조정 및 해석, 국무원 보고 및 비준 후 집행</li> <li>· 잠정세율의 대상품목 및 기한, 세율 등의 결정, 반덤핑세, 보복관세 및 기타 세금관련 관세조치 등의 결정</li> <li>· 중요한 세금관련 관세정책 등 심의 및 국무원 보고</li> </ul>
재정부 관세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관세율(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등), 잠정세율, 수출입세칙세목 등 관련 연구 및 제출</li> <li>· 관세 관련 법률, 법규와 관련한 의견 제출</li> <li>· 관세세칙위원회의 일상적 업무 처리기능 수행</li> <li>· 관세 관련 대외협상 참여</li> </ul>

자료: 관세청·관세무역연구원(2012)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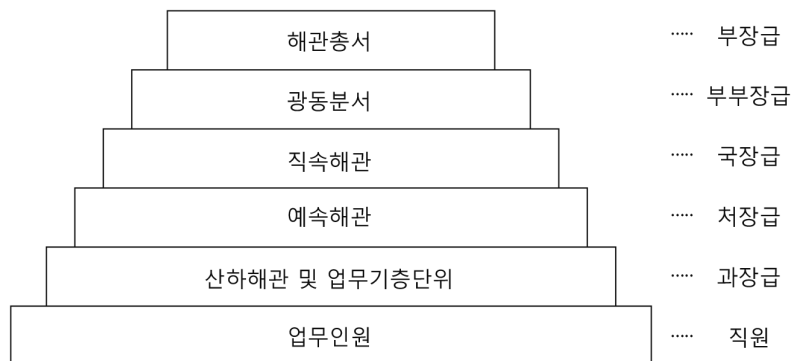
- 중국 해관총서의 주요 기능은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과 기타 물품을 감독관리,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단속, 해관 통계의 작성 및 기타 해관업무의 처리 등임
- 해관총서는 총서장 1명과 6명의 부서장을 두고 각각 2~3개의 사(司, Department) 또는 국(局, Bureau)을 총괄하며, 정원 251명(총서장 1명, 부서장6명)에 1청(廳) 1국(局) 12사(司) 3실(室)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해관총서 계급제도는 5등급 13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해관총감, 해관부총감), 2등급(관무감독1급~3급), 3등급(관무독찰1급~3급), 4등급(관무독판1급~3급), 5등급(관무원1급~2급)으로 구분됨

97) 본 연구보고서 중 'Ⅲ. 중국의 관세제도 1. 관세제도 일반'의 관세세칙위원회 내용 참조

98) 관세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중국』, 2012

- 해관총서의 지방조직은 1분서, 41개 직속해관, 600여 개 예속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000여 명(밀수범죄조사국 직원 10,000여 명 포함)의 인원이 포함됨

[그림 IV-1] 해관기구 설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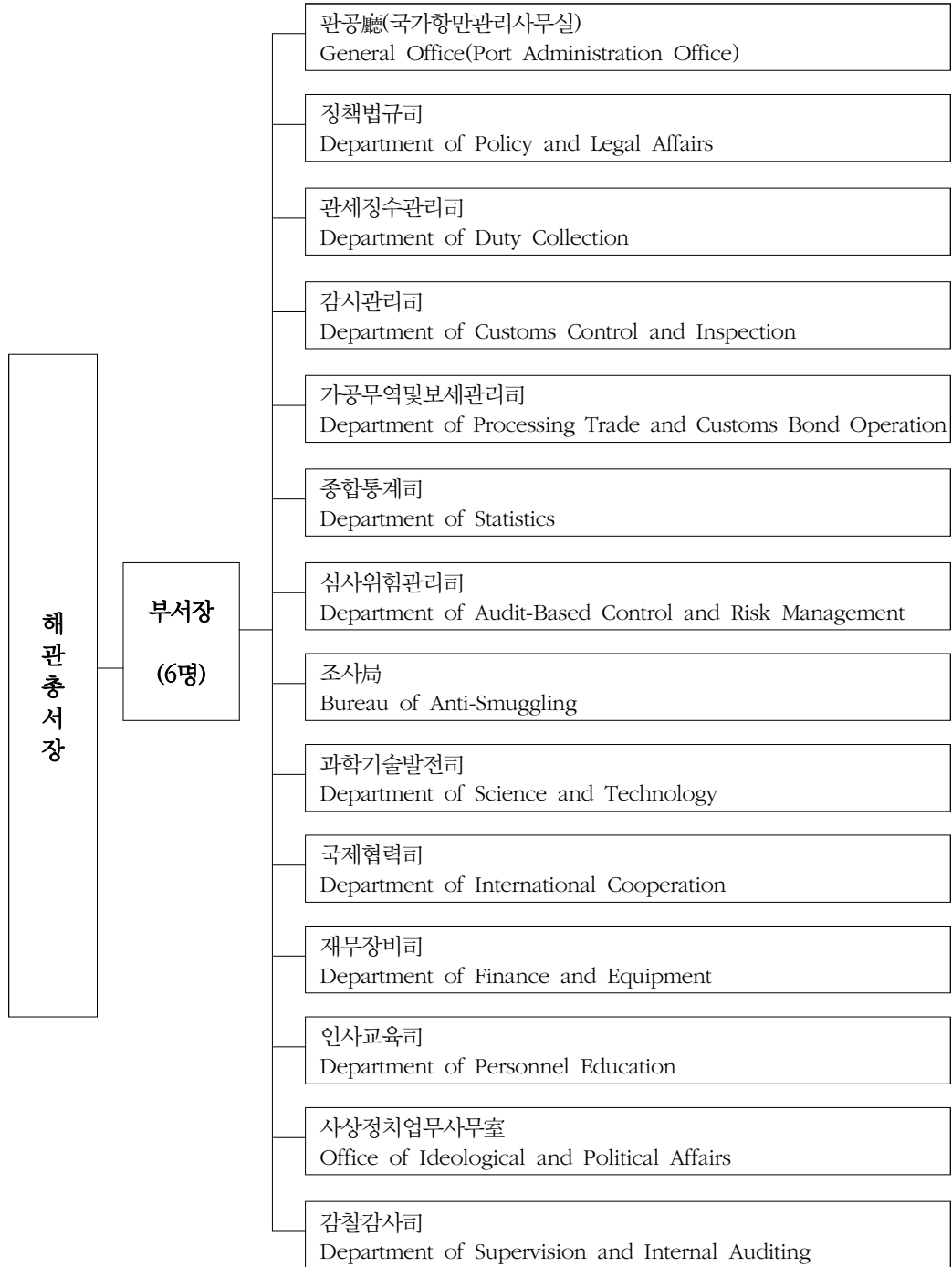


자료: 관세무역연구회(2011)

- 해관총서의 기본임무는 국무원의 지휘 아래 전국 해관의 「해관법」과 국가의 관련정책, 행정법규에 대한 정확한 시행 및 해관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것이며, 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sup>99)</sup>
  - ① 각종 해관업무의 방침, 정책, 법률(초안), 법규, 규칙을 연구·입안하고, 전국 해관의 집행사항을 조사, 독촉
  - ② 관세조례, 수출입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에 참여하며, 시행
  - ③ 전국 해관의 법에 따른 수출입 운수기관, 화물 및 물품에 대한 감관을 지휘하며, 제도를 엄격히 하고 수속을 간소화하며 후속관리 강화 및 합법적인 수출입을 편리하게 함
  - ④ 관세징수의 감면사항을 통일 관리
  - ⑤ 전국 해관의 밀수단속을 조직하고 지휘
  - ⑥ 관련 납세쟁의와 해관 처벌결정에 대한 재심(復議) 신청에 대해 심의
  - ⑦ 전국 해관 통계를 편제(編制)하고 통계분석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담당

99)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8호, pp. 10~13

[그림 IV-2] 중국 해관총서 본청 조직도



자료: 관세청(2011)

- ⑧ 해관 기술설비를 조직·연구·제정하고 도입·개발하며 이를 응용
  - ⑨ 전국 해관 조직기구, 인원편제, 급여복리, 전문교육, 전문 직무평가, 소속간부의 임면(任免)을 담당
  - ⑩ 전국 해관의 정치사상 업무를 조직, 지휘하고 사회주의 정신과 문명 건설을 추진
  - ⑪ 전국 해관의 경비, 재무, 차량·선박, 과학기술, 고정자산과 기본건설을 관리하고 회계감사 및 감독을 실시
  - ⑫ 전국 해관공무원의 집행(執法), 수법(守法)활동을 감독하고 공직기강 위반사건에 대하여 조치
  - ⑬ 해관 관련 문제의 국제조약과 협정 초안 입안 시 참여
  - ⑭ 관련 국가(지구) 해관, 국제해관조직 및 관련 국제기구와 연계, 교류, 협력
-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일정 구역범위 내의 해관업무를 책임·관리함
- 직속해관은 해관의 수직 지도체제상 해관총서의 지도를 받는 동시에 예속해관을 관리하지만 각급 지방정부와는 지도관계가 없음
  - 현재 직속해관은 41개이며, 북경(北京), 천진(天津), 석가장(石家庄), 태원(太原), 호화호특(呼和浩特), 만주리(满洲里), 대련(大连), 심양(沈阳), 장춘(长春), 하얼빈(哈尔滨), 상해(上海), 남경(南京), 항주(杭州), 영파(宁波), 합비(合肥), 복주(福州), 하문(厦门), 남창(南昌), 청도(青岛), 정주(郑州), 무한(武汉), 장사(长沙), 광주(广州), 심천(深圳), 공북(拱北), 산두(汕头), 황포(黄埔), 강문(江门), 잠강(湛江), 남녕(南宁), 해구(海口), 중경(重庆), 성도(成都), 귀양(贵阳), 곤명(昆明), 라사(拉萨), 서안(西安), 란주(兰州), 서녕(西宁), 은천(银川), 우루무치(乌鲁木齐) 등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음<sup>100)</sup>
  - 직속해관은 관할구역 내의 해관사무를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해관총서에 책임을 지게 됨
- 직속해관은 관내 해관 각종 업무 및 관내 중점 심사업무, 해관의 각종 정책, 법률·법규, 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sup>101)</sup>

100) 한국농수산식품연구원(2012)

- ① 관내 통관업무 실시 및 관리
  - ② 관내 집중심사(集中審單) 실시 및 예속해관의 통관업무 지휘
  - ③ 각종 해관감관구역, 수출입화물 및 운수기관에 대한 실질적 감관 실시
  - ④ 무역관리, 징수관리, 보세 및 가공무역 감관, 기업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 ⑤ 무역통계, 업무통계 및 통계분석업무
  - ⑥ 관내 조사(調查), 심사(稽查) 및 수사(偵查)업무
  - ⑦ 규정절차 및 권한에 따른 각종 업무의 심사, 비준, 등록, 보고
  - ⑧ 대외 집행(執法)활동에 따른 협조와 행정 분규, 쟁의의 처리
  - ⑨ 관내 각종 업무의 법 집행에 대한 검사, 감독 및 평가
- 예속해관은 직속 해관의 지휘를 받으며, 구체적인 해관 업무를 처리하는 해관으로서 해관 수출입감관 직능의 기본 집행단위이며, 일반적으로 모두 공항만 및 해관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예속해관은 전국에 600여개로 해관 업무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科), 실(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원은 적게는 십 여명에서 많게는 2~3백 명 정도 되는 곳도 있으며, 예속해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sup>102)</sup>
- ① 신고서 접수, 심사 및 징수, 검사, 면허 등 통관업무
  - ② 관할구역 내 가공무역에 대한 감관
  - ③ 수출입운수기관 및 그 연료, 물자, 비품에 대한 감관과 선박톤세 징수
  - ④ 각종 해관감관구역에 대한 감관과 통제
  - ⑤ 통관, 보세운송 및 보세화물의 장치, 이동, 면허 및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감관
  - ⑥ 운수기관, 수출입화물, 감관 장소에 대한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에 따른 조치
  - ⑦ 관할 내의 통관사 등록
  - ⑧ 관할 내의 해관감관구역, 보세운송 업무에 대한 신청수리

101)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102)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 ⑨ 관할 내의 특정 감면세 화물에 대한 사후관리(後續管理)

- 해관의 밀수단속 경찰기구는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경찰조직으로 해관총서와 공안부의 영도를 받으며 각급 밀수범죄정찰기관은 소재지 해관업무 관할 내의 밀수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sup>103)</sup>
  - 밀수와 관련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해관의 밀수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밀수범죄정찰기구에 행정집법기능을 추가하였음
  - 각급 해관 밀수범죄정찰부서는 명칭을 해관총서 밀수범죄정찰국은 해관총서 밀수 수사국으로, 각급 직속해관과 예속해관 역시 직속해관 밀수수사국, 예속해관 밀수 수사분국으로 변경함

나. 해관 관리업무<sup>104)</sup>

- 「해관법」에서는 해관의 4가지 기본업무를 수출입 운송수단·화물·여행자 휴대품·우편 물과 기타물품의 감독관리, 관세와 기타 세비의 징수, 밀수 단속, 해관통계 편제로 규정함
- 감독관리는 해관의 4가지 기본업무를 기초이며 기타 해관의 업무도 감독관리의 기초에서 진행됨
  - 해관의 감독관리는 관리제도 및 절차에 따라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물품의 출입국 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관리 업무를 말함
  - 감독관리의 대상에 따라 해관 감독관리는 운송수단 감독관리, 화물 감독관리, 물품 감독관리의 3개 체계로 분류되며 체계별로 규범화된 관리절차와 방법으로 운영함
- 세금 징수는 대외무역 관리제도의 중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관세 징수와 수입부분에 대한 해관 대리징수가 있음
  - 해관은 수입 화물과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동시에 기타 기구를 대리하여 증

103)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8호, 2011

104)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한국농수산물연구원(2012)에서 발췌 및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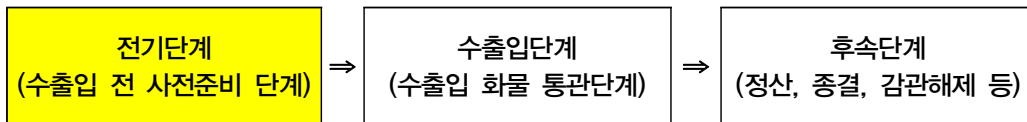
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 수입부분 세금을 징수함

- 밀수단속은 해관에서 감독관리와 세금 징수 등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보장조치임
  - 「해관법」에는 “국가에서 연합 밀수단속, 통일적 처리, 종합적 처리의 밀수단속 체제를 실시하고 해관은 밀수단속을 책임지고 조직, 협조,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통계 작성은 해관의 감독관리, 세금 징수의 기초에서 진행하며, 해관 통계는 실제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통관서 또는 해관에서 비준한 기타 신고서류를 수집, 정리, 가공, 처리하여 수출입화물의 품목, 수량(중량), 가격, 국가(지역), 업체, 목적지, 화물 공급원, 무역방식, 운송방식, 해관별 등의 항목을 각각 종합하여 분석함

## 2. 통관 절차 및 단계별 특징

- 통관 절차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운송수단 책임자, 물품 소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규정에 따라 화물, 물품, 운송수단의 수출입 및 관련된 해관사무를 처리하는 순서와 차례임
- 일반적으로 화물의 수출입은 수출입신고, 검사협조, 세비(관세 및 검사비용 등) 납부, 화물 수령 또는 운송 등의 수속을 거치게 되며, 중국은 수출입 전후에 무역 특징별 준비 절차가 추가로 요구됨
  - 가공무역의 원재료 수입의 경우, 해관은 신고와 서류심사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통관수속 외에 사전 준비(備案)를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수입한 원재료로 완성품을 가공한 후 수출하게 된다면 반드시 정산종결(核销 结案)한 후에야만 가능함
- 중국의 통관 절차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감관을 실시하는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시간의 전후에 따라 전기단계와 수출입단계 그리고 후속(사후)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전기단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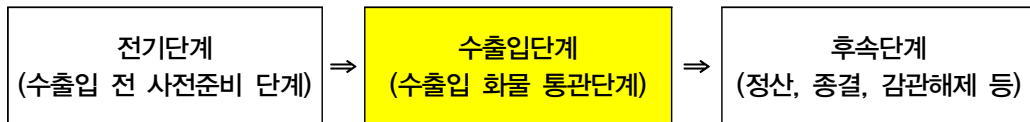
- 전기단계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이 수출입하기 전에 해관에 준비수속을 하는 과정을 말함
- 보세가공화물의 경우, 보세가공화물의 수입 전에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가공무역 준비수속을 하여야 하며, 가공무역 전자장부와 전자화 수책 개설을 신청하거나 또는 가공무역 종이수책을 신청하여 수령해야 함
- 특정감면세화물의 경우, 특정감면세화물의 수입 전에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의 감면세 준비와 심사비준 수속을 하여야 하며, 감면세증명을 신청하여 수령해야 함
- 임시수출입화물의 경우, 임시수출입화물의 수출입 전에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 임시수출입 준비신청 수속을 하여야 함
- 기타 수출입화물 중의 출료가공(出料加工) 화물의 경우에는 출료가공 화물의 수출 전에 수출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료가공의 준비수속을 하여야 함

〈표 IV-2〉 무역화물종류별 전기단계 준비사항

무역화물종류	준비사항
보세가공화물	가공무역 전자장부와 전자화 수책 개설 또는 가공무역 종이수책 신청 및 수령
특정감면세화물	화물의 감면세 준비와 심사비준 수속, 감면세 증명 신청
임시수출입화물	화물 임시 수출입 준비신청 수속
기타수출입화물	출료가공 <sup>105)</sup> 화물의 경우, 출료가공 준비수속

자료: 관세무역연구회(2011)에서 요약·재구성

## 나. 수출입 통관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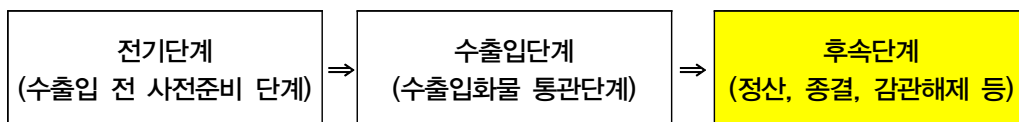
- 수출입화물의 통관은 일반적으로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 및 반출입’ 등의 4단계로 이루어짐<sup>106)</sup>
  -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내 해관의 감독이 필요한 수출입 화물은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 및 반출입 → 통관종료’ 등 5단계를 거치게 됨
- 신고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해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신청하는 행위를 가리킴
- 화물검사란, 해관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고서류와 화물의 일치 여부, 위법행위의 유무 및 수출입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단계임
- 수출입신고 화물에 대하여 해관이 검사를 결정한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현장에 도착하여 해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및 개포장 등 화물검사에 협력하여야 함
- 관세 징수 및 납부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서 발급한 세비(관세 및 검사비용 등)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해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세비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은행을 통하여 관련 세비(관세 및 검사비용 등)를 해관의 전문계정에 납입하게 됨

105) 출료가공(出料加工): 원료를 국외에 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한 후 중국에 수입하는 형태

106) KOTRA(2013)

- 해관법 및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하여 국가의 별도 규정 외에 모든 수출입화물은 관세 징수대상이며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함
  - 이 밖에도 수입과정에서 증치세를 징수하며 일부 상품은 소비세가 부과됨
  
- 통관은 수입지 해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마지막 단계로 해관담당자는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등의 통관 절차를 재확인한 후, 확인 인장을 찍고 수출입화물을 반출시키며 일반 수출입 화물의 경우 이로써 모든 절차가 종료됨
  - 보세가공 무역방식의 수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납부 수입화물, 임시수출입 화물, 증계운송화물 및 기타 미납세 수입화물의 경우 개항지 해관은 신고서류의 심사 확인 후 화물을 통과시키며 수출입화물은 후속관리로 전환
  
- 개항지 해관에서 통과된 후속관리대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해관은 규정기한 내 검사확인을 하며 서류보완 및 관세 징수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
  - 가공무역방식 수입화물의 경우, 해관은 가공무역계약 기한내 수입 및 재수출 현황 및 잔고량 등을 확인하며 내수판매분의 서류보완 및 관세 징수 등이 이행된 후 가공무역계약의 통관이 종료됨
  - 임시 수출입화물의 경우, 규정기한 내 임시 수출입화물의 재수출입 현황 등을 대조하고 관세징수 및 확인 절차가 이행된 후 최종 해관감독이 종료됨
  - 특정 감면세 화물은 수입화물의 해관감독기한 만료 후 감독해제 신고를 거쳐 '감면세 수입화물의 해관감독 해제증명'의 발행 후 해관감독 업무를 종료함

다. 후속단계 조치사항



- 후속단계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 요

구에 따라 화물을 수출입할 때, 장치, 가공, 조립, 사용, 유지보수 후에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해관에 상술한 수출입화물의 정산(核銷), 종결(銷案), 감관의 해제 등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의 업무를 포함함

- 보세가공 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함
- 특정감면세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감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관감관기간 내에 해관의 비준을 받아 판매, 양도, 반송, 폐기한 경우에는 해관에 감관해제를 신청해야 함
- 임시수입화물의 경우,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임시수입이 규정한 기한 내에 또는 해관의 비준을 받아 임시수입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재수출하거나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종결을 신청해야 함
  - 임시수출화물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임시수출이 규정한 기한 내에 또는 해관의 비준을 받아 임시수출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재수입하거나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난 후에 종결을 신청해야 함
- 기타 수출입화물 중에 출료(出料) 가공화물과 수리화물, 일부 임대화물 등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종결처리를 신청해야 함

〈표 IV-3〉 무역화물 종류별 후속단계 조치사항

무역화물종류	조치사항
보세가공화물	규정된 기한 내에 정산 신청
특정감면세화물	해관감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관감관기간 내에 해관의 비준을 받아 판매, 양도, 반송, 폐기한 경우에는 해관에 감관해제 신청
임시수출입화물	임시수입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 재수출하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종결 신청
기타수출입화물	출료가공화물과 수리화물, 일부 임대화물 등은 규정된 기한 내에 종결처리

자료: 관세무역연구회(2011)에서 요약·재구성

### 3. 통관 서류 및 기타 요건

#### 가. 통관 서류

- 통관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됨<sup>107)</sup>
  -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 ① INVOICE(운송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② 포장명세서(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 ③ B/L(해운 수출입의 경우)
    - ④ AWB(항공운송의 경우)
    - ⑤ 소포명세서(우편운송의 경우)
    - ⑥ 화물수취증(육상운송의 경우)
    - ⑦ 수출대금영수 신고 확인증(수출의 경우)
    - ⑧ 해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 증명서
  - 특수서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 증서
    - ①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상무부 수출입허가증 등)
    - ②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 ③ 가공무역수책
      - 국가수출 장려를 위해 가공무역업체의 수입원자재 보세처리, 수입통관 시 관세부과 면제, 가공무역수책에 수입사항 기록 후, 재수출 수량에 대해서 등록말소 처리
      - 모든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며, 관할해관에 신청하여 처리
      - 수책기록 내용에 근거하여 BOM<sup>108)</sup>갱신 및 수책 변화 수출입 현황을 관리
  - 예비서류: 필요시 해관이 요구하는 서류
    - ① 무역계약서
    - ② 원산지 증명

107) KOTRA, 「중국 국가정보: 무역, 통관 및 운송」, 2013

108) Bill of Material(제조사양서)

- ③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 ④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 「수출입화물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해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 해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이며, 중국해관의 현행 신고서는 1996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무역방식별로 양식 색상이 다름
  - 일반무역방식의 통관신고서는 백색
  - 원자재조달 가공무역의 통관신고서는 분홍색
  - 가공조립무역의 통관신고서는 옅은 녹색
  -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관신고서는 옅은 남색
  - 수출세금 환급의 통관신고서는 옅은 황색
- 일반 수출입화물은 동일 양식의 통관신고서 3부(각각 해관보관용, 해관통계용, 기업보관용)를 작성하며,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통관 등록시스템의 경우, 신고서 1부만 작성하여 등록센터에 제출함
  - 전산화 등록시스템의 경우 우선 신고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해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통관신고서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신고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짐
- 위탁가공무역과 원자재조달 가공무역의 경우, 수입 시에는 통관신고서 4부를 작성하며 기본 3부 외에 제4부는 해관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수출 시에는 외화 수취가 없으면 4부를 작성하여 제4부는 해관신고 확인용, 외화 수취가 있으면 5부를 작성하여 제5부는 수출외화대금 영수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함<sup>109)</sup>
- 기타 무역방식의 경우, 수입 시에는 외화결제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외화결제가 있으면 4부를 작성하여 제4부는 수입외환대금 결제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수출 시에는 세금 환급 혹은 외화수취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세금환급 혹은 외화수취가 있으면 4부를 작성

---

109) KOTRA(2013)

하여 제 4부는 수출외화대금 영수신고 확인용으로 사용함

- 최근 중국 해관은 중국 해관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3년간 ‘페이퍼리스 통관’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음<sup>110)</sup>
  - 대외무역 총량의 80%를 차지하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 난징(南京), 닝부어(寧波), 항저우(杭州), 푸저우(福州),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궁베이(拱北)와 황푸(黃浦) 등 12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며 2015년부터 전 해관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각 해관 AA등급, A등급 신용의 기업과 일부 B등급 기업의 통관 시 페이퍼리스 업무를 진행함
- ‘페이퍼리스 통관’이 실시될 경우, 해관은 기업의 위험등급(신용도)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리함
  - 과거 수출입회사가 제공한 통관신고 면장 및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통관 수속을 진행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IT를 기반으로 한 「China Electronic Port(中國電子口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고한 통관 면장 및 첨부서류의 전자 정보에 근거하여 검사 및 화물 통관 수속을 진행하게 됨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 회사에서 ‘전자지불(Electronic payment)’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페이퍼리스 통관’ 진행이 불가함

#### 나. 통관 관련 기타 요건

- 중국 해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 대상은 해관에 등록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이며, 해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자격을 확인함
  - 해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해관에

110) 중국해관총서(2012), KOTRA, 「해외투자속보」(2012. 12. 26)에서 재인용

등록하여야 함

- (대행)통관업체는 해관에 등록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어야 하고, 통관인원은 해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이어야 함
  
- 수입화물의 통관 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중계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 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임
  - 수입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해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화물은 해관에서 인수하여 법 규정에 따라 공매함
  - 수출화물의 통관신고는 화물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해야 함
  
- 수입화물 수하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해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규정에 따라 신고지체가산금을 부과함<sup>111)</sup>
  - 신고지체가산금의 징수는 운송수단이 입국 신고한 날부터 시작하여 제15일째 되는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관 신고일을 종료일로 함
  -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임
  - 신고지체가산금은 통관 신고일과 종료일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 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50위안임
  
- 이전통관은 개항의 수출입화물의 분산 운송을 가속화하고 송수화인의 해관수속 편의를 위해 해관감독화물을 기타 해관지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통관방식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됨<sup>112)</sup>
  - 중국 내 입경 후 해관설치 지역으로 운반, 수입 통관수속을 받는 화물
  - 출발지 해관에서 수출통관 후 출항지역 해관으로 운송되어 통과하는 화물
  - 중국 내 어느 해관지역에서 다른 해관지역으로 운송되어 해관감독을 받는 화물

111)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14호, 2011

112) KOTRA, 「중국 국가정보: 무역, 통관 및 운송」, 2013

- 이전통관 화물의 통관 절차는 수입화물의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해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해야 함<sup>113)</sup>
  - 신고인은 「이전통관 화물운송 신고서」를 작성한 후 해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 3부를 발급하고, 신고인은 해관에 신고서 및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도착지 해관 발행), 기타 관련서류(B/L, 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입항지 해관은 제출서류를 심사확인 후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함
  - 신고인은 해관의 지정경로에 따라 규정기한 내 수입화물을 도착지 해관에 운송하며 도착일부터 14일 내에 통관 및 납세수속을 신고해야 함
  
- 이전통관 화물은 해관의 허가 없이 개봉, 재포장, 대체교환, 인출, 인도하지 못하며 해관이 운송수단 및 화물에 첨부한 봉인을 임의로 뜯거나 훼손할 수 없음
  - 이전통관화물은 해관의 지정창고 및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관리인은 해관 규정에 따라 화물의 입출고 수속을 처리함
  
-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에 입항지 해관에 통관수속을 신고하며 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4일 내에 수입수속을 신고해야 함<sup>114)</sup>
  - 규정기한 초과 시 「해관법」에 근거하여 신고지체금을 부과함
  -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도착지 해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전매 처분되며 처분소득액은 운송, 하역, 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됨

---

113) KOTRA(2013)

114) KOTRA(2013)

## 4. 보세화물과 보세 심사제도

### 가. 보세화물의 특징

- 보세화물이란 일반 수출입화물과는 달리 해관의 감관하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화물을 말함<sup>115)</sup>
  - 「해관법」에서는 보세화물에 대하여 “해관 비준을 받고 납세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장치·가공·조립 후 재수출하는 화물”이라고 정의함
  
- 보세화물은 특정 목적, 일시 세금납부 면제, 재수출과 같은 3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sup>116)</sup>
  - 보세화물은 장치·보관 등의 무역활동과 가공·조립 등의 제조가공활동의 2가지 특정 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화물로 한정하며, 공사시공, 과학실험, 문화체육활동 등과 같이 기타 목적을 위해 일시 수입되는 화물과는 차이가 있음
  - 보세화물이 세금납부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것은 납부가 일시 면제되었다는 뜻이지 면세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며, 화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기다렸다가 해관이 과세와 면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재수출은 보세화물을 이루는 중요한 전제가 되며, 보세화물은 일반화물과 같이 수입하고 납세수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태 또는 가공 후에 제품을 재수출하여야 함
  
-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 및 해외자금, 기술의 유치를 위해 일련의 수입우대정책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보세화물과 감면세 대상화물은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우나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sup>117)</sup>
  - 보세화물은 중국 내 사용 및 소비자가 최종목적이 아닌 재수출을 장려하는 목적으

115)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1호

116)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117) KOTRA(2002)

로 실시하는 보세우대정책임

- 감면세 화물은 중국정부가 특정 지역, 기업, 용도의 수입화물에 대해 중국 내 사용 및 소비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부여한 세수우대정책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입설비, 기업의 기술 개조를 위한 선진 기술장비의 수입 등이 감면세 대상에 해당됨
- 감면세 화물의 범위는 주로 고정자산투자부분으로 기계장비, 측정기기 등이며 보세 화물은 주로 유동자산부분으로 원자재, 부품, 조립품 등이 해당됨

#### 나.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

-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는 ‘계약등록 → 화물수입 → 장치 또는 가공 → 재수출 → 계약말소 종결’의 순서대로 진행됨<sup>118)</sup>
- 계약등록은 보세화물 경영회사가 허가서·계약서·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해관에서 계약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로 해관 심사가 끝나고 등록을 마치면 등기수첩을 발급받게 됨
- 해관에 기등록한 계약상의 보세화물이 실제로 반입되었을 경우, 경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이 발급한 ‘등기수첩’과 기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입항지 해관에 가서 신고하고 수입절차를 진행함
- 보세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면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장치하거나 또는 해관에서 허가한 가공생산기업에 교부하여 제조가공을 진행함
  - 장치기간 만료 또는 제품 가공 후 재수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동 보세화물 ‘등기수첩’과 기타 증빙서류를 가지고 출항지 해관에 가서 신고하고 수출절차를 진행함

118)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제2011-1호

- 계약등록 만료 또는 가공제품 수출 후에는 일정 기한 내에 경영회사가 가공무역 등기수첩과 수출입화물신고서 그리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약등록 해관에 가서 등록말소 수속을 해야 함
  - 해관은 보세화물의 수입과 장치·가공·사용과 수출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한 후 동 등록계약을 말소종결 처리함
  - 이는 보세화물 전체 통관 절차의 마무리로서 해관과 경영회사 간의 감독관리 법률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제됨을 의미함

#### 다. 보세 심사제도

- 보세 심사는 해관이 보세기업의 경영행위를 검사·관리 및 감독하는 것으로 보세가공 및 보세물류화물에 대한 검사, 대조 및 조사진행, 관련 보세기업 경영행위의 진실성 및 합법성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sup>119)</sup>
- 보세 심사는 장부와 물품의 대조 및 확인 등 실지 검사 또는 피심사자가 제출한 서류증명서와 보고한 전산자료에 근거한 서면심사로 진행됨
- 대상기업은 장부 등에 재무상황 및 관련 보세화물 반출입, 사용 등을 기록하고 합법, 유효한 증명서에 의거하여 당해 장부를 정산할 의무가 있음
- 보세 심사시기는 가공기업은 보세가공업무 등록절차 신청 시부터 보세가공수책 말소정리 완료 시까지 보세가공화물 및 관련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물류기업은 보세물류화물의 해관감시구역 및 보세감시장소 반입 시부터 반출 시까지 보세물류화물 및 관련 보세물류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함
- 심사대상은 가공기업은 신고 수입원재료, 수출완제품, 내수판매물품 및 외주가공물품의 품명, 품목분류번호, 규격, 수량 및 소요량 등 현황이며, 물류기업은 보세물류화물의 반출

119) 관세청, 「2012년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설명자료」, 2012

입, 재고, 가공, 양도 등 처분현황과 보세물류기업이 신고한 내수판매물품의 품명, 품목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임

- 심사완료 후 15근무일 내에 결과가 보고되고, 이 내용이 대상기업에 통보되며,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시행해야 함

## 5. 가공무역제도

### 가. 가공무역제도 개관

- 가공무역이란 내료가공과 진료가공을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원재료 및 보조재료, 부속품, 소재와 부품, 포장물품 등을 국내기업이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함<sup>120)</sup>
  - 내료가공(來料加工)<sup>121)</sup>은 국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원료를 제공하고 경영기업은 수입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또는 조립한 후 가공비만 받고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판매하는 경우를 말함
  - 진료가공(進料加工)<sup>122)</sup>은 경영기업이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에 다시 이를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 중국은 가공무역을 수출을 확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주요수단으로 삼아 왔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보세정책을 실시함
  -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원부자재의 수입 시 보세통관을 허용하고, 가공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원부자재의 매입단계에서 납부한 증치세를 환급함
  - 극소수의 민감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쿼터제한을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

120)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2011-3호, 2011-16호

121) '위탁가공무역'이라고도 함

122) '원자재 조달 가공무역'이라고도 함

으로 쿼터허가증 관리도 실시하지 않음

- 국가에서 면세불허를 규정한 소수 상품을 제외하고는 외상(外商)투자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공무역 수입설비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의 징수를 면제함
-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 상품에 대한 분류관리(금지류, 제한류, 허가류)를 실시하고,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AA, A, B, C, D류)를 실시함

〈표 IV-4〉 내료가공과 진료가공 비교

	내료가공	진료가공
개념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시 기계설비를 제공하여 가공한 제품을 외국업체에 수출하고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무역	중국내 업체가 외화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품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국외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제품 소유권	수입한 원재료, 부품은 외국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입한 원재료 및 부품과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은 외국업체에 귀속	수입한 원재료, 부품과 가공 후 수출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은 중국내 업체가 소유
특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무역용 수입 원재료, 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 (다만, 식용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제분유, 원유는 제외)</li> <li>- 제품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 (다만, 쿼터대상물품인 경우는 수출허가증 필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료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등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li> <li>- 가공생산 수출제품에 직접 사용되고 가공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연료유는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 및 관세 면제</li> <li>- 직접 생산에 사용될 임대생산설비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면제</li> <li>- 기술개선 등으로 절약된 원재료 또는 제품을 내수판매하는 경우 가액이 수입 원재료의 3% 이하 인민폐 10,000원 미만일 때 수입허가증 면제 및 면세 처리, 이를 초과할 경우 수입허가증 제출은 면제하되 세금은 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원재료, 부품 등은 수입시 보세처리한 후 가공 후 재수출한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하고, 국내판매분에 대해서는 과세</li> <li>- 가공중 소모되는 합리수량 범위내의 소모재료(촉매제, 촉진제, 세정제 등 화학물품)는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실제 소모된 수량에 따라 면세 처리</li> <li>- 재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자 등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소량의 보조재료, 포장재료 및 타당한 소형소모성 생산공구는 면세처리</li> </ul>

〈표 IV-4〉의 계속

	내료가공	진료가공
절차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해관에 계약등기 → 해관 심사후 전액 면세 또는 비율 면세 실시 등을 확정 → 가공무역등기수책과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연락서 발급 → 동 통지서 은행 제출 → 보증금대장 개설</li> <li>- 가공용 원재료 등 수입시 수입신고(등기수책과 수입신고서 등 수입관련 서류를 해관에 제출) → 해관은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면세 통관 허용 → 규정된 기간 내에 계약 이행 후, 해관에 등기 말소수속</li> <li>- 기업의 계약대장 기간 만료시, 해관에 등기말소자료를 송부하기 전 반드시 당해 계약의 모든 달의 집중통관 수속을 완료(만일 계약의 남은 원자재가 존재하면 재고이월수속을 한 후에 해관에 등기말소자료 송부 가능)</li> <li>- 계약기간 만료 후 반드시 등기말소(核銷) 수속 (1개월 내에 등기수첩, 수입통관서류, 수입재료 및 부품사용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관에 송부) → 은행보증금대장상에 말소처리</li> </ul> </li> <li>※ 1개월이 경과하여 송부할 경우 반드시 서면 해명서를 제출, 2개월이 경과하여 보고할 경우 해관은 기간경과 등기말소에 따라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로 및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해관의 허가없이 국내에 판매하거나 타용도에 사용불가(내수판매 필요시 경제무역 관련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관의 허가 대상 물품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li> <li>- 내로 및 진료가공용 면세수입 원재료 및 부품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국내의 기타 원재료 및 부품과 교환 사용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가공계약은 반드시 대외경영권을 가진 회사가 서명해야 하며, 중국가공업체와 공동으로 연합하여 대외계약을 할 수 있음</li> <li>- 가공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은 반드시 수출해야 하며, 국내판매하고자 할 경우 경제무역 관련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허가 대상물품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함)</li> <li>- 외국의 위탁업체는 내료가공한 완제품을 중국국내에서 인수할 수 없음</li> <li>- 내료가공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정밀 재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 쌍방은 관련 매매계약서 또는 위탁가공계약서를 해관에 제출하여 이전수속을 해야 함</li> <li>- 내료가공을 수입 원재료, 부품은 해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판매하거나 저장할 수 없으며 계약의 취소, 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관에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가공용 수입원재료 등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제품을 가공하여 재수출하여야 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지 해관에 기간연장 신청가능</li> <li>- 외국 수입자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보조재료와 포장재료는 가공 후 남은 잔량이 있는 경우, 해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가공 수출계약물품의 생산에 계속 사용가능하며, 내수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 납부 후 수입통관</li> <li>- 진료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화물에 준하여 과세 처리</li> <li>- 가공수출제품의 긴급 수요 등 특수사정으로 국내의 동 품종, 동 규격, 동 수량의 원재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이익의 과다나 가격차 등의 문제를 불문하고 관할지 해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li> </ul>

자료: 한국무역협회(2011)

## 나. 가공무역기업의 심사 및 비준

- 「가공무역심사관리 잠정방법」에 따라 내료가공 및 진료가공을 포함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은 반드시 성급 상무부(상무부처)문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가공무역기업은 크게 가공무역 경영기업과 가공무역기업으로 구분됨<sup>123)</sup>
  - 가공무역 경영기업은 대외적으로 가공무역수출입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수출입회사와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관련기관의 비준을 받아 내료가공(來料加工) 경영권한을 부여받은 대외가공조립서비스회사를 가리킴<sup>124)</sup>
  - 가공무역기업은 경영업체의 위탁에 따라 수입원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을 담당하는 생산법인이나 또는 경영기업이 설립한 산하 법인자격은 없으나 독립적인 채산제를 시행하며 또한 공상영업증을 취득한 생산공장을 가리킴<sup>125)</sup>
- 국가에서 가공무역 실시를 금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상품종류별로 분급관리와 분급 심사를 실행함
  - 수입원자재가 면화, 설탕, 식용유, 양모, 천연아교, 원유, 제품유 등 국가에서 가공무역 수입에 대해 총량평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국을 경유하여 성(省) 대외경제무역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성(省) 직속기업은 성(省) 대외경제무역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와 현성(縣)의 각 기업은 등록지 대외경제무역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경영회사가 가공무역업무 수행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sup>126)</sup>
  - 경영기업의 서면신청서 및 경영기업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
  - 경영기업 수출입권 비준서류(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 가공기업 등기 소재지 이상 외경무 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기업생산능력증명 원본

123) KOTRA(2013)

124) 한국무역협회, 『중국 비즈니스 실무 가이드』, 2011

125) 한국무역협회(2011)

126) KOTRA(2013)

및 가공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

- 경영기업이 체결한 수출입 계약서 원본
  -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체결한 가공협정(계약서) 원본
  - 심사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증명 및 자료
  - 경영기업 혹은 가공기업이 외상투자기업에 속하는 경우 외경무 주관부문이 비준한 생산경영범위와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정관 △생산능력, 투자금 납입 및 연도검사 합격을 확인하는 증명서류
  - 수입원료가 폐금속 혹은 물품에 속하는 가공무역의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국가환경 보호국이 발급한 원료수입허가 서류
  - 수입원료 혹은 수출 완제품이 독성화학품 및 군민통용화학품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공무역의 경우 유관부문이 발급한 원료수입 혹은 완제품수출 비준서류
- 가공무역심사 비준기관은 제출된 각종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고 자료가 완전하며 오류가 없을 시, 「가공무역업무 비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입원재료 신청목록」과 「수출제품 및 대응 수입원재료소모품 목록」에 날인하여 교부함
- 상무부(상무부처)문의 가공무역경영 허가를 얻은 후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비준서」와 「가공무역계약서」를 가공기업 소재지의 주관 해관에 제출하고 신고등기 수속을 하며 「가공무역 등기수첩」을 수령함
- 생산가공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등기 수속을 하고 기업코드를 등록하고, 경영기업은 주관 해관에 신고, 등기업무 수속 시 반드시 가공생산기업의 해관등기코드를 기입해야 함
  - 만약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가공생산(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외상투자기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 경영기업의 해관등록코드에 가공생산 기업코드를 추가하며 생산기업이 다시 해관에 등기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음
- 가공무역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비준서」 규정에 따라 기한 내 가공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한편, 수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수입자재는 수입일부터 1년 내에 완제품을 가

공 생산하여 수출해야 함

- 이 중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및 천연고무의 가공무역 완성품은 수입, 가공 후 6개월 이내 반출해야 함

#### 다. 가공무역 상품 분류관리

- 중국은 가공무역물품을 금지물품, 제한물품 및 비제한 물품의 3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음
- 금지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규정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 및 해관이 감독·관리할 수 없는 품목임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헌옷, 음란서적, 유해물질 및 방사선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 분해·수선용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주요부품
  - 재배·양식 등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종자, 종묘,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및 항생제 등
- 제한물품은 수입 물품의 가격 변화가 크고 해관이 감독·관리하기 쉽지 않은 민감한 품목임
  - 주요물품으로는 플라스틱 원료, 폴리에스테르절편, 화섬원료, 면사, 면화, 당류, 식물성 유지, 천연고무, 양모 등
  - A류 기업을 제외하고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가공제품의 수출 후 환급함
- 비제한물품은 금지물품과 제한물품을 제외한 기타물품으로 C류 기업을 제외한 기타업체가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시 보증금 예치 불필요 및 관세 등을 면제함
- 2004년 이후 가공무역에 의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선진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가공무역방식에 의한 무역구조가 중국산 브랜드의 육성을

저해하고, 중국기업이 외국기업의 단순한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저부가가치형과 환경오염형 가공무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가공무역방식에 있어서도 내료가공에서 진료가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가공무역 제한 품목 설정 및 관리강화 조치가 이어지게 됨

- 2004년 11월 1일부터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고 기계·전자제품 및 폐기자재의 가공무역을 금지함
- 2005년 5월 19일부터 철광석, 선철, 폐강, 강정(鋼錠), 희토원광, 인광석 등 29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함
- 2005년 8월 22일부터 산화알루미늄, 철합금광 등 11개 광산물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함
- 2006년 1월 1일, 가공무역을 위한 생가죽, 농약원료, 원목과 펄프, 동정광, 아연정광 및 주석정광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600여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2006년 9월 15일 비금속광물, 에너지, 비철금속 및 스크랩, 세라믹 및 내화 제품, 캐시미어, 목탄, 침목, 코르크제품, 일부 목재의 일차가공품 등 191개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품목의 가공무역을 금지함
- 2006년 11월 22일, 고령토, 규조토, 석고, 운모, 무연탄, 갈탄, 코크스, 액화천연가스, 동, 니켈, 알루미늄, 아연, 주석, 텅스텐, 마그네슘, 코발트 등 804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함
- 2007년 4월 23일, 1,140개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함
- 2008년 1월 21일부터 동·식물, 동식물 유지, 식품, 음료, 광산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철강 및 그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589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에 대해 신규로 가공무역을 금지함

- 2008년 4월 5일부터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조정하여 1,816개 품목으로 확정함(수출 금지 1,295개, 수입금지 162개, 수출입 모두 금지 186개, 중고 기계·전기제품 174개, 1개 품목은 수출·수입 중복된 품목)
- 하지만,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인한 중국의 수출 감소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가공 금지 및 제한품목을 완화함
  - 2009년 2월 1일부터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대상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개정 시행하여, 제한대상 품목은 1,730개 품목을 삭제한 500개 품목으로, 금지대상 품목은 27개 품목을 삭제한 1,789개로 축소함
  - 2009년 6월 3일부터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2009년 HS Code 분류)을 1,759개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여 30개 품목을 추가로 삭제함
- 최근 중국 정부는 국제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의 가공무역금지 및 제한물품의 목록을 조정하여 관리함<sup>127)</sup>
  - 가공무역 금지물품은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등 목적, 고오염 배출 및 고에너지 소모품목 등의 가공무역을 계속 금지함
  - 종전 금지목록에서 규소, 도자제품, 유리제품 등 44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조정후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총 1,803개 HS 10단위 세목의 품목임
    -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 식용염, 폐규소 등 1,286개 품목
    - 가공무역 수입금지품목: 생석회 등 336개 품목
    - 가공무역 수출입금지품목: 화학조미료, 폐주철 등 181개 품목
  - 가공무역 제한물품은 종전의 제한물품 중에서 플라스틱원료 및 제품, 목제품 및 방직품 등 총 1,730개 품목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전체 제한품목(2,247개)의 77%를 차지함
    - 조정후 가공무역 제한품목은 총 500개이며, 그중 수출제한품목은 선형저밀도 폴리 에틸렌 등 106개이고, 수입제한물품은 냉동닭 등 394개임

127)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 라. 가공무역기업 분류관리 및 은행보증금 제도

- 가공무역업체를 업체의 성실도, 과거 위반사례 등을 감안해 AA, A, B, C, D 5종류로 구분해 차등관리하고 있음<sup>128)</sup>
  
- A류 기업(AA류 포함)은 해관이 주재원을 파견해 상주하거나 해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 위반사실이 없는 보세공장이나 비행기, 선박 등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가공무역기업임
  - 이 기업들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하여 해관은 보세관리감독을 실시하나,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 B류 기업은 과거 위반사실이 없고 경영실적이 건실한 가공무역업체로 비제한 품목의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보증금 예치가 필요 없고, 관세 등을 징수 유예함
  
- C류 기업은 과거 상무부 및 해관 총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불성실 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시 관세 등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가공제품을 수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함
  
- D류 기업은 밀수행위 또는 3차 이상 해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해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가공무역 경영권 취소를 할 수 있음

---

128) 한국무역협회(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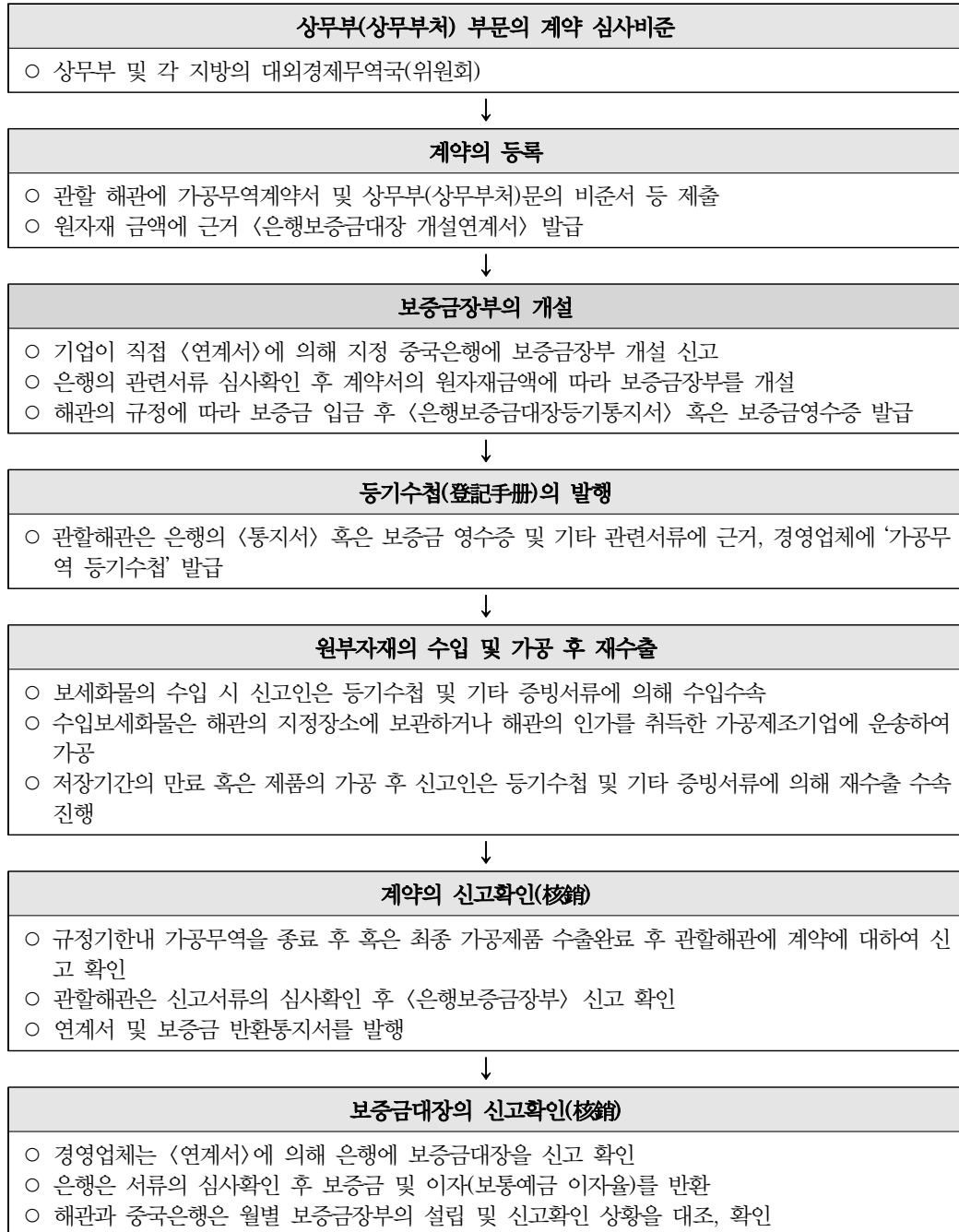
〈표 IV-5〉 가공무역기업 차등관리 주요내용

구분	특혜대우 및 관리내용
A류 기업 (AA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관업무현장에 전문창구 설치, 수출입신고, 심사 및 통관 우선 처리, 업체 내에서의 출장 검사 실시</li> <li>- 가공무역업체인 경우 해관직원 상주업무 처리, 해관과의 전산망 연결 및 전산수출입신고 허용, 은행보증금 대장관리 면제</li> <li>- 규정상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에 의한 통관 허용</li> <li>-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등기수책 우선 발급</li> </ul>
B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해관 관리제도 적용</li> </ul>
C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제공물품의 경우 현금 보증금 제출의무,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관세 등의 일정비율 보증금 예치</li> <li>- 수출입물품 중점 검사, 엄격한 사후관리 실시</li> <li>- 관할해관 이외 지역 해관에서의 수출입신고 불허</li> </ul>
D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가공무역 불허,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관 검사시 개장검사 실시</li> <li>- 수출입 신고 자격, 보세운송 자격, 보세화물 보관자격 등의 일시 정지 또는 취소</li> <li>- 위반사항을 대외무역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허가 등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조치</li> </ul>

자료: 한국무역협회(2011)

- 보세제도의 중요기능은 위탁가공, 원자제조달 가공무역 등 대외가공 무역서비스이며, 가공무역 관련 해관, 은행 등의 감독강화 일환으로 중국 해관은 1996년 7월 1일부로 「가공무역의 수입원자재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실시하였음
- 신고인은 상무부(상무부처) 및 해관의 비준서 등에 의해 지정 중국은행에 수입 원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금대장을 개설하며 가공제품의 재수출 후 해관 증빙서류에 근거 은행보증금대장을 신고 확인함
  - 중국은행은 신고인의 관할해관 소재지에 위치한 은행분(지)행을 가리키며 중국내 수입원자재 보증금대장업무를 취급하는 유일한 지정은행으로 다른 은행은 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그림 IV-3] 은행보증금 대장제도 기본절차



자료: 중국 상무부, KOTRA(2013)에서 재인용

- 가공수출계약을 위해 외국인이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한 보조성 원자재가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은 경우 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을 면제함
  - 예를 들면 해관이 발표한 '보조성원자재 목록'(총 78종)내의 품목의 수입액이 5천달러 미만인 경우 관할해관은 수출가공 계약에 근거하여 소모량을 확정하는 동시에 가공무역등기수책 및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을 면제함
  - 보조성 원자재 수입 시, 입항지 해관은 관할해관의 심사확인을 거친 계약에 근거하여 수입화물을 통과시키며 가공제품의 재수출 후 실제 수출상황에 근거, 관할해관이 보조성 원자재의 신고확인을 진행함
  
- 외국인이 제공한 수입액 5천달러 이상, 1만달러 미만의 '목록'내 품목 및 1만달러 미만의 '목록' 외 품목은 은행보증금대장 관리대상에서 제외됨
  - 관할해관은 수출가공계약에 근거, 보조성 원자재의 소모량을 확정된 후 가공무역등기수책을 발행하며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 및 가공완성품의 수출에 대한 감독 및 계약에 대하여 신고 확인함
  
- 보증금대장이 면제 적용되는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은 가공수출무역의 목적으로 제한되며 주요 원자재는 중국 내에서 구매해야 함
  - 만일 주요 원자재와 함께 보조성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할해관은 일반 가공무역의 관리방법에 따라 계약등록수속을 처리하며 은행보증금대장 관리범위에 귀속시킴
  
- 중국해관은 가공무역의 지원조치로 가공무역대장의 전산관리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보증금 납부 및 정산 등 전산네트워크 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 전산관리 대상기업은 각 해관이 관할구역의 상황에 따라 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며, 대상은행은 각 해관 관할구역의 중국은행 및 공상은행의 산하 분점임
  - 내수판매절차(월별신고 등) 및 무역관리 제한요구 간소화 등을 지원하여 가공무역상품의 내수판매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가공무역 전자관리 시스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sup>129)</sup>
  - 무역경영영업증(사본)
  - 해관이 기업에 실시하는 전자시스템 관리의 검수 합격증명서
  - 경영기업 수출입 경영권 허가 문건 혹은 외상투자기업 허가 증명서(사본)
  - 연도별 검수합격 기록(설립허가를 새로이 받았지만 연도별 검사기간이 되지 않은 기업은 불포함)
  - 가공 기업 등록지역의 현(縣)급 이상의 대외무역관리기관이 발급한 가공기업 생산 증력 증명 원본
  - 심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와 자료
  
- 대외무역관리기관은 전자시스템 관리 지정 기업의 신고를 받으면 심사 후 「전자시스템관리기업 가공무역업무허가서」를 발급하고, 해관은 동 허가서를 근거로 가공무역 전자장부를 만들고 전자시스템 관리감독을 실시함

#### 마. 수출가공구와 보세구

- 수출가공구(出口加工区)는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기업을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현재 중국 전체적으로 60개가 있음<sup>130)</sup>
  - 중국은 2000년부터 수출가공구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방법」과 2003년 11월부터 시행된 「해관의 수출가공구 관리감독 잠정방법」에 따라 운영됨
  
- 수출가공구에 대한 주요 세관절차로는 구외국내로 반출하는 화물은 수입화물관리규정에 따라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구외국내에서 가공구내로 반입하는 화물은 수출로 인정하여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29) 한국무역협회(2011)

130) 한국무역협회(2011)

- 수출가공구 내 기업이 가공무역업무를 수행시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실행하지 않고, 해관은 가공무역수책관리를 하지 아니하며, 구외에서 가공구 내로 반입한 화물은 구내기업의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후에야 국외로 반출할 수 있음
  
- 한편 2006년에는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가공구 내 가공무역과 관련한 종합 조치가 발표되어 연해지역 수출가공구에 대해서는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였으며, 에너지 다소비형과 환경오염 유발 업종 등 산업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수출가공구 진입을 금지함

〈표 IV-6〉 일반구역과 수출가공구 비교

구분	일반구역	수출가공구
수출입화물관리	가공무역계약으로 수출을 해야 하며 매번 장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삭제하는 수속 시행	등급제를 실시하여 6개월에 한번씩 장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삭제하는 수속 시행
수책관리	「가공무역수책」제도 실시	「가공무역수책」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전자장부제도 실시
증치세	17%	면제
국내에서 원자료 수입시	제품이 완전히 국경을 떠나야 환급	수출가공구에 들어올 시 수출로 인정하고 환급(退稅)
쿼터 허가증	쿼터 수권(授權)관리 실시	쿼터 수권관리 비실시
대장 및 보증금	대장(台賬) 설치 및 보증금 영치	대장 설치 및 보증금 면제
생산설비수입	권장류 및 제한 율류 프로젝트에 한하여 관세 면제	전부 관세 면제
생산시 소모하는 물, 전기, 가스 등	세금 환급 없음	세금 환급
화물통관	일반적으로 정상적 통관	쾌속 통관 가능

자료: 중국 상속경제기술개발구(2013)

- 보세구(保税区)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무역과 보세업무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국제상의 자유무역구와 비슷하며,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은 국제무역, 보세 창고 저장, 가공 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1997년부터 시행된 「보세구 관리감독방법」에 따르며, 현재 보세항구 14개 지역, 보세물류단지 5개 지역으로 이루어짐
  
- 보세구 구내기업은 진/출경무역, 항구 경우 반출무역, 통과무역에 종사할 수 있으며, 구내와 경외(境外) 진출 화물에 대해 해관은 면세 혹은 보세정책을 실시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며 수출입 쿼타(QUOTA),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지 않음<sup>131)</sup>
  - 무역기업이 구외에서 화물을 구입해 들여 다시 수출하여 국경을 넘어갈 경우 수출품 세금 반환을 할 수 있음
  
- 구내 가공무역기업은 분류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은행보증금대장을 설치하지 않으며, 제품을 구내 판매 혹은 수출할 경우 생산 환절의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음
  
- 가공수출제품이 경외에서 구내로 들어올 때, 원료, 부품은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하고 수출입 허가증 사용을 면제하며, 원료, 부품 가공주기의 시간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수출가공 기능과 각종 면세혜택 부여 면에서 동일하나, 수출가공구는 생산과 수출 이외의 다른 업무 활동을 하지 못함

---

131) 한국무역협회(2011)

〈표 IV-7〉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 정책 비교

구분		보세구	비보세구
투자경영	국내기업이 국제무역에 종사	격려	제한
	외국상인이 국제무역에 투자	격려	금지
	보세창고 저장과 간단한 가공정리를 할 수 있음	격려	제한
	국가 제한 유형 항목	허용	제한
	외국상인투자 서비스 무역	허용	제한
	경영범위를 넓히고 업무교차를 허용	격려	제한
	국내기업 가공무역	격려	제한
	구외기업에 위탁가공, 구외 위탁가공업무 접수	허용	해당업무 없음
해관	생산기업 자체 사용 기계설비 수입	수입관세 및 수입 부가세 징수면제	세금 징수
	기업이 자체 사용 사무용품, 기본건설물자 수입	수입관세 및 수입 부가세 징수면제	세금 징수
	생산용 원·부자재, 부품 수입	보세	세금 징수
	(구내 반입) 화물 수입	보세	세금 징수
	수출입상품 허가증, 수출입 쿼터	수령 면제	수령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	면역	분류관리
	보세화물 창고저장 시간	무제한	제한
외환	내자기업 외환계좌 개설	허용	허용 안 함
	수출입무역 외환심의와 장부 삭제	장부 심의 삭제 수요 안됨	장부 심의 삭제 수요됨
	기업경영 외환소득	자유보존	외환결산 혹은 액수한정
	물류배분 기업 외환 구입	허용	허용 안 함
세수특혜	수출제품 생산 증치세	징수 면제	면제 안 함
	비보세구역으로부터 화물을 구입하여 수출 혹은 가공 후 재수출할 경우 규정에 따라 수출부가세 반환할 수 있음	허용	허용 안 함
	기업 소득세 (비생산성기업)	15%	33%
	(생산성 내자기업)	1년 면제, 2년 감면	무감면
	2년 면제, 3년 감면	외상투자기업에 만 국한	

자료: 한국무역협회(2011)

〈표 IV-8〉 보세구와 수출가공구 비교

구분	보세구	수출가공구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가공 기능</li> <li>- 국무원의 비준</li> <li>- 다음 사항에 대해 면세 실시</li> <li>-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금형 및 수리용 부품</li> <li>- 수출상품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포장재료, 소모성 자재</li> <li>-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li> <li>- 생산에 필요한 수입자재에 보세를 실시하고, 은행 보증금대장제도 적용 배제</li> <li>- 수입쿼터와 허가증 제도 적용 배제</li> <li>- 상품 및 원자재를 중국 역내로 판매할 경우 수출로 간주</li> <li>- 보세된 반제품과 원료에 대해 역내 양도 가능</li> <li>- 가공 후 수출 시 증치세 부과 면제</li> <li>- 외환심사 수속 불필요</li> </ul>		
차이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무역, 수출가공, 보세창고, 상품전시 등의 업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가공에 한정. 소매, 무역, 중계 무역 및 기타 수출가공구와 무관한 업무 불가</li> </ul>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수출 모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만 가능</li> </ul>
	증치세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구역 벗어난 후 환급수속</li> <li>- 보세구역내 무역기업이 중국 관세 구역내 상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후 환급수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상품의 수출가공구 내 반입 즉시 환급수속</li> <li>- 수출가공구내 기업에 제품을 판매한 중국 관세권내 기업이 환급 수속</li> </ul>
	계좌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거래용 외화계좌와 자본거래 외환계좌는 기업 등록지 소재의 은행에 개설 (다만, 자본거래 계좌는 등록지 이외지역 개설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수출가공구내 은행에 외화계좌 개설 (다만, 수출가공구내 은행이 없을 경우 외환관리국이 지정한 은행에 개설 가능)</li> </ul>
	위탁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관의 인가를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위탁가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물품 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관련 절차 후 역외 반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가공구에 반입된 물품은 반드시 역내에서 실질적인 가공 후 역외 반출 가능</li> </ul>

자료: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2011)에서 재인용

## 6. AEO제도와 기업분류 관리제도<sup>132)</sup>

### 가. 우리나라의 AEO제도와 중국의 기업분류관리제도

- AEO제도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뜻하며, 관세당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의미함<sup>133)</sup>
  - 세계관세기구(WCO)는 급증하는 수출입안전망의 필요에 따라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으며, 이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이 바로 AEO임
  - 관세당국은 공인기준에 따라 AEO업체를 공인하며, AEO업체와 비AEO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함
  - 현재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EU(27개국) 등 주요 교역국가를 포함한 총 53개국이 시행중에 있으며 164개국이 WCO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AEO는 FTA와 함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의 주요 이슈임<sup>134)</sup>
  
- 우리나라의 AEO제도는 2009년 4월 도입 이후 2012년 10월 1일 기준 공인업체가 366개로 세계 6위 수준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고 있음<sup>135)</sup>
  - 2012년 7월 기준, 미국은 10,325개, EU는 10,649개, 중국은 2,377개(2012년 12월 기준), 캐나다 1,480개, 일본은 483개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 중국 해관은 이러한 세계관세기구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를 도입하여 수

132) 관세청,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자료」, 2012

133) 관세청 홈페이지, AEO제도 소개,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265&layoutMenuNo=198](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265&layoutMenuNo=198) (2013. 5. 13 접속)

134) 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 외국의 AEO제도, <http://www.aeo.or.kr/intro/intro09.php> (2013. 5. 13 접속)

135) 관세청 홈페이지, AEO공인기업명단, 관세행정안내 > AEO > AEO 공인 현황,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71&layoutMenuNo=204](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71&layoutMenuNo=204) (2013. 5. 13 접속)

출입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분류 관리제도》를 시행함

- 기업의 경영관리상황, 수출입신고 현황, 해관법령의 성실준수 여부에 따라 AA, A, B, C, D류의 5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관리함
  - AA류 및 A류기업은 통관편의 부여, B류기업은 일상적인 관리, C류 및 D류기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감독 실시
- 기업분류관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통관기업과 가공무역기업도 포함함
- 2012년 10월, 전국의 AA류기업은 2,377개, A류기업은 28,426개, B류기업은 508,730개, C류기업은 958개, D류기업은 254개임<sup>136)</sup>

〈표 IV-9〉 우리나라 AEO제도와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AEO제도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
적용범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 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총 9개의 당사 자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통관대행기 업), 가공무역기업 등 총 4개 당사자
목 적	기업의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법규준수도를 높 이기 위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촉진하고, 해관관리의 효과적인 시행과 수출입화물 의 안전과 편리를 목적으로 함
평가등급	3등급(AAA, AA, A)	5등급(AA, A, B, C, D)
심사내용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과 안정성 등	법규준수현황, 경영관리상황, 통관실적, 하위 등급 1년 경과 여부 등
유효기간	3년 후 갱신 심사	최초 신청업체는 C, D등급에 해당되는 사 항이 없으면 B등급으로 분류하고, 매 1년 경과시 상위등급 신청가능(법규위반 적발 시 바로 하위 등급으로 분류)

자료: 외교통상부(2012)에서 재구성

136) 한중 AEO 협력회의 설명자료(2012년 12월)

## 나. 기업분류 기준 및 기준별 통관 조치사항

〈표 IV-10〉 기준별 기업분류 및 통관적용 조치

구분	신용도	통관적용 조치
AA류기업	신용이 매우 우수한 기업	상응한 통관편의
A류기업	신용이 양호한 기업	
B류기업	신용이 일반적인 기업	통상적인 관리
C류기업	신용이 비교적 낮은 기업	엄격한 감시관리
D류기업	신용이 매우 낮은 기업	

자료: 외교통상부(2012)

- AA류 수출입 업체는 A류 관리조건에 부합하고, A류업체로서 1년 이상 관리를 받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sup>137)</sup>
  - 지난 1년간 수출입신고서 오차율이 3% 이하일 것
  - 해관심사검증, 해관관리, 기업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요구에 적합할 것
  - 「기업경영관리상황평가보고」와 회계사무소의 1년 회계심사보고서를 매년 보고할 것 (단, 「수출입업무 현황표」는 매 반기별로 보고)
  
- AA류 통관업체는 A류 관리조건에 부합하고, A류업체로서 1년 이상 관리를 받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sup>138)</sup>
  - 지난 1년간 수출입대리신고서와 입출경신고명세서가 총량 2만건 이상일 것(단, 중서부<sup>139)</sup>는 5,000건)
  - 지난 1년간 수출입신고서 오차율이 3%이하일 것
  - 해관심사검증, 해관관리, 기업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요구에 적합할 것
  - 「기업경영관리상황평가보고」와 회계사무소의 1년 회계심사보고서를 매년 보고할

137)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 해관총서령 제197호, 제6조, 2010

13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제12조

139) '중서부'란 동부지구 외의 기타 지구를 가리키며, 동부지구는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을 포함한다(「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제31조).

것 (단, 「수출입대리업무현황표」는 매 반기별로 보고)

- AA류 기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편의조치가 제공됨<sup>140)</sup>
  - 해관절차 종료 전에 담보제공 후 화물 우선 반출가능
  - 통관현장 검사 제외
  - 해관 전문직원 파견하여 기업의 해관관련 문제 해결 지원
  - 기타 A류기업에 대한 모든 편의 조치
  
- A류수출입업체는 B류 업체로서 1년 이상 관리를 받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sup>141)</sup>
  - 연속 1년 동안 밀수죄, 밀수행위 및 해관법규에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연속 1년 동안 지식재산권침해 수출입을 하거나 이로 인해 해관에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것
  - 연속 1년간 해관의 세금이나 상응하는 벌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지난 1년간 수출입총액이 50만달러 이상일 것
  - 지난 1년간 수출입 신고서오차율이 5%이하일 것
  - 회계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업무기록이 진실하여 믿을 수 있을 것
  - 스스로 해관관리에 협조하고, 적시에 각종 해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해관에 제출하는 영수증, 증거서류가 진실되고 완전히 갖추어지고 유효할 것
  - 「기업경영관리 상황평가보고서」를 매년 보고할 것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 송수화인신고등록증서」를 규정에 따라 갱신수속과 변경수속을 할 것
  - 연속 1년간 상무, 인민은행, 공상, 세무, 품질검사, 외환, 감찰 등 행정관리부문과 기구에 불량기록이 없을 것
  
- A류통관업체는 B류업체로서 1년 이상 관리를 받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140) 관세청, 「2012년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설명 자료」, 2012

14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 제7조

합<sup>142)</sup>

- 기업이나 소속 통관업무 종사자가 연속 1년 동안 밀수죄, 밀수행위 및 해관법규에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연속 1년 동안 대리신고한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해관에 몰수되지 않을 것  
(다만, 몰수를 당한 사실이 있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합리적 심사 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연속 1년간 해관의 세금이나 상응하는 벌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지난 1년간 수출입 대리신고서와 입출경신고명세서가 총량 3,000건 이상일 것
- 지난 1년간 대리 수출입신고서 오차율이 5% 이하일 것
- 법에 근거하여 장부와 영업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실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위탁신고업무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여야 함
- 「기업관리경영 상황평가보고서」를 매년 보고할 것
- 규정에 따라 신고등록허가 연장을 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통관기업신고 등록증서」를 갱신수속과 변경수속을 할 것
- 연속 1년간 상무, 인민은행, 공상, 세무, 품질검사, 외환, 감찰 등 행정관리부문과 기구에 불량기록이 없을 것

□ A류기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편의조치가 제공됨<sup>143)</sup>

- 기업신청에 의거 '내륙지 신고-개항지 통관' 등 신속통관방식 실시
- 기업신청에 의거 해관직원을 파견하여 생산과정 등에서 검사 실시
- 근무외 시간 및 공휴일 통관 절차 우선 예약
- 수출입상품 품목분류 및 분석절차 우선 처리
- 가공무역등록, 변경, 정산 신고 우선처리 등

□ 수출입업체가 C류와 D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아래 조건 중에 하나 일 때 B류수출업체 기준을 적용함<sup>144)</sup>

14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 제13조

143) 관세청(2012)

- 최초로 통관등기를 한 경우
  - 최초로 통관등기를 한 후, 관리 류별 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AA류기업이 원래 관리 류별에 적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A류 관리 류별 적용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
  - A류기업이 원래 관리 류별 적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 통관업체가 C류와 D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아래 조건 중에 하나일 때 B류 통관업체 기준을 적용함
- 최초로 통관등기를 한 경우
  - 최초로 통관등기를 한 후, 관리 류별 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AA류기업이 원래 관리 류별 적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A류 관리 류별 적용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
  - A류기업이 원래 관리 류별에 적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 B류기업에 대하여 해관은 일상적인 관리조치를 실시함<sup>145)</sup>
- 수출입업체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C류 관리를 적용함
-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 1년 내에 3회 이상 해관법규 위반행위가 있거나, 법규위반 횟수가 지난 1년간 수출입신고서와 입출국기록보고 건수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1년내 해관법규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벌금누계 총액이 인민폐 100만위안 이상인 경우
  - 1년 내에 수출입으로 인해 지식상품권 화물을 2차례 침해했거나 이로 인해 해관에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해관의 세금체납액 또는 상응하게 납부할 벌금이 인민폐 50만위안 이하인 경우
- 통관업체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C류 관리를 적용함<sup>146)</sup>

14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 제10조

145) 관세청(2012)

-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 1년 내에 3회 이상 해관법규 위반행위가 있거나, 1년내 해관법규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벌금누계 총액이 인민폐 5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 내에 대리신고한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해관에 몰수가 2차례에 달하고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지난 연도 대리신고한 수출입신고서 오차율이 10% 이상인 경우
  - 해관의 세금체납액 또는 상응하게 납부할 벌금이 인민폐 50만원 이하인 경우
  - 대리 통관신청한 화물이 밀수혐의나, 해관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해관조사를 진행하는 데 협조를 거부한 경우
  - 해관으로부터 해관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일시 정지된 경우
- C류기업에 대한 해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sup>147)</sup>
-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세율 등 세수요소에 대한 중점심사
  - 수출입화물에 대해 중점적인 실지검사 실시
  - 가공무역 정산시 공장검사 실시 등
- 수출입업체가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되면 D류로 관리함<sup>148)</sup>
- 밀수죄를 범한 경우
  - 1년내 2차례이상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 1년 내에 3차례 이상 수출입으로 인해 지식재산권화물을 침해하거나 이로 인해 해관에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해관의 세금체납액 또는 상응하게 납부할 벌금이 인민폐 50만원 이상인 경우
- 통관업체가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면 D류로 관리함<sup>149)</sup>

146)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 제14조

147) 관세청(2012)

14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 제9조

149)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 제15조

- 밀수죄를 범한 경우
  - 1년내 2차례 이상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 1년 내에 대리신고한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해관에 3회 이상 몰수가 되거나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해관의 세금체납액 또는 상응하게 납부할 벌금이 인민폐 50만원 이상인 경우
- D류기업에 대한 해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sup>150)</sup>
- 수출입화물은 모두 개장검사, 가공무역 화물등록 갱신처리 불허
  -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검사율 상향 조정 및 정산시 공장실지검사 실시
  - 경영기업의 가공무역업무 위탁 불허
  - 기타 C류 기업에 대한 모든 해관조치 등
- AA류 혹은 A류기업이 밀수와 관련되어 수사 혹은 조사를 받거나 해관에서 상응한 관리류별 관리조치를 잠정중단한 경우, 중단기간 내에는 B류기업의 관리조치에 따라 관리를 진행함<sup>151)</sup>
- 가공무역경영기업과 위탁가공을 받은 생산기업의 관리분류형이 서로 다를 경우 해관에서는 동 가공무역업무에 대하여 낮은 기준의 관리분류형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실시함<sup>152)</sup>
- 해관관리지역을 초월한 지사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 행정 및 세금체납, 상응하게 납부해야 할 벌금 등 법률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기업 관리분류형을 조절할 때 동 지사와 지사를 설립한 통관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기타 지역의 지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C류기업이 해관에 B류 조정신청 전 만 1년 동안 C류 관리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해

150) 관세청(2012)

151) 외교통상부, 「중국해관 기업분류관리방법 요약서」, 2011

152) 외교통상부(2011)

관에서는 B류로 조정 가능하고, D류기업이 해관에 C류 조정신청 전 만 1년 동안 D류 관리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해관에서는 C류로 조정 가능함<sup>153)</sup>

#### 다. AEO 상호인정협정(MRA)

- AEO는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통해 자국의 AEO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sup>154)</sup>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등 6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운영중임
  
- 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수출입 비용 절감,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됨<sup>155)</sup>
  - AEO업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어 상대국 통관 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물품 인도의 신속성, 안전성 및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출입 통관시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최근에는 거래업체가 상대 기업에 AEO 공인을 받거나 AEO 공인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환경에서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음
  - 외국 관세청의 해외 거래업체 방문심사에 의해 업체의 기술, 시설, 영업 정보 등 소중한 자원이 해외 세관당국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153) 외교통상부(2011)

154) 관세청 홈페이지(2013)

155) 관세청 홈페이지(2013)

## 라. 한·중 AEO MRA

- 2013년 6월 27일,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시 정상 임석하에 양국 간 AEO MRA가 체결되었음
- 한·중 MRA 체결에 따라 종전에는 중국의 수입자가 AEO 업체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AEO업체의 수출물품은 AEO 혜택을 못 받았으나, MRA 이후에는 수입자나 수출자 중 어느 하나만 AEO라도 혜택을 부여받게 됨
- 한·중 AEO MRA의 혜택으로는 수입 검사율 축소,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우선 통관조치, 세관연락관 지정, 비상시 우선조치 등을 들 수 있음<sup>156)</sup>
  - 수입통관 절차상에서 한국 AEO 공인업체로 인식되어 세관검사(Physical Inspection)로 지정되는 비율이 축소됨
  - 중국 내 수입신고서 심사 시 전산심사와 서류심사 두 가지 중 전산심사로 우선 선별하여 수입서류 심사를 간소화함
  - 중국의 수입통관 절차상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되고 검사되며, 중국에 AEO공인업체를 위한 전용창구가 마련됨
  - 중국의 수입통관 절차 중 애로사항이 발생한 경우 직속해관(43개)별로 지정된 세관 연락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천재지변, 테러, 전쟁 등 물류장애가 발생 시 AEO공인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하여 우선 통관조치
- 위의 AEO MR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수출업체는 중국의 수입업체에게 자사의 AEO 공인번호 조합번호(AEOKR+공인번호12자리)를 알려주고, 중국 내 수입신고 시 '비고(標記唛碼及備注)'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함

156) 관세청, 「AEO MRA 설명자료」, 2013, 8.

## 7. 원산지제도

- 중국의 원산지 규정을 관장하는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고, 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서 국무원이 제정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sup>157)</sup>임<sup>158)</sup>
  - 원산지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기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비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 원산지의 확정에 적용됨
  - 특혜 무역조치의 수출입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조약과 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름
  -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금, 원산지 표기관리, 수량제한, 관세쿼터 및 정부구매 등의 확인목적의 비특혜원산지제도는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및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1개 국가(지역)에서 완전하게 취득한 화물은 기국가(지역)를 원산지로, 2개 이상 국가(지역)가 생산에 참여한 화물은 최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정함<sup>159)</sup>
  - 에너지원, 작업장, 설비, 기기, 공구, 제품성분, 조립부품, 포장재료, 설명자료 등은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개 국가(지역)에서 완전하게 취득한 화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sup>160)</sup>
  - 기국가(지역)에서 출생 및 사육한 활 동물
  - 기국가(지역)에서 야생포획, 어획 혹은 수집한 동물
  - 기국가(지역)의 활 동물에서 취득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157)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국무원령 416호, 2005

158) 한국무역협회, 『중국 비즈니스 실무가이드』, 제5장 무역제도, 2011

159)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제3조

160)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제4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2)에서 재인용

- 기국가(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 기국가(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 기국가(지역)에서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한 물품
  - 기국가(지역)에서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방치해야 하거나 회수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 기국가(지역)에서 수집한 수리불가 혹은 수리한 물품, 혹은 기 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및 원료
  - 합법적으로 기국가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외 해역에서 취득한 해양 어획물과 기타 물품
  - 합법적으로 기 국가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서 영해 외 해역에서 취득한 해양어획물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 기국가 영해 외 전문 채굴권을 가진 해저에서 취득한 물품
  - 기국가(지역)에서 완전하게 위의 기준에 적용되는 물품에서 생산한 제품
- 최후 실질적인 변화의 확정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상품분류변화(HS코드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공 후 화물가치에서 부가가치 백분비 및 제조 혹은 가공공정 절차를 보충기준으로 함<sup>161)</sup>
- 수입하기 전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기타 관련 당사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관은 모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원산지 결정을 하고 대외에 공포함
- 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물품이 사전심사 대상물품과 동일하고 원산지 규정에 변화가 없는 경우 수입화물의 원산지 결정을 배제함
- 수출화물을 통관할 때에는 화물을 해관에 신고하고 통관하기 최소한 3일 전에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하고 다음의 서류에 진실하게 기재하고 제출해야 함<sup>162)</sup>

16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제6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2)에서 재인용

162) 한국무역협회(2011)

- 수출화물 원산지증명서/가공조립증명 신청서
  - 수출화물 원산지 증명서 4부
  - 수출화물 상업송장
  -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혜무역협정의 경우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증명발급기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
-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함
-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할 경우, 출입국검험검역부서와 해관은 5천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함<sup>163)</sup>

## 8. 통관검역제도

### 가. 검역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 중국에서 검사 및 검역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상품검사(檢驗), 출입국 동식물 검역, 국경 위생검역(檢疫)을 의미함

16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통관/검역제도: 중국』, 2010

〈표 IV-11〉 중국의 검험검역제도

구분	관련법규	관리대상	관리방법
수출입상품 검험제도	「수출입상품검험법」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 례」	수출입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안전, 위생, 건 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 구의 부합여부	- 법정검험 - 계약검험 - 공정 감정 - 위탁검험
출입국동식물 검역제도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 조례」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한 동식물 검역	- 입국검역 - 출국검역 - 중계검역 - 출입국 휴대물과 우송 물 검역 - 출입국 운송수단 검역
국경위생 감독제도	「국경위생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출입국 교통공구, 화물, 운송용 기 및 항구 관할구역의 공공장 소, 환경, 생활시설, 생산설비 에 대한 위생검사, 감정, 평가 와 샘플링 검험	- 출입국검역 - 국경전염병검사 - 출입국위생감독

자료: 중국 해관총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에서 재인용

-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sup>164</sup>)이 검사·검역 업무를 총괄하  
며 각 지방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지역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검역 업무를 수행  
하는 단일한 행정체계로 이루어짐<sup>165</sup>
  - 지방 출입국검사검역국은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5개의 부서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의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과 수출입 상품검사를 담당함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국가표준화관리국)를 관리함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통일적으로 전국 인증인가업무를 관리, 감독, 종합  
협조하는 주관부서임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가표준화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무역기술

164) AQSIQ: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165) 전형진,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  
농업 2, 2012

장벽협정(WTO/TBT agreement)의 집행에서 관련 표준의 통보와 자문을 책임  
집<sup>166)</sup>

- 이외에도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중국출입국검험검역협회, 중국국제여행위생보건협회, 중국품질검험협회, 중국계량협회, 중국인증인가협회, 중국표준화협회, 중국계량측정학회, 중국위조방지협회, 중국설비감리협회, 중국품질관리행촉진회 등 10개 소속 기관을 설치·운영함
- 수출입계약에서 약정하거나 수출입상품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검험검역을 신청할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위탁접수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을 진행하고 증서를 발급함<sup>167)</sup>
  - 법정검험 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샘플링방식으로 감독 관리를 진행함
-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연관되거나 가치가 비교적 높거나 기술이 복잡하거나 환경과 위생 및 전염병 표준과 연관되는 중요한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반드시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 사전검험, 감독을 진행해야 하며 화물 도착 후 최종 검험과 배상청구조항을 약정해야 함<sup>168)</sup>

#### 나. 검역 방법 및 절차<sup>169)</sup>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출입국검험검역기구가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 목록(법정검험목록)」을 발표 및 조절하며, 법정검험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강제성 검험을 진행함
-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 대하여 위생등록(注册登记)관리를 실시하며 위생등록을 취득한

166) 전형진(2012)

16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16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16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요약 및 발췌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식품만 수입 혹은 수출할 수 있음<sup>170)</sup>

- 위생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위생등록을 신청해야 함

□ 수출입식품은 법정 검험검역 상품으로서 주로 자체 검험을 위주로 하며 기타 수출입상품의 공동검험, 위탁검험과 인가검험 형식을 참조할 수 있음

□ 자체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자체 기술력(검사설비와 검사인원을 포함)을 이용하여 자체로 샘플 추출, 샘플 제작과 전체 항목의 검험을 진행하는 방식임

- 위생, 환경보호 등 사회공익의 상품 및 대외무역계약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증서로 가격을 계산 및 결산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자체 검험을 채택해야 함

□ 공동검험은 수출입상품 검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조직에 의하여 출입국검험검역기관과 수출 생산기업, 수입화물 인수부서 또는 관련 업체가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출입상품의 샘플 추출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어떤 상품 또는 검험항목에 대해 검사설비 또는 검사장비가 부족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생산, 과학연구, 교육기관의 시험실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외 검험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수출입상품 검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험자격이 있는 국내외 기타 검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또한 그 검험결과에 의해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명을 발급함

□ 인가검험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이 일부 수출생산기업 또는 수입화물 인수기관의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에 대해 인가하여 인가를 받은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의 검험결과에

170)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수출입상품 검험법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47호, 제32조, 2005

의하여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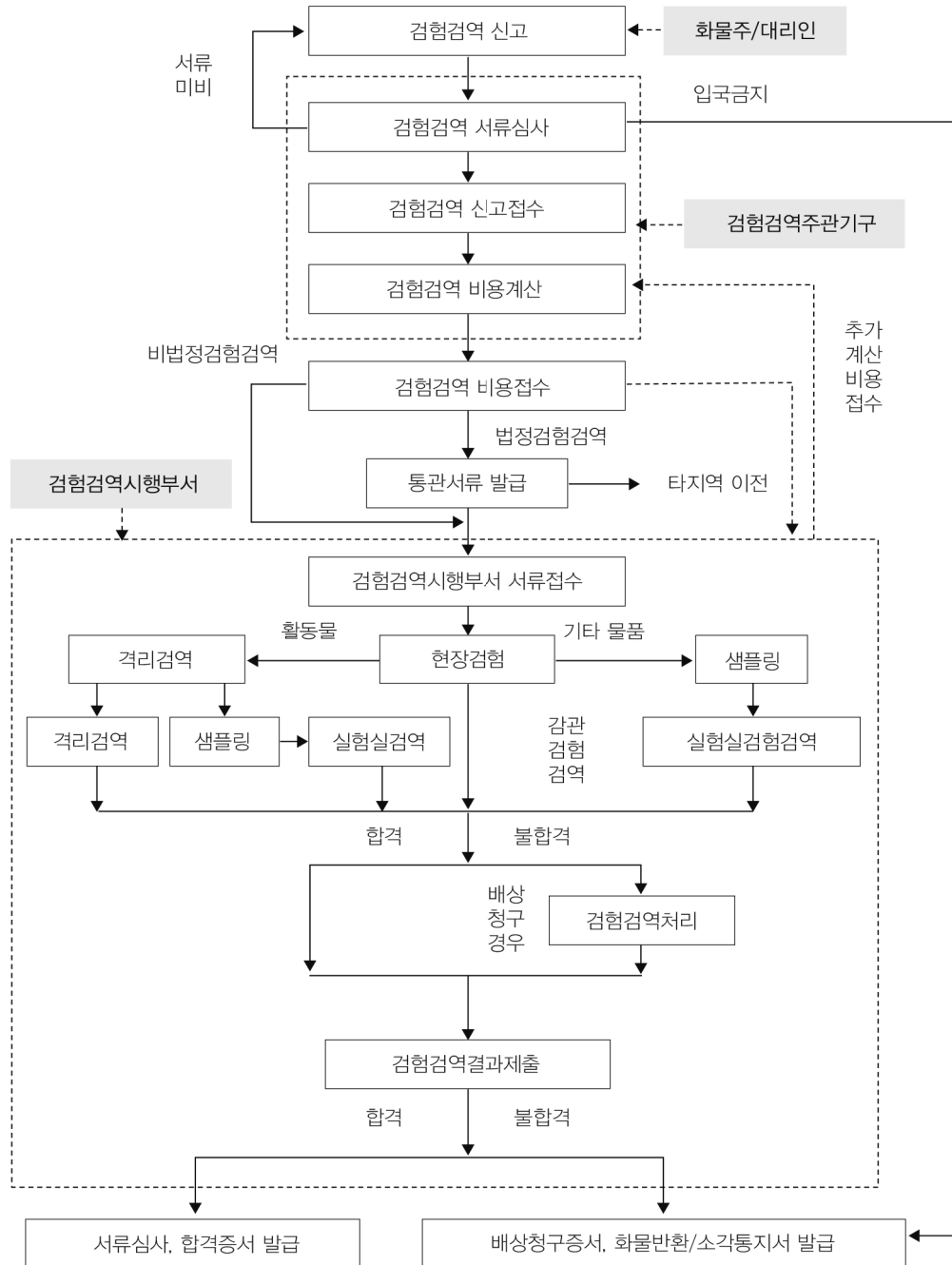
- 수출입식품, 화장품의 경영자 혹은 대리인은 수출입 전에 출입국 경검험검역기구에 라벨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 요구와의 부합 여부, 품질관련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검험을 진행하고 「라벨검험증명」을 발급받아야 함<sup>171)</sup>
- 비준, 허가증 등 관련 증서에 검험검역 장소를 규정한 경우, 규정한 장소에서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하고, 대중상품, 부식 변질하기 쉬운 상품, 폐기물품 및 하선할 때에 포장파손 또는 수량 부족이 발견된 상품은 반드시 하선항구 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함<sup>172)</sup>
- 설치 시운전과 연관되어 검험을 진행해야 하는 플랜트 설비, 기계전기계측기제품 및 항구에서 개봉한 후 포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품은 반드시 수하인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해야 함
- 기타 입국화물은 반드시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입국지역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해야 하며, 직통식 통관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는 입국지의 선택에 따라 항구 검험검역기구 또는 목적지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할 수 있음

---

171) 「수출입상품 검험법실시조례」 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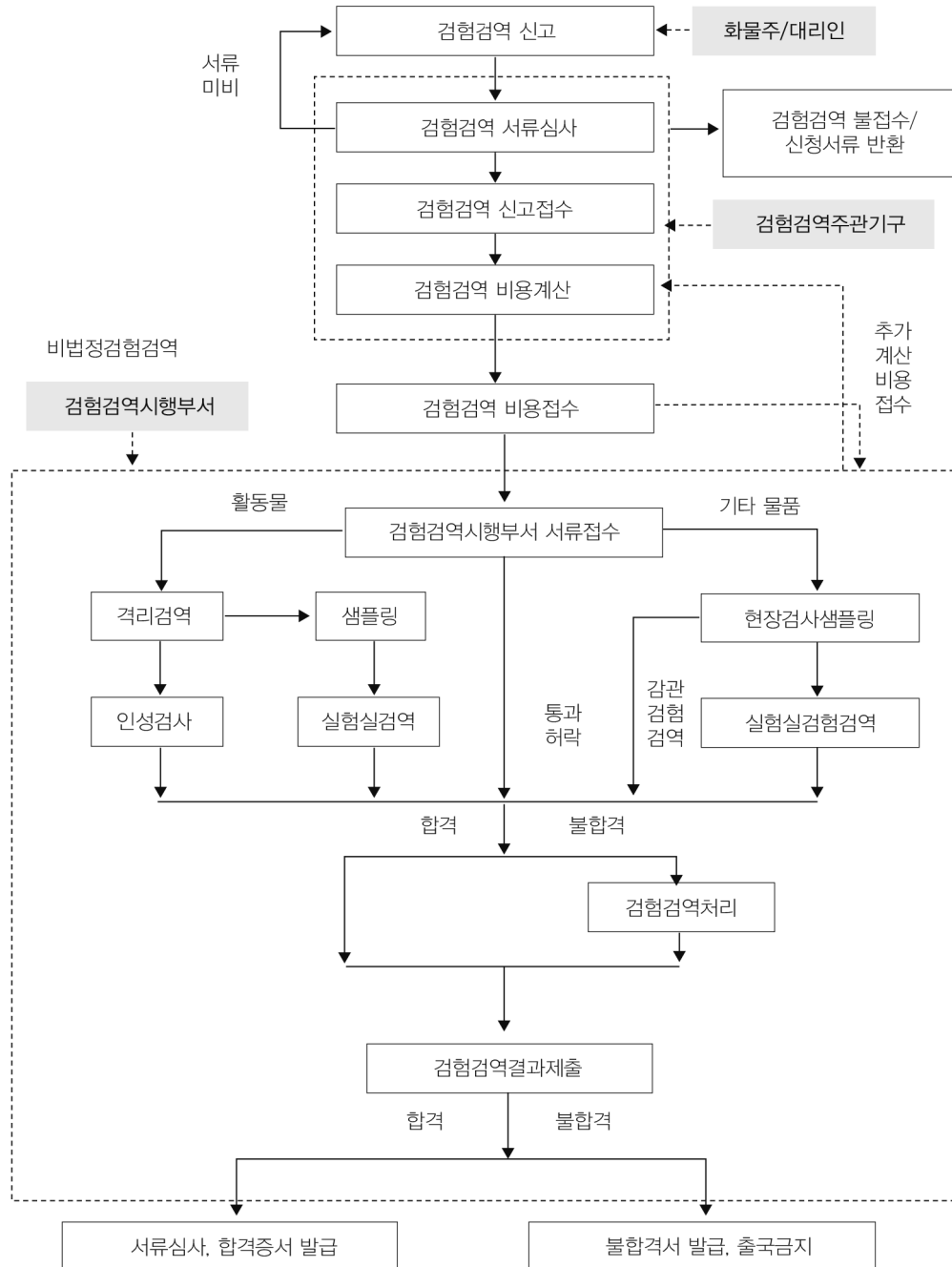
172) 「수출입상품 검험법실시조례」 제18조

[그림 IV-4] 수입화물 검험검역 절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그림 IV-5] 수출화물 검험검역 절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 9. 라벨링제도

- 모든 상품에는 적절히 상품에 대한 정보(라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중국 내에서 판매시 해당 상품은 판매시점에 합격증이 고객에게 제시되어야 함
- 생산품의 이름, 생산자의 명칭 및 주소가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원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생산품의 원산지, 수입자 내지 중국 내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정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규격, 생산품 rating, 주재료 및 혼합비율 등의 정보가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상품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및 만료기한이 분명하게 제공되어 있어야 함
- 식품 또는 그 포장에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법률, 행정법규에서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식품을 제외) 아래와 같은 기본사항을 표기해야 함
- 식품라벨은 식품 또는 그 포장과 분리하지 못하며, 반드시 최소판매단위의 식품 또는 그 포장에 직접 표기해야 하고, 반드시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며, 라벨 뒷면과 바탕색은 서로 비교가 되는 색깔을 채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sup>173)</sup>
- 식품라벨의 모든 문자는 반드시 규범화된 중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등록상표는 제외되며 식품라벨은 동시에 한자 병음 또는 소수민족 문자를 사용할 수 있음<sup>174)</sup>
  - 외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중문과 대응관계가 있어야 하며 외국어는 대응되는 중문보다 크지 않아야 하나 등록상표의 경우는 제외함

1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17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표 IV-12〉 식품라벨 표기사항과 금지사항

구분	세부사항
표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명칭</li> <li>- 식품원산지</li> <li>-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식</li> <li>- 식품의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 저장조건</li> <li>- 순함량, 고형물 함량(정량포장 식품일 경우)</li> <li>- 식품의 성분 또는 배합원료 리스트</li> <li>- 생산업체가 적용하는 제품표준코드</li> <li>-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식품표준이 요구할 경우)</li> <li>-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및 QS마크(생산허가증이 필요할 경우)</li> <li>-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li> </ul>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예방 또는 치료 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li> <li>- 건강식품이 아니지만 건강 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li> <li>- 오도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내용</li> <li>- 첨부한 제품설명이 그 근거를 증명할 수 없는 내용</li> <li>- 문자 또는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 설명하는 내용</li> <li>- 국기, 국장 또는 인민폐 등으로 표기하는 내용</li> <li>-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에서 표기를 금지하는 내용</li> </ul>

자료: 중국 해관총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재인용

- 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에 관한 라벨링 작업을 해야 하며, 라벨에는 유해물질 또는 원소 명칭, 함유량, 소재 부품 및 회수 재활용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함<sup>175)</sup>
  - 라벨 양식 및 방식은 중국 신식산업부와 국무원 유관기관이 합의하여 규정하며, 전자정보 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중국 신식산업부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요구」기준을 제정하여 2006년 8월에 공시하였고, 이 기준에는 본 기준에서는 모든 전자정보제품 중의 유해물질 또는 원소, 환경보호 사용기한, 회수이용 가능 여부 및 포장재의 명칭에 관한 라벨링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제품 부피 또는 기능 제한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175) KOTRA(2013)

- 라벨은 명확해야 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퇴색하지 않고 전자정보제품의 사용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함
-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요구」의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또는 원소를 포함한 전자정보제품은 위의 라벨 방식으로 제품의 ‘환경보호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하며, 제품 설명서에 ‘환경보호사용기한’ 내의 사용조건, 부품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첨부해야 함
  - 라벨 중앙의 숫자를 제품의 실제 ‘환경보호사용기한’으로 바꾸며 단위는 연 단위로 해야 하고, 제품의 생산일자가 ‘환경보호사용기한’의 시작일이고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제조자가 자체 결정함
-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의 회수 이용 가능 여부를 표기해야 함
  - 회수 이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요구」의 기준의 요건에 근거하여 그림 방식으로 표기하며, 해당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은 회수 이용이 가능하며 임의로 폐기하지 못함
-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또는 수입한 전자정보제품의 포장물에 포장재료 기호를 표시하고, 포장재의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포장물 표면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제품 설명서에 표지 내용을 기재해야 함

## 10.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통관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해관수출입 화물신고서 작성방법」의 요구에 맞춰 해관에 신고서 내용의 전자자료를 전송하고 기타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는 신고방식임
- 해관 전산시스템에 전자자료 신고서를 전송하고, 해관 전산시스템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접수하였다는 회신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해관에 제출할 종이신고서를 출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첨부서류도 준비해야 함

- 특수한 경우에는 해관의 동의나 허가를 거쳐 먼저 종이신고서 형식으로 신고하고 전자자료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해관의 정보화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종이신고서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음
-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종이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보관하고 전자자료 신고만 사용할 수도 있음

□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중국해관이 수출입화물 통관작업에 있어 전면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관리 시스템을 말하고, 해관은 성공적으로 다양한 전자통관시스템을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H883/EDI 통관시스템, 해관 H2000 통관시스템, 전자개항(电子口岸) 시스템 등이 있음

□ 「H883/EDI 통관시스템」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중국해관 통관자동화시스템」의 약칭이며, EDI를 이용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의 종합정보화시스템을 말함

-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해 전면적인 정보화관리를 실시하는 감관 실시와 부과징수 및 통계 등 3대 해관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음

□ 「해관 H2000 통관시스템」은 「H883/EDI 통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시스템이며,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개발된 전국 통일 해관정보플랫폼으로서 해관 관리의 전체 효능을 제고하게 됨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통관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말하며 H883 통관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수출입기업은 자기 사무실 내에서 가공무역의 등기준비를 할 수 있으며, 특정감면세증명서를 신청, 수령할 수도 있고 수출입신고 등 각종 해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 간소화된 통관 절차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게 함

- 2009년 4월부터 전국 해관에서 전면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구역, 보세항구, 보세구역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특수감독 관리구역에서 활용되고 있음<sup>176)</sup>
  
- 「중국전자개항(口岸)시스템」은 「전자개항(电子口岸)」이라고 하며, 컴퓨터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출입무역관리와 관련된 정부기관이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정보 전자데이터를 공공데이터센터에서 집중관리하여 관리부처와 기업들에 각종 수출입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가정보시스템임
  - 전자개항시스템과 H2000 통관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전국의 수출입무역서비스와 정보관리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
  - 수출입기업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관 및 기타 관련 국가관리기관에 수출입무역과 관련된 각종 절차를 처리할 수가 있음
  - 수출입무역과 관련된 통관 및 기타 관련 국가관리기관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출입무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전자개항(电子口岸)」은 국무원 주도하에 관세총국 등 12개 부문에 설치되어 있고, 각 부서 간의 데이터 공유 및 네트워크 검사를 담당함<sup>177)</sup>
  - 지방 전자개항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현지 관련 통관물류서비스 정보를 정보플랫폼에서 통합 조정하여 전자개항과 통관관련 정부부서 간의 데이터 교환과 공유를 실현함
  
- 「전자개항(电子口岸)」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정부정보 플랫폼, 상무정보 플랫폼, 물류정보 플랫폼으로 이루어짐<sup>178)</sup>
  - 정부정보 플랫폼으로 전자개항 플랫폼의 포트관리 부문의 관리자원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해관, 세무, 상공업, 품질검사, 외환 등이 one-stop 서비스

176) 진설 외, 「중국 전자통관의 구축현황과 발전방안」,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3호, 2011

177) 진설 외(2011)

178) 진설 외(2011)

로 제공되고 통관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전자통관, 전자납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상무정보 플랫폼을 통해 one-card로 제3자 지불 플랫폼의 발전을 촉진하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의 운송, 저장, 은행, 보험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실현함
- 물류정보 플랫폼을 통해 정부 감독관리 정보(통관신고, 통관 검사, 외화 결제, 세금 회수 등), 항구 정보(항공, 항무<sup>179)</sup>, 부두), 기업 물류정보(운송, 배송)를 통합시키고 부문 간, 업체 간, 지역 간의 데이터 교환과 네트워크 검토 조회를 실현함

---

179) 항무(港務): 항만의 유지·관리에 관한 행정 사무. 검역, 선박 사무, 해상 보안, 항만 건설, 수상 경찰, 여권 사증, 관세 감시 등의 업무

## V. 중국의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수단을 통칭하며, 그 종류로는 수입허가제,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통관 관련 규제, 원산지 규정 및 무역규제 등이 있음<sup>180)</sup>
- 무역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관세장벽의 중요성은 떨어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복잡성, 불확실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역통제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
- 비관세장벽은 각국의 상이한 문화와 제도,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WTO도 각국간의 이러한 차이점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소가 어려움
- 중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비관세조치들을 명확하게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크게 수입규제,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통관관련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180)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 2012. 2.

〈표 V-1〉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유형	주요 내용
수출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금지 및 제한</li> <li>· 수출입업체 관리제도</li> <li>· 자동 수입허가 관리제도</li> <li>· 쿼터 관리(설탕, 섬유, 밀, 옥수수, 벼와 쌀, 면화, 화학비료 등)</li> <li>· 중고제품 수입금지(기계, 전기전자, 의류)</li> <li>· 수입상품 분류관리제도</li> <li>· 수입허가증 발급시 민감한 기업정보 요구</li> </ul>
기술무역장벽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인증제도(CCC)</li> <li>· 자발적 인증제도</li> <li>·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li> <li>·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China REACH)</li> <li>· 자동차용 타이어 인증제도</li> <li>·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성 표기 부착</li> <li>· 수입전자제품 전자수용강제검사 실시</li> <li>· 수입계량구기구 형식 검증제도</li> <li>· 목재포장재 열처리 증명 요구</li> </ul>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관련 규제(수입식품 증문 라벨 부착 등)</li> <li>· 의약품관련 규제(의약품 허가심사시 중국 자체규정 약전 사용 등)</li> <li>·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제</li> <li>· 화장품 수입절차(강제성표준 규정)</li> </ul>
통관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의약품 통관지 제한</li> <li>·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li> <li>· 환급규정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li> <li>· 이중 세관검사(발취 검사 후 전량 검사)</li> <li>·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li> <li>· 보세운송 불허</li> <li>· 관세분류의 자의성 및 화물에 대한 상세정보의 기밀보호 미흡</li> <li>· 통관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li> <li>· 과도한 통관심사</li> </ul>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에서 인용 및 수정

## 1. 수출입규제

### 가. 수출입 금지 및 제한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sup>181)</sup>
  - 국가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인류 건강이나 안전 보호, 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 황금 또는 백은 수출입과 관련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을 유효하게 방지하기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수출경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어떠한 형태의 농업, 목축업, 어업 제품이든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가의 국제금융에서의 위상과 국제수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제한이 필요한 기타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에 따라 수입화물을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물, 관세쿼터관리화물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함<sup>182)</sup>

181)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16조, 2004

182)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2장 수입화물관리, 2001

- 수입금지화물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품, 위조통화, 위조유가증권, 각종 열성 독극물 및 마약류를 포함함
  - 수입제한화물은 수량제한이 있는 품목은 쿼터관리제도로, 수량제한이 없는 품목은 허가증 관리제도를 통하여 관리함
  - 수입자유화물은 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정부 부문의 화물수입 감축현황에 근거하여 일부 수입자유화물은 자동수입 허가관리를 실시함
  - 관세쿼터관리화물은 매년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대외공표하며 국가정책 및 대외경제무역 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 시장 변화에 따라 쿼터허가증관리 품목을 조정함
-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2005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 등)를 폐지하였음<sup>183)</sup>
-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해 과거 쿼터 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외무역법」 제17조에서 규정한 화물은 수출입을 금지하며 기타법률, 행정법규가 수출입을 금지한 규정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입금지화물목록」 및 「수출금지화물목록」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제정, 조정 및 공포함<sup>184)</sup>
- 중국은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 보호,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 생태환경 유지, 국제협정상 의무이행의 관점에서 수입금지품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금지품목은 다음과 같음<sup>185)</sup>
- 미가공 사람의 모발, 무기류, 탄약 및 폭발물, 위조화폐 및 유가증권,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등 중독성 및 신경약물, 유해한 동식물 및

---

183) KOTRA(2013)

184)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8조, 제33조

185) 한국무역협회(2011)

동 제품, 전염 발생지역의 물질 및 질병으로 전염 가능한 식품 및 약품, 화학공업 폐기물, 폐건전지 등

- 중국은 또한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에서 중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브라운관용 유리, 증기보일러 및 관련부품, 버너, 중고 모니터, 중고 열전자관, 중고차(견인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및 중고 부품, 중고 오토바이(배기량 50cc 초과), 중고 자전거, 유모차, 중고 의료기기, 전자게임기 등 이 대표적인 품목임<sup>186)</sup>
- 수출입 제한화물 목록은 상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절 및 발표하며 수출입 제한화물 목록은 최소 정식 시행일의 21일 전에 발표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행일 전에 발표함<sup>187)</sup>
- 국가에서 수량제한을 규정한 수입제한화물은 쿼터(Quota, 配额)관리<sup>188)</sup>를 실행하며 기타 수입제한화물은 허가증(Licensing, 许可证)관리<sup>189)</sup>를 실행하고, 관세쿼터(Tariff Rate Quota(TRQ), 关税配额)관리<sup>190)</sup> 수입화물은 별도 규정에 따라 집행함<sup>191)</sup>
- 쿼터 또는 허가증 관리를 통하여 국가는 직접적으로 모종 상품의 수출입 총량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본국의 경제가 수입상품으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본국의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함

186) 한국무역협회(2011)

18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188) 본 보고서 'V. 중국의 비관세장벽 > 1. 수출입 규제 > 나. 쿼터 관리제도' 참조

189) 본 보고서 'V. 중국의 비관세장벽 > 1. 수출입 규제 > 다. 허가증 관리제도' 참조

190) 본 보고서 'V. 중국의 비관세장벽 > 1. 수출입 규제 > 나. 쿼터 관리제도 > 2) 수입관세할당 제도' 참조

191)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제11조

〈표 V-2〉 수출입 금지화물

구분	세부사항
수입 금지화물	<p>① 「수입금지화물목록」에 포함된 상품(총 6차에 걸쳐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금지화물목록」1차(2001): 호골, 서우각, 아편 외 화학제품 등 7항</li> <li>- 「수입금지화물목록」2차(2001): 중고 기계, 전자제품 68항</li> <li>- 「수입금지화물목록」3차(2001): 폐기물 18항</li> <li>- 「수입금지화물목록」4차(2002): 폐기물 16항</li> <li>- 「수입금지화물목록」5차(2002): 폐기 기계, 전자제품 21항</li> <li>- 「수입금지화물목록」6차(2005): 화학제품 17항</li> </ul> <p>②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서 수입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무기, 진짜 모방무기, 탄약 및 폭발 물품</li> <li>- 위조통화, 위조유가증권</li> <li>- 내용이 국가비밀에 관련되거나 중국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레코드, 영화,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LCD, 컴퓨터 저장매개 및 기타 물품</li> <li>- 각종 열성 독품(독극물)</li> <li>- 아편, 몰핀, 헤로인, 대마 및 기타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성 마취품, 향정신성의약품</li> <li>- 위험성을 띤 병원, 해충 및 기타 생물에 유해되는 동물, 식물 및 그 제품</li> <li>- 사람 및 동물 건강에 해되고 전염병지역으로부터 반입되거나 기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식품, 약품 또는 기타 물품</li> </ul>
수출 금지화물	<p>① 「수출금지화물목록」에 포함된 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금지화물목록」(1차) : 국제조약협정에 의한 수출 금지화물 14항</li> <li>- 「수출금지화물목록」(2차) : 삼림자원 보호 1항</li> <li>- 「수출금지화물목록」(3차) : 국제조약협정에 의한 수출 금지화물 17항</li> <li>- 「수출금지화물목록」(4차) : 석영모래 및 규석모래, 기타 천연모래 2항</li> </ul> <p>②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서 수출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이 국가비밀에 관련되거나 중국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레코드, 영화,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LCD, 컴퓨터 저장매개 및 기타 물품</li> <li>- 진귀한 문화유물 및 기타 수출이 금지된 문화유물</li> <li>-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진귀한 동물, 식물(표본 포함) 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li> <li>- 각종 무기, 진품을 모방한 무기, 탄약 및 폭발물</li> <li>-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li> <li>- 각종 독극물</li> <li>-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기타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되게 하는 마취물, 신경약품</li> <li>- 위험성 병원, 해충 및 기타 유해한 생물을 지닌 동물, 식물 및 그 제품</li> <li>- 사람과 가축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전염발생지역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기타 질병의 전염이 가능한 식품, 약품 혹은 기타 물품</li> </ul>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2012), 한국무역협회(2011)에서 재구성

〈표 V-3〉 수출입 제한화물

구분	세부사항
수입제한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li> <li>- 국내 특정산업의 건설을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li> <li>- 어떠한 형식의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li> <li>- 국가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평형 보장을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li> <li>- 국제조약협정의 규정에 의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화물</li> </ul>
수출제한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화물</li> <li>- 국내 공급부족 또는 거의 소모한 국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화물</li> <li>- 수출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규모가 제한되었을 경우</li> <li>- 국제조약협정의 규정에 의해 수출제한이 필요할 경우</li> </ul>

자료: 중국 해관총서

## 나. 쿼터관리제도

- 「대외무역법」19조와 「화물수출입관리조례」11조 및 36조에 근거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 중 수량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서 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함
  - 쿼터관리는 일정기간 내 특정상품의 수출입 수량 혹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종 관리조치로서 즉, 규정한 기한 및 쿼터 기준을 초과하면 동종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함<sup>192)</sup>

### 1) 수입쿼터(Import Quota) 제도

- 수입쿼터 관리품목은 상무부와 관련 부처가 매년 7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총수입쿼터를 발표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영역에 따라 관리함<sup>193)</sup>
  - 수입쿼터 신청인은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쿼터 관리부서(상무부)에 차년도 쿼터를 신청하고, 상무부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쿼터를 신청인에게 분

192) KOTRA(2013)

193)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제13조

### 배합

- 상무부는 연간 총쿼터 수요에 근거해 쿼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 실시 21일전에 공포함에 공포함
- 쿼터를 소지한 업체가 소지한 연도 쿼터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9월 1일 이전에 미사용 쿼터를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함<sup>194)</sup>
  - 만약 제때에 반납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차년도에 이어 상응하는 쿼터를 삭감할 수 있음
- 수입쿼터 관리부서가 쿼터를 분배할 때에는 다음의 각 요소를 고려해야 함<sup>195)</sup>
  -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 과거에 배분된 쿼터를 충분히 사용했는지 여부
  - 신청업체의 생산능력, 경영규모, 판매현황
  - 신규 수입기업의 신청현황
  - 신청쿼터 수량현황
  - 기타 고려사항
- 중국의 수입쿼터 관리품목은 기계, 전기제품(기계설비, 전기설비, 교통운송수단, 전자제품, 가전제품과 계기계량기 등과 그와 관련된 부품, 소자 포함)과 중요 공업제품(완제품 기름, 자동차 타이어 등 포함)임<sup>196)</sup>
-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년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고,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라기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sup>197)</sup>

194)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18조

195)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16조

196) 전형진(2012)

197) 외교통상부(2012)

- 전자·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등록 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쿼터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 매년 7월 31일 전 다음해 쿼터량을 발표하여 분배 및 관리하고 있음<sup>198)</sup>
  
-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 신청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음<sup>199)</sup>
  - ① 수입신청 기업은 최근 3년 내 외화도피, 수출증치세 환급액 사취, 밀수 등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함
  - ② 수입신청 기업이 쿼터 신청제품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③ 수입신청 기업이 3년간 연속적으로 쿼터신청 제품을 수입, 판매한 실제 실적이 있어야 함
  - ④ 수입신청 기업이 신청한 쿼터수량과 상응한 생산, 판매, 보수, 서비스 및 부품 공급 능력을 구비해야 함
  - ⑤ 수입신청 기업은 양호한 재무능력을 갖춰야 함
  - ⑥ 신규 수입신청 기업은 제③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음
  - ⑦ 자가 용도를 위해 수입쿼터를 신청한 기업은 제②, ③, ④, ⑤항에서 규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합리적인 신청 이유와 적당한 쿼터신청수량을 제출해야함
  
- 기계전자제품의 수입쿼터를 분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분배됨<sup>200)</sup>
  - 과학연구, 교육, 문화, 위생 및 기타 사회공익사업을 보호해야 함
  - 생산, 판매, 서비스 능력이 뛰어난 수입기업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수입 신청기업의 최근 3년 간 수입쿼터 제품의 실적을 고려함
  - 연도 쿼터총량의 일정비율을 신규 수입신청 기업에게 분배하도록 고려함
  - 지난 연도 쿼터를 전부 소진하고 신청기업이 쿼터 배정의 증량을 요구할 경우 차년도 쿼터 배정량을 급격하게 늘려서는 안되며, 지난 연도 쿼터액을 소진하지 않고

198) 외교통상부(2012)

199) 대외경제무역협작부(현 상무부),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제6조, 2002

200)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제9조

규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쿼터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의 쿼터량을 삭감함

- 입찰방식을 택해 수입쿼터를 배분할 경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외경무부가 제정 및 공포함

## 2) 수입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

- 관세할당관리를 실행하는 수입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함<sup>201)</sup>
  - 관세할당 내 수입화물은 할당 내 관세세율을 적용하고, 관세할당 외 수입화물은 할당 외 관세세율 적용함<sup>202)</sup>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2012년 12월 발표한 「2013년 관세실시방안」에 따르면, 밀,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섬수모, 면화, 화학비료 등 8종류 4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관세할당관리를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음<sup>203)</sup>
  - 관세할당관리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내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 할당 외 수입한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한 활준세<sup>204)</sup> 형식의 잠정세율을 계속 실시하며, 조정된 활준공식<sup>205)</sup>을 적용함
  - 요소(尿素), 배합비료, 인산이암모늄의 3종 화학비료에 대해 1%의 쿼터세율을 계속 실시함

201)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25조

202)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26조

20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3년 관세실시방안」, 2012. 12. 10.(2013년 1월 1일 발효)

204) 활준세: 滑准税, Sliding Duties, 수입세칙 중 동일한 상품에 대해 그 시장가격표준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등급의 세율을 책정하고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

205) 1. 관세지급필가액  $\geq 14,000$ 元/kg: 잠정 종량세율은 0.570元/kg

2. 관세지급필가액  $< 14,000$ 元/kg: 잠정세율공식은  $R_i = 8.87 / P_i + 2.908\% * P_i - 1$  ( $R_i \leq 40\%$ )

- 화학비료의 할당 내 세율은 1%이며 쿼터 외 물량에 대해서는 최혜국세율은 50%, 일발관 세율은 150%의 세율이 적용되고, 면화 또한 쿼터 내에서는 1%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각각 40%, 125%의 세율이 적용됨<sup>206)</sup>
- 양모와 섬수모를 제외한 8개 품목의 수입관세할당은 국영무역할당과 비국영무역할당으로 구분됨<sup>207)</sup>
  - 국영무역할당은 국영무역기업이 수입하고, 비국영무역할당은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할 수 있음

〈표 V-4〉 2013년도 수입관세할당 품목

(단위: %)

상품	세번	보통관세율	특혜관세율	할당내 세율
밀	10011100	180	65	1
	10011900	180	65	1
	10019100	180	65	1
	10019900	180	65	1
	11010000	130	65	6
	11031100	130	65	9
	11032010	180	65	10
옥수수	10051000	180	20	1
	10059000	180	65	1
	11022000	130	40	9
	11031300	130	65	9
	11042300	180	65	10
쌀 및 도곡	10061011	180	65	1
	10061019	180	65	1
	10061091	180	65	1
	10061099	180	65	1
	10062010	180	65	1
	10062090	180	65	1
	10063010	180	65	1

206) 「2013년 관세실시방안」

207) 전형진(2012)

〈표 V-4〉의 계속

(단위: %)

상품	세번	보통관세율	특혜관세율	할당내 세율
쌀 및 도곡	10063090	180	65	1
	10064010	180	65	1
	10064090	180	65	1
	11029011	130	40	9
	11029019	130	40	9
	11031921	70	10	9
	11031929	70	10	9
설탕	17011200	125	50	15
	17011300	125	50	15
	17011400	125	50	15
	17019100	125	50	15
	17019910	125	50	15
	17019920	125	50	15
	17019990	125	50	15
양모	51011100	50	38	1
	51011900	50	38	1
	51012100	50	38	1
	51012900	50	38	1
	51013000	50	38	1
	51031010	50	38	1
섬수모(毛条)	51051000	50	38	3
	51052100	50	38	3
	51052900	50	38	3
면화	52010000	125	40	1
	52030000	125	40	1
화학비료	31021000	150	50	4 (잠정세율 1%)
	31052000	150	50	4 (잠정세율 1%)
	31053000	150	50	4 (잠정세율 1%)

자료: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3년 관세실시방안

〈표 V-5〉 2012년 수입관세 할당량과 신청조건

품목	할당량 (만톤)	국영무역 비율	신청조건
밀	963.6	9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가공량 400톤 이상의 생산업체 5) 2011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옥수수	720	6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옥수수를 원료로 연간 수요량이 5만톤 이상인 배합사료 생산업체 5) 옥수수를 원료로 연간 수요량이 10만톤 이상인 기타 생산업체 6) 2011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쌀	532 (장립 266, 중단립 266)	5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식량 도소매자격이 있는 연간 매출액 1억위안 이상 식량업체 5) 식량 연간 수출입액이 2,500만달러 이상의 무역업체 6) 2011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벼와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 장립, 중단립 구분신청
목화	89.4	33%	1) 국영무역업체 2)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3) 방적설비 5만방추 이상의 면방적업체
설탕	194.5	7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설탕 관세할당이 있으며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원당가공량≥600톤, 등록자본금≥1,000만 위안, 연간매출액≥4.5억 위안인 제당업체 5)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업체
양모	28.7	-	1) 2011년 양모, 섬수모 관세할당이 있고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신설 가능한 양모, 섬수모 가공능력 5,000톤 이상 업체 2) 2012년 1월 1일 전에 공상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연도 검사를 통과한 업체
섬수모	8	-	3) 전년도 세관, 공상, 세무, 품질검험, 외환, 사회보장, 환경 보호 등에서 위법기록이 없는 업체 4)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임시시행방법」, 「2011년 양모, 섬수모 수입 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2011년 양모, 섬수모수입국가별관세할당관리 실시세칙」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자료: 중국 상무부, 관세세척위원회

- 수입관세할당(TRQ) 관리부서는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차년도 관세쿼터 총량을 발표하고, 할당 신청업체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수입할당 관리 부서에 관세할당액을 신청함<sup>208)</sup>
  - 수입할당 관리부서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관세할당 여부를 결정함<sup>209)</sup>
- 관세할당을 소지한 수입업체가 소지한 연도 할당을 소진하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9월 15일 이전에 미사용된 할당액을 수입할당관세 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함<sup>210)</sup>
  - 만약 제때에 반납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쿼터 관리 부서는 차년도에 이어 상응하는 할당을 삭감할 수 있음

### 3) 수출쿼터(Export Quota) 제도

-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 「수출상품 쿼터관리방법<sup>211)</sup>」을 공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sup>212)</sup>
  - 「수출상품 쿼터관리방법」은 수출쿼터 상품 목록(2장), 수출쿼터 총량(3장), 수출쿼터의 신청(4장), 수출쿼터의 분배, 조정 및 관리(5장), 법률책임(6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수출상품 쿼터관리방법」의 부속서는 쌀, 옥수수, 밀, 면화, 설탕 등 5개 농산물과 원유, 가공유, 석탄, 코크스, 희토 등 5개 공산품은 수출쿼터관리 품목이지만 본 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
- 수출쿼터 관리품목은 상무부와 관련 부처가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총수출쿼터를 발표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영역에 따라 관리함<sup>213)</sup>

208)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27조

209)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29조

210)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31조

211)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1년 제12호

212) 전형진(2012)

213) 전형진(2012)

- 수출쿼터 신청인은 매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수출쿼터 관리부서에 차년도 쿼터를 신청하고, 수출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차년도 쿼터를 신청인에게 배분함
- 수출할당은 직접 분배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입찰 등 방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음
  
- 국제시장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할 경우, 상무부는 차년도 수출할당을 두 차례로 나누어 분배할 수 있으며 매년 12월 15일 전 차년도 70% 이상의 할당을 분배하며 나머지는 당해 6월 30일 전 분배함<sup>214)</sup>
  
- 수출쿼터의 신청자격으로는 수출입경영 허가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3년 내 경제활동 중 위법 혹은 규칙 위반행위가 없는 기업만이 수출쿼터의 신청이 가능함<sup>215)</sup>
  
- 상무부와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수출쿼터를 분배할 때, 반드시 신청기업 또는 지역의 최근 3년 내 상품 수출실적, 할당 사용률, 경영능력, 생산규모, 자원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sup>216)</sup>
  
- 각 지역 대외경제무역위는 해당 지역 쿼터배정 기업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연도 쿼터가 있는 기업 간 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쿼터가 없는 기업과 조정하거나 조정량이 해당 기업 쿼터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상무부 승인이 필요함<sup>217)</sup>
  - 연간 쿼터는 당해 연도만 유효하고, 차기 연도로 이월 사용이 불가함

---

214) 한국무역협회(2011)

215) 한국무역협회(2011)

21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217) 한국무역협회(2011)

〈표 V-6〉 2013년 수출쿼터 품목 및 쿼터량

구분	품목	단위	쿼터총량
농산품	제재목	만m <sup>3</sup>	26
	난초 및 난초제품	만kg	3,200
	산 돼지(大)	만마리	180 (홍콩 165, 마카오 15)
	산 돼지(中)	만마리	8.24 (홍콩 8, 마카오 0.24)
	산 소	만마리	5.72 (홍콩 5, 마카오 0.72)
	산 닭	만마리	1,340 (홍콩 1000, 마카오 340)
공업품	텅스텐 및 텅스텐 제품	만톤	1.54
	주석 및 주석 제품	만톤	1.7
	안티몬 및 안티몬 제품	만톤	5.94
	몰리브덴	만톤	2.5
	인	톤	231
	백은	톤	5,387
	인광석	만톤	100
	활석	만톤	75
	감초 및 감초 제품	톤	6,300
	산화 마그네슘	만톤	167

자료: 중국 상무부(2012)

#### 다. 허가증 관리제도

-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 경영자격,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 상품 종류, 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를 가리킴
  - 주로 수출입 경영자격 및 경영범위의 심사비준, 수출입제한상품의 쿼터 허가증 관리, 수출입 상품의 분류관리, 교역국가별 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수출입 경영자격은 중국기업의 대외 상담 및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킴
- 허가증 관리제도는 특정 상품에 대한 허가증명으로서 대외무역 경영업체가 국가의 수출입제한 상품을 수입 혹은 수출하기 전 우선 국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제도임<sup>218)</sup>
- 「대외무역법」에 근거 수출입업무를 취급하는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다음 각항의 조건들을 구비해야 함<sup>219)</sup>
  - 기업명칭 및 조직기구
  - 명확한 대외무역경영범위
  - 대외무역경영에 필요한 장소, 자금 및 전문인원
  - 과거 타회사를 통한 수출입 실적 혹은 필수적인 수출입 공급원
  -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조건
-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전국 범위의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성(省) 혹은 기타 지방의 상무부(상무부처)문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현지에서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sup>220)</sup>
  - 수출입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경영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국가의 수출입제한상품 및 분류관리상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기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sup>221)</sup>
  - 상무부 소속의 각종 수출입총공사 및 그 하부기구
  - 국무원 소속의 공업무역회사
  - 성급 소속의 각종 수출입회사

---

218) 외교통상부(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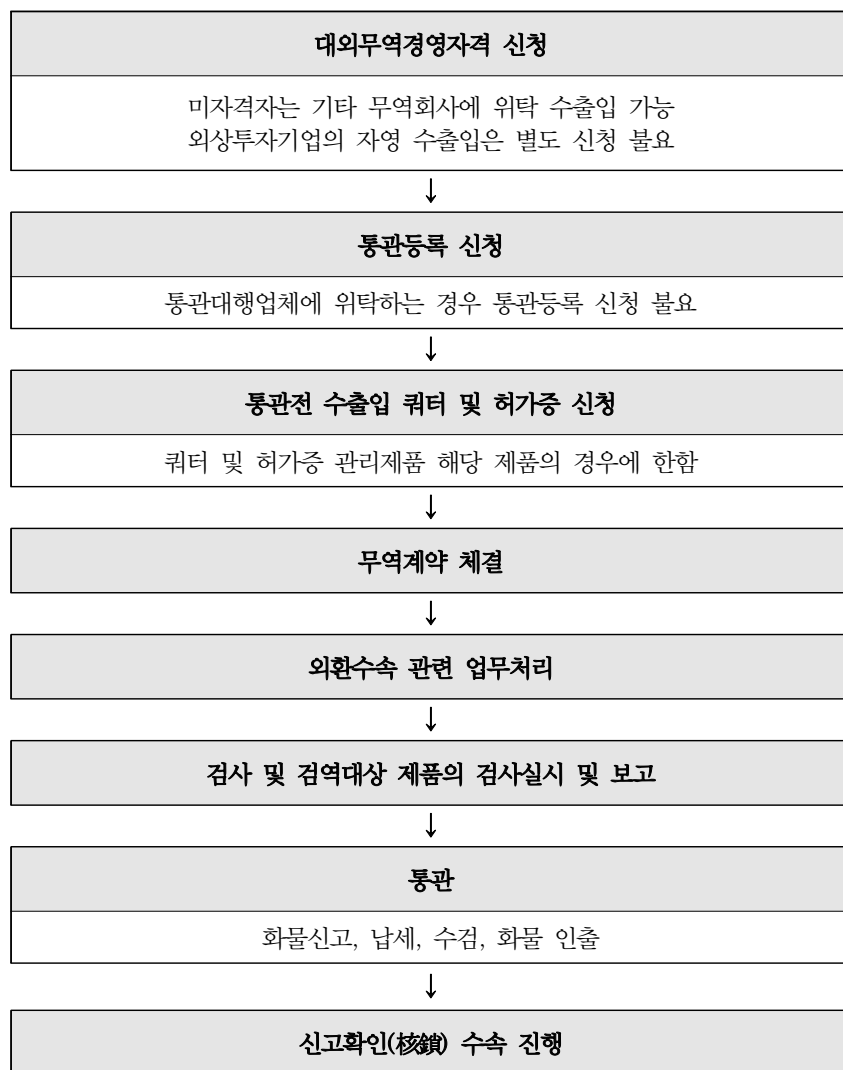
219) KOTRA(2013)

220) KOTRA(2013)

221) KOTRA(2013)

- 외상투자기업
-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제조기업
- 임대수출입회사
- 수출입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타 회사

[그림 V-1]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자료: KOTRA, 「중국 국가정보(수입규제제도)」, 2013

- 수출입허가증은 상무부가 총괄하며 심사발행은 관할기업 및 지역별 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입 허가증은 각각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및 각지 출장소, 지방의 상무부 (상무부처) 에서 발급함<sup>222)</sup>
  - 상무부는 중앙, 국무원의 각 부/위 및 소속기업의 허가증 발행을 담당하며 상무부의 각지 출장소는 연해개방도시 및 관계지역의 수출입허가증을 발행함
  - 지방의 상무부 (상무부처) 문은 부분 수출화물허가증 및 소속부문의 일부 수입허가증을 발행함
  - 수출입허가증의 신청 시 신청서에 신고업체 명칭, 수(출)입 상품명, 거래가격, 무역 방식, 수입(출)국, 도착(발송)항구 등을 기재하여 제출함
  - 국가쿼터제한제품에 대한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할 때에는 허가증발행기관에 주관부문이 발급한 수출쿼터 증명을 제출해야 함
  
- 수출입허가증 관리상품이 만약 상품검사, 무선전파관리, 동식물검역 등 국가에서 기타 수출입관리를 실시하는 대상에 속할 경우, 수출입 통관 시 수권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타 수출입 증명서도 함께 해관에 제출해야 함<sup>223)</sup>

### 1)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 「대외무역법」 제19조와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중 수량제한 화물 이외의 기타 화물에 대해서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sup>224)</sup>
  - 수입허가증 관리를 받는 화물은 반드시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해관에서 통관 신청을 접수하고 통관을 허용함
  
- 수입허가증은 자국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

222) KOTRA(2013)

223)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9호, 2011, p. 12

224) 전형진(2012)

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상무부가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sup>225)</sup>」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있음

-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省)의 대외경제 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관사처에서 구분 발급함<sup>226)</sup>
  -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임
  - 수입허가증은 일반적으로 한 곳의 해관에서만 사용하며(一關一證), 유효기간 내에 한 번만 통관 신고를 할 수 있음(一批一證)
-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기간 내에만 유효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1년을 넘겨야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은 이듬해 3월 31일을 넘지 못함
  - 수입허가증 발행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입업체는 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수정신청을 하고 허가증을 발행기관에 반납해야 함
- 상무부는 수입허가증 관리 주무기관으로 해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협의하여 매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을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수입허가증관리화물 등급별 증서발급 목록」을 발표함<sup>227)</sup>
-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2012년 12월 27일 공고한 「2013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sup>228)</sup>은 HS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임
  - 화공설비(3개), 금속제련 설비(2개), 기계류(17개), 기중기 및 운송 설비(6개), 제지

225)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1년 22호(2002년 1월 1일 시행), 상무부령 2004년 27호(2005년 1월 1일 개정 시행,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69230.htm](http://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69230.htm))

226) 외교통상부(2011)

227) 전형진(2012)

228) 상무부·해관총서·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2012년 98호 (<http://www.mofcom.gov.cn/aarticle/b/c/201212/20121208502201.html>)

설비(3개), 전력 및 전기 설비(21개), 식품가공 및 포장 설비(8개), 농기계류(4개), 인쇄기계류(7개), 방직기계류(4개), 선박류(9개), 토너(1개), 오존층 파괴물질(49개)  
 ○ 농산물은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합자/합작 기업의 내부용으로 수입한 기계장비 및 물자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대상품 목이면 우선 상무부(상무부처)의 수입화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함<sup>229)</sup>
  - 외국인투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의 내부용도의 기계장비 및 물자 등 수입품은 수입허가증 관리대상에서 제외됨
  -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 5종 상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의 수입자재는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을 위한 자재(원자재, 부품, 조립품, 포장재 등)의 수입은 수입화물 허가증을 면제하며 해관이 보세화물규정에 따라 감독함<sup>230)</sup>
  - 수입품이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품목이면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이 내수 상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자재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2)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 「대외무역법」 제19조와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중 수량제한 화물 이외의 기타 화물에 대해서 수출허가증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sup>231)</sup>
  
- 수출허가증 관리는 상무부가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화물수출허가증관리방법<sup>232)</sup>」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229) KOTRA(2013)

230) KOTRA(2013)

231) 전형진(2012)

- 상무부는 수출허가증 관리 주무기관으로 해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협의하여 매년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을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수출허가증관리화물 등급별 증서발급 목록」을 발표함<sup>233)</sup>
  -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오로지 하나의 해관에서만 등록 가능하며(一證一關), 유효기간 내 1회만 사용 가능함(一批一證),
  - 하지만, 외자기업수출허가증관리 화물과 보상무역<sup>234)</sup>하의 허가증관리 화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 최대 12회 사용이 가능함(非一批一證)
  -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은 수출쿼터허가증 관리품목, 수출쿼터입찰 관리품목,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등 3가지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2012년 12월 31일 공고한 「2013년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목록」<sup>235)</sup>은 총 48개 실품목, HS 10단위 기준 668개 품목이며,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됨
  -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자원성 수출제품
  - 중국의 수출에서 주요 위치를 점유하는 전통수출상품
  - 세계시장 혹은 특정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점유하는 제품
  - 외국의 쿼터제한 혹은 수출제한 제품
  - 수출량이 많으며 경영질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상품
  - 중국의 중요 특산품 혹은 특수한 요구가 있는 제품

232)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1년 9호(2002년 1월 1일 시행), 상무부령 2008년 제11호(2008년 7월 1일 개정 시행)

233) 전형진(2012)

234) 외국측이 원자재나 기계·설비를 수출하면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을 수입품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기계·설비의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생산물분여(production sharing; PS)방식이라고도 한다. 보상무역은 외화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고 기계·설비를 수입할 수 있으므로 외화 부족에 허덕이는 중국으로서는 안성맞춤의 방법이지만 실현된 경우는 매우 적다(매일경제 용어사전).

235)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12년 제97호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212/20121208503273.shtml>)

〈표 V-7〉 2013년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관리방식	HS 10단위 기준 품목 수	
수출쿼터 허가증	농산물	밀(8개), 옥수수(4개), 쌀(20개), 밀가루(6개), 옥수수가루(7개), 쌀가루(8개), 면화(5개), 산 소(홍콩, 마카오 수출, 5개), 산 돼지(홍콩, 마카오 수출, 6개), 산 닭(홍콩, 마카오 수출, 3개), 면화(5개)
	비농산물	목재(30개), 석탄(5개), 코크스(1개), 원유(1개), 정제유(18개), 희토류(75개), 안티몬 및 안티몬제품(8개), 텅스텐 및 텅스텐제품(14개), 연광석(2개), 주석 및 주석제품(12개), 백은(8개), 인 및 인제품(4개), 몰리브덴(9개), 인광석(4개)
수출쿼터 입찰	농산물	난초(1개), 감초(2개)
	비농산물	난초제품(3개), 감초제품(3개), 산화알루미늄(2개), 활석(4개), 산화마그네슘(8개)
수출허가증	농산물	산 소(홍콩, 마카오 이외지역 수출, 5개), 산 돼지(홍콩, 마카오 이외 지역 수출, 6개), 산 닭(홍콩, 마카오 이외지역 수출, 3개), 저온신선 쇠고기(7개), 냉동 쇠고기(9개), 저온신선 돼지고기(9개), 냉동 돼지고기(10개), 저온신선 닭고기(5개), 냉동 닭고기(6개)
	비농산물	오존층 파괴물질(49개), 파라핀(2개), 일부 금속 및 금속제품(107개), 백금(2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54개),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부품(14개), 천연모래(3개), 몰리브덴제품(1개), 구연산(2개), 비타민C(4개), 폐니실린 공업용소금(1개), 황산나트륨(1개), 형성(2개)

자료: 중국 상무부(2012)

-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국가의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출화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 범위는 영업범위 내 자체 생산가공한 제품이며 중국 내 구매제품은 제외됨<sup>236)</sup>
- 다음의 상품은 수출허가증을 면제하나, 국가의 쿼터입찰관리 제품은 무역방식과 상관없이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sup>237)</sup>
- 상계무역 수출제품(국가 쿼터입찰관리 제품 외의 기타 수출허가증 관리상품)
  - 가공조립무역의 재수출상품

236) KOTRA(2013)

237) KOTRA(2013)

- 해외전시회의 재반입 전시품
- 경제기술교류 등 목적의 해외에 제공한 테스트용 견본품
- 대외경제기술원조 목적의 수출물자 일부 제품 등에 해당되는 허가증 관리제품

## 라.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

-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과 기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입 자유 범위에 속하며, 자유 수출입화물과 기술의 수출입은 제한을 받지 않으나, 출입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요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일부 자유수입화물에 대하여 자동수입허가(自動輸入許可) 관리제도를 실시함<sup>238)</sup>
- 자유수입 화물 중 자동수입허가 관리품목의 관리는 상무부가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한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sup>239)</sup>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입 신청에 대해 비준하는 수입허가제도로, 자동수입허가목록의 품목은 수입허가 신청 즉시 허가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자유롭게 수출입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를 실시함
  - 자동수입허가목록에 포함된 품목으로는 가금류, 식용유, 담배, 화학비료, 석탄, 원목, 철광석, 원유 및 정제유, 철강류,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이 있음
- 상무부는 최소한 실시 21일 전에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목록」을 공포하며, 자동수입허가 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수입할 때는 수입 기업이 해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상무부나 관련부서에 자동수입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자동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해관에 제출하여 통관수속을 밟음
-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2012년 12월 10일 공고한 「2013년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목록」<sup>240)</sup>

238) 관세무역연구원,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년 12호, 2011

239) 상무부·해관총서령 2004년 제26호(2004년 12월 9일 공포, 2005년 1월 1일 시행)

은 HS 10단위 기준 723개 품목임

- 이 중 농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및 부산물, 양고기, 육계, 신선 우유, 분유, 유청, 대두, 유채씨, 식용 식물유, 옥수수 주박, 대두박, 담배 등 HS 10단위 기준 109개 품목임
-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은 460개 품목, 기타 공산품은 159개 품목이며, 주요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정제유, 천연고무, 식용유, 석탄, 강재, 폐지(廢紙) 등에 대해서도 자동허가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표 V-8〉 2013년 자동수입허가 관리품목

HS 10단위 기준 품목 수		
전기·기계류 이외 상품 (263개)	농산물 (109개)	쇠고기(16개), 돼지고기 및 부산물(19개), 양고기(11개), 육계(12개), 신선우유(4개), 분유(4개), 대두(5개), 유채씨(4개), 식용 식물유(14개), 대두박(2개), 담배(18개)
	비농산물 (154개)	아세트산 섬유(1개), 구리광석(2개), 석탄(5개), 폐지(5개), 폐강(7개), 페알루미늄(2개), 구리(51개), 철광석(5개), 보크사이트(1개), 원유(1개), 정제유(10개), 천연가스(2개), 산화알루미늄(1개), 화학비료(23개), 강재(38개)
전기·기계류 상품 (460개)	시디롬 생산설비(8개), 연초기계(3개), 이동통신제품(11개), 위성방송, TV설비 및 핵심 부품(11개), 자동차제품(144개), 비행기(4개), 선박(15개), 게임기(5개)	
	증기터빈발전기(3개), 발동기(12개), 수력발전기 및 기타 동력장치(6개), 화공장치(16개), 식품기계(5개), 엔지니어링기계(24개), 제지 및 인쇄기계(5개), 방직기계(30개), 금속제련 및 가공설비(13개), 금속가공 선박(37개), 전기설비(24개), 철로기관차(4개), 자동차제품(60개), 비행기(5개), 선박(3개), 의료설비(12개)	

자료: 중국 상무부(2012)

- 일반 무역,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 위탁판매, 임대, 보상무역, 국제입찰, 노무보상, 기증, 변경 소액무역,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내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동 허가관리 상품에 대해 해관은 「자동 수입허가증」에 의해서 검사, 통관함<sup>241)</sup>

240) 상무부·해관총서공고 2012년 제94호  
 (<http://www.mofcom.gov.cn/aarticle/b/c/201212/20121208496384.html>)

241) 한국무역협회(2011)

- 품목에 따라 상무부, 환경보호부가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하며, 수입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고, 1회 연장(3개월)이 가능함
- 샘플, 광고 물품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액 범위 내에서 수입한 자동허가관리 자기회 사용 상품에 대해 「자동 수입허가증」을 면제함
- 「자동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동수입허가증은 하나의 수입허가증으로 유효기간 내에 6회 이내 여러 번 통관신고를 할 수 있으며(非一批一證), 기타 기업의 자동 수입허가증은 하나의 수입허가증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 번만 통관신고를 할 수 있음(一批一證)<sup>242)</sup>

#### 마. 수출입업체 관리제도

- 수출입업체는 수출입경영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하여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한 후에 허용된 범위에서 수출입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sup>243)</sup>
  - 구체적인 등록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하고, 수출입업체가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해관에서 수출입화물 통관수속을 처리하지 않음

#### 1) 국영무역 관리제도

- 중국은 WTO 가입 후 「대외무역법」 제11조와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4장(45조~52조)에서 국영무역 관리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연관되는 중요한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영무역 관리품목의 목록과 수출입경영권을 획득한 무역기업의 목록은 상무부와 관련부서의 협조로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음<sup>244)</sup>

242) 한국무역협회(2011)

24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244) 「대외무역법」 제11조,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46조

○ 국영무역 관리품목의 수출입은 권한을 부여받은 국영무역기업만이 할 수 있지만 해당 품목의 일부 수량에 대해서는 비국영무역기업도 수출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sup>245)</sup>

〈표 V-9〉 국영무역 상품목록

(단위: 개)

구분	상품	HS 8단위 품목수	국영무역기업
부속서 2A1 수입	밀	6	중국양유식품수출입총공사(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옥수수	5	
	벼 및 쌀	7	
	식용 식물유	7	중국양유식품수출입총공사(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중국토산축산물수출입총공사(中國土產畜產進出口總公司) 중국화윤총공사(中國華潤總公司) 중국남광수출입총공사(中國南光進出口總公司) 중국양풍곡물수출입공사(中國良豐穀物進出口公司) 중국양유집단공사(中穀糧油集團公司)
	식용 당	6	중국양유식품수출입총공사(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중국수출상품기지건설총공사(中國出口商品基地建設總公司) 중국해외무역총공사(中國海外貿易總公司) 중국당업주류집단공사(中國糖業酒類集團公司) 중국상업대외무역총공사(中國商業對外貿易總公司)
	연초	18	중국연초수출입총공사(中國煙草進出口總公司)
	원유	1	중국화공수출입총공사(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정제유	7	중국국제석유화학연합총공사(中國國際石油化工聯合總公司) 중국연합석유유한책임공사(中國聯合石油有限責任公司) 주해진용공사(珠海振戎公司)
	화학비료	25	중국화공수출입총공사(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중국농업생산자료집단공사(中國農業生產資料集團公司)
	면화	2	중국방직품수출입총공사(中國紡織品進出口總公司) 북경구달방직품집단공사(北京九達紡織品集團公司) 천진방직공업공소공사(天津紡織工業供銷公司) 상해방직원료공사(上海紡織原料公司)

245) 「대외무역법」 제11조,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45조, 제47조

〈표 V-9〉의 계속

(단위: 개)

구분	상품	HS 8단위 품목수	국영무역기업
부속서 2A1 수출	차(녹차)	4	중국토산축산물수출입총공사(中國土產畜產T進出口總公司)
	쌀	5	중국양유식품수출입총공사(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길림식량집단수출입공사(吉林糧食集團進出口公司)
	옥수수	3	
	대두	5	
	텅스텐 광석	3	중국오금광산물수출입총공사(中國五金礦產X進出口總公司)
	암모늄	2	중국유색금속수출입총공사(中國有色金屬進出口公司)
	텅스텐 제품	8	중국희토금속집단공사(中國稀土金屬集團公司)
			중국화학수출입총공사(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석탄	5	중국석탄공업수출입총공사(中國煤炭工業進出口總公司)
			중국오금광산물수출입총공사(中國五金礦產T進出口總公司) 산서석탄수출입집단공사(山西煤炭進出口集團公司) 신화집단유한책임공사(神華集團有限責任公司)
	원유	1	중국화학수출입총공사(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정제유	13	중국국제석유화학공업합총공사(中國國際石油化工聯合總公司)
			중국연합석유유한책임공사(中國聯合石油有限責任公司)
	실크	13	중국실크수출입총공사(中國絲綢進出口總公司)
	미표백실크	4	
	면화	2	중국방직품수출입총공사(中國紡織品進出口總公司) 청도방직품연합수출입공사(青島紡織品聯合進出口公司) 북경제2면방창(北京第二棉紡廠) 북경제3면방창(北京第三棉紡廠) 천진제1면방창(天津第一棉紡廠) 상해신달유한공사(上海申達有限公司) 상해화생방직인염집단공사(上海華生紡織印染集團公司) 대련환구방직집단공사(大連環球紡織集團公司) 석가장상산방직집단(石家莊常山紡織集團) 하남성낙양면방직창(河南省洛陽棉紡織廠)
			하남성송악방직공업집단(河南省嵩嶽紡織工業集團) 덕주면방창(德州棉紡廠) 무석시제1면방창(無錫市第一棉紡廠) 호북성보신방직창(湖北省普新紡織廠) 서북면방1창(西北棉紡一廠) 성도구신방직집단공사(成都久新紡織集團公司) 소주소륜방직연합공사(蘇州蘇輪紡織聯合公司) 서북면방7창(西北棉紡七廠) 호북상면집단공사(湖北襄棉集團公司) 한단이화방직집단공사(邯鄲利華紡織集團公司)
면사(방적사) 면함량 85%이상	32		

〈표 V-9〉의 계속

(단위: 개)

구분	상품	HS 8단위 품목수	국영무역기업
	면사(방직사) 면함량 85%이하	11	신강방직공업집단공사(新疆紡織工業集團公司) 안경방직창(安慶紡織廠) 제남제2면방창(濟南第二棉紡廠) 천진제2면방창(天津第二棉紡廠) 산서성보화방직창(山西省晉華紡織廠) 절강성금위집단공사(浙江省金衛集團公司) 서북면방5창(西北棉紡五廠) 보정제1면방창(保定第一棉紡廠) 요양방직창(遼陽紡織廠) 장춘방직창(長春紡織廠) 하남성화신면방창(河南省華新棉紡廠) 포두방직창(包頭紡織廠) 영파회풍방직집단공사(寧波和豐紡織集團公司) 서북면장4창(西北棉紡四廠) 신강석하자81면방창(新疆石河子八一棉紡廠)
	면직물 면함량 85%이상	7	
	면직물 면함량 85%이하	6	
	안티모니 광석	2	
	안티모니 산화물	1	중국오금광산수출입총공사(中國五金礦產品進出口總公司) 중국유색금속수출입총공사(中國有色金屬進出口公司) 중국희토금속집단공사(中國稀土金屬集團公司)
	안티모니 제품	3	
	백은	3	중국인초조폐총공사(中國印鈔造幣總公司) 중국동연자집단공사(中國銅鉛鋅集團公司)

자료: 중국 WTO 가입의정서 부속서 2A, 전형진(2012)에서 재인용

2) 지정경영 관리제도

- 국영무역 관리제도와 유사한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제도를 운용하였으나 WTO 가입 시 약속에 따라 2004년 폐지하였음<sup>246)</sup>

- 지정경영 관리제도는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국가에서 지정한 국영무역기업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 수량에 대해서는 비국영무역기업도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영무역 관리제도와 구별됨
  -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 부속서 2B에 제시된 품목(천연고무, 목재, 합판, 양모, 아크릴 섬유, 강재 등 HS 8단위 245개)에 대해 WTO 가입후 3년 이내에 대외무역권을 개방한다고 약속하였음
- 수입지정경영제도는 대외무역경제협작부(현 상무부)가 지정경영화물의 수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02년 1월 1부로 시행하던 것으로, 등록자본금 1천만위안 이상 및 수출입 경영권 보유 2년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지정경영 기업의 자격을 제한해 왔었음
-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 공고 2004년 88호》<sup>247)</sup>를 통해 2004년 12월 11일부터 강재, 천연고무, 아크릴, 합판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지정경영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로써 수입자를 제한하는 수입지정경영제도에 적용을 받는 품목은 없어지게 되었음
- 이 조치는 WTO 가입 시 상기 5개 품목과 목재를 포함한 6개 품목에 대해 3년 안에 수입관련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조치이며, 목재에 대한 수입지정경영제도는 1999년에 취소되었음

### 3)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제도

- 중국은 중요한 수출입상품은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류관리제품은 전문 수출입 총공사가 경영하거나 동종제품의 경영권이 있는 분공사가 총공사와 연합하여 거래를 추진하거나 지정회사가 경영함<sup>248)</sup>
- 수출입상품은 3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제품의 특징은 다음의 표의

246) 전형진(2012)

247) 상무부 공고 2004년 88호

(<http://wms.mofcom.gov.cn/article/zcfb/e/w/200412/20041200317270.shtml>)

248) KOTRA(2013)에서 요약 및 발췌

내용과 같음

〈표 V-10〉 수입상품 분류관리

구분	해당품목	경영조건
제1류	통일적으로 대리 주문하는 수입상품 (즉, 국민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규모가 방대한 소맥,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고무, 강재, 석유, 베니어합판, 양모, 니트릴, 면화, 담배, 설탕, 식물유 등 14종 상품이 이에 해당)	지정 대외무역 수출입총공사 혹은 그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가 통일적으로 대리주문하며 이중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제2류	연합하여 대외거래를 추진하는 수입상품 (즉,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가격의 민감도가 높으며 국내시장 공급이 부족한 국내외 가격차 가 비교적 큰 대규모의 수입상품)	상무부가 비준한 동종상품의 수입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업체가 외국과 거래를 함
제3류	경영을 개방한 수입상품 (즉 상기 1, 2류 외의 기타 수입상품)	수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으나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자료: KOTRA(2013)에서 재구성

〈표 V-11〉 수출상품 분류관리

구분	해당품목	경영조건
제1류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거래규모가 방대하고 국제시장에서 독점지위를 점유하는 특수 성질의 자원성 상품 (쌀, 콩, 옥수수, 차, 석탄, 텅스텐, 안티몬, 원유, 정제유, 면화, 면사, 테릴렌면사, 면원단, 테릴렌 면원단, 생사, 비단 등의 제품이 포함)	지정 1개 혹은 다수 대외무역, 공업무역 수출입총공사가 통일 경영관리 혹은 지방의 분공사와 연합하여 경영하며 총괄 관리함
제2류	국제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쿼터제한이 있으며 경쟁이 심하고 가격의 민감도가 비교적 높은 수출상품	동종상품 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비준을 거쳐 경영할 수 있음
제3류	상기 1, 2류 외 기타 수출상품	수출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음

자료: KOTRA(2013)에서 재구성

## 2.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기술무역장벽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자유화 진전에 따른 관세장벽 완화에 따라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음<sup>249)</sup>
- 국가표준은 전기전자제품에 폭넓게 적용되는 추세이며 강제성 국가표준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대중국 수출과 현지 생산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표준은 수입 물량 및 절차 제한, 정부조달 제한 등과 함께 비관세 기술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기술표준, 포장, 라벨링, 안전 규정 등에 있어 자국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는 특성을 보임
  -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화를 숙지하고 이를 제품 생산, 개발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환경보호를 정책기조로 내걸었고, 2008년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수정판 에너지절약 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국책기조로 삼고 있음

### 가.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sup>250)</sup>

- 강제인증제도란, 「강제성제품 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동 인증을 취득하여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 내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sup>251)</sup>
- 과거 중국의 제품안전 인증제도로써 국내 상품에 적용되던 CCEE마크와 수입상품에 적용되던 CCIB마크가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국무원이 강제

249) 정환우(2012)

250) 한국조세연구원(2011)에서 발췌

251) 전군중,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인증제도 업무를 정비하고 규범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CCC마크로 변경함

-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상품검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및 「제품인증관리 조례」에 기초하여 검사대상 리스트, 기술관련 법규, 마크, 비용 등을 일원화한다는 목표 아래 2002년 5월 1일부로 시행함
- 강제인증 시행품목은 반드시 관련기관 또는 관련기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중국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인증을 취득한 상품은 강제인증마크를 구입, 부착한 다음에야 중국 내에서의 판매와 중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함

□ 중국정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고, 2004년 4월에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 2006년 12월에는 일부 자동차 부품, 2009년에는 정보안전제품에 대해 추가로 실시하여 CCC인증 대상품목은 23개분야 214개 품목에 달함<sup>252)</sup>

□ CCC인증 신청절차는 ‘① 신청 및 접수 → ② 서류심사 → ③ 제품검사 → ④ 공장심사 → ⑤ 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함

□ 강제인증 대상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 강제인증 면제신청을 하여 강제인증으로 면제받을 수 있음(免CCC, 免3C)<sup>253)</sup>

- 연구용 또는 시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 완제품 가공 후 수출을 위한 부품
- 제3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경유만 하는 제품
- 기타 특수상황으로 수입되는 제품

□ 주중 외국 공관 및 사절단이 공적 및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개인물품, 외국의 무상구호물품,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전시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기타 중국정부

252) China Certification (<http://www.china-certification.com/en/list-of-ccc-mandatory-products>)

253) China Certification (<http://www.china-certification.com/en/ccc-exemptions>)

가 인정하는 특수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강제인증 비대상 품목임

〈표 V-12〉 강제인증품목

(단위: 개)

연번	분 류	품목수
1	전선 및 케이블	5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
3	저압형 전기장비	8
4	저공률 전동기	1
5	전동공구	16
6	전기용접기	15
7	생활용 전기제품	18
8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
9	정보기술장비	13
10	조명장비	2
11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37
12	자동차	2
13	자동차 타이어	5
14	안전용 유리	12
15	농기계 제품	4
16	라텍스 제품	1
17	의료기기	7
18	소방기기	12
19	기술안전보호제품	11
20	가정용 장식, 리모델링 제품	3
21	자동차 안전부품	14
22	장난감	6
23	IT 제품	-
합계		214

자료: China Certification(2013) 참고 저자 작성

- 동일한 HS코드상에서 일부 규격품목만이 CCC인증대상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규격품목에 대해서는 CC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중국 해관의 이해 부족으로 해당 제품이 인증대상으로 간주되어 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sup>254)</sup>
- 중앙정부와 해관당국 간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기준 불일치로 통관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CCC 인증 마크 취득 시 중국 내 현지인을 통한 인증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어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sup>255)</sup>
- 외국 정부의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직접 공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어 CCC 인증을 받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sup>256)</sup>
  - 통상 CCC 마크를 얻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이 외국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y)의 공장 실사 결과 적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나. 자발적 인증제도<sup>257)</sup>

- 중국 정부는 2011년 상반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기관 관리방법」을 공포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활동을 종합적으로 규범화하여 중국 내 자발적 인증 관련 규범 강화를 시도함
  - 인증기관 관리방법이란 중국 내 모든 인증 행위는 중국정부에서 허가한 인증기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인증법인을 중국에 설립하여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인증기관 및 인증인력의 업무상 행위를 규범화하고, 인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각급 인증감독부처가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법에 근거한 행정, 엄격한 관리를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254) 전군중(2010)

255) 전군중(2010)

256) 정환우(2012)

257) 정환우(2012)에서 요약 및 발췌

- 인증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록자본이 300만위안(약 5억원)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10인 이상의 전문 인증인력이 필요하며, CNCA(중국 국가인증인정 감독관리위원회)의 기준을 거쳐 인증기관 비준서를 획득해야만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인증활동을 할 수 있음
  - 제품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은 관련 제품인증에 적합한 테스트, 검사 등 기술력도 갖추어야 함
  
- 외자(外資) 인증기관을 설립하려면, 외국 투자자가 국외에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인증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불량기록이 없어야 하고, 인증기관은 인증교육 및 인증자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해서는 안됨
  
- 인증기관은 공정, 독립, 객관적으로 인증을 해야 하며 품질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개, 심사결정, 정보파일링, 인증인력관리 등 업무를 제도화해야 함
  - 인증범위, 인증규정, 비용기준, 인증서 현황 등을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하고 인증과정과 인증결과의 객관성, 진실성을 담보해야 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인력은 인증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
  
-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중국 진출 한국 인증기관의 사업 제한 및 자격요건 강화로 중국 내 인증활동이 어려워지고 운영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큼
  - 중국 내에 인증기관을 설립해야만 KC 등 인증의 중국 내 공장실사,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중국 진출 한국 심사기관을 경우 KC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됨
  - 중국 내에 인증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전담인력 고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인증기관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11년 기준, 중국에 CNCA 기준을 받은 인증기관은 174곳이며, 각종 제품, 관리시스템, 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발행된 증서는 총 177만개, 인증획득기관은 61만 곳임

### 다.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sup>258)</sup>

- RoHS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약어로 유럽연합(EU)이 2006년 7월 1일부터 EU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지침임<sup>259)</sup>
  - 6대 유해물질이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등을 말함
  - 동 지침은 2003년 2월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여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를 위해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을 제정함
  - China RoHS의 근거법률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환경 보호총국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2006년 2월 28일 발표하고 2007년 3월 1일 시행키로 결정하였음
  
- China RoHS는 전자정보제품 회수 처리와 재활용 업무에 대한 기초로 활용하여 ‘오염방지 및 예방우선’이라는 환경보호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등 중금속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등 난연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목표임
  - 제품 연구개발과 설계, 생산, 판매, 수입에서부터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을 점차적으로 친환경 물질로 대체 및 감량하게 됨
  - 폐기 전자정보제품의 회수, 해체, 처리와 재이용에 대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생산자

258) 한국조세연구원(2011)에서 발췌

259) KOTRA, 「국가정보(중국), 주요인증제도」, 2010

로 하여금 ‘오염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함

- 2007년 3월 1일부터는 1차적으로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적용 대상 전자정보제품은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의 ‘전자정보산업업종 분류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11종(1,400여 개의 세부 품목으로 구성)으로 구분됨
  - ① 전자레이더 제품
  - ② 통신설비 제품
  - ③ 라디오 TV 설비업종 제품
  - ④ 컴퓨터 관련 제품
  - ⑤ 가정용 전자제품
  - ⑥ 전자측량·계측기제품
  - ⑦ 전자공업 전용 설비제품
  - ⑧ 전자조립부품(元件)
  - ⑨ 전자 핵심부품 업종(器件)
  - ⑩ 전자응용제품
  - ⑪ 전자 전용재료제품 등
  
-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는 중국 역내에서 전자정보제품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전자 정보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수출제품 생산행위는 제외됨
  
- 동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EU 규칙에 비해 누락된 품목이 있고,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중국의 통제방법은 EU의 RoHS와 유사하지만, EU의 RoHS 대상품목에는 있으나 누락된 품목<sup>260)</sup>이 있고 구체적인 산업표준이나 국가표준이 없는 것으로 지적됨
  -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인증을 받을 때, SAIQ<sup>261)</sup>의 검사를 받아

260) 예를 들면, 전자레이더, 전자측정장비, 전자재료, 전자 유닛과 부품, 소프트웨어 등

261) SAIQ: 중국 수출입상품 검험국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for Import and Export Commodities

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과 방법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국제 기준이나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표 V-13〉 China RoHS와 EU RoHS 비교

구분	China RoHS	EU RoHS
시행일	2007년 3월 1일	2006년 7월 1일
시행시점에서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는 2007년 3월 1일부로 제품 라벨링 의무규정이 있음</li> <li>- 유해물질 제한 및 강제인증 이행 시기는 내년 3월 이후 늦춰질 것으로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제품은 지침해당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법적 제재조치 대상이 됨</li> </ul>
의무이행주체	설계자,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생산자
적합성 증명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통관 시 적합성 증명을 위한 시험 분석 실시. 중국 내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해서 재수출되는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자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관리하고 EU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적합함을 증명 (자체 선언 방식)</li> <li>-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때 감독기관이 사후 관리</li> </ul>
제한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대 유해 물질 및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규제대상 세부 유해물질 목록은 따로 규정할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대 유해 물질</li> <li>-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li> </ul>
RoHS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 향후 해당사항 반영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특정 용도에 대해 적용 예외 인정</li> </ul>
라벨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원산지, 유해물질명 및 함유량, 포장물 원료 목록,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 (유해물질이 누출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 상당히 광범위한 라벨링의 무사항 규정</li> </ul>	없음
법규개정 검토	매년	4년마다

자료: KOTRA(2013)

〈표 V-14〉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구분	China RoHS 적용 여부
제품, 부품 수입시	적용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중국내수	적용
제품, 부품 수출시	미적용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제품수출	미적용

자료: KOTRA(2010)

〈표 V-15〉 대상자별 관리방법의 의무준수사항

대상	관련근거	의무준수사항
전자정보제품 설계자	관리방법 제9조	전자제품 설계 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공법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무독·무해 또는 해독이 적고 쉽게 분해되어 회수 재활용에 편리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	관리방법 제10조~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생산 및 제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정보제품의 생산 또는 제조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원 이용 효율이 높고 회수 처리가 용이하며 환경 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공법을 채택해야 한다.</li> </ul> </li> <li>○ 환경보호 사용기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전자정보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결정한다.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하며, 제품 부피 및 기능의 제한으로 제품에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li> <li>- 표시 양식 및 방식은 공업정보화부와 국무원 유관부서가 통일화시켜 규정하며, 표시 샘플 및 방식은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및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li> </ul> </li> <li>○ 라벨링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에 관한 라벨링 작업을 해야 하며, 라벨에는 유해물질 또는 원소 명칭, 함유량, 소재 부품 및 회수 재활용 여부 등이 기재돼야 한다.</li> <li>- 제품 부피 또는 기능 제한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li> <li>- 라벨 양식 및 방식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무원 유관기관이 합의하여 규정하며, 전자정보 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li> </ul> </li> <li>○ 포장재 제작 및 사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정보제품 포장재 제작 및 사용시 반드시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무독·무해 및 분해가 용이하고 회수 재활용에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li> <li>- 전자정보제품에 포장재 재료명을 표기해야 하며 부피 및 표면 제한으로 표기가 어려울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li> </ul> </li> </ul>
판매자	관리방법 제15조	전자정보제품의 판매자는 반드시 제품 수입루트를 엄격히 관리하며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정보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자료: KOTRA(2013)에서 재구성

라. China REACH(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sup>262)</sup>

- 중국은 EU가 신화학물질 관리제도<sup>263)</sup>(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of Chemicals)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을 강화하자 의견수렴과 개정을 거쳐 2010년 1월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REACH)」를 국무원에서 통과시켰음
- 중국의 REACH는 운영 및 관리면에서 EU의 REACH와 유사하여 역내 기업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미등록시 역내시장의 진입이 금지됨
  - 신고 화학물질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보를 담은 위해성 평가보고서와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표 V-16〉 EU REACH와 중국의 REACH 비교

구분	EU REACH	중국 REACH
시행일	- 2007년 6월 1일	- 2010년 10월 15일
대상물질	-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	- 신규 화학물질
의무자	- 역내 제조자, 수입자, 유일 대리인	- 제조자, 수입자
시험기관	- 국제공인분석기관 자료 인정	- 환경보호부 지정 중국 내 시험기관 - 국외의 경우 GLP 인증기관
분류톤 수	- 1, 10, 100, 1000톤 이상	- 1톤 미만, 1톤 이상, 100kg 미만
위해성 대책관리	- 10톤 이상 등록 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 제출	- 1톤 이상 등록자, 가공자, 사용자는 등록증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대책 수립 의무
벌금/제재	- 등록되지 않으면 EU 역내에서 제조 또는 시장 출시 불가	-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 벌금 부과 - 신고/등록되지 않으면 중국 역내에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금지
기타	-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으로 구분	- 일반신규, 위험신규, 중점환경관리 위험신규화학물질로 구분 - 취급량 1톤 미만일 경우 간이신고, 특별간이신고 가능 - 공동신고 가능

자료: 장현숙(2010), 정환우(2012)에서 재인용

262) 정환우(2012)에서 발췌

263) 유럽연합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으로,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령과 22개의 지침서로 구성됨

- 중국의 REACH는 EU의 REACH와 달리 신규 화학물질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원가상승 압박이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화학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원료나 제품의 산업에 타격이 예상됨
  - 신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원가상승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3.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란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조치 및 이러한 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 관련 국제 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동식물 병해충, 식품, 음료, 사료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등의 위험에서 보고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함<sup>264)</sup>
  - 기존의 GATT체제 하에서도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GATT 규범의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통보 의무가 없었으므로 각국은 이 예외조항을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후 UR협상에 따라 농수산물 무역이 확대되면서 이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검역을 GATT 다자 간 무역체제 내로 편입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이에 WTO/SPS 협정이 1995년에 체결되었으며, 이 협정에서 각국의 위생검역조치는 자의적이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서는 안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가. 중국의 SPS 정책<sup>265)</sup>

- 중국에서 건강 및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the

264) 정환우(2012)

265) 정환우(2012)에서 발췌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RC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the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RC) 2곳이며, 근거법률은 「상품검사법」과 「검역법」임

- 중국의 SPS 규제는 법규 미비,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위험평가, 투명성 등 규범상의 한계와 규제시스템, 설비, 인적 여건 등의 미비 등 제도·집행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표 V-17〉 중국의 위생검역규범과 WTO규범의 합치성 평가

분야	내용
위생검역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정부의 조치에 따른 국제무역 제한 가능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문 규정 부재(「수출입동식물검역법」)</li> <li>- 표준, 지침 및 권고(SPS 3조) 근거 규정 부재 및 적절한 위생보호수준(SPS 5조)에 대해서도 미규정(「수출입동식물검역법」)</li> <li>- SPS 5조 7항의 예방적 조치 미규정(「수출입동식물검역법」)</li> <li>- 기타 WTO 가입 이후 실질적 위생검역규범 개정 미미 등</li> </ul>
국제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의 검사표준 미통일(즉 중국내 검역요건이 수출입검역 요건보다 덜 까다로움)</li> <li>- 동물방역 박멸과 제어 분야에 관련 표준문건 부재</li> <li>- 역병 상황보고, 유행병학 감시와 측량분석 분야에서 중국 규정과 국제적 수준 간 상당한 격차</li> <li>- 동물사육, 운송, 도살, 동물제품 가공 및 운송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통일된 규정 부재</li> <li>- 역병 진단방식, 수의실험실 관리 등 분야에서 이미 반포한 표준도 불충분한 경우 다수</li> </ul>
위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평가와 관련된 입법 부재</li> <li>- 심도 있는 연구 부재</li> </ul>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법규 다수가 내부적인 법률로 투명도가 낮음</li> <li>- 관련 법규 및 조례도 상당부분 불안진</li> </ul> <p>예)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물검역법」, 「수의약품관리조례」(국무원),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국무원) 등</p>

자료: 이양기(2009), 정환우(2012)에서 재인용

〈표 V-18〉 중국 위생검역제도와 WTO 제도의 합치성

구 분	내 용
규제 시스템	- 상이한 정부기관에 규제 권한 분산 (규제 참여기관) 위생부, 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 (결과) ①식품안전 정보의 흐름을 감소시키고 기관간 협력 방해, ②기관별 규정과 표준간에 부조화 발생, ③책임 회피와 전가 사유
자금·검사검역 설비	- 중국의 위생검역자금 투입액 191개국 중 188위(02년) - 검역검사 설비 낙후, 모니터링 기술 능력 낮은 수준 - 많은 항구에서 포장 해체 검사 및 관능검사 방법에 의존
전문인력	- 검역요원 부족 - 연령 과다, 직무재교육 부족, 지식 갱신 지연

자료: 이양기(2009), 정환우(2012)에서 재인용

## 나. 식품관련 규제

-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의 경우와 같이 매 품목마다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인 서류의 수정 시에도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sup>266)</sup>
-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sup>267)</sup>
  - 대개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배의 추가비용이 들 수도 있음

266) 외교통상부(2012)

267) 외교통상부(2012)

-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첨가물의 경우는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기준에 대한 합의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수입식품표시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 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함

#### 다. 의약품 관련 규제<sup>268)</sup>

-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80%를 공급하는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
  
- 최근 SFD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음
  
- 중국 수입약품의 심사·허가 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S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함
  - 수입 시마다 S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음
  
-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이 중국약전(CP<sup>269)</sup>; 中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268) 외교통상부(2012)에서 발췌

269) CP: Pharmacopoeia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수입의약품 심사 시 타국가의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약전을 적용함

-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 의약품 등록 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타국과 달리, 중국에서 임상실험 결과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됨

□ S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따라 약품수입허가를 결정하며, 중국 내 동류약품이 포화상태인 경우 수입관련 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음
  - 또한 수입 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함

#### 4. 통관 관련 규제

##### 가. 의약품 수입통관지 제한<sup>270)</sup>

- 중국 '수입약품관리방법'은 수입약품의 심사·허가 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이며 동 규정 제 3조에 따라 약품은 반드시 국무원(State Council)이 약품수입을 허가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함

270) 외교통상부(2012), KOTRA(2011)에서 발췌

- 수입약품은 반드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dministration)이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 가능함
- 수입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화물의 도착지는 약품수입이 허가된 항구에서만 가능하며, 중국 내 처음 수입되는 약품과 SFDA가 규정하는 생물제품은 국가의 특별승인을 받은 항구로 수입이 가능함

#### 나.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해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고, 수입화물의 통관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중계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임
-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함
  -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임
  -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임
  - 체납금은 통과신고일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안임

#### 다. 환급규정 수시 변경<sup>271)</sup>

- 환급규정과 절차에 관한 정보는 현지어로만 제공되고,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없어 업

271) 한국조세연구원(2011), KOTRA(2011)에서 발췌

체들이 혼란을 겪음

- 외국투자기업의 수출규모가 중국 전체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치세 환급규정 및 절차가 모두 현지어로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수출환급률 정책조정에 따라 기업의 해당 수출품목 환급률이 폐지되는 경우, 동일 HS 4단위하의 8단위 코드의 전체 품목에 대한 환급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실제 분류코드와 다른 코드로 계속 수출신고를 하던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됨

□ 자주 변경되는 수출증치세 환급율 정책을 정책에 대비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수출입업체는 해관에 수출입 신고 시 해당 제품을 정확한 HS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시로 환급률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함

□ 이미 수입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품질이나 또는 규격 상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원상태로 화물을 재반출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서면형식으로 해관에 사유를 설명하고 세금납부증명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 라. 이중 세관검사<sup>272)</sup>

□ 발취 검사를 실시한 물품에 대해 추후 전량검사를 재실시하는 이중세관 검사로 인해 납기지연 및 비용 상승문제가 발생함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의 신고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해관절차를 말함<sup>273)</sup>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신고서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

272) KOTRA(2008)

273) KOTRA,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2002

타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함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함
  
- 해관은 실제 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하여 전수검증,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의 검사방식을 채택함<sup>274)</sup>
  -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해관의 감독지역 내 항만, 기차역, 공항, 우체국 혹은 기타 해관감독장소에서 진행됨
  
- 하지만, 검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규정이 없이 해관원 자체 판단하에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발취검사를 한 물품에 대해서도 전량검사를 재 실시하는 등 이중검사의 애로사항이 발생함
  - 이런 경우는 비싼 원자재 통관 시 흔히 발생하며, 해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필요 자재량보다 많이 수입됐다고 생각할 때에도 검사강도를 다르게 적용함
  - 원자재의 경우 5~10%만 검사하는 데 반해, 설비는 100% 검사하고 통관수속이 완료된 후에도 각 공장의 관할지 해관에서 재통관 수속이 진행됨
  - 지역과 해관원에 따라 검사기준이 다름

#### 마.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sup>275)</sup>

- 중국 해관은 「공식가격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에 공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여 일부 제품의 경우, 과소평가(under value) 및 덤핑 방지를 위해 해관이 정한 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
  
- 중국은 자국의 관세제도를 WTO 관세평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수입화물 과세가격심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입양

274)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275) KOTRA(2008)

측의 약정이 아닌 정부가 제시한 공식가격에 의해 관세가 부과됨<sup>276)</sup>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텐진항을 통해 수입된 원유, 석유화학 제품, 야금원료, 대두 등에 대해 공식가격을 책정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수입화물이 규정에서 지정한 「수입화물 가격책정 공식 상품리스트」 내의 제품일 경우 공식가격 계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수입지역 직속해관에 계약문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관은 화물 수입신고 시 결산가격이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확정됐을 경우 결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한다고 발표함
- 결산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관에 세금담보금을 납부한 후 화물을 수취할 수 있으며, 결산가격이 확정된 후 해관에서 결산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 심사를 시행함

□ 기준가격제란 해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과세가격을 평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관이 임의로 정한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업송장이나 실거래가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일체 인정을 해주지 않음

- 기준가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 산정기준을 질의해도 이에 응하는 경우는 없으며, 해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통관물품의 억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276) KOTRA(2006)

〈표 V-19〉 가격책정 공식 대상품목

순서	품목	HS CODE
1	대두	12010091
2	철광사 및 철광사 정광	26011110, 26011120, 26011190 26011200
3	구리광사 및 구리광사 정광	26030000
4	석유원유 및 아스팔트 광물의 원유	27090000
5	기타 디젤유 및 기타 연료유	27101929
6	5-7호 연료유	27101922
7	액화 프로판	27111200
8	액화 부탄	27111390
9	액화 프로판, 액화 부탄 혼합물	27111200 혹은 27111390
10	산화알루미늄(제련급)	28182000
11	벤젠	29022000
12	메틸벤젠	29023000
13	파라자일렌(P-Xylene)	29024300
14	스티렌(Styrene)	29025000
15	Isooctyl Alcohol	29051600
16	1, 2-에틸렌글리콜(1, 2-Ethylene Glycol)	29053100
17	테레프탈 산	29173610
18	아크릴로니트릴	29261000
19	순MDI(메틸렌 디 이소시아네이트)	29291030
20	중합MDI	38249040
21	전해정련동	74031100
22	비합금알루미늄	76011010, 76011090

자료: KOTRA(2008)

### 바. 보세운송 불허

- 일부 품목의 경우 보세운송을 불허하고 도착 항구에서 통관을 강요해 상당한 경비 및 시간이 소요됨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는 자동차, 폐기물(동물 폐기물, 야금·제련 폐기물, 나무·나무제품 폐기물, 방직품 폐기물, 금속 및 금속제품 폐기물, 각종 폐금속·폐전기제품, 폐운송설비, 특수용도 수입폐기물, 폐플라스틱 부스러기 등), 화공품(화학무기 제조가능 감시대상 화학품, 오존층 파괴물질, 화학무기 주요성분, 화학무기원료,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품, 염화나트륨 등) 등임
- 위의 품목의 보세운송이 불가능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자동차는 보세운송을 불허하고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深圳皇崗), 아라산구(阿拉山口) 등 7개 도착 항구에서 직접 통관하게 함

## 5.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가.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하며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의 새로운 지식기반 권리들을 포괄함<sup>277)</sup>
  - 중국은 이 지식재산권을 지식산권(知識產權)이라 표현하며 그 안에는 산업재산권(工業產權), 저작권(版權)과 그 외 기타권리를 포함함
  - 산업재산권(工業產權)은 특허권(專利權)과 상표권(商標權)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특허권은 특허(發明專利), 실용신안(實用新型專利), 디자인(外觀設計專利)으로 분류됨<sup>278)</sup>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합하여 '전리(專利)'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77)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중국편」, 2009

278) KOTRA, 「중국 국가정보: 무역(지식재산권)」, 2013

〈표 V-20〉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관련행정기관
산업 재산권	전리권	발명	전리법 (专利法)	국가지식산업국 (國家知識產權局)
		실용신안: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방안(물건에만 해당)		
	디자인: 제품의 형상, 도안, 색채 등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상표권	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 증명상표, 단체 포장	상표법	상표국
저작권		문학작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도 등 도형작품, 모형 작품,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법	국가 판권국
기타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Client정보	부정당 경쟁 방지법	국가공상행정관 리국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도	반도체 직접회로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 설계 보호조례	국가지식산업국
	식물 육종권	식물 신품종	식물신품종 보호 조례	국가농업부

자료: 특허청(2009), KOTRA(2013)

〈표 V-21〉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법령

구분	법령
특허	특허법, 특허법실시세칙, 특허법 해관보호 실시관련 약간의 규정,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
상표	상표법, 상표법 실시세칙, 유명상표인증과 보호규정
저작권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저작권법 실시조례,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조례, 인터넷 저작권행정보호방법,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등기방법, 인터넷 정보 전파 보호조례
음반제품	음반제품 관리조례, 음향제품 출판관리규정, 음향제품 도매/판매/임대 관리방법, 음향제품 수입관리방법
식물 신제품	식물신제품 보호조례, 식물신제품 보호조례 실시세칙(농업부문), 식물신제품 보호조례 실시세칙(임업부문), 농업식품 신제품권 침해안건 처리규정
해관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공안기관	형사소송법
사법기관	소송전 특허침해행위정지 법률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 불법출판물 형사안건 심사에 관한 구체응용법률 문제해석,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안건 수리에 관한 구체응용 법률문제 해석

자료: 「중국투자실무가이드」(KOTRA, 2007), KOTRA(2013)에서 재인용

## 나. 지식재산권 해관보호조치

- 지식재산권 보호란 수출입화물과 관련되어 중국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보호하는 전용상표권,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및 특허권의 해관보호를 말함<sup>279)</sup>
  -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하며, 해관은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함<sup>280)</sup>
  - 지식재산권 해관보호는 권리침해가 있는 수출입화물의 압류, 화물의 권리침해 등을 조사, 권리침해 화물의 수하인, 발송인에 대한 처벌,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 및 처리 등이 있음<sup>281)</sup>

279)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국무원령 제572호, 2010, 제2조

280)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제3조

-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지식 재산권을 해관총서에 등록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sup>282)</sup>
  -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역 또는 국적 등
  -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밖의 관련된 정보
  -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현황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원산지, 수출입 해관, 수출입업체, 주요 특징, 가격 등
  - 기확보한 지식재산권 침해화물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수출입 해관, 주요 특징, 가격 등
  
- 해관총서는 제반 신청서류를 접수일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함<sup>283)</sup>
  - 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또는 효력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아닌 경우, 지식재산권이 법률과 행정법규의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관총서는 등록을 거부함
  
- 지식재산권 해관보호등록은 해관총서의 등록접수일로부터 유효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유효기간은 10년임<sup>284)</sup>
  - 지식재산권이 유효한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해관보호등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해관총서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된 신청서의 매회 유효기간은 10년임
  - 지식재산권 해관보호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28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282)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제7조

283)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제8조

284)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제10조

법률과 행정법규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해관보호등록의 효력이 즉시 상실됨

- 권리침해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류는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권리침해가 있는 화물을 압류할 권한이 있음<sup>285)</sup>
  - 신청에 따른 압류 : 지식재산권 권리인이 권리침해 화물이 수출입되는 것을 발견한 후 해관에 신청하면 해관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인의 신청에 따라 권리침해 화물을 압류함<sup>286)</sup>
  - 직책에 따른 압류 : 해관에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주도적으로 채택하는 압류와 조사처리의 조치를 일컬음<sup>287)</sup>
  
- 압류한 지식재산권 침해혐의화물이 해관의 조사를 거쳐 침해사실이 확인되면 해관에서 몰수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에 서면으로 통지함<sup>288)</sup>
  - 몰수한 지식재산권 침해화물이 사회공익사업 사용에 가능한 경우 공익기구에 전달하여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수매의향이 있는 경우 유상으로 권리자에 양도함
  -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수매의향이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함
  - 권리침해 특징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폐기 처리함

28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286)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제13,14,15조

287)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제16조

288)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제27조

〈표 V-22〉 신청에 따른 해관보호절차

구분	세부내용
신청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관은 권리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li> <li>-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접수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권리인에게 통보</li> </ul>
화물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인이 해관에서 화물을 압류하기 전에 화물 검사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동의하에 관련 기록을 작성</li> <li>- 해관의 동의를 받아 권리인은 해관의 화물 압류 전에 신청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음</li> </ul>
화물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 압류를 결정할 경우, 서면 통지와 압류 증빙을 수하인과 발송인에게 송달하며 권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li> <li>- 수하인과 발송인이 해관의 화물 압류 후에 화물 검사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반드시 동의해야 함</li> </ul>
샘플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한 수량의 샘플을 추출하며 화물 사진을 찍어야 함</li> </ul>
반담보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 압류 후 20일 내에 수하인과 발송인의 청구를 접수한 후 해관은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물통관을 시키며 권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li> </ul>
화물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 압류 후 20일 내에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중지 또는 재산보전조치의 협력집행을 명령한 서면 통지를 접수한 후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도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 화물을 통관시켜야 함</li> </ul>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 해관은 화물 관련 통관신고서류와 첨부한 관련 문건, 증거 복사본을 해관 법규부서에 제출하며 법규부서는 등록해야 함</li> </ul>

자료: 중국 해관총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재인용

〈표 V-23〉 직책에 따른 해관보호절차

구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등록DB 검색	- 해관총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록신청 관리시스템에서 검사하여 확인
지적재산권현황의 보충신고를 요구	- 등록관리시스템을 검색한 후 화물의 권리침해를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수하인과 발송인에게 3일 내에 지적재산권 현황의 보충신고하며 관련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
보고 및 연락	- 권리인이 3일 내에 수권을 서면으로 확인할 경우, 해관 법규부서는 즉시 화물 통관을 통보하며 서면 확인서를 현장 해관에 팩스로 발송
담보금액 확정	- 화물가치<2만위안일 경우,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받음 - 화물가치가 2만위안~20만위안일 경우, 담보금액은 화물가치의 50% - 화물가치>20만위안일 경우, 담보금액은 10만위안
담보 수취	- 권리인이 제출하는 담보형식은 담보금,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구의 담보서를 포함
화물 압류	- 수하인과 발송인이 화물 검사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반드시 동의해야 함
공안기관에 중대한 사건정보 통보	- 해관 법규부서는 중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의 정보를 소재지 시급 공안기관에 통보 - 공안기관에 사건정보를 통보할 경우,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을 조사
반담보 통관	- 수하인과 발송인이 수출입화물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해관에 화물 통관을 청구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화물 압류일로부터 50일 내에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금을 수취해야 함
조사 인정	- 화물을 압류한 후 화물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인정
처리의견 확정	- 해관 법규부서는 화물 압류일로부터 30일 내에 침해여부를 인정하며 권리인에게 「지적재산권현황 조사결과통지서」를 발급
사건 처리	- 해관 법규부서는 화물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확정할 경우,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와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 - 처벌결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처벌결정서 복사본을 등록
권리침해 화물, 물품 압수	-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와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몰수해야 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 물품에 대해, 공고를 발표 - 해관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관에서 화물을 몰수

자료: 중국 해관총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에서 재인용

## Ⅵ.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 중국의 수출입화물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및 반출입’ 등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sup>289)</sup>

〈표 VI-1〉 중국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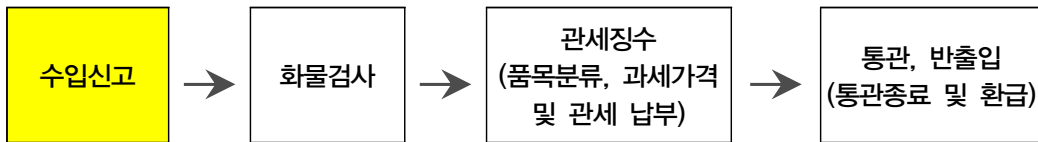
단계	유의사항
1. 수입신고 (신고 전 서류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성실한(AA, A류)기업을 통관대리인으로 선택하고, 수출입신고 전 화물분석 및 사전 품목분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li> <li>○ 전시회 등 참가물품을 통관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시회 등 주관사에서 비준서, 일시수입허가증 등을 구비해야 하고, 주관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탁하고 우선통관하며 전시회 종료후 물품 반출 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해관과 협의해야 함</li> <li>○ 모든 상품은 적절히 상품에 대한 정보(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원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생산품의 원산지, 수입자 내지 중국내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li> </ul>
2. 물품(품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현장에 임하여 해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개장 및 포장을 수행해야 하고, 사전에 이해하고 숙지한 신고화물에 대한 정황을 검사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li> <li>○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검사 시 화물 훼손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화물에 훼손 부분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해관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li> </ul>

289) KOTRA(2013)

〈표 VI-1〉의 계속

단계	유의사항
3. 관세징수 (품목분류, 과세가 격심사 및 관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분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대리인 의존을 지양하고,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직접 확인해야 함</li> <li>- 수출입관세율 및 수출환급률 등에 따른 편법적인 품목분류를 금해야 함</li> <li>- 수출입 전 사전품목분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li> <li>- 품목분류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 제도적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함</li> </ul> </li> <li>○ 가격신고 관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 및 제시해야 함</li> <li>- 해관의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함</li> <li>- 신고가격과 무관한 기업의 영업비밀자료는 제출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함</li> </ul> </li> <li>○ 다른 사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확실한 품목 분류의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해관총서 내부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여 해관총서 차원의 종합적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전자개항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비 납부를 시행하는 해관에서는 전자개항을 이용하여 해관에서 발급한 세금납부 고지서와 비용수납증명서를 받아 보고 인터넷으로 지정은행에 전자적으로 세비를 납부할 수 있음</li> <li>○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해관은 금융기관에 대해 잠정지급 정지한 계좌항목 중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하도록 통지하거나 세금충당고지서를 발급하고 압류한 화물 등을 환매한 후 환매소득을 세금을 충당함</li> <li>○ 납세의무자나 담보인이 납세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li> </ul>
4. 통관 및 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 변경되는 수출증치세 환급율 정책에 대비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해관에 수출입 신고시 해당 제품을 정확한 HS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시로 환급률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함</li> <li>○ 이미 세금을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의 원인으로 원상태로 반송 수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일로부터 1년 내에 해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li> <li>○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는 과다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li> </ul>

## 1. 수입신고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신고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위탁받은 통관기업이 「해관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과 장소에서 전자자료신고서와 종이신고서 양식을 채용하여 해관에 실제적인 수출입화물의 정황을 보고하고 해관의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함<sup>290)</sup>
-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 절차의 첫 단계로, 현재 중국해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 등 3가지로 구성됨
  - 해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의 통관인원만이 통관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입물품에 관해서는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초과시 신고연체료(도착가격의 5/1,000)가 부과됨<sup>291)</sup>
  - 수출물품은 보세구역 등에 도착후 적재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까지 해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함<sup>292)</sup>
- 전자자료 신고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말기 신고방식, 위탁 EDI방식, 직접 EDI방식, 인터넷 신고방식 등 4가지 종류의 신고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서 내용을 해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자료 신고서가 생성됨<sup>293)</sup>

290)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14호, p. 23

291) 「해관법」 제24조

292) 「해관법」 제30조

293)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14호, pp. 25~26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입력을 위탁하거나 또는 직접 신고서자료를 입력하는 컴퓨터상에서 해관에 전송한 신고접수 내역, 즉 전자신고의 성공 여부를 받아볼 수 있음
  - 만약 해관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수정한 후에 다시 신고해야 함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으로부터 전자자료 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현장제출’ 또는 ‘면허제출’이라는 통지를 받게 됨
    -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쇄된 종이신고서와 규정된 첨부서류 및 서명날인을 가지고 화물소재지 해관에 도착하여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해관수속을 밟아야 함
- 수입화물의 경우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해관에 신고하고,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해관에 신고하며, 타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이 전화물로 호칭함
- 케이블, 파이프 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 화물은 해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 신고제를 실시함
  -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해관에 신고함
- 해관에서 수출입화물의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전자자료와 종이로 된 수출입화물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에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음<sup>294)</sup>
-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초 신고를 접수한 해관에 수출입화물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① 통관원이 실수로 신고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조작하였으나, 밀수나 기타 법규 위반혐의가 없는 경우
    - ② 수출화물 면허 후, 운송 적재 등 원인으로 당초 신고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

294)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14호, p. 26

하거나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수출입화물의 적재, 운송, 보관 등 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에 따른 멸실 등으로 인해 당초 신고하였던 자료와 실제 화물이 불일치할 경우
  - ④ 무역관례에 따라 임시거래가격을 채용하고 실제로 결산시 상품검사 품질인정 또는 국제시장의 실제가격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신고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 ⑤ 컴퓨터나 네트워크시스템의 원인으로 인해 전자자료 신고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
- 해관에서 수출입화물신고서에 수정 또는 취소가 필요함을 발견하였으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수출입 화물의 품명, 수량,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등 신고항목에 대한 신고오류 및 미신고시에는 행정처벌이 부과됨

〈표 VI-2〉 부실신고에 대한 5종의 행정처벌(벌금부과)

부실신고 내용	행정처벌
해관통계의 정확성 영향 초래	1천RMB 이상 1만RMB 이하
해관의 감관질서 영향 초래	1천RMB이상 3만RMB 이하
허가증관리 영향초래	화물가액의 5% 이상 30% 이하
세금징수 영향 초래	탈세액의 30% 이상 2배 이하
외환·수출환급관리 영향 초래	신고가격의 10% 이상 50% 이하

자료: KOTRA (2010)

- 신고행위의 정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신고서 외에 해관의 요구 시 별도의 보완신고서를 이용하여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원산지 자료를 보완신고해야 함<sup>295)</sup>
  - 신고화물의 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등에 대한 심사진행 시 요구되거나 신고화물의

295) 관세청(2011),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p. 31

원산지에 대한 심사진행 시 원산지증명서 등이 요구될 때, 기반출한 화물의 가격,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등에 대한 세부조사 및 확인시 등에 요구됨

- 보완신고서는 수출입 신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게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이 부과됨
- 보완신고는 해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송수하인 등이 기한 내에 보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관은 이미 파악된 정보에 의거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원산지를 확정함

## 나. 애로 사례

- 수출입신고 시 해관감관, 세금징수, 무역통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실(不實)신고의 사례(수량, 가격, 원산지 등)가 빈번히 발생함<sup>296)</sup>
  - 부실신고는 밀수허위신고와 유사하게 여겨지며, 고의가 없는 경우 부실신고, 주관적인 해관감관 또는 관세 포탈 등의 고의가 있는 경우 밀수허위신고에 해당됨
  - 신고내용 심사나 분석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일반적인 처벌대상으로 해관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함
  - 해관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해관의 오해를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 가공무역기업의 비준받지 않은 국내판매 등 법규 미준수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위험내용에 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함
  - 비준받지 않은 국내판매에 관하여 과태료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업분류 등급하향조정 등의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음
  - 허위신고에 관하여 밀수는 입건 및 구속이 가능하고, 가공무역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원재료의 수책 불평형에 관하여 관세, 증치세, 지연이자 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296) 관세청(2011),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 전시회 등 참가물품을 해관통관에 필요한 제반구비서류 없이 공항 등으로 입국하다가 관련물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전시회 등 참가물품은 일시수출입 통관 절차로 처리되어야 하나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무신고, 밀수 등으로 간주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 상무부 등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소규모 전시회, 상품 관측행사 또는 학술 세미나 등에 임의로 참가하는 물품은 면세통관이 불가함
  
-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7개 지역 이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특구,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함<sup>29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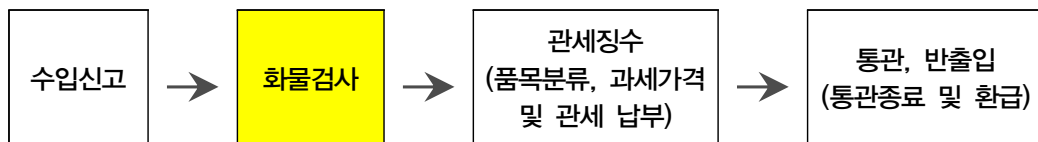
#### 다. 업무상 유의점

-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성실한 기업을 통관대리인으로 선택하고, 수출입 신고 전 화물분석 및 사전 품목분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수입계약서 체결 또는 통관위탁 협의 시 신고부실 책임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음
  
- 해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법규 미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자진신고하는 편이 나으  
나 해관마다 견해가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함
  - 비준받지 않은 국내판매에 관하여 금액적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기술적 실수부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편이 바람직함
  - 수책의 불평형에 관하여는 해관은 검사를 통하여 불평형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평형에 대한 최소한 부분적으로 신고가 필요함

297) 외교통상부(2010),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 전시회 등 참가물품을 통관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시회 등 주관사에서 비준서, 일시 수입허가증 등을 구비해야하고, 주관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탁하고 우선통관하고 전시회 종료후 물품 반출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해관과 협의해야함

## 2. 화물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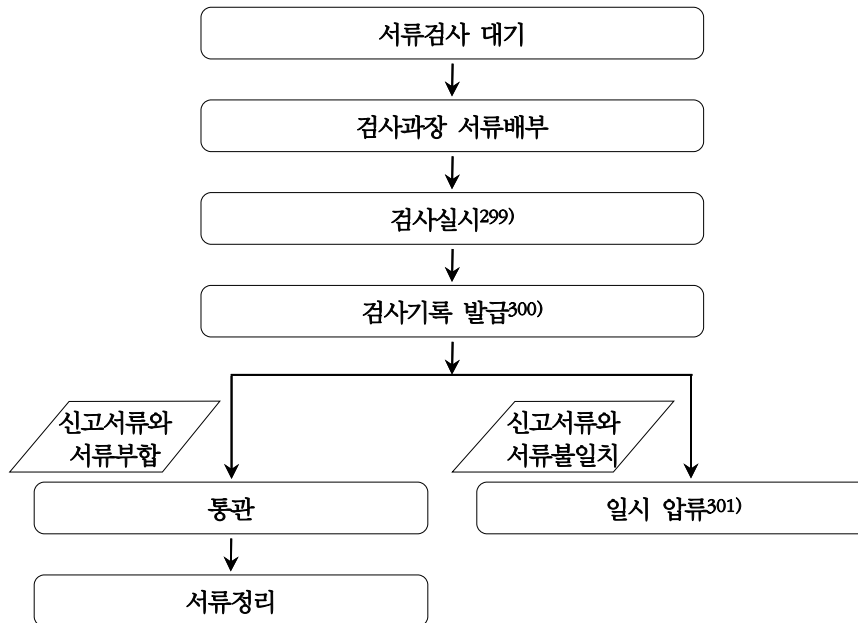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의 신고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해관 절차를 말함<sup>298)</sup>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신고서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함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함
  - 수입화물의 HS 코드, 적용세율, 도착항 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결정함

298) KOTRA(2002),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그림 VI-1] 화물검사업무 흐름도



자료: 양천호 · 김영춘(2005)

- 해관은 실제 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하여 전수조사,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의 검사방식을 채택함<sup>302)</sup>
  -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sup>303)</sup>
  
-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해관의 감독지역 내 항만, 기차역, 공항, 우체국 혹은 기타 해관감독장소에서 진행됨<sup>304)</sup>

299) 검사를 실시할 때,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직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이동하거나 개봉하여야 한다.

300) 화물검사 후 화물과 신고서가 부합하면 검사직원은 검사기록을 출력하고 서명날인하고,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기록에 서명하여 확인한다. 해관은 서류 반환수속을 한다.

301) 검사결과 화물과 서류가 부합하지 않으면 화물을 일시 압류하고, 관련 수속을 한다.

302) KOTRA(2010), 「국가정보(중국)」

303) 해관총서, 「수출입화물 검사관리방법」, 해관총서령 제138호, 제7조, 2005

304) 「수출입화물 검사관리방법」 제3조

-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함
  - 특수상황에서 해관 담당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비용징수 규정에 근거하여 해관은 검사비용을 징수함
    - 해관담당자 1인당 50위안/일,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4시간 미만은 1/2로 계산하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1일로 계산하고, 법정휴일은 평일의 배로 징수함
- 검사종료 후 해관담당자는 「해관수출입화물 검사기록」을 작성하며, 주로 검사시간, 장소 및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의 명칭, 화물상황, 검사종료 후 화물의 운송포장 상황, 화물의 명칭, 규격, 원산지, 품질, 수량, 상태 등의 검사결과를 기재함<sup>305)</sup>
- 화물검사기록부는 수출입화물의 해관검사 시 작성될 작업서류로서 수출입화물의 현장검사 증명서류인 동시에 해관과 화물의 송수하인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임
  - 검사기록부는 해관의 관세징수, 통계, 사후관리 및 「수출입화물증명서」의 발행근거이며 밀수 등 위법 안건조사 및 납세분쟁 처리의 증거가 됨
-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관은 이미 검사한 화물에 대하여 재검사할 수 있음<sup>306)</sup>
- 최초 검사로는 화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미 검사한 화물의 특성 중 일부에 대하여 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밀수혐의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해관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 해관이 동의한 경우
  - 기타 해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관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혹은 대리인이 입회하지 않아도 수출

305) 「수출입화물 검사관리방법」 제10조

306) 「수출입화물 검사관리방법」 제11조

입화물에 대하여 개장검사를 할 수 있음<sup>307)</sup>

- 수출입화물이 밀수혐의가 있을 때
- 해관에서 검사통지를 하였으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해관은 감독관리 구역 내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하여 검사비용을 받지 않으나, 컨테이너, 컨테이너차량 또는 기타 화물에 해관봉인 시 규정에 따라 봉인 원가비용을 청구함<sup>308)</sup>

- 검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출입화물 이동·개장 및 재포장 등의 비용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부담해야 함
- 해관 감독관리구역 외에서 화물검사 시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해관에 검사료를 납부해야 함

□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해관은 반드시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함<sup>309)</sup>

- 해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시 해관담당자의 원인으로 조성한 피검사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가리킴
- 배상금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 증명에 따라 확정함
- 해관담당자의 화물,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해관담당자는 「해관 화물, 물품검사 손해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해관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함
- 배상금액이 확정되면 해관은 「손해화물, 물품의 배상통지서」를 발행하고, 화주는 통지서 접수 후 3개월 내 해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 있으며, 3개월 기한이 지나면 해관은 배상하지 않음

307) 「수출입화물 검사관리방법」 제12조

308) 「수출입화물 검사관리방법」 제17조

309) 「해관법」 제94조

-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 상품검사기구 시행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하는 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외자기업이 수입할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하거나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함
  -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sup>310)</sup> 혹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함
  -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의뢰할 수 있음

#### 나. 업무상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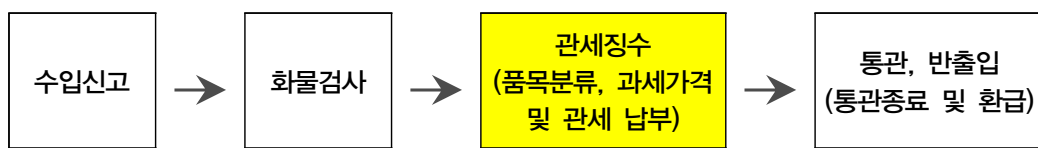
- 199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sup>311)</sup>
- 해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현장에 임하여 해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개장 및 포장을 수행해야 하고, 사전에 이해하고 숙지한 신고화물의 정황에 대하여 검사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검사기록은 정확하고 명료해야 하며, 검사협조인은 즉시 검사기록에 서명날인해야 하며, 만약 검사협조인이 날인하지 않으면 해관검사공무원은 검사기록에 이를 명기하고 화물이 장치된 해관감관장소의 경영인으로 하여금 서명케 하여 이를 증명하도록 함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검사 시 화물 훼손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

310)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311) 외교통상부(201)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화물에 훼손 부분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해관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 3. 관세징수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1) 품목분류<sup>312)</sup>

- 수출입화물의 품목분류는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해관에 신고하는 화물의 실제 상태에 의하여 확정하며, 사전신고방식 수출입화물의 경우, 상품분류는 화물이 해관감독관리장소에 도착할 당시의 실제 상태에 의거하여 확정함<sup>313)</sup>
  - 법률 및 행정법규와 해관총서규정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동일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동시에 같은 항구에 도착하고, 동일한 수화인에 속하거나 동일한 B/L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수입화물의 경우, 품목분류규칙에 따라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며, 해당 수화인 또는 대리인은 관련 상품을 해당품목번호로 분류하여 해관에 신고해야 함<sup>314)</sup>
- 해관은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 심사 시, 「해관법」과 「수출입관

312) 본 보고서 중 ‘Ⅲ. 중국의 관세제도’ 3. 품목분류제도 및 사전가격심사제도’ 참고

313) 해관총서, 「해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관리규정」, 제5조, 해관총서령 제158호, 2007

314) 「해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관리규정」, 제7조

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이에 협조해야 함<sup>315)</sup>

- 열람 및 관련 증거서류·자료의 복제
-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견본 및 관련 상품자료의 제공 요구
-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학분석·검사를 실시 및 해관이 인정하는 화학분석·검사결과에 따라 상품분류 실시

□ 해관은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에게 상품분류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이에 협조해야 함<sup>316)</sup>

-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관련사실을 숨기거나 지연시키고, 관련증서·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해관은 신고내용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를 심사확정 할 수 있음

□ 화물의 상품분류에 대한 해관심사가 끝나기 전에,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화물통관을 요구 하는 경우, 해관 사무담보 관련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함<sup>317)</sup>

-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국가의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허가증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및 법률·행정법규 규정에서 담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담보통관을 할 수 없음

□ 해관에 등록된 수출입경영업체는 화물 실제수출입 45일 전에 실제 화물 수출입 예정 소재지의 직속해관에 수출입 예정 화물의 사전품목분류 신청을 할 수 있음<sup>318)</sup>

- 직속해관은 심사후, 사전분류를 신청한 상품의 품목분류사항에 대해 신청접수일로부터 15 근무일 내에 「상품사전분류결정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고지함

315) 「해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관리규정」, 제10조

316) 「해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관리규정」, 제11조

317) 「해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관리규정」, 제14조

318) 「해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관리규정」, 제15,16,17,18조

○ 신청인이 「상품사전분류결정서」를 발급한 직속해관 관할지역에서 「상품사전분류결정서」에 기재된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해관은 「상품사전분류결정서」의 품목분류 의견에 따라 심사하여 통관함

□ 직속해관은 심사결과 사전분류를 신청한 상품의 품목분류사항이 관련 법률 및 해관총서가 발표한 상품분류의 행정재정·상품분류결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접수일로부터 7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하도록 통지함<sup>319)</sup>

○ 해관총서가 상품분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하고, 해관총서가 대외에 공포하여야 하며, 철회된 품목분류 결정은 철회된 날로부터 효력을 잃게 됨

## 2) 과세가격<sup>320)</sup>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해관이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결정하며, 과세가격에는 화물을 중국 내 수입지점까지 운송후 하역 전까지의 운임과 운송관련 비용 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함<sup>321)</sup>

□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관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고 납세의무자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sup>322)</sup>

- 1) 동종동질화물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 2) 유사화물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 3) 공제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 4) 산정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319) 「해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관리규정」, 제20,24조

320) 본 보고서 중 ‘Ⅲ. 중국의 관세제도’ 2. 관세평가제도’ 참고

321) 해관총서,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5조, 해관총서령 제148호, 2006

322)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6조

## 5) 합리적인 방법

- 수입화물 거래가격이란, 판매자가 중국내에 당해 화물을 판매 시에 구매자가 당해 화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조정항목을 조정한 금액의 총액을 말하며, 직접지급금액 및 간접지급금액을 포함함<sup>323)</sup>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화물의 가격이 당해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sup>324)</sup>
  - 수입화물의 가격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일정수량의 다른 화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확정된 경우
  - 수입화물의 가격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다른 화물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확정된 경우
  - 기타 해관 심사 결과, 수입화물의 가격이 당해 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하는 경우, 당해화물의 실제 지급한 가격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의 비용 또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함<sup>325)</sup>
  - 구매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비용
    - 구매수수료 이외의 수수료 및 중개료
    - 당해화물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비용
    - 포장재료비용 및 포장노무비용
  - 수입화물의 생산 및 중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무상 또는 원가 이하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분담할 수 있는 아래의 화물 또는 용역의 가치

---

323)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7조

324)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10조

325)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11조

- 수입화물에 포함된 원재료, 부속품, 부품 및 유사화물
- 수입화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공구, 금형 및 유사화물
-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재료
-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물품 생산을 위한 공정설계, 기술개발, 공예 및 제도 등 관련 용역
-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권리사용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권리사용료와 당해화물이 관련이 없는 경우
  - 권리사용료의 지불이 당해화물을 중국 내에 판매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
-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해당화물 수입 후의 판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전술한 비용 또는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를 해관에 제출하여야 함
  - 납세 의무자가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관당국과 납세의무자는 가격협의를 거쳐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6조에 열거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
- 생산지원비용을 계산하여 수입화물 거래가격에 가산할 물품가치를 확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관련비용을 계산함<sup>326)</sup>
  - 구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는 구입가격을 가산함
  -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혹은 특수관계 있는 제3자로부터 획득한 경우에는 생산원가를 가산함
  - 구매자가 임차방식으로 획득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임차비용을 가산함
  -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구, 금형 및 유사한 물품의 가치에는 그 공정설계·기술개발·공예 및 제도비용 등을 포함함
  - 물품이 판매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이미 구매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근거하여 감가상각한 후의 가치로 결정함

326)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12조

- 수입화물의 가격 중 아래의 세금·비용은 당해화물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음<sup>327)</sup>
- 공장, 기계 또는 설비등 화물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건설, 설치, 조립, 수리 또는 기술원조비용 (유지비용은 제외)
  - 수입화물을 중국내 수입지점까지 운송하여 하역한 이후에 발생하는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
  - 수입관세, 수입단계에서 해관이 대리징수하는 세금 및 기타 내국세
  - 국내에서 수입화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
  - 국내의 기술훈련비용 및 국외 시찰비용
-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자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음<sup>328)</sup>
- 이자비용이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구매하기 위한 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 서면형식의 용자협약이 있는 것
  - 이자비용이 별도 표기 된 것
  - 납세의무자는 관련이자 용자 당시 현지의 동종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이자수준보다 높지 않고 또한 용자를 받지 않은 동종동질·유사 수입물품의 가격과 수입화물의 실제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상당히 근접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거래가격 이외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동일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유사 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공제가격 평가방법, 산정가격 평가방법, 합리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평가함
- 동일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이란 해관이 수입화물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중화인민 공화국 내에서 판매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 한 평가방법을 말함<sup>329)</sup>

327)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15조

328)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15조

329)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18조

- 유사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이란 해관이 수입화물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중화인민 공화국 내에서 판매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 한 평가방법을 말함<sup>330)</sup>
  
- 공제가격 평가방법은 해관이 당해 수입화물·동일 또는 유사 수입화물의 국내판매가격 을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결 정하는 방법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sup>331)</sup>
  - 당해화물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당해 화물 또는 동종동질·유사화물이 국내에서 판매된 가격
  - 수입당시 상태대로 판매된 가격
  - 국내에서 첫 번째 거래단계에서 판매된 가격
  - 국내에서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가격
  - 판매되는 화물의 합계판매총량이 가장 큰 가격
  
- 공제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하는 경우 아래 각 항목은 공 제해야 함<sup>332)</sup>
  - 동일등급 또는 동일종류 화물이 국내 첫 번째 판매 단계에서 판매 시 적용되는 통상 의 이윤 및 일반경비(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포함) 및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 화물이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된 이후의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과 보험료
  - 수입관세, 수입단계에서 해관이 대리징수하는 세금 및 기타 내국세
  
- 산정가격 평가방법이란, 해관이 다음 각 항목의 합계를 기초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하는 방법을 말함<sup>333)</sup>
  - 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원가 및 가공비용

330)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19조

331)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22조

332)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22조

333)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24조

- 국내에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 화물 판매시에 적용되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포함)
  - 당해화물이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과  
보험료
- 합리적 방법이란, 거래가격 평가방법, 동일화물 거래가격평가방법, 유사화물 거래가격평가방법, 공제 가격 평가방법 및 산정가격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관이 객관·공평·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자료에 기초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하는 방법임<sup>334)</sup>
-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가격은 사용할 수 없음<sup>335)</sup>
- 국내에서 생산된 화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
  -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높은 가격
  - 화물이 수출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 제24조(산정가격 평가방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가치 및 비용에 의거 계산된 동종동질 또는 유사화물의 가격
  - 제3국 또는 지역에 수출되는 화물의 판매가격
  - 최저 제한가격 또는 주관적이거나 허위인 가격
- 가공무역 수입원재료 또는 그 제품이 과세대상인 경우, 해관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sup>336)</sup>
- 수입시 과세대상인 진료가공(進料加工) 수입 원재료는 해당 원재료 수입신고 시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
  - 진료가공 수입원재료 또는 그 제품(불량품 포함)을 내수판매하는 경우에는 해관이

334)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25조

335)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26조

336)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27조

원재료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

－ 원재료 수입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관이 내수판매신고 시의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된 당해 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유사화물의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

- 래료가공(來料加工)수입 원재료 또는 그 제품(불량품 포함)을 내수판매하는 경우에는 해관이 내수판매신고 접수 시점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화물의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
- 가공기업의 내수판매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짜투리 물품 또는 부산물은 해관이 심사 결정하는 내수판매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상기의 방법으로 가공무역 내수판매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관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심사결정함

□ 수출가공구(輸出加工區) 내의 가공기업이 내수판매하는 제품(불량품 포함)의 경우에는 해관이 내수판매를 접수하는 시점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되는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sup>337)</sup>

- 수출가공구 내 가공기업의 내수판매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짜투리 물품 또는 부산물은 해관이 심사결정하는 내수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수출가공구 내의 가공기업이 내수판매하는 제품(불량품 포함)· 짜투리물품 또는 부산물의 과세가격을 상기의 방법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관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결정함

□ 보세구(保稅區)내의 가공기업이 내수판매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그 제품(불량품 포함)은 해관이 내수판매신고 접수 시점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화물의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sup>338)</sup>

- 보세구 내의 가공기업이 내수판매하는 진료가공 제품 중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관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 수입원재료의 수입거래가격을 기

337)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28조

338)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29조

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

- 원재료의 수입 시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관이 내수판매신고 접수 시점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되는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

- 보세구 내의 가공기업이 내수판매하는 내료가공 제품 중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관이 내수판매신고 접수 시점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되는 당해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 구입 원재료와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
- 보세구 내 가공기업의 내수판매가공 과정중 발생하는 짜투리 물품 또는 부산물은 해관이 심사결정하는 내수 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보세구 내의 가공기업의 내수판매제품(불량품 포함)·짜투리 물품 또는 부산물의 과세가격을 상기의 방법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관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결정함

□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sup>339)</sup>(保稅物流園區), 보세물류중심<sup>340)</sup>(保稅物流中心) 등 구역이나 장소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과세대상 화물은 해관이 수입화물 과세가격 결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구역 또는 장소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함<sup>341)</sup> (단, 가공무역 수입원재료와 그 제품은 제외)

□ 수입화물의 운임은 실제 지불한 비용에 따라 계산하며, 수입화물의 운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관이 해당화물의 실제 운임원가 또는 해당화물 수입시기와 동일시기 운수업계에서 공포한 운임(률)에 따라 계산함<sup>342)</sup>

339) 보세물류원구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보세구 내 또는 보세구 인근의 특정 항구내에 설치되며, 국제물류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를 받음(관세무역연구원, 2011)

340) 보세물류중심은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는 폐쇄된 구역으로 항만 기능이 있는 구역에 설치되며, A형과 B형으로 나뉜다. A형은 해관의 승인을 받아 중국 국내법인이 보세창고물류업을 전문경영하는 해관의 감독관리 장소이며, B형은 해관의 승인을 받아 1개의 중국 국내법인이 경영하고, 다수의 기업이 보세창고물류업에 종사하는 해관의 집중 감독관리장소임(관세무역연구원, 2011)

341)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30조

342)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38조

- 수입화물의 보험료는 실제 지불한 비용에 따라 계산하며, 수입화물의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거나 부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가격+운임' 총액의 3%(1,000천분의 3)의 금액을 계산하여 보험료로 계산함<sup>343)</sup>
- 우편수입화물은 우편요금을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로 간주함<sup>344)</sup>
- 국경 인도조건으로 철로 또는 육로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국경 인도조건 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과 보험료로 계산함<sup>345)</sup>
- 해관이 신고가격의 진실성·정확성에 의문이 있거나 매매 쌍방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격질의통지서」를 발부하여 질의이유를 서면형식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함<sup>346)</sup>
  - 납세의무자 혹은 그 대리인은 '가격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관련자료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가격의 진실성·정확성 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전에 서면형식으로 연장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기간은 10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음

### 3) 관세 납부

- 관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초과했을 때에는 체납금을 지불해야 함<sup>347)</sup>

343)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39조

344)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40조

345)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41조

346)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48조

347) 「해관법」 제60조

- 중국전자개항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비 납부를 시행하는 해관에서는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전자개항을 이용하여 해관에서 발급한 세금납부고지서와 비용수납 증명서를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지정은행에서 전자적으로 세비를 납부할 수 있음
  
- 납세의무인·담보인이 3개월이 초과하여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속 해관장 또는 산하 해관장의 비준을 거쳐 해관은 다음의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sup>348)</sup>
  -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기타 금융기구의 예금 중 세금을 공제한
  - 마땅히 납세하여야 하는 화물을 법에 의거하여 매각하고 매각소득액으로 세금을 공제한
  - 압류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그 가치가 응납세액에 상당하는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소득으로 세액을 공제한
  - 해관이 강제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위에서 열거한 납세의무인·담보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연체금은 동시에 강제집행됨
  
-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인이 규정된 납세기한 내에 납세해야 하는 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해관은 납세의무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직속 해관장 또는 산하 해관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의 세수보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sup>349)</sup>
  - 납세의무인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납세인에게 지급하는 응납세액에 상당하는 예금의 잠정적인 지급 정지를 서면으로 통지함
  - 납세의무인의 가치가 응납세액에 상당하는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함
  
- 수출입화물·입출국물품을 통관시킨 후 해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하였거나 징수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세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화물·물품을 통관시킨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세의무인에게 추가 징수하며, 납세의무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관은 3년 이내에 추가 징수할 수 있음<sup>350)</sup>

---

348) 「해관법」 제60조

349) 「해관법」 제61조

- 해관이 과다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해관은 이를 발견 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납세의무인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관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sup>351)</sup>

### 나. 애로 사례

- 품목분류는 세율 결정, 무역관리 및 수출입통계 등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수출환급률 등 적용시 품목분류관련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함<sup>352)</sup>
  - 품목류별(HS 4단위 또는 6단위 등)의 수출환급률이 동일할 때 종전 품목분류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계속 적용하여 오류가 자주 발생함
- 수출상품에 대한 품목코드가 없어 ‘기타’, 또는 ‘기타의 기타’ 등으로 분류시 해관과 품목분류 상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
  - 특별히 제시된 부품의 세율이 없는 경우 해관은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대부분 분류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손해를 입게 됨
  - 품목분류 오류 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으로 수입 시 부담이 증가하게 됨
- 해관은 종전 품목분류에 따른 업무처리의 관행이 있어 정정신청 접수를 거부하기도 하고, 종전 부실신고에 따른 소급추징 등의 행정처벌의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능함
  - 부실신고에 대하여는 해관의 오류 시 1년간, 기업의 오류 시 3년간 소급하여 추징함
- 과세가격은 세액을 확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실성 및 정확성이 요구되고,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해관의 심사 결과, 신고가격이 국내동일물품 또는 타수입물품 등의 거래가격보다 낮을 때 가격신고의 오류를 의심받게 됨
  - 신고가격에 대한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국내 실제 구매자와 외국판매자와의 특수관계가 있는지 의심받게 되며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함

350) 「해관법」 제62조

351) 「해관법」 제63조

352) 관세청(2011),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 가격질의통지서 발송 및 신고인에게 설명자료와 관련서류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가공무역 관련물품 내수판매 시 해관의 재량적인 내부가격자료로 활용됨
- 해관은 수입업체의 가격신고에 대해 저가신고 또는 특수관계 존재로 인한 거래가격 영향 등에 대해 해관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통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 개정(2007년)으로 회사가 적용받는 장려류 항목에 관하여 의료 용은 해당되나 생활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할 해관이 문제를 제기하여 외상투자장려 류 항목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함
  - 해관의 해석대로 인정된다면 관세, 증치세, 지연이자, 가산세(과태료) 추징, 기업분 류 등급 하향 조정 등의 행정제재 및 향후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제조원가 부담 증대의 가능성이 존재함
- 해관이 해외 로열티(기술사용료) 지급이 수입설비, 금형, 원재료 및 반제품, 도면 및 기술 자료 중 하나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함
  - 해관의 이런 해석이 인정되면 관세, 증치세, 지연이자, 가산세(과태료) 추징 및 기업 분류 등급 하향 조정 등의 행정제재가 예상되며 향후 제조원가 부담이 증대됨
- 전자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MP3(음성)/MP4(동영상) 모두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한 제품을 종전에 관세율이 높고 감관조건이 까다로운 세번으로 신고 수입하였으나 관세율이 낮고 통관이 용이한 세번으로 재분류를 요청하여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함

〈표 VI-3〉 품목분류 애로사항 사례 1

	세번	관세율	감관조건
종전	8521.90 (MP4)	20%	A(입경화물 통관단)
재분류	8471.30 (이동형 컴퓨터)	0%	해당없음

자료: 관세청(2011)

- 통관지 해관 상품가격 정보기구에서 전자제품 부품을 수입하여 중국 내 가전회사에 공급하는 업체에 가격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최초 수입가격에 비해 매월 5% 이상 꾸준히 가격하락이 지속되었고, 이는 동종업계 유사품목의 수입가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이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입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이 어려운 경우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함
  
- LED 패키지를 수입하여 LED 모듈을 생산하고 중국내 가전업체에 공급하는 가공무역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LED 모듈에 대해 지역별로 상이한 조건이 적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표 Ⅵ-4〉 품목분류 애로사항 사례 2

세번	퇴세율 <sup>353)</sup>	관세율	조건
8529.90	17%	0%	해당없음
9013.90	17%	8%	해당없음
9405.40	17%	10%	A/B(입출경화물통관단)

자료: 관세청 (2011)

- 종전에는 HS 8529.90(TV부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으나 천진해관에서 HS 9405.40(조명기구) 분류 가능성을 언급함
- 그러나 당해 제품은 기능상 HS 9013.90(BLU의 부분품)에 더욱 적합함

#### 다. 업무상 유의점

- 품목분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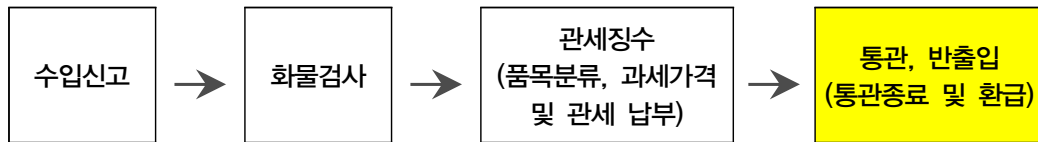
353) 우리나라의 환급률과 동종의 뜻임

- 통관대리인 의존을 지양하고,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직접 확인해야 함
  - 수출입관세율 및 수출환급율 등에 따른 편법적인 품목분류를 금해야 함
  - 수출입전 사전품목분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품목분류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 제도적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함
- 가격신고 관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 및 제시해야 함
  - 해관의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함
  - 신고가격과 무관한 기업의 영업비밀자료는 제출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 작성 및 개정의 취지를 파악하여 회사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해야 함
- 기초자료(외상투자항목 확인서, 제조공정 설명서, 영업집조, 제무제표 등)를 수집하고, 산업분석 및 제조공정 검토, 제품 및 장려류 항목 분석 등이 필요함
  - 회사의 대응논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국무원 지도 문건, 상무부 답변, 협회의 설명 등)를 확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실성을 확보함
  - 회사의 대응 논리 및 근거를 문서화하여 본격적인 문제제기 시 해관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관에 전가함으로써 회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음
- 회사의 대응논리 및 근거를 문서화하여 해관에 제출함으로써 반증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해관 조사관에게 안심하고 비과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함
- 로열티 지급과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 현지법인 재무자료(기업소득세 관련 거래양식, 송금자료 등)를 검토하고, 로열티 현황, 거래구조 및 무역방식 현황을 파악해야 함
  - 비과세 논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법령, WTO 기술위원회 사례, 다른 해관 심사 사례, 해관 내부 교육자료 및 과세지침)들을 전달해야 함
  - 사실관계(특수관계자 및 제3자 거래구조, 무역관련서류, 계약서, 부품조달 근거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실성을 확보해야 함

-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품목분류 재분류의 논거를 해관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다시 해관총서가 그 결정사항을 전국적 차원에서 공표하도록 함
  - 미국, 일본, 태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재분류의 논거를 마련함
  
- 오류를 비교적 조기에 파악하여 소명한 후에 해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여 회사의 가격결정 원칙에 대한 해관의 인정을 얻어내어야 함
  - 상품가격 정보기구를 통하여 해관의 협조를 구함(보증금 납부 및 선통관 후심사)
  - 회사의 가격결정방법(재판매가격법)을 분석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함
  - 본사 가격결정 시 오류를 파악하여 해관에 오해가 없도록 소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출함
  - 상품가격정보기구와의 회합 및 콘퍼런스콜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신뢰를 쌓음
  
- 다른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논리적으로 확실한 품목 분류의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해관총서 내부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여 해관총서 차원의 종합적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함
  - 전문가로부터 제3의 독립적 의견을 받아 이를 근거로 전자부품의 품목분류를 관할하는 해관의 대내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확보함
    - 중국 내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HS통칙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출함
  - 품목분류 안건이 해관총서로 전달되도록 타 부서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안전화에 성공시켜야 함
  -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해관의 견제세력에 대응하여 해관총서 및 다른 해관에서의 지지세력을 확보해야 함
  
- 해관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세대상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 은닉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예금 잠정지급 정지, 재산 압류 등의 세수보전조치를 취함<sup>354)</sup>

- 해관은 세수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게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예금지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조치함
  - 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예금계좌 및 예금액수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잠정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함
-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해관은 금융기관에 대해 잠정지급 정지한 계좌항목 중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도록 통지하거나 세금충당고지서를 발급하고 압류한 화물 등을 환매한 후 환매소득을 세금을 충당함
- 환매소득의 세금충당 및 관련비용의 공제 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함
- 납세의무자나 담보인이 납세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융기관에 서면통지하여 그 예금 중에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 과세대상화물을 환매하여 환매소득에서 세금을 충당
  - 기타 화물 또는 재산을 압류하여 환매하고 환매소득에서 세금을 충당
- 납세의무자나 담보인은 해관의 세수보전조치나 강제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거나 세수보전조치나 강제조치를 부당하게 취하여 납세의무자나 담보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실을 받은 경우 해관은 배상책임을 지게 됨

#### 4. 통관 및 반출입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해관의 수출입 현장 면허(放行)란 해관에서 ① 수출입화물의 신고를 접수하고 ② 전자신고서와 종이신고서 그리고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 ③ 화물을 검사하고, ④ 세비를 징수(감면)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후에 수출입화물에 대한 현장 감관을 종결하고 화물이 감관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통관단계를 말함<sup>355)</sup>
  - 해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키며, 「해관법」 제29조 규정에 근거, 해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기타 경우는 납세완료(혹은 담보 제공) 후 통과(放行)(인)을 찍음<sup>356)</sup>
- 수출입 현장 면허(放行)는 통상적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관의 현장감독업무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보세화물, 가공무역화물 및 감면세 혹은 추후 납부 화물은 통과된 후 해관의 사후관리가 종료되어야 최종적으로 통관수속이 완료됨
- 해관감독화물의 실제 수입 혹은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수출입화물 증명서」를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함<sup>357)</sup>
  - 해관은 서류위조를 통한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수(출)입 화물증명서를 발급하며 1부당 10위안의 수속비를 징수함

355) 관세무역연구원(2011)

356) KOTRA(2013)

357) KOTRA(2013)

- 환급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신고 시 신고인은 옅은 황색의 「수출환급 통관단」을 작성하고, 해관은 통과 결정 후 통관단에 검사완료인, 세무기관 등록표시를 하고 수출환급담당자의 인감 심사 및 위조방지 표식 부착 후 반환하면 신고인은 이를 세무기관에 제출함
  - 고액 관세율품목에 대해서는 해관이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지 세무기관에 제출함
  
- 통관 취하는 수출신고화물이 통과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통관반송화물은 반송일로부터 3일 내에 해관의 비준을 거쳐 해관감독지역에서 반출 운송함
  - 수출세금 기납부 화물은 납세일부터 1년 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영수증에 의해 해관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sup>358)</sup>
  
- 해관의 통관수속 후 운송수단의 선적배치 등 원인으로 수출화물의 전부 혹은 부분이 선적 되지 못하면 신고인은 「수출화물통관단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화물 전부가 선적하지 못한 경우 해관의 승인을 거쳐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수출통관수속을 밟으며, 부분화물의 경우는 신고화물의 전부를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새로이 실제 수출화물 부분의 통관수속을 밟음<sup>359)</sup>
  
-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화물의 수취를 완료하거나 수출화물의 적재수속을 완료한 후에 만약 해관에서 발급하는 관련화물의 수출입신고서 증명서(증명연) 발급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증명 수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관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

---

358) KOTRA(2013)

359) KOTRA(2013)

〈표 Ⅵ-5〉 수출입신고서증명서(증명연) 발급

구분	발급내용
수입대금 지급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부문에 수입대금 지급에 대한 정산확인이 필요한 수입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 수입화물신고서 대금지급 증명연의 발급신청을 해야 함</li> <li>○ 해관은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될 경우, 수입화물신고서 대금지급 증명연상에 서명날인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은행과 국가외환관리부문에 증명연의 전자 자료를 전송함</li> </ul>
수출대금 회수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부문에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정산 확인이 필요한 수출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 수출화물신고서 대금회수 증명연의 발급신청을 해야 함</li> <li>○ 해관은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될 경우, 수출화물신고서 대금회수 증명연상에 서명날인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은행과 국가외환관리부문에 증명연의 전자 자료를 전송함</li> </ul>
수출환급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세무기관에서 수출환급 처리가 필요한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수출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 수출화물신고서 환급 증명연의 발급신청을 해야 함</li> <li>○ 해관은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될 경우, 증명연상에 서명날인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국가세무기관에 증명연의 전자 자료를 전송함</li> </ul>

자료: 관세청 · 중국관세무역연구회(2011)

### 나. 업무상 유의점

- 수출환급률 정책조정에 따라 기업의 해당수출품목 환급률이 폐지되는 경우, 동일 HS 4단 위하의 8단위 코드의 전체 품목에 대한 환급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실제분류 코드와 다른 코드로 계속 수출신고를 하던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됨
  - 피해기업은 수출환급률 폐지에 따른 품목분류 정정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자주 변경되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정책에 대비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해관에 수출입 신고 시 해당 제품을 정확한 HS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시로 환급률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함
  
- 이미 수입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품질이나 또는 규격 상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원상태로 화물을 재반출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세환급을 신

청할 수 있음

○ 서면형식으로 해관에 사유를 설명하고 세금납부증명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관에 화물의 반송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함

○ 원수입신고서

○ 원수입포장명세서

○ 송수하인 쌍방간의 반송에 관한 협의서

○ 회사의 화물반송에 관한 사유서(반송원인 등 상황을 설명) 및 관련 증빙자료

○ 국세 부문에 제출하여 발급받은 미환급 또는 추가납부 증명서

○ 기타 해관에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

□ 일시허가 수출입화물이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까지 다시 반송 수출되지 않거나 재반입 되지 않을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 해관에 신고하여 수출입 및 납세수속을 밟고 잉여세금을 납부해야 함

○ 세금을 징수하는 기한은 60개월로 하며, 징수하는 기한은 화물면허(放行)일로부터 계산함

○ 1개월에 부족하나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개 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1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함

## 참고문헌

- 관세무역연구원,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년 1호~2012년 35호, 2011~2012
-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 \_\_\_\_\_, 『중국 관세·무역 법령집(上)』, 2012
- \_\_\_\_\_,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설명자료」, 2012
- 관세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중국」, 2012
- 김영기, 『중국 비즈니스 에티켓이 전략이다』, 200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2012
- 양천호·김영춘, 『중국통관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12: 아시아(중국)』, 2013
- 이준건, 「중국 전자통관시스템 활용과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0
- 전형진,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 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2
- 종 염, 「WTO 가입 이후 중국 관세정책의 변화」,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진설 외, 「중국 전자통관의 구축현황과 발전방안」,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3호, 2011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중국」, 2012
- \_\_\_\_\_, 「중국 수입제도 및 수출 애로사항 조사: 중국 수입제도」, 2011
- \_\_\_\_\_, 「주요국 통관/검역 제도: 중국」, 2010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 중국』, 2012
- KOTRA, 『중국 국가정보: 경제』, 2013
- \_\_\_\_\_, 『중국 국가정보: 무역』, 2013
- \_\_\_\_\_, 『중국 국가정보: 투자』, 2013

\_\_\_\_\_, 『중국 비즈니스 Q&A 88』, 2003

\_\_\_\_\_,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2002

\_\_\_\_\_, 『최신 중국무역 현장가이드』, 2003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3*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3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베이징, 상하이|KBC),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www.ois.go.kr](http://www.ois.go.kr)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gov.cn](http://www.gov.cn)

중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mofcom.gov.cn](http://www.mofcom.gov.cn)

중국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The People's Bank of China), [www.pbc.gov.cn](http://www.pbc.gov.cn)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중국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Ministry of Fina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mof.gov.cn](http://www.mof.gov.cn)

중국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中国自有贸易服务网 / China FTA Network),  
[fta.mofcom.gov.cn](http://fta.mofcom.gov.cn)

Invest In China(中国投资指南), [www.fdi.gov.cn](http://www.fdi.gov.cn)

## 부록 I. 중국의 2011년 WTO 관세율표

### 1. 2011년 관세 적용범위

(단위: %)

구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WTO가입연도: 2001년
단순평균 양허관세율	10.0	15.8	9.1	농산물 쿼터: 5% 농산물 셰이프가드: 0%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9.6	15.6	8.7	

### 2. 2011년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단위: %)

분포	면세	0 ≤ 5	5 ≤ 10	10 ≤ 15	15 ≤ 25	25 ≤ 50	50 ≤ 100	> 100
	관세선(관세품목) 및 수입가격							
농산물								
양허관세	5.8	8.2	25.1	25.0	26.4	7.0	2.5	0
실행관세	5.9	8.8	26.1	24.5	25.1	6.9	2.6	0
비농산물								
양허관세	6.7	18.3	46.9	14.7	12.0	1.2	0	0
실행관세	7.7	19.7	46.7	14.2	10.4	1.2	0	0

## 3. 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14.8	9.4	25	14.8	10.1	25
유제품	12.2	0	20	12.0	0	20
과일, 채소, 식물	15	4.8	30	14.8	5.8	30
커피, 차	14.9	0	32	14.7	0	32
곡물 및 곡물조제품	23.7	2.6	65	24.3	3.4	65
종유, 지방 및 유지	11.6	6.2	30	10.8	5.3	30
당류와 설탕과자	27.4	0	50	27.4	0	50
음료 및 담배	23.9	2.4	65	22.3	2.2	65
면	22	0	40	14.9	0	40
기타 농산물	11.9	10.3	38	11.3	9.3	38
어류 및 어류제품	11	6.6	23	10.8	6.4	23
광물 및 금속	8	5.7	50	7.4	8.9	50
석유	3.3	50.0	9	4.4	23.6	9
화학제품	6.7	0.5	47	6.6	1.7	47
목재, 지류 등	5	23.0	20	4.4	35.3	20
직물	9.7	0.2	38	9.5	0	38
의류	16.2	0	25	16.0	0	25
가죽제품, 신발류 등	13.7	0.7	25	13.1	0.6	25
기계류	8.4	7.9	35	8.0	8.9	35
전자기기	8.8	26.6	35	8.3	24.0	35
이송장비	11.5	0.8	45	11.5	0.8	45
기타제품	12.3	14.7	35	11.9	9.6	35

## 부록 II. 비즈니스 팁<sup>360)</sup>

### 1.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

- 關係는 돈보다는 정성으로 맺어진다(판시는 상호적 의무)
- 외국인의 칭찬은 중국인을 크게 고무시킨다(중국인은 적절하게 존중받기를 원함, 체면을 매우 중시, 협상파트너를 지켜세운다)
- 집단주의가 중국을 움직인다(사회주의 국가라서 권위에 복종하는 편, 내가 우리 집단을 대표한다는 믿음을 줄 것, 우리와의 거래가 상대방 집단과 상대방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직장(과거 사회주의 시절, 현재까지 잔존)
- 관료주의와 유교는 유사점을 갖는다(계급과 서열, 충성심을 요구, 절제)
- 중국인에 대한 선입관은 위험하다(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도록 교육받음, 과거 문화혁명 때 피해)
- 중국인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내 이웃에 대해서는 위험과 불편을 감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 혹은 비협조)

---

360) 김영기, 『중국 비즈니스 에티켓이 전략이다』(2004)

- 여러 방법으로 '아니오'를 말하는 중국인들(정면에서 거절하지 않음, 고려중, 연구중, 침묵 등으로 반대의견을 표시)
  - 만약 협상과정이라면 이것들을 다시 언급하지 말고, 중재인을 통해서 일을 추진할 것 혹은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
- 마지막 협상은 중재인의 몫(새로운 것, 반대의견, 부담스러운 문제 등은 중재인을 통하는 것이 협상을 성공시키는 방안)
  - 중재인의 중요성을 인식(중재인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이 올 수 있음)

## 2. 중국 비즈니스 접촉

- 오래된 전통만큼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자신을 비하하거나 실례를 저지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함, 체면, 서양인에게 너그러움, 상대방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할 것)
- 훌륭한 외국인은 그들을 존중한다(중국인의 관습을 잘 아는 사람을 존중함, 충분한 경제적 가치, 적이 아닌 친구임을 인식시켜줄 필요있음)
-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낯선 사람과는 절대로 동업하지 않음)
  - 따라서 필요할 경우 중재인, 소개인을 내세워서 접근할 것
  - 우리 회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면 더욱 효과적
- 힘있는 주최 조직을 파트너로 선택하라(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호감을 살 필요)
- 대표단이 아닌 지도자를 중시하는 중국인
  - 직위가 높으면 더욱 좋음, 위계질서가 엄격, 행동 통일이 가능
- 공손한 자세는 당신의 품위를 높인다

- 중국어로 말할 때는 느릿한 중국어를 분명하게 말함
  - 명함의 양끝을 두손으로, 정중하게, 몇초 동안 명함에 시선을 집중
  - 앉아서 회의한다면 탁자 위에 명함을 올려 놓음
  - 공손한 사람을 높이 평가
  - 정치이야기는 결코 하지말 것
- 
- 호칭에 따라 관계가 설정된다(별명은 함부로 부르지 말 것)
  
  - 중국인의 수준으로 환영과 환송을 행하라
    - 환송과 환영이 극진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본인이 못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낼 것

### 3. 중국비즈니스 회의의 시작과 끝

- 충분한 정보제공이 신뢰를 구축한다(예비지식을 요구)
  - 뜻밖의 상황에 처하기 싫고 논의할 것에 대해 미리 준비(소소한 정보를 요구)
  
- 회의장의 의자는 서열을 구분한다(늦지 않게 도착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감)
  - 좌석배치의 중요성(제일 높은 사람이 안쪽 가운데, 중간에)
  
- 기본적인 원칙들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라
  - 회의는 날씨, 여행 등 잡담으로 시작
  - 중요한 사업은 신뢰하는 사람과들과 진행
  - 회의에서 급히 다가가려 하지 말 것
  - 잡담에서 차차 중국측 대표자의 책임영역 파악
  - 고갯짓이나 감탄사가 나와도 이해한다는 말일 뿐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님

-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지 말 것
  - 빠져나갈 출구를 마련해 줄 것
  - 통역은 구어체와 문어체를 혼용
  - 통역사를 보지말고 대표의 얼굴을 볼 것
- 회의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 대표에게 계속 협상할 사람을 선정해주길 부탁, 해주면 일단 성공
  - 지도자가 배웅하면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다는 뜻
  - 회의가 마무리될 때 오해를 막기 위해 회의내용을 요약해서 말할 것

#### 4. 중국 비즈니스 접대와 요령

-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 대표단 방문 전 미리 여러 가지 협상할 것(대표단 명단 등 모든 방문일정)
  - 대표단은 관료도 있지만 실무자들도 많음
  - 비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값이 싸고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 한층에 모두 머무르도록 배려)
  - 공항까지 나가면 고맙게 생각(차량까지 제공)
  - 대표단과 우리 측의 명단, 회사에 대한 꼼꼼한 자료 제공(전문가 대기)
  - 연회는 6시 시작 8시 종료가 보통
- 중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
- 회사소개서를 미리 등봉, 환영깃발 등
  - 중국어를 위쪽에 표기
  - 중국음식 준비(국수 등, 집에 초대, 비디오 및 사진전문가 대동 등)

## 5. 중국 비즈니스 연회 에티켓

- 집으로의 초대는 반드시 응하라(식사를 포함)
  - 식사는 어디서든 약간 남길 것(다 먹으면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 초대 거절 시 반드시 사정을 소상히 설명할 것(아니면 대단한 오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집에 갈땐 선물, 음식 맛있다는 평가
  - 식사후 반시간 내지 한 시간 후 자리를 떠야함(너무 늦어도 안됨, 다음에는 내가 초대하겠다는 말)
  
- 우정이란 '소중한 의무'를 의미한다
  
- 중국인의 서열이 곧 당신의 지위(공손과 겸손, 서열 중요)
  - 너무 격식없이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경계, 잘난 척하면 안됨
  
- 연회장에서는 주최자의 대표가 중심(초대한 곳에 대표단이 모두 함께 도착)
  - 폭신한 의자에 먼저 착석 권유
  - 주빈은 주최자의 오른 쪽(2인자는 왼쪽)
  - 준비가 다되면 테이블로 이동 후 시작
  - 문에서 가장 먼 테이블이 대체로 수석 테이블
  
- 모든 요리를 조금씩 모두 맛보아라
  - 여벌의 젓가락과 분배용 스푼이 있음
  - 주최자가 주빈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또 자신이 먹기 시작할 때까지는 누구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됨
  - 식사 후 접시에 소량의 음식을 남겨두도록(더 먹기 힘들다는 신호이자 주최자에 대한 고마움)
  - 답례로 중국인의 접시를 채워주면 아주 예의바른 사람으로 볼 것임

- 코스의 마지막은 대부분 생선이 나오고 국수 등으로 끝내기(모든 요리마다 한 입씩)

□ 연회는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 떨어진 음식을 줍지말 것(젓가락도 마찬가지로, 이쑤시개는 입을 가리고)
- 주최자의 건배에 대한 답례사는 주최자보다 길지 않게(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답례사)
- 사업성공에 대한 희망을 보여줌
- 중공이 아니라 중국으로 말함
-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식사 시작때 명확히 밝힐 것
- 내 잔이 비면 다른 사람 잔에 따라주면 눈치채고 따라줌
- 건배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 연회의 내용은 상식적인 것, 장시간 침묵은 피할 것(하다못해 여행이야기라도)

□ 연회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은 연회(배불리 먹었다는 표시는 예의)

- 즐거운 식사였음을 표시, 식사완료는 주최자가 표시
- 연회에는 연회로 답할 것
-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는 상대방에게 문의
- 지도자급 상급관리는 단 한명만 초대할 것(중재인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는 고위인사를 선택)
- 연회장소는 호텔 등(1인당 비용, 음식이 남을만큼-1명의 음식비로 2명분을 산정)
- 술과 음료수를 미리 결정, 담배 제공
- 식당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인지 물으면 상세히 대답(서비스를 그에 걸맞게 하려하므로, 운전자에 대한 배려-최근에는 현금지불 추세임)

## 6. 중국 비즈니스 키워드

- 선물 : 좋은 선물과 나쁜 선물을 구별하라
  - 선물은 아주 필요하며 일상적(대표에게 큰 선물, 모든 참석자에게 조그마한 것)
  - 회의 전 미리 준비, 적당한 시간에 예의 바르게 증정
  - 한국의 전통 예술품이나 특산품 정도(남자에게 담배나 술, 여자에게 간단한 화장품 정도, 방문 시 찍은 사진첩, 기념품에는 회사로고 있으면 좋음)
  - 시계, 녹색모자, 흰색은 하지 말 것
  -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 거절해도 계속 선물을 건네야 함(조직을 위한 선물은 식사 후에)
  
- 판시 :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
  - 회사의 조직도를 잊고 좋은 관계를 맺을 것(판시 관리가 중요)
  - 일자리 제공,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골프여행이 좋음
  - 재산, 권력, 사회적 위상을 중시하는 경향
  - 호의를 호의로 대응
  - 소송은 별로 이익이 없음
  - 중국인은 도움을 주길 원함(자기 체면유지와 다음 기회를 위해)
  - 친구관계를 만들 것
  
- 체면 : 상술의 기본적인 원칙
  - 체면은 중국인의 모든 것(초대 거절은 체면 손상으로 여김)
  - 공개적인 자리에서 체면을 깎지 말 것
  - 자제력을 잃지 말 것(복수를 할 수 있음)
  - 체면은 진실보다 중요함(상대방 체면 유지를 위해 우리는 겸손하게 보일 것)
  - 상관에게 당사자를 칭찬해 줌
  - 체면 유지를 위해 비싼 음식 대접하고 비싼 물건을 사고 함

## □ 관료주의 : 맞서지 말고 물러서라

- 관료라는 조직의 힘
- 완강한 관료주의는 부정부패를 유발
- 한 번 내려진 명령은 체면 때문에 절대 취소하지 않음
- 다른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득, 혹은 상급자와 연결하여 설득
- 중재인을 통한 조용한 해결
- 중국에서 중국인과 공평한 관계는 없음
- 직접 혹은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해결
- 대립에서 같이 이기는 방법을 찾을 것
- 명령계통의 고위직에 호소, 혹은 좋은 선물을 준비
- 교통순경에게도 대항하지 말고 존경, 아부할 것
- 정중하게 꼬치꼬치 질문, 비난은 금물, 노골적인 말을 피할 것
- 항상 출구를 열어둘 것
- 안좋은 일을 전할 때는 항상 중재인을 통할 것
- 승인, 허락보다는 용서에 너그러움
- 효과적인 뒷문 사용
- 확실한 선물 제공

## 부록 Ⅲ. 주요 유관기관 정보

<b>■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b>	
웹페이지	http://chn.mofa.go.kr
대표전화	(86-10) 8531-0700
<b>□ 대사관</b>	
주소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번호	(86-10) 8531-0700 근무시간 외 : (86) 13911019526
팩스번호	(86-10) 8531-0726
<b>□ 영사부</b>	
주소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北小街 7號 (郵政編碼 100600) (No. 7 Beixiaojie Liangmaqiao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이메일	chinaconsul@mofat.go.kr
전화번호	(86-10) 8532-0404
팩스번호	(86-10) 6532-3891
* 각종 사증발급 및 사증제도 개선 / 여권, 병무, 영사확인, 호적 등 민원업무 / 사건·사고 처리 / 교민관련 단체지원 등	
<b>□ 경제부</b>	
이메일	chinaeconomy@mofat.go.kr
팩스번호	(86-10) 8531-0815
* 한·중 양국 정부간 경제분야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및 對中 시장개척 지원활동 / 중국기업의 對韓 투자유치 활동 / 중국 각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증진 및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	

<b>■ 관세청 중국 관세관</b>	
---------------------	--

<input type="checkbox"/> 베이징	
------------------------------	--

주소	中國 北京市 朝陽區 東方 東路 20號 1等書記官 金政 No.20 Dongfangdong 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번호	86-10-8531-0700(내선 0844, 0864)
팩스번호	86-10-8531-0869
이메일	pie7811@naver.com

<input type="checkbox"/> 상하이	
------------------------------	--

주소	中國 上海市 萬山路 60號 韓國 總領事館(우편번호 : 200-336)領事 黃忠祚
전화번호	86-21-6295-2592, 5000
팩스번호	86-21-6295-5191
이메일	hcj57@hanmail.net

<b>■ KOTRA 베이징 무역관(KBC)</b>	
-----------------------------	--

웹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KBC/beijing/KTMIUI010M.html">http://www.kotra.or.kr/KBC/beijing/KTMIUI010M.html</a>
주소	北京市 朝陽區 38現代汽車大廈 2201號(100027)
전화번호	(86-10) 6410-6162
팩스번호	(86-10) 6505-2310, 6410-6090
이메일	pekktc@kotra.or.kr

<b>■ KOTRA 상하이 무역관(KBC)</b>	
-----------------------------	--

웹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KBC/shanghai/KTMIUI010M.html">http://www.kotra.or.kr/KBC/shanghai/KTMIUI010M.html</a>
주소	中國 上海市 興義路 8號 上海萬都中心 3110 室 (200336) KOTRA(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上海代表處 KOTRA Shanghai(KOTRA China Head Office),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200336
전화번호	86-21-5108-8771(2)
팩스번호	86-21-6219-6015, 6236-8211
이메일	shanghai@kotra.or.kr

■ KOTRA 광저우 무역관(KBC)	
웹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KBC/guangzhou/KTMIUI010M.html">http://www.kotra.or.kr/KBC/guangzhou/KTMIUI010M.html</a>
주소	中國 廣州市 天河區 天河路 208號 天河城大廈 29樓04-07A 號 (郵編 : 510620) 2904-2907A Teem Tower, No.208 TianHe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
전화번호	(86-20) 2208-1600
팩스번호	(86-20) 2208-1636
이메일	canton@kotra.or.kr

■ 중국 상무부	
웹페이지	<a href="http://www.mofcom.gov.cn">www.mofcom.gov.cn</a>
주소	No.2 Dong Chang'an Avenue, Beijing China(100731)
전화번호	86-10-51651200-612/613/623
팩스번호	86-10-65677512

■ 중국 해관총서	
웹페이지	<a href="http://www.customs.gov.cn">www.customs.gov.cn</a>
주소	No.6 Jianguomennei Avenue,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번호	86-10-65194114, 86-10-65222882
이메일	qwxd@customs.gov.cn

■ 중국 국제상회	
웹페이지	<a href="http://www.ccpit.org">www.ccpit.org</a>
주소	北京市 西城区 复兴门外大街1号
전화번호	86-10-88075000
팩스번호	86-10-68011370

■ 중국 한국 상회(코참 차이나)	
웹페이지	china.korcham.net
이메일	china@korcham.net
전화번호	86-10-84539755/8

■ 상하이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웹페이지	www.cpitsh.org
전화번호	86-21-53060228
팩스번호	86-21-53837081
이메일	webmaster@cpitsh.org

## 부록 IV.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sup>361)</sup>

###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며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하고 대외무역 경영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적용한다. 이 법에서 대외무역이란 화물수출입·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의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이 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대외무역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평하고 자율적인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타 국가와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며 관세동맹협정·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가입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여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분야에서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근거하여 타 체결국·참가국에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등의 대우를 부여하거나 호혜·대등원

---

361)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은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제정되었고 2004년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다. 이에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 공포하는 바이며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4년 4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 주석).

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등의 대우를 부여한다.

**제7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적 금지·제한 및 기타 유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당해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장 대외무역 경영인

**제8조** 이 법에서 대외무역 경영인이란 법에 의거하여 상공등록 또는 기타 개업수속을 하고 이 법과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9조** 화물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인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가 규정하는 등록을 하고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을 하고 등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가 규정한다. 대외무역 경영인이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을 하여주지 아니 한다.

**제10조** 국제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과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외공정 도급과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기관은 상응하는 자질(資質) 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 국가는 일부 화물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의 수출입업무는 오직 수권받은 기업이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일부 수량의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업무를 비수권한 기업이 경영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과 수권한 경영기업의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가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확정·조정하고 공표한다. 이 조의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통과시키지 아니 한다.

**제12조** 대외무역 경영인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3조** 대외무역 경영인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유관부서에 대외무역 사업활동과 관련된 문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부서는 마땅히 제공자를 위하여 상업기밀을 지켜야 한다.

### 제3장 화물수출입과 기술수출입

**제14조** 국가는 화물 및 기술의 자유수출입을 허가한다. 단, 법률·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수출입모니터링의 필요에 준하여 자유로이 수출입하는 일부 화물에 대하여 수출입자동허가를 실시하고 당해 목록을 공표한다.

자동허가를 실시하는 수출입화물에 있어 바이어·출하인이 세관의 통관수속 과정에서 사전에 자동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가 위탁한 기구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자동허가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이를 통과시키지 아니 한다. 수출입이 자유수출입에 속하는 기술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가 위탁한 기구에 계약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다음의 원인에 준하여 관련 화물·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사회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2)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

호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 (3) 황금 또는 백은 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 (4)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 가능성이 있는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5)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 용량의 한계로 수출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6) 수출경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 수출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7)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하여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8) 모든 형태의 농업·목축업·어업제품에 대하여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9) 국가의 국제금융 지위와 국제수지 평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10)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 (11)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제17조** 국가는 핵분열·핵융합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화물·기술의 수출입 및 무기·탄약 또는 기타 군용물자와 관련된 수출입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 전시(戰時)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화물·기술의 수출입 분야에 있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이 법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기술목록을 제정·조정·공표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와 회동하는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국무원의 기준을 거쳐 이 법 제16조와 제17조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전항에서 규정하는 목록 이외의 특정 화물·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는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하여 쿼터·허가증 등의 실시 방식으로 관리한다.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하여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쿼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수입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국가는 일부 화물에 대하여 관세쿼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수출입화물의 쿼터·관세쿼터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가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공개·공정·공평 및 효율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1조** 국가는 통일적인 화물합격평가제도를 실시하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제품에 대해 인증·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제22조** 국가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3조** 문화재와 야생동물·식물 및 그 제품 등은 기타 법률·행정법규에 수출입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 제4장 국제서비스무역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서비스분야에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서 한 약속에 근거하여 기타 체결국·참가국 시장 진입을 허가하고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제25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이 법과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서비스무역을 관리한다.

**제26조** 국가는 다음의 원인에 준하여 관련 국제서비스무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사회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의 수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하는 경우
- (2)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 (3) 국내 특정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거나 육성의 가속화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 (4) 국가의 외환수지 균형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 (5)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하는 경우
- (6)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제27조** 국가는 군사와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 및 핵분열·핵융합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 전시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제서비스무역분야에서 있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와 함께 이 법 제26조·제27조 및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서비스무역 시장진입목록을 제정·조정·공표한다.

## 제5장 대외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29조** 국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대외무역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일정 기간 동안 침권자가 생산·판매한 관련 화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피허가자가 허가계약서 중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강제적으로 일괄적인 허가를 진행하거나 허가계약서

에 배타적인 반환조건을 규정하는 등의 행위 중의 하나가 있어 대외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

**제31조**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이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아니 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온 화물·기술 또는 서비스 및 그 제공자에게 충분하고 유효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이 법 및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근거하여 당해 국가 또는 당해 지역의 무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장 대외무역질서

**제32조** 대외무역활동 중에는 반독점과 관련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독점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외무역활동 중에서 독점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반독점과 관련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전항의 위법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 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

**제33조** 대외무역활동 중에 부정당한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내통하여 입찰하거나 허위광고를 하거나 상업적인 뇌물수수를 하는 등의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외무역활동 중에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있는 경우 반부정당경쟁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전항의 위법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당해 경영인의 관련 화물·기술 수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

**제34조** 대외무역활동 중에는 다음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1) 수출입 원산지표기를 위조·변조 및 수출입 원산지증명서·수출입허가증·수출입쿼터증명 또는 기타 수출입증명 문건의 위조·변조 또는 매매
- (2) 수출환급세 편취
- (3) 밀수
- (4)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인증·검사·검역의 회피
- (5)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35조** 대외무역 경영인은 대외무역 사업활동 중에 국가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 부서는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 제7장 대외무역조사

**제37조**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자율적으로 또는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1) 화물수출입·기술수출입·국제서비스무역이 국내 산업 및 그 경쟁력에 대한 영향
-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장벽
- (3) 법에 의거하여 반덤핑·반보조 또는 보장조치 등 대외무역 구제조치의 실시 여부를 확정하기 이전에 조사가 필요한 사항
- (4) 대외무역 구제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 (5) 대외무역 중의 국가 안전이익과 관련된 사항
- (6) 이 법 제7조·제29조 제2항·제30조·제31조·제32조 제3항·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 (7) 기타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쳐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38조** 대외무역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조사는 서면설문·청문회 개최·현지조사·위탁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처리를 재정하며 아울러 이를 공고한다.

**제39조** 유관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대외무역조사를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 및 당해 부서의 업무인원은 대외무역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획득한 국가기밀과 상업기밀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제8장 대외무역의 구제

**제40조** 국가는 대외무역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적절한 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41조** 기타 국가나 지역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여 이미 육성되어 있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손해를 위협하거나 또는 이미 육성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반덤핑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 또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 기타 국가나 지역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제3시장에 수출되어 국내에 이미 육성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의 육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신청에 의하여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가 당해 제3국 정부와 함께 협상을 진행하거나 당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수입한 제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수출국이나 지역의 전문보조를 받고 이미 육성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 또는 이미 육성된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반보조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에 대한 위협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 수입제품 수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동종의 제품 생산 또는 당해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 또는 심각한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을 해소 또는 경감함과 아울러 당해 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기타 국가나 지역의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동종 또는 당해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대하여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을 해소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 제3국의 수입규제로 모종의 제품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유입이 대량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국내 산업에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존의 산업에 장애를 주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당해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무역조약·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이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당해 조약·협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이익을 상실하게 하거나 또는 피해를 보게 하거나 조약 또는 협정의 목표실현을 저해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당해 국가나 또는 지역의 정부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과 아울러 관련 조약·협정에 의거하여 관련 의무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48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이 법 및 유관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 회담 및 분쟁을 해결한다.

**제49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화물수출입·기술수출입·국제서비스무역의 긴급경보체제를 구축하여 대외무역 과정의 돌발 및 이상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제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이 법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무역구제조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반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장 대외무역의 촉진

**제51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전략을 제정하고 대외무역 촉진체제를 구축·개선한다.

**제52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필요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서비스를 위한 금융기구를 구축·개선하며 대외무역 발전기금 리스크기금을 설립한다.

**제53조** 국가는 수출입 신용대출·수출신용보험·수출환급세금 및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4조** 국가는 대외무역 공공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무역 경영인과 기타 사회대중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5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 경영인의 국제시장의 개척을 장려하며 대외투자·대외공정 도급 및 대외노무협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6조** 대외무역 경영인은 법에 의거하여 유관협회·상업연합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유관협회·상업연합회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관에 따라 그 회원에게 대외무역과 관련된 생산·판매·정보·교육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율하며 자율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과 관련된 구제조치를 신청하고 회원과 업계의 이익을 수호하며 정부의 유관부서에 대외무역과 관련된 건의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 촉진활동을 진행한다.

**제57조** 중국 국제무역 촉진조직은 정관에 따라 대외와의 연계를 개진하며 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제공·자문서비스와 기타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제58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사업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제59조** 국가는 민족자치구나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대외무역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 제10장 법률책임

**제60조** 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권 없이 임의로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는 5만원(RMB)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행정처벌결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법행위자의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업무의 종사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취득한 기타 국영무역관리화물 수출입 종사의 수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61조** 수출입금지화물을 수출입하였거나 수출입이 제한되는 화물을 허가없이 임의로 수출입하는 경우 세관이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수출입이 금지된 기술 또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기술을 허가 없이 임의로 수출입하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처벌한다.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원(RMB) 이하인 경우 1만원(RMB) 이상 5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나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전(前) 두 조항이 규정하는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결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자가 제출한 수출입 쿼터 또는 허가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 하거나 불법행위자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관련 화물 또는 기술의 수출입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2조** 금지된 국제서비스무역에 종사하거나 허가없이 임의로 제한된 국제서비스무역에 중

사하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원(RMB)이하인 경우 1만원(RMB) 이상 5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불법행위자가 전항이 규정하는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판결 발효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3조** 이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는 불법행위자가 전항이 규정하는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판결 발효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관련된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4조** 이 법 제61조부터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대외무역활동의 종사가 금지된 경우 금지기한 내에 세관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가 내린 금지결정에 근거하여 당해 대외무역 경영인의 화물수출입 관련 통관수속을 처리하여주지 아니 하며 외환관리부서나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결재·외환매매수속을 처리하여주지 아니 한다.

**제65조** 이 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관리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이 직무태만·사적부정행위 또는 직권남용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이 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관리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이 직무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법을 위반하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뢰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66조** 대외무역 경영의 당사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 관리 사업부서가 내린 구체적

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行政復議, 한국의 '행정심판'에 해당함)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1장 부 칙

**제67조** 군수품 핵분열과 핵융합 물질이나 이러한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대외무역 관리 및 문화제품의 수출입 관리는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거한다.

**제68조** 국가는 변경지역과 국가의 변경지역과 인접한 지역 간의 무역 및 국경지역 주민 간의 무역에 대하여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며 우대와 편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9조** 중화인민공화국 단독 관세지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70조**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 V.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sup>362)</sup>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세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외경제 무역과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임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관세선의 출입(이하 '수출입')을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구다. 세관은 본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화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품과 기타물품(이하 '출입국 운수기관, 화물, 물품')을 관리감독하고, 관세와 기타세 및 비용을 징수하며, 밀수행위를 조사한다. 또한 세관업무 관련통계를 관리하고 기타 세관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조직)** 해관총서는 국무원 산하기구로서 전국 세관을 관장한다. 국가는 대외에 개방한 항구와 세관의 관리감독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한다. 세관의 관할은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며, 해관총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4조(밀수수사 전담기구)** 국가는 해관총서에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공안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직 밀수단속 경찰을 배치하고, 관할하는 밀수범죄사건의 수사, 구류, 체포 집행, 심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세관밀수범죄수사공안기구(이하 밀수수사전담기구)의 수사, 구류, 체포집행, 심리의 직무수행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밀수수사전담기구는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산하기구를 설립

362) 본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은 2001.1.1일부터 시행, 공포된 법률임

할 수 있다. 각 산하기구는 관할하는 밀수범죄사건 처리 시 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기소해야 한다. 지방 각급 공안기관은 밀수수사전담기구가 법에 의거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5조(밀수단속 세관전담)** 국가는 밀수단속과 관련 합동단속, 통일처리, 종합관리의 단속 체제를 구축한다. 세관은 밀수단속기구의 조직, 협조,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관련규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각 관련 행정집행부서에서 적발한 밀수사건을 행정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밀수수사전담기구, 지방공안기구에 이송하여 사건관할 분담과 법정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6조(권리)** 세관은 아래에 열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및 화물과 물품을 검사하며 이 법 또는 기타 유관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2) 관세선 출입자의 증명서를 검열하며, 본법 또는 기타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위반혐의자의 심문조사 및 그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 (3)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도구, 화물, 물품과 관련된 계약, 영수증, 장부, 증빙서류, 기록, 문서, 업무서신과 전보, 녹음 및 영상기록물과 기타 자료의 검열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본법 또는 기타 유관법률이나 법규 위반에 연루된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화물 및 물품은 압류할 수 있다.
- (4) 세관 관리감독 구역과 세관 부근 연해지역 및 변경의 규정된 지역에서 밀수혐의가 있는 운수도구와 밀수화물과 물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장소를 검사하며, 밀수혐의자의 신변검사를 한다. 밀수혐의가 있는 운수기관과 화물과 물품 및 밀수범죄혐의자는 직속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서 구류할 수 있다. 밀수범죄혐의자에 대한 구류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한 경우에 한해 4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세관감독구역과 세관부근 연해 변경 규정지역 이외에서 세관이 밀수사건을 조사시, 관련 당사자의 입회하에 밀수혐의 운수기관과 혐의자의 거주지 이외의 밀수화물과 물품을 은닉한 장소에 대해 직속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관련당사자가 현장에 있지 않을 경우

현장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할 수 있다. 그중 밀수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운수기관, 화물, 물품은 압류할 수 있다. 세관부근 연해 변경 규정구역의 범위는 해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서가 유관 성급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밀수사건 조사시, 직속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서 사건 관련 업체와 혐의자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의 예금, 송금을 조회할 수 있다.
- (6)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또는 개인이 세관감독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경우, 세관은 계속하여 세관 관할구역과 세관부근 연해 변경 규정지역 이외의 지역까지 추적하여 체포할 수 있다.
- (7) 세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세관직원의 무기 휴대 및 사용 규칙은 해관총서가 국무원 공안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 (8)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세관관련 기타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세관독립)** 각 지방정부 및 관련부서는 세관의 법에 의한 업무수행을 지지해야 하며, 불법으로 세관의 법 집행에 간섭할 수 없다.

**제8조(운수기관)**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화물, 물품은 세관 지정장소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세관 지정장소외의 지역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본법 규정에 의거한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세의무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인가를 받아 등록된 통관대행업체 또는 수출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가 통관 및 납세 수속의 처리를 맡는다. 출입국시 물품의 소유자는 자신이 납세통관수속을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납세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제10조(통관대행)**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물품 발송·수하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로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세관에 위탁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본법의 위탁인에

관한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화물 발송·수하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로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화물발송·수하인과 동등한 법률책임을 진다. 위탁인이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통관사항의 진실상황을 제공하고, 통관대행업체는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통관대행의 등록)** 수출입화물의 발송인·수하인 및 통관대행업체가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통관신고인은 법에 의해 통관신고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세관에 미등록된 기업과 통관신고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통관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세관원의 임무 및 유관기관 협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업체와 개인은 사실대로 질문에 답변하고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직무를 방해할 수 없다. 세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폭력저항을 받을 때에는 유관업무를 집행하는 공안기관이나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제도)** 세관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관관리감독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 제도를 제정·시행한다. 임의의 업체나 개인은 모두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관관리감독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세관은 본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보하고 조사에 협조한 유공업체나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세관은 정보제공자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2장 운수기관

**제14조(운수기관의 출입국)**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 지정장소에 도착하거나 또는 출발하고자 할 때 운수기관 책임자는 세관에 이를 신고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관리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 지정장소에 정박하고 있는 출입운수기관은 세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발할 수 없다.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

관 지정장소에서 다른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세관관리감독상의 요구에 따라 세관수속을 받아야 한다.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고는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제15조(운수기관의 운행)** 입국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신고를 하기 이전 또는 출국하는 운수기관이 통관 절차를 밟은 후 국경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교통주관 부서가 규정한 노선에 따라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주관 부서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이 지정한다.

**제16조(운수기관의 통보의무)** 운수기관 책임자 또는 관련 운수업체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선박·기차·항공기의 도착과 출발시간·체류지점·체류기간·장소변경 및 화물과 물품의 선적 및 하역시간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운수기관에 대한 감시)** 운수기관에의 화물이나 물건의 선적이나 하역 또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여행객의 승하선은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화물이나 물품의 선적이나 하역이 완료되면 운수기관 책임자는 실제 선적이나 하역 상황이 기록된 인수인계증과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에 승하선하는 사람이 물품을 휴대한 경우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운수기관의 입회 및 협조의무)** 세관이 운수기관을 검사할 때에는 운수기관 책임자는 그 장소에 입회해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기관실·선실·승강구를 개방하여야 한다. 밀수혐의가 있는 경우는 밀수화물이나 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개방하여야 하며 화물이나 비품을 세관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세관은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운수기관에 동승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운수기관 책임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운수기관의 타용도 사용 금지)** 입국하는 대외운수기관과 출국하는 국내운수기관은 세관수속을 마치지 않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운수기관의 자격변경)** 출입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의 승객이나 화물운수를 병행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세관의 관리감독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입국 운수기관이 국내운송으로 자격 변경하여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연해운송선박 등의 제한)** 연해운송선박, 어선과 해상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선박은 세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이나 물품을 운반·환적하거나 매매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다.

**제22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정박등)** 관세선을 출입하는 선박과 항공기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하여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 부득이 정박, 투하, 또는 방치하거나, 화물이나 물품의 하역을 한 경우, 운송기관 책임자는 즉시 인근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수출입화물

**제23조(수출입화물의 감시)** 수입화물은 반입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 신고를 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과경(過境)화물과 전운(轉運)화물 및 통운(通運)화물은 반입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출입화물의 신고)**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송화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입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은 수출입허가증이 없으면 통관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수입화물은 수취인이 운수기관의 도착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의 송화인은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취인이 위의 규정기간을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25조(신고서 형식)** 수출입화물의 세관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서면신고서와 EDI통관신고

서의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26조(신고서 수정)** 세관통관수속 접수 후 통관서류 및 그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 동의를 거쳐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하다.

**제27조(견본채취)** 수입화물의 수취인은 세관 동의를 거쳐 세관신고 전에 화물을 점검 또는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검역해야 하는 화물은 검역합격 후 견본을 채취할 수 있다.

**제28조(수출입화물의 검사)**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화물검사 시 화주는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또한 화주는 화물의 운반·개봉 및 화물 재포장의 책임을 진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의로 개봉하여 검사하거나 재검사 또는 견본채취를 할 수 있다. 화주의 신청과 해관총서의 승인을 거쳐 당해 수출입화물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수출입화물의 통관조건)**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화물은 화물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세금납부를 완료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이 서명날인하여 통관시킨다.

**제30조(수출입화물의 매각)** 수입화물의 수취인이 운수기관의 입국신고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화물은 세관이 인수하여 매각처리한다. 판매금액 중 운송료, 하역료, 보관료 등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은 화물판매일로부터 1년 내에 화물 수취인의 신청을 거쳐 반환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화물에 대한 처리조치 중 수입규제 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득한 화물에 대해서만 잔액을 환급하며, 규정기한을 넘겨도 신청이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한다. 명백히 잘못 하역되었거나 과다 하역된 수입화물은 세관의 심사를 거쳐서 원(原)운수기관의 책임자·화물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송하거나 수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세관의 승인을 거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기한을 넘겨도 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

세관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기 두 가지 규정에 열거한 화물중 장기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세관이 화물 상태에 따라 사전에 처리할 수 있다. 화주가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수입화물은 세관이 반출하여 매각처리한다. 매각한 대금은 운송·선적하역·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한다.

**제31조(일시 수출입화물의 재반출입)** 세관의 승인을 거쳐 일시 수입 또는 일시 수출한 화물은 6개월 내에 다시 반출 또는 반입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세관의 동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보세화물 보관 등)** 보세화물의 보관·가공·장치 전시, 운수, 위탁판매업무와 면세점의 경영은 세관의 관리감독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세관 승인을 거쳐야 하며 또한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보세화물의 양도, 이전 및 보세구역의 출입은 세관에 관련수속을 마쳐야 하며 세관관리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가공무역기업의 관리감독)**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관련 허가서와 가공무역 계약을 소지하고 세관에 등록해야 하며 가공무역 제품 단위당 자재 소모량은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한다. 가공무역제품은 규정기간 내에 재반출하여야 한다. 그 중 사용한 수입자재가 보세 상태일 경우 세관에서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먼저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세관에 환급수속을 할 수 있다. 가공무역 보세수입자재 또는 제품이 어떤 사유로 국내로 판매될 경우 세관은 국내판매 허가문서에 근거하여 보세 수입자재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국가에서 수입규제 규정이 있을 경우 세관에 수입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보세구역 관리)** 공무원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설립한 보세구 등 세관 특수관리감독 지역은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35조(수출입화물의 통관세관)** 수입화물은 화물수취인이 화물의 반입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수출화물은 송화인이 화물의 반출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화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의 신청 및 세관의 승인을 거쳐 수입화물의 수취인은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도착지에서 세관수속을 하거나,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출발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상술한 화물의 타세관 이관운송은 세관관리감독 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호송할 수 있다. 케이블이나 송수관 또는 기타 특수방식의 수송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은 경영업체가 정기적으로 지정된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통과화물)** 과경, 전운과 통운화물은 운수기관 책임자가 반입지 세관에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규정된 기간 내에 운송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경, 전운, 통과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37조(개장 등의 제한)** 세관이 관리감독하는 화물은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기관 또는 기업도 개봉·인출·인도·발송·교환·개장·저당·양도 또는 표기 변경을 할 수 없다. 세관이 설치한 봉인표지는 누구도 임의로 개봉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인민법원판결, 판정 또는 관련 행정집행 부서에서 세관관리감독 화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세관에 수속을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38조(화물의 보관)** 세관이 보관·관리감독하는 화물의 창고·장소의 설명인은 세관등록을 거쳐 세관규정에 따라서 보관, 반출입 및 보관료를 징수해야 한다. 세관관리감독 구역 이외의 곳에 세관관리감독 화물을 보관할 때에는 세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상기 규정 위반 또는 세관관리감독 화물 보관기간에 세관감독 화물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세관감독 화물에 대해 보관의무가 있는 자는 상응한 납세의무와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39조(특수거래에 대한 감시규정의 제정)** 국경출입 컨테이너의 관리감독방법, 수출입화물과 침물선의 인양에 관한 관리감독 방법, 국경 소액무역 수출입화물의 관리감독 방법 및 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 국경출입 화물의 관리감독방법은 해관총서 또는

해관총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0조(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수출입)** 국가에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있는 수출입화물, 물품일 경우에는 세관이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의해 결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감독방법은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1조(수출입화물의 원산지 관리)**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관련 원산지 규칙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42조(수출입 화물의 상품분류)** 수출입화물의 상품 분류는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상품분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관은 화학검사(化驗) 및 분석(檢驗)기구를 둘 수 있는 한편 세관이 인정하는 검사·분석결과를 상품분류의 근거로 할 수 있다.

**제43조(사전회시제도)** 세관은 대외무역업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의거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화물에 대해 사전에 상품분류 등 행정상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같은 상품분류 행정 결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관은 결정한 상품분류 등 행정 결정을 공포해야 한다.

**제44조(지적재산권보호)**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 세관에 신고해야 할 수출입화물 발송인 및 그 대리인은 국가규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관련 지적재산권 상황을 신고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합법 사용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사후검사)** 세관은 수출입화물이 통관일로부터 3년내 또는 보세화물, 세금을 감면한 수출입화물의 세관관리감독 기한 내 및 그후 3년 내에 수출입화물과 직접 관련되는 기업, 단체의 회계장부, 회계증표, 통관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와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 제4장 휴대품 및 우편화물

**제46조(개인휴대품 관리)** 개인이 휴대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여행물품, 우편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은 자용에 합리적인 수량에 한하며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7조(개인휴대품 신고)**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의 소유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이 시봉한 봉인표지는 누구도 함부로 개봉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제48조(우편물 등 검사)** 국경을 출입하는 우편행낭의 선적과 하역, 환적운송과 국경의 통과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체국은 세관에 우편물 행선표를 제출해야 한다. 우체국은 국제우편행낭의 개봉 및 봉인발송 시간을 사전에 세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세관은 시간에 맞추어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우편물의 교부)** 우편운송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은 세관의 검사를 거쳐 통관된 후에 관련업체는 배달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일시면세품의 반출입)** 세관등록을 거쳐서 일시면세 반입 또는 반출을 허가받은 물품은 본인이 다시 휴대하여 반출 또는 반입하여야 한다. 세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당해 일시 면세물품을 임의처분할 수 없다.

**제51조(무주물 등의 처리)** 반출입 물품의 소유자가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물품, 세관규정기간 내에 통관수속을 밟지 않거나 또는 확인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물품 및 배달할 방법이 없거나 되돌려 줄 방법이 없는 국경출입우편물품은 세관이 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외교관물품)** 외교특권과 면제를 받는 외국기구 또는 직원의 공무용품 또는 자용물품의 반출입은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장 관 세

**제53조(수출입세칙)** 수출입을 허가한 화물이나 반출입을 허가한 물품은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제54조(납세의무자)** 수출입화물의 화주 및 국경출입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다.

**제55조(과세가격 결정)**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동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화물의 가격과 화물을 국경내 수입지까지 운송하여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수 및 관련 비용 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하며,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화물의 가격과 화물을 국경내 수출지점까지 운송하여 적재하기 전에 발생한 운수 및 그 관련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하나 그중 포함된 수출관세는 공제한다. 반출입 휴대품 등 물품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제56조(감면세)** 아래에 열거한 수출입화물 및 국경출입물품은 관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한다.

- (1)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품과 견본물품
- (2) 외국정부 및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기증한 물자
- (3) 세관통관 전에 변질 또는 손상을 당한 화물
- (4) 규정 수량이나 금액 이내의 물품
- (5) 법률로 관세징수의 감세나 면세를 규정한 기타 화물 또는 물품
- (6)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 관세징수의 감세나 면세를 규정한 화물 또는 물품

**제57조(특정물품 감면세)**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은 관세징수의 감

세나 면세를 할 수 있다. 특정감세 또는 면세의 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본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세 또는 감세하여 수입한 화물은 단지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으로 사용하고 세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치거나 또는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8조(임시감면세 결정)** 본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규정범위 이외의 관세의 임시 감세 또는 면세는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제59조(과세납부의 일시유예)** 세관 승인을 거쳐 일시수입 또는 일시 수출한 화물 및 특별히 수입을 허가한 보세화물은 화주가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에 관세 납부 일시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제60조(납세기일)**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다음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일을 넘긴 것은 세관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3개월을 경과하여도 납세인, 보증인이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직속세관장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아래 강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 (1) 구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담보인 또는 납세의무자의 예금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 (2) 세금납부 대상화물을 매각하여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3) 세금에 상당한 가치의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 법에 의거하여 매각하여 매각소득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세관이 강제조치를 채택할 경우 앞 조항에 열거한 납세의무자, 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도 동시에 강제 집행한다. 휴대품 등 물품의 국경출입 시 납세의무자는 물품통관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세수보전)**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기한 내에 세금납부 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 은닉하려는 기미가 뚜렷할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납세보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직속세관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

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세관은 아래에 열거한 세수보전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구좌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해야 할 세금에 상당한 예금을 일시 지불 정지토록 조치를 취한다.

(2)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상응한 가치의 화물 또는 기타재산을 억류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관은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속세관 세관장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구좌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일시 지불 정지한 예금 중 세금을 공제하도록 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억류한 화물이나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한 소득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세수보전조치가 부당하거나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관이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실을 당했을 경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2조(관세 등의 추징)** 수출입화물, 반출입물품이 통관된 후 세관이 부족세액이나 세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금납부일 또는 화물, 물품의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추징한다.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조성된 부족세액이나 누락된 세금은 세관이 3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다.

**제63조(관세 등의 환급)** 세관이 과다징수한 세금은 세관에서 발견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납세쟁의)** 납세의무자와 세관간 납세에 대한 이의 발생 시는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징수관리)**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징수대행하는 세금의 징수관리는 관세징수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장 납세담보

**제66조(담보제공)** 화물의 상품분류 확정, 가격평가와 통관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 또는 기타 통관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화주가 화물 통관을 요구할 경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액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한 후에야 통관시킨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상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세관담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가 수출입 화물, 반출입 물품에 대해 제한 규정이 있어 허가증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나 제공하지 못할 경우나 법률, 행정법규에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타의 경우 세관은 담보 후 통관을 해줄 수 없다.

**제67조(담보인)** 법률규정상 담보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세관업무와 관련 담보능력이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국민은 담보인으로 될 수 있다.

**제68조(담보종류)** 보증인은 아래 재산,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 인민폐, 태환가능한 화폐
- (2) 환어음, 은행 어음, 수표, 채권, 예금통장
- (3)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구의 보증서
- (4)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기타 재산, 권리

**제69조(담보인)** 담보인은 담보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담보인이 담보책임을 이행하더라도 피담보인의 통관수속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70조(담보관리 방법)** 세관업무와 관련된 담보에 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장 업무감독

**제71조(법률준수)** 세관 직무 수행은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법적 권한과 법

적 절차에 의거하여 법을 집행하고 감독을 받는다.

**제72조(준법의무)** 세관직원은 공평하게 법을 수행하고, 청렴 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히 하고 선진적으로 서비스하며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밀수를 은닉 또는 용인하거나 또는 타인과 결탁하여 밀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 (2) 불법으로 타인의 신변자유를 제한하거나, 신변·거주지 또는 장소를 검사하는 행위, 불법으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화물, 물품을 검사 억류하는 행위
- (3)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
- (4)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5) 국가비밀, 상업비밀과 세관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6) 직권을 남용하고,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관리감독, 검사를 지연하는 행위
- (7) 몰수한 밀수 화물이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사로이 배분 또는 점용하는 행위
- (8) 영리성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신분을 위장하여 참여하는 행위
- (9)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업무상 월권행위
- (10) 기타 위법행위

**제73조(세관직원의 채용)** 세관은 법집행 업무상 수요에 근거하여 직원을 보강하고, 세관직원이 우수한 정치, 업무적 소질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직원은 법률과 관련지식에 전문 정통해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전문직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직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세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공개 시험을 거쳐 엄격하게 심사하며,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여 채용해야 한다. 세관은 계획적으로 직원의 사상, 법제, 세관업무훈련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세관직원은 정기적으로 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에 불합격할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74조(세관장의 정기인사 및 평가)** 해관총서는 세관장 정기전보인사제도를 실시한다.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상급 세관에 소관 업무를 보고해야 하며, 사실대로 직무수행 상황을 진술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정기적으로 직속세관 세관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직속세관은 정기적으로 산하세관 세관장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75조(업무의 관리·감독)** 세관 및 그 직원의 행정업무수행은 법에 의거하여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고 밀수단속경찰의 수사활동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검찰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76조(회계감사)** 회계감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관의 재정수지에 대해 회계감독을 하며, 세관에서 처리한 국제재정수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77조(산하세관 감독)** 상급세관은 하급세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감독해야 한다. 상급세관이 하급세관에서 처리하거나 결정한 부분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직원관리감독)** 세관은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내부감독제도를 수립하며, 직원의 법률, 행정법규의 집행과 규율 준수상황에 대해 감독·감사해야 한다.

**제79조(사무분장 및 견제)** 세관 내부의 신고서류심사, 검사, 통관, 사후심사와 조사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업무상 상호 분리와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제80조(세관의 부당행위 고소)** 임의의 기업이나 개인은 세관 및 그 직원의 위법행위와 규율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고소하거나 고발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은 법에 의거 담당업무별로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고소와 고발을 접수한 기관과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고소·고발인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1조(조사의 기피)** 세관직원은 위법사건을 조사처리할 경우,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당면했을 경우 조사를 기피해야 한다.

- (1)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직계 친척일 경우
- (2) 본인 또는 그 직계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본 사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제8장 벌 칙

**제82조(밀수죄)** 본법과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관의 관리감독을 일탈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탈세하거나 국가의 수출입과 관련된 금지성 또는 제한성 관리를 벗어난 아래에 열거한 사항은 밀수에 해당된다.

- (1)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물, 물품 또는 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화물, 물품을 운송·휴대·우송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행위.
- (2) 세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미납하거나, 관련허가를 위한 검사·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화물, 특정면세화물 그리고 기타 해관감독관리화물, 물품, 관세선을 통과하는 운송기관을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 (3) 세관의 관리감독을 일탈하여 밀수에 가담하는 기타 행위

상기에 열거한 행위가 있으나 밀수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세관에서 밀수화물, 물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혹은 수 차례 밀수를 하는 데 사용한 화물, 물품 그리고 전문적으로 혹은 수 차례 밀수를 방조하는데 사용한 운송기관은 몰수하고, 밀수화물, 물품을 은닉하였던 특별설비는 해체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몰수한다.

상기에 열거한 행위가 있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3조(밀수행위)** 아래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밀수행위로 처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본 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한다.

- (1) 밀수범으로부터 밀수 수입한 화물,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
- (2) 연근해, 영해, 河界, 湖界에서 선박 및 탑승자가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운송·구매·판매하는 행위, 또는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을 합법적인 증거가 없이 운송·구매·판매하는 행위

**제84조(밀수공모자 처벌)** 세관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하고 밀수범과 공모하여 밀수범을 위해 대출, 자금, 구좌, 영수증, 증명, 세관서류를 제공하거나 밀수범과 공모하여 밀수범을 위해 운수, 보관, 우송 또는 기타 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에 처한다.

**제85조(과다반입)** 개인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개인물품을 휴대·우송하여 국경을 출입 시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86조(법규위반)**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 (1) 운수기관이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을 통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경우
- (2)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의 도착시간·체류장소 혹은 환적장소를 세관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수출입화물, 물품, 혹은 과정, 전운 및 통운화물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 규정에 따라 세관의 국경출입 운수도구, 화물,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의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 (5)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이나 물건을 선적 또는 하역하거나, 혹은 국경을 출입하는 여행객을 승선 또는 하선한 경우
- (6)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 체류한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출발하는 경우
- (7)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한 지점으로부터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한 지점으로 이동할 때 세관수속을 아직 마치지 아니하고 또한 세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도에 임의로 국경 밖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국경 내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 (8)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국내 운수의 이중

영업을 하거나 혹은 국내 운수로 전환한 경우

- (9) 불가항력에 인하여 국경을 출입한 선박과 항공기가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 부득이 정박, 착륙 혹은 국내에 화물이나 물품을 방치하거나 하역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부근 세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 (10)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관이 관리감독하는 화물을 임의로 개봉, 채취, 교부, 운송, 교환, 개장, 저장 혹은 양도하는 경우
- (11) 임의로 세관의 봉인표지를 개봉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12) 세관 관리감독하에 있는 화물의 운수, 저장, 가공 등 업무를 경영하는 것으로 관련 화물의 멸실 또는 화물관련 기록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13) 세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제87조(업무의 일시정지 및 등록취소)** 세관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한 기업이 본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경고 또는 종사하는 업무를 일시 정지, 나아가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88조(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세관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통관업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통관업무에 종사할 경우 세관은 즉시 이를 중지시키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 처벌을 할 수 있다.

**제89조(월권행위에 대한 처벌)** 통관기업, 통관원이 불법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통관하거나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통관활동을 할 경우 세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가하며, 영업허가를 일시 정지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통관등록을 취소하고 통관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제90조(뇌물공여에 대한 처벌)** 수출화물의 발송인, 수입화물의 수취인, 통관기업, 통관원이 세관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세관은 통관등록을 취소하고, 통관업 종사자격을 취소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새로운

통관기업으로 등록하거나 통관업 종사자격증서를 취득할 수 없다.

**제91조(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은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침권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범법화물 및 손상·부패화물에 대한 처리)**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억류한 화물, 물품, 운수기관에 대하여 인민법원에서 판결하거나 세관에서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험품이거나 신선물품, 부패 용이한 물품, 실효 용이한 물품 등 장기간 보존하기 어려운 화물, 물품 및 소유자가 사전에 매각하도록 신청한 화물, 물품, 운수기관은 직속세관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매각한 소득대금은 세관에서 보존하고 그 소유인에게 통지한다. 인민법원 및 세관이 몰수를 판결한 밀수화물, 물품, 불법소득, 밀수에 사용한 운수기관, 특수설비는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매각으로 인한 소득과 세관에서 결정한 벌금은 전부 국고에 납입한다.

**제93조(억류화물 등 처리)**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록 세관의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또한 재심 신청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관은 담보금에서 공제하거나 억류한 화물, 물품, 운수기관을 법에 의거하여 매각하여 납부하며 또한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94조(손실물 배상)** 세관이 수출입화물, 물품을 검사 시, 피검사화물, 물품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95조(위법억류 화물배상)** 세관이 화물, 물품, 운수기관을 위법 억류하여 당사자의 합법권익이 손실을 받았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6조(세관직원의 처벌)** 세관직원이 본법 제72조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

여 행정처분을 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7조(징수업무에 대한 책임)** 세관의 징수업무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회계감사기관 및 관련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고, 직접 담당하고 있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8조(비밀유지)** 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소인, 고발인, 정보제공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지 아니한 담당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9조(조사회피 위반에 대한 처분)** 세관직원이 위법사건 조사처리 시 본법 규정에 따라 조사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담당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 제9장 부 칙

**제100조(용어의 정의)** 본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법에서 직속세관이라 함은 직접 해관총서의 지시를 받고 일정 지역범위 내의 세관업무를 담당·관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산하세관이라 함은 직속세관의 지시를 받고 구체적인 세관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국경출입 운수기관이라 함은 사람, 화물, 물품을 적재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각종 선박, 차량, 항공기 및 화물을 운반하는 기축을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과경(過境), 전운(轉運) 및 통운(通運)화물이라 함은 국경 밖으로부터 운반하기 시작하여 중국 국경 내를 통과하여 계속해서 국경 외로 운반하는 화물이다. 그 중 과경화물이라 함은 국경 내의 육로를 통과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전운화물이라 함은

세관 설치지점에서 다른 운수기관으로 환적은 하였으나 국경 내의 육로를 통하여 운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통운화물이라 함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입항 후 원래 적재된 상태로 국경을 나가는 것을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세관관리감독 화물이라 함은 본법 제23조 열거한 수출입 화물, 과경, 전운, 통운화물 및 특별감세·면세화물, 그리고 일시 수출입화물, 보세화물과 기타 세관수속이 끝나지 않은 국경출입 화물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보세화물이라 함은 세관승인을 받고 납세수속을 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와 국내에서 보관, 가공, 조립 후 다시 운송하여 국경을 나가는 화물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세관관리감독구역이라 함은 세관이 설립되어 있는 항구, 역, 공항, 국가간 경계의 지역, 국제우편, 교환국(교환역)과 기타 세관관리감독 업무와 관련된 장소 및 세관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국경을 출입하는 지점을 말한다.

**제101조(특정지역화물의 관리감독)** 경제특구 등 특정지구와 국내의 기타 지역 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 화물, 물품의 관리감독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102조(시행)** 본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7월 1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부록 VI.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sup>363)</sup>

###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정책을 관철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승인한 화물과 국경유입 물품은 법률 및 행정법규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징수한다.

**제3조**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 세칙(稅則)》(이하 “세칙(稅則)”으로 약칭)·《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유입물품 수입세 세율표》(이하 “국경유입물품 수입세 세율표”라 약칭)를 제정하고 관세의 세목과 세칙(稅則) 각 호 조항과 세율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구성 부분으로 한다.

**제4조** 국무원은 관세세칙(稅則)위원회를 만들어 《세칙(稅則)》과 《국경유입물품수입세 세율표》의 세목·세칙(稅則) 각 조항·세율의 조정과 해석을 책임지게 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고, 임시세율 적용 세목과 세율 및 기한을 결정하며 쿼터 관세 세율을 결정하고, 반덤핑세·반보조세·보장조치관세·보복성 관세 및 기타 관세 조치를 결정하며, 특수 상황하의 세율 적용을 결정하며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수입화물의 인수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국경 유입물품의 소유자는 관세 납세의무자이다.

---

363)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6조** 세관 및 해당 업무 담당직원은 법이 정한 직무권한과 법정 절차에 따라 관세징수관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이익을 보호유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에 의거 감독을 받는다.

**제7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관련 상업상 비밀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세관은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포상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 제2장 수출입화물 관세세율의 설정과 적용

**제9조** 수입관세에는 최혜국세율·협정세율·특혜세율·일반세율·쿼터관세세율 등의 세율로 구분한다.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관세에는 수출세율을 적용한다. 수출화물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임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① 원산지가 최혜국 우대조항을 공동으로 적용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의 수입화물,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쌍무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최혜국 우대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인 수입화물은 최혜국 세율을 적용한다.

②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우대조항의 지역성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③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특수관세 우대조항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은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④ 원산지가 본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이외의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 및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서 임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임시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세율·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 임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낮은 세율부터 적용해야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은 임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화물로 임시세율에 적용받는 것은 임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제12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세쿼터 관리를 하는 수입화물로 관세쿼터 내의 것은 관세쿼터 세율을 적용하고 관세쿼터 이외의 것은 본 조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물에 대한 반덤핑·반보조·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세율 적용을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제14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 혹은 공동 참여한 무역협정 및 관련협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역부문에 대한 금지·제한·과징(加徵)관세나 기타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주는 대책을 취하면 해당 원산지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대해 보복관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보복성 관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보복성 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적용 국가·세율·기한·징수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稅則)위원회가 결정 공포한다.

**제15조**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세관이 해당 화물 수입이나 수출신고를 접수받은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화물 도착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은 것은 해당 화물을 적재한 운송기구가 국경 통과를 신고한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관 경유 운수화물의 세율 적용일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아래 예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세관이 납세수속 신고를 접수한 날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1) 보세화물이 승인을 거쳐 다시 국외로 운송되지 않는 것
- (2) 감면세(減稅)화물이 승인을 거쳐 전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
- (3) 임시허가를 받은 국경 유입화물이 승인을 받아 국외로 운송하지 않기로 한 것과 임시 허가를 받은 국경 유출화물이 승인을 거쳐 다시 국경 유입을 않기로 한 것
- (4) 임차 수입화물로 세금 납부를 분기로 하는 것

**제17조** 수출입화물 관세의 추징과 환급은 본 조례 제15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 세율을 확정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 추징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행위 발생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행위 발생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관이 해당 행위를 발견한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3장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 가격 확정

**제18조**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 가격은 세관이 본조 제3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거래 성립 가격 및 해당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되기 전의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은 판매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해당 화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해당 화물의 수입을 위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후의 가격총액을 말하며 직접 지불한 대금과 간접 지불한 대금을 포함한다.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판매자가 해당 화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제한으로 화물의 판매지역 변경에 대한 제한, 화물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은 제외
- (2)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이 끼워 팔기나 기타요인으로 인한 영향으로 결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
- (3)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 화물 수입 후에 판매전환·처분·사용

으로 인한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수익이 있다 해도 본조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 (4) 구매자와 판매자 쌍방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혹은 특수관계가 있다 해도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제19조** 아래 예시된 수입화물의 비용은 세금완납가격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 (1) 구매자가 부담하는 물건 구입비 이외의 수수료와 첩외비용
- (2) 세금완납가격 심사확정 시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당 화물과 일체로 간주되는 용기의 비용
- (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재료와 포장 인건비 비용
- (4) 해당 화물의 생산과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판매와 유관한 것으로 구매자가 무료나 최저 원가방식으로 제공하여 적당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재료·공구·모형·소모품 및 유사화물의 대금, 국외에서 개발·설계 등에 사용된 관련서비스 비용
- (5) 해당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 및 해당 화물과 관계있는 특허권 사용 비용
- (6) 판매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화물 수입 후의 판매 전환·처분·사용한 수익

**제20조** 수입 시 화물의 대금 중에 명시된 아래의 세수(稅收)와 비용은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에 계산하지 않는다.

- (1) 공장·기계·설비 등의 화물 수입 후 진행된 건설·장치·조립·보수와 기술서비스 비용
- (2) 수입화물을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하여 하역한 후의 운송 관련비용과 보험료
-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제21조**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본 조례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관이 관련 정황을 참작하여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절충한 후 순서에 따라 아래의 가격으로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산출한다.

- (1)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된 같은 화물의 거래 가격
- (2)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된 유사한 화물의 거래 가격
- (3) 해당 화물의 수입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당 수입화물· 서로 같은 화물이나 유사한 화물이 일급 판매처에서 특수 관계가 아닌 구매자에게 최대로 판매한 총량의 판매 단위가격, 그러나 본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항목은 제외
- (4) 해당 화물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원가와 가공비용,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되는 동급이나 동 종류화물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비용, 해당 화물이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하기 전의 운송 관련비용과 보험료의 각 항목 총계에 따라 계산된 가격
- (5)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가격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항 (3)과 (4)항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22조** 본 조례 제21조 (3)항목의 규정에 따라 세금완납가격을 추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동급 혹은 동 종류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 일급판매처에서 판매할 때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비용 및 통상적인 지급 수수료
- (2) 수입화물을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하여 하역한 후의 운송 관련비용과 보험료
-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제23조** 임차방식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세관이 심사 확정된 해당 화물의 임대료를 세금완납 가격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1회성 세금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완납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혹은 세관이 심사 확정된 임대료 총액을 세금완납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국외로 운송되어 가공되는 화물은 국경을 통과할 때 미리 세관에 분명하게 보고하고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국내로 재수출되어 오는 것은 국외 가공비와 부품비 및 국내에 재수출되어 오는 운송 관련비용과 보험료로 세금완납가격을 심사 확정해야 한다.

**제25조** 국외로 운송되어 수리하는 기계류·운수관련 용구나 기타화물은 국경을 통과할 때 미리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국외 수리비와 부품비를 심의하여 세금완납가격을 확정한다.

**제26조** 수출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 및 해당 화물이 중화인민 공화국 내 수출지점에 적재되기 전의 운송 관련비용과 보험료를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은 해당 화물 수출 시 판매자가 해당 화물의 수출을 위해 구매자에게 직접 간접으로 수취하는 대금총액을 말한다. 수출관세는 세금완납가격에 계산하지 않는다.

**제27조**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세관이 정황을 참작하여 납세의무자와 가격 협의를 한 후 순서에 따라 아래의 가격으로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추정한다.

- (1)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된 동일한 화물의 거래가격
- (2)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 (3) 다음 예의 각 항 총계에 따라 계산된 가격 : 국내 생산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화물의 부품원가와 가공비용, 통상의 이윤과 일반비용,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 관련비용 및 보험료
- (4)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가격

**제28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세금완납가격의 원가·비용·세금 징수는 객관적이며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를 근거로 해야 한다.

## 제4장 수출입화물 관세의 징수

**제29조**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운송기구의 국내 입항일부터 14일 내에 신고하고 수출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의 감독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의 수출입지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수출입화물은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수입화물의 도착 전에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승인을 거쳐 신고를 먼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0조**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되며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납가격의 확정·상품분류·원산지 및 반덤핑·반보조 혹은 보장조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납세의무자는 《세칙(稅則)》에 규정된 조문목록과 분류 총규칙·분류주석·규칙주석·세목주석 및 기타 분류주석에 따라 신고한 수출입화물의 상품을 분류하여 해당하는 세칙(稅則) 조항에 포함시키고 세관은 법에 따라 해당 화물의 상품분류를 심사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상품을 분류 확정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세관은 화학분석·검증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이 인정한 화학분석·검증 결과를 상품분류의 근거로 한다.

**제33조** 세관은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해 수입화물과 관련 있는 계약서·발급 영수증·장부·지불환 증명·영수증·업무관련 서신과 전보·녹음녹화제품과 기타 쌍방 관계를 반영하는 교역활동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의심스럽고 관련된 관세액수가 비교적 큰 것에 대해 직속세관장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관총서의 동일 서식에 따라 수입지출의 명세 및 관련업무 담당직원의 업무증거를 조회하고 납세의무자가 은행이나 기

타 금융기관에 개설한 회사계좌의 자금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 감독관리기관에 관련 상황을 통보한다.

**제34조**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에 의심이 있으면 의심되는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설명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이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여전히 의심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을 접수하지 않고 본 조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완납가격을 추정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심사 확정된 후 납세의무자는 서면으로 세관이 어떻게 해당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결정했는가에 대한 서면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세관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36조** 수출입화물 관세는 총가격계산 징수·총량계산 징수나 국가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징수한다.

가격합산 징수 계산공식 : 납부할 세액 = 세금완납가격×관세세율

중량합산 징수 계산공식 : 납부할 세액 = 화물수량×단위세액

**제37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납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일부터 일수에 따라 체납세액의 5/10,000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체납세금 상황에 대한 공고를 할 수 있다.

세관의 관세·체납금 징수 등은 납입증빙서를 제정 발표해야 하며 납입증빙 양식은 해관 총서가 규정한다.

**제38조** 세관의 관세·체납금 징수 등은 인민폐로 계산 징수해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거래 가격 및 관련비용이 외화가격으로 계산된 것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인민폐로 세금완납가격을 계산한다. 기준환율 화폐종류 이외의 외화로 가격이 계산된 것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세금완납가격을 계산한다. 환율 적용일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39조** 납세의무자가 불가항력이나 국가의 세수정책 조정상황 때문에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아 세금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납세기한 내에 과세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은닉한 흔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세관이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의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세관이 《해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수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와 담보인이 세금납부 기한 만기일 이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관이 《해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가공무역 수입부품이 국가가 규정한 보세 수입인 것으로 해당 완제품 제작이나 수입부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것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가공무역의 수입부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완제품이나 수입부품이 규정된 시간 내에 수출되는 것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경통과 시 이미 징수한 관세대금을 환불한다.

**제42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국경을 넘어가거나 들어오는 아래의 화물이 국경을 넘어가거나 들어올 때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것은 임시로 관세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경을 넘어오거나 나간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운송되어 오거나 나가야 하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관총서의 규정에 근거, 국경을 통하여 다시 운송되어 나가거나 들어오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시회·교역회의 및 유사활동 중 전시되거나 사용된 화물

- (2) 문화·체육교류 활동 중 사용된 연출·경기용품
- (3) 뉴스보도 진행이나 영화·텔레비전 촬영제작에 사용된 측정기구·설비 및 용품
- (4) 과학연구·의학·교학 활동에 전시 사용된 설비 및 용품
- (5) 본항 (1)~(4)에서 열거한 활동 중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수한 종류의 차량
- (6) 견본품
- (7) 설치·성능시험·검사측량설비 제공 시 사용된 측정기구 및 공구
- (8) 화물을 담은 용기
- (9) 기타 비상업목적에 사용하는 화물

위에서 예를 든 임시 승인을 받아 국경을 넘어온 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국외로 운송되지 않거나 임시 승인을 받은 국외반출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운송되어 오지 않는 것은 세관이 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해야 된다.

위에서 예를 든 임시로 관세를 면세하는 범위 밖의 기타 국경을 넘어오는 화물의 임시 승인은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과 국내 체류기간 및 감가상각 기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국경유입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43조**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수출화물이 수출일로부터 1년 내에 국경으로 다시 운송되어 들어오는 것은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4조** 파손·부족·품질불량이나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운송업자나 보험회사가 무료보상이나 교환하는 것과 같은 화물은 수출입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료로 교환되는 원래의 수입화물이 국경 유출시 운송 불량이나 원래의 수출화물이 국경유입 시 운송 불량인 것은 세관이 원래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다시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제45조** 아래의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 (1) 관세 세액이 1종류로서 인민폐 50위안 이하의 화물
- (2)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제품과 견본품
- (3)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증여한 물자

(4) 세관의 통관허가 전에 손실을 입은 화물

(5) 국경 진 출입 운송기구에 적재하는 도중에 필요한 연료·자재와 식음료 용품

세관의 통관허가 전에 손실을 입은 화물은 세관이 인정하는 손실 정도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기타 면세 혹은 관세가 감면되는 화물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면세나 관세감면을 한다.

**제46조** 특정지역·특정기업이나 특정한 용도가 있는 수출입화물의 면세 혹은 관세감면 및 임시감면이나 면세하는 관세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7조** 수입화물의 면세 혹은 감면은 수입중심세관이 대리하여 징수하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8조** 납세의무자가 세금감면 화물을 수출입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 해당 화물의 수출입 전에 규정에 따라 관련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금감면 심사승인 수속을 한다. 세관의 심사를 거쳐 규정에 적합한 것은 관세 면제나 감액을 한다.

**제49조** 세관의 관리감독에 사용되는 감면세 적용이 필요한 수입화물이 관리감독 연한 안에 전매나 타 용도로 바뀌어 사용되어 추가징수가 필요한 것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수입시간에 따라 추정가격을 공제하여 수입관세를 추가징수해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특정 감면세 관리감독 연한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50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관세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세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반드시 원래의 납부증빙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미 수입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원상 반품되어 다시 국외로 운송되는 경우

(2) 이미 수출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원상 반품되어 국외로 운송되거나

나 또는 수출과 반환으로 국내 부분의 관련 세수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3) 수출관세를 이미 징수한 화물이 사정으로 수출하지 못하여 수출 철회를 신고한 것  
세관은 세금반환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처리 내역을 심사하여 통지해야 한다.

기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되는 관세는 세관이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51조** 수출입화물 통관허가 후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이 발견되면 세금납부나 화물통관 일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된 것은 세관이 세금납부나 화물 통관 일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세금납부나 화물 통관일부터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된 세금은 일수에 따라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이 세관의 화물 관리감독에서 발견한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이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시킨 것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해야 되며 납세의무일부터 일수에 따라 적게 내거나 누락된 세금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해서 추징해야한다.

**제52조** 세관이 발견한 과다납부된 세금은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수속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된 세금을 발견한 것은 세금납부일부터 1년 내에 과다납부된 세금과 같은 기간 은행 일반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심사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수속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관련 반환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53조** 본 조례 제50조·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관련이자의 반환은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법률·행정법규의 관련 국고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54조** 기업이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하는 통관수속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세수속 통관을 하며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탈루시킨 것은 통관 기업이 적게 징수하거나 탈루된 세금·체납금에 대해 납세의무자와 납세부담의 연대책임을 진다.

통관기업이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기업의 명의로 납세 통관수속을 하는 것은 통관기업이 납세의무자와 납세 연대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세관이 관리감독 화물을 보관하는 기간에 세관의 관리감독 화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세관의 화물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관의무자가 상응하는 납세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5조** 납세 체납자가 합병·분리설립 상황에 있는 것은 합병·분리설립 이전에 세관에 보고해야 되며 법에 따라 세금을 완납한다. 납세의무자가 합병 시에 완납하지 않은 세금은 합병 후의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계속하여 미이행한 납부의무를 이행하며 납세의무자가 분리 설립 시 완납하지 않은 세금은 분리설립 후의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미이행한 납세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납세의무자는 화물·보세화물의 세금 감면 관리감독 기간에 합병·분리설립 혹은 기타 자산이 다시 구성되는 상황을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납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완납해야 되며 규정에 따라 감면세·보세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세관에 납세의무자 변경 수속을 해야 된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빌리거나 감면세 화물·보세화물 관리감독 기간에 철회·해산·파산이나 기타 법에 따라 경영이 정지된 것은 반드시 청산 전에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토록 하여야 한다.

## 제5장 국경유입 물품의 수입세 징수

**제56조** 국경유입 물품의 관세 및 수입증심 세관이 대리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합하여 수입세로 하며 세관이 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57조** 해관총서가 규정된 액수 이내의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유입하는 물품에는 수입세를 면제한다.

세관총국이 규정한 액수지만 합리적인 수량 이내의 것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유입하는 물품은 국경유입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 전에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한다.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수량의 국경유입 물품은 수입화물의 적법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국무원 관세세칙(稅則)위원회는 화물 세금징수에 따라 국경유입 물품을 규정하고 본 조례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제58조** 국경유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휴대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국외에서 우송된 물품의 수취인 및 기타 방식으로 유입되는 물품의 수취인을 말한다.

**제59조** 국경유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수속을 스스로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할 수도 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본장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0조** 수입세의 물건값에 따라 계산 징수한다.

수입세의 계산방식은 수입세 세액=세금완납가격×수입세 세율로 한다.

**제61조** 세관은 《국경유입물품 수입세세율표》 및 세관총국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유입물품 분류표》·《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유입물품 세금완납가격표》에 따라 국경유입물품에 대한 분류·세금완납가격의 확정·적용세율 확정을 한다.

**제62조** 국경유입물품은 세관이 세금납부서를 발부한 날의 세율과 세금완납가격을 적용한다.

**제63조** 수입세의 감세·면세·보충징수·추징·반환 및 임시로 허가한 국경유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는 본 조례의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에 대한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 제6장 부 칙

**제64조** 납세의무자·담보인은 세관의 납세의무인 확정·세금완납가격 확정·상품분류·원산지 확정·세율이나 환율적용·세금감액이나 면제·보충징수·반환·체납금징수·징수 계산방식 확정 및 납세지 확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법에 따라 직속 상급 세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수입과 관련한 세관이 세금징수를 대행하는 징수관리는 관세징수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것은 《해관법》·《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행정처벌실시세칙》과 기타 관련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7조** 본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92년 3월 18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는 폐지한다.

## 부록 VII.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관리조례<sup>364)</sup>

### 제1장 총 칙

**제1조** 화물의 수출입 관리를 규범화하고 수출입질서를 유지하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화물을 중국 국내로 수입하거나 중국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중국은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통일된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4조** 중국은 화물의 수출입 자유를 허용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질서있는 화물수출입 무역을 보호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수출입 금지 및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어떠한 단위 및 개인도 화물 수출입에 대해 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5조** 중국은 화물 수출입 분야에서 가입 또는 체결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 근거해 가입국 상대측 또는 체약국 상대측에게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에게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제6조**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 화물 수출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금지, 제한 등 기타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해 상대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

---

364) 국무원 2001년 10월 31일 공포, 2002년 1월 1일부 시행

치를 취한다.

**제7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하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은 대외무역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화물수출입 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관계기관은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에 따라 이 조례의 규정에 근거해 화물수출입 무역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제2장 수입화물관리

### 제1절 수입금지 화물

**제8조** 대외무역법 제17조에 규정된 화물은 수입을 금지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서 수입금지를 규정할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지 화물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제9조** 수입금지 대상 화물은 수입할 수 없다.

### 제2절 수입제한 화물

**제10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 4, 5, 6, 7항에 규정된 화물은 수입이 제한된다. 기타 법률·행정법규에 수입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른다.

수입제한 화물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협의해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수입제한 화물리스트는 늦어도 실시하기 21일 전에 공포해야 하며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도 실시일보다 늦게 공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국가가 수량제한을 하고 있는 수입제한 화물에 대해 쿼터관리를 실시하며 기타 수입

제한 화물에 대해서는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관세쿼터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화물은 제2장 제4절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12조**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이하 수입쿼터 관리부서)가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영역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에 대해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7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총수입쿼터량을 발표해야 한다.

쿼터 신청인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차년도 수입쿼터를 신청해야 한다.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쿼터액을 쿼터 신청인에게 분배해야 한다.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연간 총쿼터량 수요에 근거해 쿼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실시 21일 전에 공포한다.

**제14조** 쿼터는 신청에 대해 통일된 방식으로 분배된다.

**제15조** 통일된 처리방식으로 쿼터를 분배할 경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규정된 신청기간이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쿼터 방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수입쿼터 관리부서가 쿼터를 분배할 때 아래의 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2. 과거에 배분된 쿼터를 충분히 사용했는지 여부
3. 신청업체의 생산능력, 경영규모, 판매현황
4. 신규 수입기업의 신청 현황
5. 신청쿼터 수량 현황
6. 기타 고려사항

**제17조** 수입기업은 수입쿼터 관리부서가 발급한 쿼터증명서를 지참해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에서 수입쿼터 허가증을 신청, 수령한다.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수입쿼터 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기업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가 발급한 수입쿼터 허가증을 지참해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한다.

**제18조** 쿼터를 소지한 업체가 소지한 연도 쿼터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9월 1일 이전에 미사용 쿼터를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하며 만약 제때에 반납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차년도에 이어 상응하는 쿼터를 삭감할 수 있다.

**제19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 수입기업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나 국무원 관계기관(이하 수입허가증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기업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에 근거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수입허가증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수입허가 성격을 띤 각종 증명서 및 문건을 말한다.

**제20조** 수입쿼터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하며 또 신청인의 자격, 신청수리 담당부서, 심사원칙,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허가증 관리 실시 전에 관련 내용을 공포해야 한다. 1개 부서가 일반적으로 수리업무를 담당한다.

수입쿼터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건 및 자료에 국한돼야 하며 비현실적인 사소한 오류에 인해 야기된 부분을 문제삼아 신청서의 수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제3절 자유수입 화물

**제21조** 자유수입에 속하는 수입화물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화물수입 현황을 검사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 영역에 따라 자유수입에 속한 일부 화물에 대해 자동수입 허가관리를 실시한다. 자동수입 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리스트는 늦어도 실시 21일 전에 공포해야 한다.

**제23조** 자동수입 허가관리 대상화물은 모두 허가해야 한다.

**제24조** 자동수입 허가관리 대상화물의 수입기업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기 전에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나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에 자동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자동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하에서도 최장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기업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 부서가 발급한 자동수입허가증에 근거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 제4절 관세쿼터 관리화물

**제25조** 관세쿼터 관리대상 수입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가 공동으로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제26조** 관세쿼터 관리대상 수입화물은 쿼터내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쿼터 관리 대상 이외의 수입화물은 쿼터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제27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차년도 관세쿼터 총량을 발표한다. 쿼터 신청업체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관세쿼터액을 신청한다.

**제28조** 관세쿼터액은 신청한 모든 내역에 대해 통일된 처리 방식에 따라 분배된다.

**제29조** 통일된 처리 방식에 따라 관세쿼터액을 분배했을 경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쿼터액 방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0조** 수입기업은 수입쿼터 관리부서가 발급한 관세쿼터 증서에 근거해 세관에서 관세쿼터내 화물의 통관수속을 마쳐야 한다.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는 연도 관세쿼터 총량, 분배방안 등 실제 발급한 관세쿼터 현황을 즉시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31조** 관세쿼터액 소지자가 연도 쿼터액을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연도 9월 15일 이전에 미사용된 쿼터액을 수입쿼터액 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제때 반납하지 않거나 또한 당해연도내 소진하지 않을 경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차년도에 소진하지 않은 것만큼 쿼터액을 삭감할 수 있다.

**제32조** 수입쿼터액 관리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세쿼터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하며 신청업체의 자격, 신청서 수리부서, 심사 원칙 및 절차 등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쿼터 실시전 이를 공포해야 한다. 1개 부서가 일반적으로 수리업무를 담당한다.

수입쿼터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관리를 위한 필요한 문건 및 자료에 국한돼야 하며 비현실적인 사소한 오류로 인해 야기된 부분을 문제삼아 신청서의 수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 제3장 수출화물 관리

### 제1절 수출금지 화물

**제33조** 대외무역법 제17조에 규정된 화물에 속할 경우 수출을 금지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수출을 금지하면 그 규정을 따른다.  
수출금지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제34조** 수출금지 화물은 수출할 수 없다.

### 제2절 수출제한 화물

**제35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 2, 3, 7 항에 규정된 화물은 수출은 제한된다.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제한하는 수출화물은 그 규정에 따른다.  
수출제한 화물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수출제한 화물리스트는 늦어도 실시하기 21일 전에 공포돼야 하며 긴급상황에서도 실시일 보다 늦게 공포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국가가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수출제한 화물은 쿼터관리를 실시하며 기타 수출제한 화물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제37조** 쿼터관리 실시 수출제한 화물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 부서(이하 수출쿼터 관리부서)가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영역에 따라 관리한다.

**제38조**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제한 화물에 대해 수출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총수출쿼터량을 발표해야 한다.

쿼터 신청업체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수출쿼터 관리부서에 차년도 수출 쿼터액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차년도 쿼터를 쿼터 신청업체에게 분배해야 한다.

**제39조** 쿼터는 직접 분배방식 및 입찰방식 등을 통해 분배할 수 있다.

**제40조** 수출쿼터 관리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또는 당해연도 12월 15일 전에 쿼터분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1조** 수출업체는 수출쿼터 관리부서가 발급한 쿼터증명서에 근거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마쳐야 한다.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는 연도쿼터 총량, 분배방안 및 실제 발급한 쿼터증명 상황을 즉시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42조** 쿼터 소지자가 소지한 연도 쿼터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10월 31일 이전에 미사용 쿼터액을 수출쿼터 관리부서에 반환해야 한다. 만약 제때에 반환하지 않거나 또 당해연도 내에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쿼터 관리부서는 차년도에 그에 상응하는 쿼터액을 삭감할 수 있다.

**제43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수출하물업체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부서(이하 수출허가증 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수출허가증 관리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수출허가증 관리부서가 발급한 수출허가증에 근거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마친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수출허가증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각종 수출허가 성질을 띤 증명서 및 문건을 포함한다.

**제44조** 수출쿼터 관리부서와 수출허가증 관리부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 수리부서, 심사원칙 및 절차 등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실시 전에 공포해야 한다. 1개 부서가 일반적으로 수리업무를 담당한다.

수출쿼터 관리부서와 수출허가증 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관리를 위한 필요한 문건 및 자료에 국한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사소한 오류로 인해 야기된 부분을 문제삼아 신청서의 수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 제4장 국영무역 및 지정경영

**제45조** 국가는 일부 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 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입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가 공동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제46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영역에 따라 국영무역기업 리스트를 확정해 공포한다.

**제47조** 국영무역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해 국가는 비국영무역기업이 일부 수량의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48조** 국영무역기업은 반기마다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에 국영무역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의 구입가격, 판매가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49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수출입경영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일부 화물에 대해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입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가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제50조** 지정경영 기업을 확정짓는 구체적 표준 및 절차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가 제정해

서 실시 전에 공포한다.

지정 경영기업 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가 공포한다.

**제51조** 이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상황 이외에 국영 무역기업 및 지정경영 기업 또는 기타 조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영 무역관리,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수출입 무역에 종사할 수 없다.

**제52조** 국영 무역기업 및 지정경영 기업은 정상적인 상업조건에 근거해 기업을 경영해야 하며 비상적인 요소로써 공급업체를 선택하거나 기타 기업이나 조직체의 위탁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제5장 수출입 감독 및 임시 조치

**제53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관리감독 및 평가를 해야 하며 또 정기적으로 화물수출입 현황을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54조** 국가는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 및 그 위협을 받을 경우 국제수지 균형유지 또는 경제발전계획 실시에 따른 외화준비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화물의 가격이나 수량에 대해 임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5조** 국가는 국내 특정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히 채택할 방법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수입제한 및 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국가는 아래 조항들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에 대해 임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중국내 생산이나 판매에 대해 제한 조치 실시
2. 보조금 소비형태를 통해 국내의 과잉 동종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을 퇴치
3. 전부 또는 대부분 수입 농수산물로 구성된 동물성 제품에 대해 생산제한 조치를 실시

**제57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특정 화물에 대해 임시 수출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각한 자연재해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수출제한 및 금지가 필요한 경우
2. 수출 경영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제한 및 금지가 필요한 경우

**제58조** 수출입화물에 대해 임시적으로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제한 및 조치 실시전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장 대외무역 촉진

**제59조** 국가는 수출신용 보험, 수출신용 대출, 수출증치세 환급, 대외무역 발전기금 설립 등 제도를 채택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60조** 국가는 유효한 정책을 채택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

**제61조** 국가는 정보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제62조** 화물수출입업체는 합법적으로 수출입상회를 설립해 참가할 수 있고 상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회원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63조** 국가는 기업이 외국의 차별적인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및 기타 제한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독려해 기업의 정당한 무역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제7장 법률책임

**제64조** 수출입 금지화물에 속하는 화물을 수출입하거나 비준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출입 제한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경우 밀수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그 대외무역 경영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 비준 및 허가범위를 넘어 수출입 제한화물을 임의로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밀수죄 또는 비합법 경영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세관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그 대외무역 경영허가권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6조** 수출입화물의 쿼터증명, 비준증서,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을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할 경우 비합법 경영죄에 관한 형법규정 또는 국가기관 공문, 증서, 인장위조, 매매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또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그 대외무역 경영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 수출입업체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수출입화물 쿼터액, 비준증서,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 허가증을 취득했을 경우 법에 따라 수출입화물 쿼터액, 비준증서,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 허가증을 몰수하고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그 대외무역경영 허가권을 일시 정지한다.

**제68조** 이 조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해 국영무역 관리나 지정경영 관리 수출입화물 무역에 자의적으로 종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심각한 상황까지 발전한 경우 비합법 경영죄에 관한 형법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그 대외무역 경영허가권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9조** 국영무역기업 또는 지정경영기업이 이 조례 제48조, 제52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가 경고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영무역기업 또는 지정경영기업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 수출입화물 관리자가 수출입화물 관련 직무를 수행시 직권 남용, 직무태만, 이권 이용 또는 타인의 재물을 착취할 경우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수뢰죄, 기타 죄목에 관한 형법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제8장 부칙

**제71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쿼터액, 관세쿼터, 허가증 또는 자동 허가증 결정사항에 대해 불복하거나 국영무역 기업 또는 지정경영 기업의 자격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행정처벌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 이의제기 및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2조** 이 조례의 규정은 법률에 근거해 수출입화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관세, 검사·검역, 안전,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관련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73조** 핵제품, 민군 겸용 핵물질, 감시제어용 화학품, 군사용품 등 수출통제 화물을 수출할 경우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4조** 수입화물에 반덤핑조치, 반보조금조치, 세이프가드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외무역법과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5조**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특별경제구역’의 화물수출입 관리에 대한 법률 및 행정법규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76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는 관련 수출입화물 무역 쌍방 간 또는 다자 간 교섭 및 담판을 책임지고 무역분쟁 해결 등 관련 사항을 책임진다.

**제77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1984년 1월 10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 허가제 잠정조례」, 1992년 12월 21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2년 12월 29일 대외경제무역부가 발표한 「수출상품 관리 잠정 방법」, 1993년 9월 22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3년 10월 7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계전자제품수입관리 잠정방법」, 1993년 12월 22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3년 12월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일반상품 수입쿼터관리 잠정방법」, 1994년 6월 13일 국무원이 비준, 1994년 7월 19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입상품 경영관리 잠정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 부록 Ⅷ.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법<sup>365)</sup>

###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수출입상품의 검사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공공의 이익과 수출입무역과 관련된 각 방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대외경제무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은 수출입상품 검사부서(이하 '국가 상검부서')를 설립하여 전국의 수출입상품의 검사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의 상검부서는 각 지역의 수출입상품 상검기구(이하 '상검기구')를 설립하여 관할지역의 수출입 상품검사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 상검기구와 국가 상검부서의 허가를 거친 상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수출입 상품검사는 마땅히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기만행위를 방지하며 국가안전수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상검부서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수출입 상품목록(이하 '목록')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실시를 공포한다.

**제5조** 목록에 포함되는 수출입상품은 상검기구가 검사를 실시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상품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판매·사용을 불허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수출상

---

365) 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통과, 2002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품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수출을 불허한다.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출입상품에 있어 그 중 국가가 규정하는 검사 면제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수인과 적송인이 신청하여 국가상 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수출입 상품검사란 목록에 포함된 수출입상품이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합격 평가활동을 말한다. 합격평가절차는 견본·검사·조사·평가·검증·합격보증·등록·인가와 비준 및 각 항의 조합을 포함한다.

**제7조** 목록에 포함되는 수출입상품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아직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 이전에는 국가 상검부서가 지정하는 국외유관표준을 참조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국가 상검부서의 허가를 거친 검사기구는 대외무역관계인 또는 외국검사기구의 위탁을 접수하여 수출입 상품의 검사감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법률·행정법규가 기타검사기구가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또는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0조**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마땅히 적시에 관련 방면에 수출입상품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의 업무인원은 수출입상품 검사의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상업기밀에 대하여 기밀유지할 의무가 있다.

## 제2장 수입상품의 검사

**제11조**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마땅히 세관신고지의 상검기구에 세관통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상검기구

가 서명발송한 화물통관증명에 따라 검사를 마친 뒤 통관시킨다.

**제12조**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마땅히 상검기구가 규정하는 지점과 기한이 내에 상검기구의 수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마땅히 국가 상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기한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입상품 이외의 수입상품의 수하인은 수입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거나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상검기구가 증명을 발행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마땅히 상검기구에 검사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의 세트설비에 대하여 수하인은 마땅히 대외무역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수출국이 선적하기 전에 사전검사·제조감시 또는 선적감시를 실시하고 주관부서는 마땅히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15조**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출상품의 적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마땅히 상검기구가 규정하는 지점과 기한 이내에 상검기구에 검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국가 상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기한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이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수출상품에 대하여 세관은 상검기구가 서명 발행한 화물통관증명에 따라 검사를 마친 뒤 통관시킨다.

**제16조** 상검기구의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상품은 마땅히 상검기구가 규정하는 기한 내에 수출통관을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 마땅히 재차 통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화물을 위하여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의 성능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험화물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의 사용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정합격을 거치지 아니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위험화물은 수출을 불허한다.

**제18조** 쉽게 부패되거나 변질되는 식품을 선적하는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하여 운송업자 또는 컨테이너기관은 반드시 선적 전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합격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선적을 불허한다.

#### 제4장 감독관리

**제19조** 상검기구는 이 법이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수출입상품 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한다. 국가 상검부서는 추출검사 결과를 공포하거나 유관부서에 추출검사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상검기구는 대외무역을 위한 편의 제공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가규정에 따라 목록에 포함되는 수출상품에 대하여 출고 전에 품질감독관리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을 위하여 검사수속을 처리하는 대리인은 마땅히 상검기구에 등록등기를 하여야 한다. 통관신고 수속의 처리시 상검기구에 수권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 상검부서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검사기구가 위탁한 수출입상품의 검사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 상검부서가 허가하는 검사기구의 수출입 상품검사 감정업무활동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하며 검사한 상품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 상검부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인증제도에 근거하여 관련된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인증관리를 실시한다.

**제25조** 상검기구는 국가 상검부서가 외국유관기구와 체결한 협의 또는 외국유관기구의 위탁에 근거하여 수출입 상품품질인증작업을 진행하고 인증합격한 수출입상품상에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 상검기구는 이 법에 의거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증관리를 실시하며 증서를 검사하고 증서와 화물의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한다.

**제27조** 상검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합격한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상품검사표지 또는 봉인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28조** 수출입상품의 검사신고자는 상검기구가 내린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상검기구 또는 그 상급 상검기구 및 국가 상검부서에 재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을 수리한 상검기구 또는 국가 상검부서는 적시에 재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29조** 당사자가 상검기구·국가 상검부서가 내린 재검결론에 불복하거나 또는 상검기구가 내린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行政復議,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30조**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법정 직권과 법정 절차에 의거하여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마땅히 법에 근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필요에 따라 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상검 업무인원이 양호한 정치·업무적 소질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검업무인원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업무연수와 심사를 수용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비로소 현장에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상검 업무인원은 반드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문명적으로 복무하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리를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국가 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마땅히 건전한 내부감독제도를 수립하여 업무인원의 집행활동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검기구의 내부에서 검사신고·검사·증명통관 등을 수리하는 주요 직책의 직책권한은 마땅히 명확하여야 하며 상호분리되고 상호견제하여야 한다.

**제32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모든 국가 상검부서·상검기구 및 그 업무인원의 위법·규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발·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직책분장에 따라 적시에 조사하며 고발인·신고인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법률책임

**제3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수출입상품을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또는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수출상품을 검사합격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출한 경우 상검기구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5조** 이물질·가짜물질을 섞거나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거나 질이 낮은 것으로 질이 우수한 것을 대체하거나 또는 불합격의 수출입상품을 합격한 수출입상품으로 둔갑시켜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상검기구는 수입 또는 수출의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금액의 50%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6조** 상품검사증빙서류·인감·표지·봉인·품질인증표지 등을 위조·변조·매매·절

도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  
 검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금액의 등가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37조** 국가 상검부서·상검기구의 업무인원이 이 법이 규정을 위반하고 알게 된 상업기밀  
 을 누설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  
 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8조** 국가 상검부서·상검기구의 업무인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곤란함을 초래하게  
 하고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며 검사결과를 위조한 경우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증명  
 을 연기하게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 제6장 부 칙

**제39조** 상검기구와 기타 상검기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감정업  
 무를 처리하며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40조** 국무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41조**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 IX. 2013년도 관세실시 방안<sup>366)</sup>

### 1. 수입관세 조정

#### ○ 최혜국세율(最惠国税率)

- 1) 9개 비전세목(非全税目)정보기술제품은 대조검사관리를 지속 실시하며 세율은 변하지 않으며 세칙, 세목 조정으로 관련 세목이 10개로 증가
- 2) 밀 등 8대류 47개 세목의 상품은 관세쿼터관리를 지속 실시하며 세목과 세율은 변하지 않음. 쿼터관리의 수입하는 일정 수량의 면화는 슬라이딩관세를 실시하며 관련공식을 조정하고, 카르바미드, 복합비료, 인산암모늄 등 3종의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1% 세율 집행
- 3) 감광재료 등 47개 상품은 종량세와 복합세를 지속 실시하며 세율은 변하지 않으며 5종의 감광재료제품은 종가세를 실시
- 4) 기타 최혜국세율은 변하지 않음

#### ○ 잠정세율(暂定税率)

- 연유 등 784개 수입품목은 잠정세율 실시

#### ○ 협정세율(协定税率)

- 중국과 무역협정 혹은 관세특혜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지역은 협정세율 실시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국가의 1875개 세목상품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세율을 실시

366)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3년 관세실시방안」, 2012. 12. 10 발표, 2013. 1. 1. 실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12/t20121217\\_716211.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12/t20121217_716211.html))

○ 특혜세율(特惠稅率)

- 중국과 무역협정 혹은 관세특혜협정을 체결, 국무원 관련 결의, UN 인정 40개 저개발국가의 부분 세목상품 등 특혜세율 실시

## 2. 수출관세조정

- 크롬철 등 부분 수출상품은 잠정세율 실시, 부분 화학비료는 특별수출관세 징수
- 《수출세칙》에서의 수출세율은 현 상태로 유지

## 3. 세칙세목조정

- 국내수요에 따라 부분 세칙, 세목에 대하여 조정하여, 조정 후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세목은 8,238개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95-4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